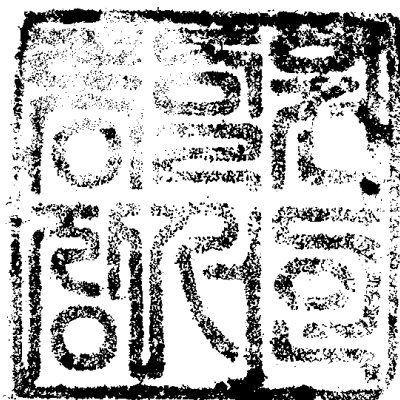


統一過程研究 92 - I

獨逸統一 實態 資料集

— 非經濟分野 —

1992. 8



統一院

冊을 내면서

이 冊子는 駐獨韓國大使館이 提供한 各種 資料 및 同 大使館에 派遣되어 있는 當院 所屬의 統一研究官이 송부한 報告書 가운데, 兩獨間 交流·協力 實態 및 統獨以後의 懸案問題 등을 다룬 資料를 編輯, 發刊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冊子에 실린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은 아니며, 現地에서 送付한 資料를 그대로 複製·發刊한 것이 相當部分 있다는 점을 勘案하여 活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獨逸統一問題나 韓半島問題의 解決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關係專門家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目 次

<概 觀>

- ◇ 獨逸統一問題(要約) 3
- ◇ 獨逸統一問題 23
- ◇ 統獨以後 獨逸情勢 不安의 理由 146
- ◇ 韓半島 統一을 위한 統獨教訓 153

<政治·外交分野>

- ◇ 1次 Brandt-Stoph 兩獨 頂上會談(Erfurt) 167
- ◇ 2次 Brandt-Stoph 兩獨 頂上會談(Kassel) 176
- ◇ Erfurt·Kassel 頂上會談 관련 聯邦首相室 關係者 面談要旨 187
- ◇ Schmidt 首相의 東獨訪問 細部日程 194
- ◇ Honecker 書記長의 西獨訪問 細部日程 213
- ◇ 過去 東·西獨間 頂上會談 事例調査 238
- ◇ 西獨政府의 東方政策은 東獨體制의 崩壞를 加速化시켰는가
遲延시켰는가? 249
- ◇ 統一後 東·西獨人들간의 政治的 同化 291
- ◇ 最近 舊 東·西獨地域 指導層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 結果 306
- ◇ 東獨의 滅亡原因 322
- ◇ 全獨 總選에 관한 參考資料 360
- ◇ UN에서의 東·西獨 活動 決算 367
- ◇ 東·西獨 協商과 2+4會談 387
- ◇ 東·西獨 常駐代表部 設置와 法的 問題 394

<行政·司法分野>

- ◇ 統獨以後 提起된 問題點 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419
- ◇ 新聯邦州의 行政體系 改編 429
- ◇ 舊東獨政權의 被害者 補償問題 451
- ◇ 舊東獨地域 司法體系 確立과 法官 再任命問題 465

<軍事分野>

- ◇ 獨逸의 軍事統合 479
- ◇ 獨逸聯邦 國防省의 統獨 1周年 獨逸聯邦軍 現況報告 485

<社會·文化分野>

- ◇ 東·西獨 體育統合에 따른 諸問題 511
- ◇ 東·西獨 赤十字社 統合問題 519
- ◇ 東·西獨 메스컴 統合事例 525
- ◇ 東·西獨間 放送協力에 관한 合意書 534

<統獨前 兩獨間 交流·協力分野>

- ◇ 兩獨間 國境委員會 設置 및 活動 541
- ◇ 兩獨間 通行問題 關聯 委員會 設置 및 活動 547
- ◇ 過去 東·西獨間 旅行·訪問問題 551
- ◇ 過去 東·西獨間 國境을 통한 脫出·移住問題 557
- ◇ 過去 國境附近에서의 東·西獨間 協力事業 566
- ◇ 東·西獨 60歲以上 離散家族 再會問題 571
- ◇ 東·西獨間 人的交流 措置 經緯 583
- ◇ 分斷期間中 西獨의 東獨에 대한 經濟支援 內譯 588

概 觀

獨逸統一問題 (要約)

1. 독일통일을 가능케 했던 요인

가. 우월한 서독체제의 강한 흡인력

- 0 의회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체제의 정치적인 우월성
- 0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의 정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모범적 복지국가 실현
- 0 더 많은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서독사회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동경

나. 동독 국가사회주의적 독재체제의 붕괴 및 동독주민의 서독편입 결정

- 0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실패로 70년대 이후 경제침체 계속
 -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상실
- 0 독재적 장기집권에 따른 정권의 경직화로 주변정세 변화에 대응 거부
 - 동구권의 탈공산화 및 개혁추세가 동독에도 파급
- 0 아래로부터 체제개혁 운동에 대한 동독주민의 자각과 대규모 이주사태
 - 보안기관(Stasi)을 통한 조직적 탄압에 대항하는 체제 저항세력 생성
 - 일반국민은 자유롭고, 풍요한 서독체제를 동경, 자체개혁보다 서독 편입 선호

다. 서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과 민족 동질성 유지 노력

- 0 기본법에 명시된 민족재통일 명제를 포기하지 않은채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
 - “작은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이 역대정부의 주요정책·기조
 -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 (에곤바)라는 명제에 따라 통일을 일회적 행위가 아닌 장기적인 질적 전환과정으로 파악
- 0 꾸준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대서독 접촉에 대한 동독측의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 동독 스스로가 변하도록 유도
 - 동독지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분단으로 고통받는 동독주민을 돕기위해 경제적 지원
 - 동독주민이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0 동독이라는 국가의 존재는 인정하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강조

라. 고르바초프 등장에 따른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

-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로 동독의 패권전략 포기
- 헝가리 국경개방과 고르바초프의 동독개혁 요구가 평화혁명의 기폭제

마. 서독의 기만한 외교역량 발휘 및 미국의 적극적인 동독 지원

- 0 전후 유럽에서 냉전질서를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독일통일이 새로운 유럽질서 형성에 유리하다는 인식 확산
 - 서독측은 독일통일을 범유럽 통합의 주도변수로 활용
- 0 서독측은 효과적인 통일외교(2+4 회담)를 전개 주변국의 의구심 해소
 - 서독의 국력과 미국의 지원이 영·불·소의 반대를 사전봉쇄
 - 통일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한 소련측의 양보 유도

2. 통일을 위한 서독의 준비와 노력

가. 제1단계('45~'62) : "힘에 의한 우위정책" (Politik der Staerke) 추진

- 0 서독에 의한 동독병합을 겨냥하며 연합국과 유엔 감시하의 전독 총선 실시 주장
 - 소련을 비롯한 동독 반대, 동독측은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연합안 제안
- 0 내독간 무역 개시('51 베를린협정)
 - 대공산권 수출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무역 자유화
 - 내독무역은 내부거래로 간주 관세 면제
 - 중앙은행간 청산계정 설치, 동독에 무이자 신용대부(Swing) 제공

- 무역량은 150억 VE(80년대 평균)로 서독은 동독의 제2 무역상대국, 동독은 서독의 15위 무역상대국 이었음.
- 내독간 교역 및 재정지원을 통해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금액 : 총 244억(1975년부터 1988년까지, 연방은행 추계)

0 서독의 적극적인 친서방정책

- 독일조약('52)으로 서방 3국으로부터 주권회복
- NATO 가입('55)으로 대동구 안보강화

0 독일전체에 대한 유일대표권 주장, 철저한 반공정책

- 할슈타인 원칙('55)으로 동독의 외교적 고립정책 추구
- 공산당 불법화('56)

0 향후 서독의 경제부흥과 민주주의 정착의 기틀 마련

- 대동독 우위확보를 위한 체제역량 강화

나. 제2단계('63~'70) : 동방정책 추진

0 할슈타인 원칙을 수정, 우선 동구권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국교수립

-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분단이 장기화되고, 힘에 의한 강경책만으로는 주민들의 분단고통이 완화될 수 없다고 판단

- 0 양독간 “작은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시작
 - 동·서 베를린간 통과사증 협정('63)
- 0 동독내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합류를 위한 거래 시작('64)
 - 주로 체제저항 세력으로서 중형을 받은자의 서독 인도조건으로 몸값 지불(상당하는 물품 제공)
 - 3만 3천명 정치범 석방, 서독측에 인도
 - 25만명의 이산가족 재회
 - 서독측은 이에 대해 동독측에 총 35억 DM 지불
- 0 브란트의 동방정책 선언('69)
 - 독일의 재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며, 양독간 대결상태 지속은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민들간의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판단
 - 동구권에 대한 소련의 지배질서를 인정하고 동독과의 관계정상화 추진
- 0 서독·소련간, 서독·폴란드간 조약 체결('70)

다. 제3단계('70~'74) : 양독간 협상을 통한 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 0 제1차 정상회담('70.3), 제2차 정상회담('70.5)
 - 양측의 상호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성과없이 끝났으나, 협상지속의 계기 마련

0 동·서독 통행협정 체결('72.5)

- 동독측으로부터 인적교류 제한조치 완화 보장

* 인적교류 현황

- 합법이주 또는 탈출을 통한 완전 거주이전('50~'92)
 - 동독에서 서독으로 : 375만
 - 서독에서 동독으로 : 47만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 200만(80년대 후반 매년평균)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 : 600만(80년대 후반 매년평균)

0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72.12)

- 양독간의 기본관계 규율, 후속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장전

0 신문·방송사 특파원들의 상호 취재활동 허용('73.3)

- 서독언론인 동독에 취재등록 및 상주('88년말 20명의 서독특파원, 8명의 동독특파원)

0 상주대표부 설치('74.5)

- 양독간 분쟁해결기구, 협상창구 마련

라. 제4단계('74~'89) : 각 분야별 후속조약 체결을 통한 주민들간의 접촉 증대

0 양독간 체육협정 체결('74.5)

- 정기적으로 체육경기 개최 합의, 경기일정 작성 교환('88년 141회 개최)

0 양독간 보건협정 체결('74.6)

- 양측의 여행·방문자들이 긴급한 질병 발생시 상대편 지역에서 무료 치료 제공

0 양독간 우편·전화 협정 체결('76.3)

- 양독간 우편물 교환 및 전화통화 현황
 - 소포 왕래('88) : 연간 3,600만건
 - 편지 왕래('88) : 연간 1억 9,500만건
 - 전화회선('88) : 연간 1,529선
 - 전화통화('88) : 연간 3천 900만 통화

0 양독간 청소년교류 합의('82.9)

- 정부지원 수학여행 장려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88) : 연간 5,500명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88) : 연간 74,000명

0 양독간 문화협정 체결('86.5)

- 도서전시회 개최, 상업적 음악공연 유치
 - 연극 순회공연, 학술회의, 학자교류, TV 프로그램 교환 방송, 소장 문화재 교환 전시

- 0 양독 도시간 최초 자매결연('86.10)
 -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상호방문을 통한 접촉 증대
 - 62개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89말 까지)
- 0 양독간 환경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87.9)
 - 환경오염 제거를 위한 경험·기술정보 교환
- 0 양독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87.9)
 - 서독 과학·기술자 협회와 동독 과학 아카데미간 학문교환,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 자연과학, 공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합의(27건)

마. 제5단계('89~'90) : 통일의 구체화

- 0 콜 수상 10개 조항 통일방안 발표('89.11.8)
 - 구체적 대동독 지원책 발표, 통독기반 마련
- 0 동독에서의 첫 민주총선 실시('90.3.18)
 - 각 정당 민주세력 지원
- 0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조성('90.5.16)
 - 추가 세금인상 없이 통독비용 보전 : 1,150억 DM

- 0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1차 국가조약 체결('90.5.18)
 -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기를 마련
- 0 통독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89.8.22)
 - 최초의 통독총선 방식 합의
- 0 동독의회 서독에의 편입 결의('90.8.23)
 - 기본법 23조에 의한 10.3 서독에의 편입
- 0 통합조약(제2차 국가조약) 체결('90.8.31)
 - 모든 분야에 걸친 양독관계 통합을 위한 최종 법적 구체화
- 0 90.10.3 통일 독일

3. 통독이후 제기된 주요 문제점

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재편에 따라 구동독지역 경제붕괴 불가피

- 0 서방기업과 경쟁력 있는 업종 거의 부재
- 0 COMECON 국가들의 수주 격감 등 구동독기업 상품시장 부재
- 0 서방기업의 투자 부진
 - 토지·건물의 법적 소유관계 미확정, 행정체계 미흡,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

- 0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장애 요소
 - 환경정화시설 대체비용, 막대한 구채부 존재
- 0 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더높은 임금인상 요구

나. 실업 문제

- 0 구동독에서는 실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당면 실업자 불안
- 0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속성상 은폐된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로의 기업구조 전면 개편에 따라 당분간 실업증가 불가피
- 0 '92.3. 실업자 300만(동독 122만), 단축조업 76만(동독 49만),
 - 90.8 실업자 217만(동독 35만), 단축조업 213만(동독 186만)
- 0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전문인력 이주
 - 통독이후 1년동안 17만 정도

다. 재정적자 가중, 구동독지역 5개주 재정난

- 0 2,000년까지 10년동안 통일비용 소요액 : 약 2조
 - 구동독 부채 인수 등 직접통일에 소요되는 비용 : 3,700억 DM(18%)
 - 구동독 재건비용 : 1조 6,400억 DM(82%)
- 0 구동독 재건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원
 - '90. 975억 DM, '91. 1,280억 DM, '92. 1,758억 DM

- 구동독지역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세입 격감
 - 기업도산으로 법인세 세수 부진
 - 국유재산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세수 부진
 - 세무행정체계 미확립으로 세원포착 미흡

라. 소유·재산권 반환 문제

- 마해결 재산권 문제가 구동독지역 경제의 조속한 재건의 주요 장애요소
 - '45~'48(소련점령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재산은 통일조약에 의거 미반환, 보상만 이루어짐.
 - '49 이후 몰수된 재산은 이전 소유자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하나, 공공의 투자목적에 위해서는 예외 인정
 - '91년말 현재 115만명이 264만건의 재산권 반환 신청, 8만 5천건(3.2%)
- 해결

마. 환경오염 제거 문제

- 단기적 성장·할당량 달설에 급급, 환경문제 경시
- 국제적인 환경보호기술과 경험교환 부재, 갈탄사용으로 환경오염 가중
- 서독수준으로의 동독지역 환경정화시설 개선에 2,000억 DM 소요

바. 동·서독간 심리적 이질성 극복 문제

- 0 “경쟁사회”와 “하향적 평준화 사회”간의 과도기적 갈등 심각
 - 동독주민의 시장경제체제, 개방적·다원적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 필요
 - 서독위주의 급속한 통합추진으로 서독인의 우월감, 동독인의 열등감에서 오는 위화감 해소문제 대두
 - 동독주민의 86%가 2등국민이란 차별의식을 느낌('91.2.4 Spiegel 여론조사)
- 0 실업으로 인한 물질적인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 상실로 인한 자기 비하·고뇌

사. 행정·사법·군사통합에 따른 문제

- 0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인력감축
 - Stasi 및 공산당 활동자, 반인권·법치적 행위자, 전문지식 결핍자 등 대상
- 0 동독지역 주정부 이하 지방행정 인력 부족
- 0 대국민 법률보호의 공백
 - 동독지역 판·검사 대부분이 과거전력과 관련 심사중
- 0 독일연방군 감군(94년까지 37만)에 따른 사회복지, 새로운 직장선택 문제, 잔류인민군의 통합연방군에 동화 문제

아. 교육통합에 따른 문제

- 0 동·서독 지역간 교육제도 동일화 및 교육시설 격차해소 문제
- 0 구체제 관련 교사, 학술·연구분야 종사자 청산 진통
- 0 교사들의 이념중심 교육 탈피 및 자질 향상

자. 구동독체제 과거청산 문제

- 0 구동독 지하 피해자 복권·보상 문제
 -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구체제 피해자가 구동독 법원에 복권 및 보상을 신청
- 0 반법치국가적 가해자 처벌문제
 - 사법체계 미확립으로 정치적 폭행사태에 대한 형사소추 지연

4. 통일독일정부의 대처 방안

가. 적극적인 구동독 경기부양책 마련

- 0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마련('91.3.8)
 -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계, 노조 응급 공동대응책
 - '91~'92동안 240억 투입, 실업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 0 특별감가상각, 투자보조금 지급 등 투자유인 조치를 통해 구동동지역에 대한 기업신설 적극 장려
- 0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입법 제정·정비
 -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정으로 미해결재산 원소유자 반환원칙에 광범위한 예외 인정
 - 동동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특례법 마련, 기존 건축법, 설계법 등에 규정된 행정절차 간소화

나. 실업 및 사회보장대책 마련

- 0 고용촉진 대책 마련
 -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택건설 등 고용효과가 큰 공공사업 조기발주
- 0 전직·자질향상 훈련 실시
 - 유희 노동력은 많으나 장래가 없는 조선업, 광업, 전자산업, 화공업 분야 집중
 -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직능개발 훈련 실시
- 0 서독 사회보장체계의 동독 확대
 - 대등한 의료·보건 혜택 부여를 위해 의료보험기관에 국가보조
 - 연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생활자 격차 해소

다. 통독비용 지변을 위한 각종 재원 마련

0 “독일통일기금” 형성

- 94년까지 1,150억 DM 예치 : 200억은 연방예산, 950억은 서독지역주채무로 충당

0 각종 지원금(농업, 광업 분야) 및 정부지출 삭감(국방분야)을 통한 세출 억제

0 세금인상

- 소득세, 법인세, 보험세, 석유세, 담배세 인상

0 통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계층으로부터 일정액의 연대 기여금을 징수하여 부담을 조정(Lastenausgleich)하는 방안 논의중

- 과거 몰수재산을 반환 또는 보상받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 부동산, 주식, 저축, 보험 등에서 수익을 올리는 부유한 자들에 대해 일정 부담액 징수

0 동독지역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수당 기여금 증액, 환경특별 부과금 도입 등 검토

라. 소유·재산권 문제 처리

- 0 49년 이전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입법 추진
 - 당시 시가 기준, 이자 계상 보상
- 0 49년 이후 몰수재산권은 반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신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대 또는 매각될 수 있음.

마. 구동독지역 환경재건

- 0 이미 조사된 12,250개 구오염 잔재 부담 지역중 심각한 196개 지역 우선정화 실시
- 0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 환경정화 국제전시회 개최, 특수폐기물 적치장 건립, 강유역 정수 시설 27개 긴급 건설
- 0 폐기물·탄산가스 특별부과금 징수(예정), 환경정화인력 자질향상

바. 체제전환에 따르는 동독주민의 의식구조·생활양식 재정비

- 0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정치교육 강화
 - 주요대상 :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노조간부 등
 - 정치교육기관 : 연방내무성,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터, 각정당 학술재단, 대학, 연구기관, 종교·사회단체

- 0 동·서독 지역간 상호접촉과 이해 도모
 - 기존 도시간 자매결연을 이용 상호 친선·교제
- 0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이해·기능 집단의 활성화

사. 능률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

- 0 서독지역 공무원 동독지역 파견·전보('92.4월 현재 총 23,376명)
 - 봉급과 승진상의 특혜 부여
 - 퇴직 공무원들 한시적으로 연장근무
- 0 기존 동독 공무원 직업훈련, 자질향상교육 강화

아. 법치국가적 사법체계 확립

- 0 과거 동독지역 판·검사 심사, 선발
 - 각 주정부마다 법관 선출위원회 및 검사 임용위원회 설치
 - 재임용 현황(92.1) : 판사 1,493명중 621명(41.6%)
 - 검사 1,237명중 382명(30.9%)
- 0 서독지역 법관·검사 동독지역 파견·전보
 - 판사 593명, 검사 177명

자. 구체제 잔재 청산으로 화해 도모

- 0 피해자 복권·보상을 위한 “구체제 불법행위 청산법” 마련(92.7 연방의회 가결)
 -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금일당 보상비 계상 및 판결 무효화 신청권 부여
- 0 정치적 이유로 폭력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신설주정부 사법체계가 확립되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 방침
 - 과거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행위, RAF 테러조직 방조행위 등에 대한 책임자 우선 형사 소추
 - 베를린 검찰 “정권적 범죄행위” 수사 임시전담반 편성
- 0 Stasi 문서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정보사찰에 의한 희생자들 자신 관련 문서 열람 허용

5. 통일이후 독일의 앞날

- 0 독일정부와 국민은 법적·국가적 통일이후 내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
 - 양독 지역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생활수준의 평준화(과거 서독의 가장 못사는 주 정도 수준으로 동독지역 신설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표) 추진

- 0 40년에 걸친 권위주의적 극가사회주의체제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체제에로의 구조전환이 마찰없이 진행될 수 없음.
 - 평화로운 체제이행에 관한 인류역사상 축적된 경험이 없음.
 - 통독을 구체적으로 준비할때 예상했던 것보다 통독경제는 더욱 취약했으며, 주민들의 심리에 사회주의적 독소가 남아 있음.

- 0 구통독지역 재건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서독지역의 탄탄한 경제력과 정치적 안정을 고려할때 통독이후 문제처리는 대체로 낙관적
 - 구통독지역에 행정·사법체계 확립 : 2~3년 소요
 - 구통독지역 거제제건 소요기간
 - 3~4년내에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있으나, 각종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과 구통독 노동자들의 생산성(서독수준의 29%)을 고려할때 5~10년 소요 예상
 - 환경정화 및 심리적 격차해소에는 1세대 정도 소요 예상

獨逸統一問題

- 목 차 -

1. 양독관계(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전까지) _____	27
가. 역사적 전개과정 _____	27
나. 각분야별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_____	34
(1) 내독간 무역 _____	34
(2) 비상업 목적의 지불거래와 물품(선물)거래 _____	37
(3) 우편·전화 이용 _____	38
(4) 도로교통·통행분야 협력 _____	39
(5) 인적교류·여행 _____	40
(6) 합법이주·정치범 인도 _____	41
(7) 청소년 교류 _____	43
(8) 도시간 자매결연 _____	43
(9) 문화교류 _____	44
(10) 언론분야 _____	45
(11) 체육교류 _____	45
(12) 보건·환경분야 _____	46
(13) 과학·기술분야 _____	48
다. 관계개선 주요일지 _____	48

2. 독일통일 배경과 진행과정(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이후)	50
가. 독일통일 급진전의 배경	50
나. 통독 진행과정	54
(1) 통일의 외적인 측면 해결	54
○ "2+4" 외상회담을 통한 실질적 통독문제 해결교섭	54
○ 독·소간 정상회담 및 외상회담에서 통독문제에 대한 소련의 합의 유도	57
○ 각종 국제회담, 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화해 및 통독분위기 조성	59
(2) 동·서독간 내부적 통일과정	60
○ 베를린장벽 개방(89.11.9)과 동독주민의 대규모 이주사태	60
○ 콜 수상의 10개항 통일방안 발표(89.11.28)	62
○ 동독 과도정부의 민주개혁, 통일노력	63
○ 3.18 통독 총선	64
○ 화폐·경제·사회통합	65
○ 독일통일기금 조성	69
○ 재산권처리에 관한 합의(90.6.15)	70
○ 통독총선을 위한 동·서독간 선거협약 체결	71
○ 동독의회, 서독에의 동독편입 결의(8.23)	71
○ 통합조약 협상체결	73
○ 독일통일의 날	76
다. 통독과정 주요일지	76

3. 통독이후 각 분야별 통합현황	83
(1) 기업 및 경제구조 재편을 통한 동독의 재건	83
(2) 사회적 통합분야	87
(3)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90
(4) 소유·재산권 문제	95
(5) 주택문제	100
(6) 환경오염제거 문제	102
(7) 연구·과학·기술분야 재편	105
(8) 동·서독간 심리적인 이질성 극복 문제	107
(9) 행정체계 확립	112
(10) 사법체계 확립	118
(11) 군사통합 문제	123
(12) 교육통합 문제	126
(13) 과거청산 문제	130
(14) 언론체제의 재편	136
(15) 구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139
(16) 체육통합 문제	142

1. 양독관계(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전까지)

가. 역사적 전개과정

(1) 연합국 공동관리기('45~'49)

- 1945년 독일항복후 런던협약('44.11)에 따라 미·영·불·소 4대 전승국 사령관으로 구성된 독일점령 「공동관리위원회」(Kontrollrat)를 설치하고, 독일영토를 분할점령 통치하되, 베를린은 공동관리하에 둘것을 결정함.
- 「관리위원회」의 모든 정책결정은 4대국의 공동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그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서로 상이한 정치적 이해를 갖고 있던 소련과 3개 서방연합국간의 의견차이 및 이에 따른 냉전의 시작으로 서로 상이한 정치·경제·사회 체제가 분할경계선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갔음.
- 1948년 2월 서독지역을 분할 점령하고 있던 미·영·불 3국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에 합의하였으나, 동년 3월 소련이 「3국 관할지역 통합」에 반발 「관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베를린 봉쇄를 감행함으로써 연합국의 합의에 의한 통일독일 국가건설이 좌절되고, 서독('49.5.23), 동독('49.10.7)으로 분단됨.

(2) 아데나워의 "힘의 우위정책"(Politik der Staerke) 시대

- 서독은 기본법 전문에 명시된 "전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해야 한다"는 통일 의무 조항과 뉴욕 서방 3개국 외상회담('50.9) 결정사항에 따라

통일시까지 서독의 독일전체에 대한 유일대표권(Alleinvertretungsanspruch)을 주장함.

- Adenauer 정부는 독일의 경제부흥과 피점령 상태에서의 주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친서방정책 (Westintegration)을 펼친 바, 독일조약('52.5)으로 서방 3개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 파리조약('54.10)으로 NATO 및 WEU에 가입함.
- 친서방정책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한후 서독은 대동구 "힘의 우위 정책"을 펼치면서 합슈타인 원칙에 의거 동독의 외교적 고립 정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반공정책을 추진함('56 공산당 불법화)
-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서독에 의한 동독병합 조건으로 동독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자유·비밀투표에 의한 "연합국과 유엔 감시하의 전독 총선거"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인구면에서 동독보다 서독이 월등함을 감안할때 이미 국가를 수립한 동독이 이러한 안을 수락하지 않을것이 자명하고 또한 한국전쟁이후 격화되기 시작한 냉전과 이에 따른 군비증강이 한창이던 당시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보면, 양독간에 결코 현실성있는 합의를 도출해낼수 없었음.
- 한편 동독은 소련점령 기간동안 소련체제를 모델로 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한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독의 NATO 가입('55)까지 서독의 서구편입과 재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스탈린의 통일독일의 중립화 제안을 지지하며 외교적 공세를 펼침. 그러나 이때까지 동독은 내부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사회주의하의 독일통일이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전독일인을 협상테이블로"(Deutsche an einen Tisch)라는 구호 아래 민주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을 통한 전독일회의 개최를 주장함.

- o 양독이 각각 서로다른 군사동맹체에 가입하고 ('55년 서독의 NATO 가입, 동독의 바르샤바 군사동맹 가입) 냉전이 격화되자, 동독은 서독과의 정통성 경쟁을 의식 독일내의 사회주의 건설의 업적(Errungenschaft)을 계속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서독과 소련간의 외교관계가 재개된후('55.9)에는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달성 목표를 실제적으로 포기하고, 1956년 공식적으로 당분간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연합안"(Konfoederationsplan)을 제안하게 됨.
- o '48년이후 동독지역에로의 통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52년부터는 동독측 경계선 부근에 지뢰 및 통행금지 설치물을 가설하기 시작함에 따라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개인여행, 스포츠, 문화분야에서 접촉이 단절되기 시작하자, 50년대 말부터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인 생활향상을 꾀하기 위한 동독주민의 대탈출 소동(매년 14만~33만)이 일어나게 됨.
- o 이에 대처, 동독정부는 체제의 존속을 위해 베르린 장벽을 설치('61.8)하고 동독의 국가적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독일의 분단은 이제 장기간 지속될 것이 명확해졌고, 서독 정부로서는 아데나워의 "힘에 의한 강경책" 만으로서는 더이상 분단고통을 완화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가간 접촉을 통해 동독에 살고있는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수정하게 됨.

(3) 과도기적 변화 움직임 : Erhardt 시대('63~'66)

- o '63년 원자무기실험 금지조약이 서명됨에 따라 국제적 긴장 완화 움직임이 감도는 가운데, 서독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을 제외한 대동구 접근정책을 추진하게 됨.
- o 내독관계에서는 제한된 범위이지만 "작은걸음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의 첫 결실로서 동·서 베를린 간에 통과사증협정(Passierscheinabkommen, '63.12)이 맺어지고, 신문의 교환('64)이 이루어지게 됨.
- o 한편 동독 사회통일당(동독공산당, SED)과 서독사민당은 상호 강연자 교환초청(Redneraustausch)에 합의했으나, SED는 내부적 동요를 우려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는 등 관계 개선에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동독의 독자국가성 인정요구와 서독의 철저한 불인정 정책이 상호 충돌되어 내독관계는 급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었음.

(4) 브란트의 동방정책 추진시대('66~'74)

- o Brandt는 대연정기간('66~'69) 외상으로서 Egon Bahr의 "접촉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erung)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대동구 관계개선과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 긴장완화 추세에 어긋나는 무리한 독일 재통일 주장은 오히려 독일민족 자결권의 재탕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럽의 평화와 안전보장하에 독일분단이 극복될수 있다는 인식하에, "1민족2국가론"에 입각, 동·서독간 관계 정상화 및 자유왕래·공동번영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유지해나감으로써 통일국가를 이룩해 나가겠다는 단계적 통일정책 추진함.

- o 1969.10.28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취임연설을 통해 동독이 "또하나의 국가"임을 인정하면서 "동·서독간 폭력행사와 무력포기협정" 체결을 비롯한 제반협력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동·서독 정부간 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69.12.17 서독의 Ulbricht 국가평의회 의장이 서독의 하이네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선린관계" 수립을 위해 "동·서독 수상회담"을 제의한 결과 "수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에 합의함.

- o 70.3.2~3.12간 동독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Brandt와 Stoph 수상간에 2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됨. 두차례의 정상회담이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 문제로 결렬되자, 시각을 동·서유럽의 화해로 돌려, "모스크바조약"(70.8.12), "독·폴 정상화조약"(70.12.7) 등을 체결하면서 주변여건을 조성, 결국 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 체결에 성공함.
 - * 기본조약 체결이 있기까지 정상회담 2회, 장차관회담 70여회, 실국장회담 200여회 등 2년간 무려 270여회 회담 개최

- o 동방정책의 등장배경
 - 60년대초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동서진영간의 긴장완화 추세와 다극화 현상, 이에 따른 소련 및 동독의 대서독 인식변화
 - 미·소등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의 재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전후질서에 대한 현상유지를 고수하려 한다는 현실적 판단
 - 서유럽제국과의 결속과 "사회시장경제"로 인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서독이 국력면에서 동독보다 월등하다는 자신감

- 독일의 재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다더라도 양독간의 접촉부재는 오히려 긴장을 촉진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양독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망 고조

0 동방정책의 주요내용

- 독일민족 상호간의 협력관계 발전 도모
 - 동독에 대한 국내법적 승인 및 국제법상으로는 상호 민족 내부적 특수관계 수립
 - 할슈타인원칙의 완전 폐기
 - 양독간의 경제·문화부문 상호협력
 -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 유럽의 평화공존과 현상유지 노력(유럽평화 = 통독)
 - 독일에 대한 4대국의 권리 및 의무 존중
 - 소련 및 폴란드와 무력행사 포기협상 의사표명
 - 핵 확산금지조약 서명
 - 폴란드와 Oder-Neisse 국경협상 제의
 - 헝가리 및 체코와의 관계개선 의사 표명

0 동방정책의 결과

- 2회에 걸친 양독 정상회담('70.3월, 5월)
- 독·소 불가침조약 체결('70.8)
- 폴란드('70.12) 및 체코('73)와 관계정상화조약 체결
- 동서독 기본조약('72.12) 및 교통조약('72.5) 체결
- 유엔 동시가입('73.9) 및 상주대표부 설치('74.3)
-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과정 및 헬싱키선언 적극 참여

o 동·서독 기본조약의 내용

- 성격 : 내독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만 규정
- 주요골자(전문 및 10개항)
 - 양국은 동등자격 원칙하에 정상적인 우호선린관계 발전
 -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자주성, 국경선, 자결권등 유엔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 인정
 -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에 의한 위협·무력행사 포기
 - 양국의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국제적 대표권행사 불가
 - 구주제국간의 평화적 관계증진과 안전에 기여
 - 실질적·인도적문제, 즉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우편, 통신, 보건, 문화, 체육, 환경 등의 제반 후속협정 체결

o 한편 동독은 이러한 동방정책 추진에 대해 기본조약 체결을 동독 국가승인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여 외교적인 공세를 취하는 한편, 동독국가 존재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정통성 획득을 위해 기존 민족국가 개념을 수정하여 '71년 SED 8차 전당대회 이후 부터는 서독의 부르조아적 민족(Buergerliche Nation) 개념과 구별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적 민족(Sozialistische Nation)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기 까지함. 결국 기본조약은 민족개념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각 조항에 대한 상이한 해석상의 여지를 남긴채 양측이 타협하게 되었음.

(5) 각 분야 교류협력 증진 : 슈미트·콜시대('74~'89)

o 브란트 이후 Schmidt 정부는 동방정책을 계승하여 서방측 뿐만 아니라 동구제국과의 교류증진에도 노력하는 한편, 더 나아가 동·서 양진영 화해의 조정자로서 교량역할(Brueckenrolle)을 수행하며 동독과는 각 분야에 걸쳐 기본조약의 후속협약을 체결하게 됨.

- 70년대 말부터 국제정세는 소련의 아프칸 침공, 폴란드사태, 소련의 제3세계 개입 및 무력증강,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처, NATO의 유럽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결정 등으로 동·서간에 신냉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위한 서독의 외교노력과 동·서독 정상회담('81.12, 슈미트, 호네커 방문)을 통해 양독국가는 외교적인 영역에서 재량권을 확보하고 교류협력을 꾸준히 진전시킬 수 있었음.
- '82 슈미트를 이어 수상이된 기민당의 풀은 아데나워의 친서방 정책과 그간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동구권 및 동독과의 교류협력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85.3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맞게된 동·서간 신 데탕트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동독 교류증진 및 개방유도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독 국가원수 호네커가 국민자격으로 서독을 방문 동·서독 정상회담('87.11)을 개최하고 '89에는 고르바초프가 서독을 방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고 상호협력하는데 동의하여 유럽내 평화의 정착과 더욱 진전된 양독간 관계개선 여건을 조성함.

나. 각 분야별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1) 내독간 무역(IDH)

- 정치적인 변혁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서는 꾸준히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바, 이미 '46.1.8부터 소련군정침 명령 5호로 서방 3개국 점령지역과의 무역이 허용되었음. "49.10 체결된 지역간 무역협정(프랑크푸르트 협정) 및 '51.9에 체결되고 '60.8 새로이 수정된 "베를린협정"이 양독무역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데 기본조약

7조의 추가의정서에서도 양측이 이 베를린협정에 기초하여 내독간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합의하고 있음.

- o 서독은 경제성 소속의 상공신탁청(Treuhandstelle fuer Industrie und Handel, TSI)의 대표자가 2주만에 한번씩 동독 국제무역성 (Ministerium fuer Aussenhandel, MAH) 대표를 만나 무역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추가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음.
- o '69부터는 물품의 구입과 반출에 있어서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가 폐지되고, 몇가지 품목 (Cocom-list에 의한 대공산권 수출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있음.
- o 양독간 무역은 「단일경제단위 원칙」하에 「내부거래」로 간주 무관세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결제는 양독 중앙은행간에 청산계정을 설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청산단위 VE (Verrechnungseinheiten)는 서독의 마르크화를 동독의 마르크화와 청산시에 한해서만 1:1로 취급하는 특수한 단위임. 내독무역은 주로 안정적인 서독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서독 마르크화가 가치기준이 되었음.
- o 연간 총 교역량은 '80년대 평균 150억 VE 수준으로 서독은 동독의 소련 다음가는 제2의 무역상대국이며, 동독은 서독의 제15위 무역상대국임.

<무 역 현 황>

(단위 : 억 VE)

년 도	'81	'82	'83	'84	'85	'86	'87	'88
서→동	61	71	77	73	86	78	74	68
동→서	64	70	76	82	82	73	71	73

- 특히 서독은 동독에 대한 간접적 경제지원을 위해 당좌대출과 같은 무이자 무역신용(Swing : 일정한도내에서 상품의 외상 구입)을 공여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무역신용 한도액>

(단위 : 백만 VE)

년 도	'82	'83	'84	'85	'86-'90
한도액	850	770	690	600	850

- '83.6에는 서독의 은행연합(Bankenkonsortium)과 동독의 국제 무역은행(DABA)간에 상업베이스로 조건없이 10억 DM의 현금차관 제공에 합의하고, 서독정부는 은행차관의 정부보증을 해주었으며 '84.7에는 9억 5천만 DM을 추가 제공했음.
- 내독간 무역에 대한 양독의 입장
 - 서독의 입장
 - 내독간 무역은 통일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
 - 특히 50년대 냉전기간동안 서방측은 금수조치(Embargo-Politik)를 통해 동구를 봉쇄하였는바, 서독은 동독에 대한 내독간 무역을 특수관계하의 내부교역으로 간주 동독주민의 생활향상과 양독 주민들간의 접촉선유지라는 측면에서 유지하여 왔음.
 - 특히 베를린에의 자유로운 통로확보를 위해 지렛대로 내독간 무역을 활용해 왔음. 이후 데탕트 시기에도 내독교역은 정치적인 긴장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GATT와 EC에 가입할때도 특별규정을 신설하여 내독간 무역이 변동없이 지속되고, 동독이 특수한 관계를 인정 받아 서독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배려했음.

- 동독의 입장

- 동독은 내독간 무역을 순전히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지속시켜 왔음. 동독은 서독에의 경제증속을 우려 내독간 교역을 중단하려 했었으나 최대 무역상대국인 소련이 긴급하고 꼭 필요한 제품을 제때에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내독간 교역에 의존하게 됨.
- 동독은 늘 내독간 교역의 특수관계성을 부인하고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하여 체제수호를 위해 제한정책(Abgrenzungs-politik)으로 맞섰지만,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경제적 충족의 욕구때문에, 특수관계로부터 오는 혜택을 마약과 같이 거절하지 못하고 늘 이중적 태도를 견지해 왔음.

(2) 비상업 목적의 지불거래와 물품(선물)거래

- 양독간에 이주자 및 여행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 상업목적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른 상호지불을 위해 양측은 '74.4 상대편 지역에 오직 제한된 목적으로만 구좌가 사용되는 폐쇄구좌(Sperrkonto)를 설정하여, 미성년자 혹은 이혼자에게 생계비지급, 손해배상지급, 연금 및 사회보장 지불거래가 가능토록 규정하는 협정을 맺게됨.
- 양측의 신청인들은 폐쇄구좌로부터 지불되는 수표를 받게되고, 양독정부는 각각 신청액과 지불액을 상호정산하게 되는데, '79부터 분기별 신청한도액을 1인당 600DM까지 허용하였음.

- 동독의 친지에게 선물을 보낼 경우는
 - 직접 소포우편에 의한 방법
 - 선물용역 대행회사(Genex)를 통하는 방법
 - 동독주민이 Intershop(동독 외국인전용 면세상점)에서 물건으로 바꿀수 있도록 수표(Forum-Schek)를 보내는 방법 (Forum-Scheck는 오직 '88년에 신설된 선물용역회사인 Inter-Geschenkdienst를 통해서만 발행되고 지불이 됨) 등이 있음.
- 동독 여행시 물품의 휴대는 동독정부가 체제의 혼란을 우려 테이프, 출판물, 약품등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여 오다가 호네커의 서독방문이후 규제가 완화되었음.

(3) 우편·전화 이용

- 동독은 '49 서베를린으로 부터 다른동독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회선을 모두 단절시킴으로써, 서베를린과 서독간, 서독과 동독지역과의 전화통화는 프랑크푸르트와 포츠담 및 라이프치히에 있는 장거리 통신 전화교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음.
- 우편의 경우는 베를린의 연합국 우편물 취급소를 통해 가능했으나, '54 동독정부가 서독과 서방세계와의 우편물 취급 규정을 강화하여 통제를 가함으로써, 우편물이 반려되거나 전달이 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서독 체신청이 '67부터 '73까지 매년 전화 및 우편사용료로 3천만 DM씩을 총액(Pauschal) 지불하고 난다음부터 양베를린간의 회선이 회복되고, 우편과 전화소통이 용이해짐.

- o 장기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기본조약 7조에 따라 '76.7 우편과 전화이용 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협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협약에 의하면 요금산정시 외국과의 통화나 우편 요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
- o '88년을 기준으로 서독에서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3천9백40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서베를린에서 동독으로 이루어진 통화중 2%, 기타 서독지역에서 동독으로 이루어진 통화중 5%가 아직도 수동 교환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우편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8천만통의 편지와 2천5백개의 소포가 전달되고, 동독에서 서독으로는 1억1천5백만통의 편지와 1천 1백만개의 소포가 전달되었음.
- o 호네커 방문이후 동독정부는 규정위반으로 반려되는 우편의 건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서독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의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과 반입규정에 위반되는 인쇄물의 송부에 여전히 제한조치를 가해 반려건수는 줄지 않았음.

(4) 도로교통·통행분야 협력

- o 동독은 동·서독간의 각 통과지점을 점차 폐쇄시키고, 국경을 강화했으나, 서독정부의 노력으로 '71 시작된 교통, 통행문제에 관한 정부간 공식협상을 거쳐 '72.10 양독간 통행협정(Verkehrsvertrag)이 체결되자 제한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했음.
- o 양독은 이분야에서 상호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동 협약에 따라 통행위원회(Verkehrskommission)와 통과여행위원회(Transitkommission)를 설치, 매년 3~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양독간 도로·교통 및 제3국으로의 여객 또는 물자 통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토의하고 이견을 조정하였음.

- o 양독간에 공식 허용된 통과지점은 10개의 도로, 8개의 철도, 2개의 수상로, 3개의 항공로 등 23개가 있음.
- o 서독은 동독의 검문소에서의 행정절차와 도로상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통행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돈을 지불하였는바, 동독지역 통과비용으로 '72~'89 사이에 총 78억 DM을 지불했고, '80년 부터는 도로사용료를 덧붙여 총 5억 DM을 지불하였음. 이 지불금은 동독정부의 외환부족문제 해결에 커다란 기여를 한것으로 나타나 있음.

(5) 인적교류·여행

- o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방문
 - 분단직후 동독지역에 친척이 있는경우 동독방문이 규정상 제한된 범위(1년에 4주동안만)에서나마 가능했으나, '52부터 실제적으로, 그리고 '61 베를린장벽 설치이후 부터는 상업 목적 이외의 여행 및 방문이 불가능해졌음.
 - 동독정부는 인적왕래를 규제하기위해 '64부터 의무적으로 여행자들에게 하루 5 DM의 돈을 교환하여 사용케하고(계속 인상되어 '80부터는 25 DM으로 인상), '68부터는 여권 및 체류허가 취득의 의무를 부과하게 됨.
 - '63 동·서베를린간에 통과사증 협약이 맺어진 이후 집안의 급한 경조사에 한하여 방문이 허용되고, '72 통행협정이 맺어진 이후 방문의 규제가 현저히 완화되기 시작하여 친척 뿐만아니라 친구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1년에 여러번 45일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체류허가도 전 동독 지역에 유효하도록까지 되었음.

- 여행의 경우는 '60년대는 특정지역만 허용했으나 통행협정 이후 동·서독의 여행사들이 제반 수속업무를 대행하면서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코스 지역에 한하여 체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여행이 대폭 허용되었음.
 - 방문 및 여행자 수는 '80년대 후반에 단체여행, 수학여행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 약 6~7백만에 이르렀음.
- o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방문
- '46년 이후 여권소지를 의무화하여 베를린을 제외한 다른 서독지역으로 여행·방문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오다가 서베를린으로 이주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57 이후는 청소년(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연맹 조직원)층의 여행을 금지시키고 베를린장벽 설치이후는 상업목적과 공무에 한하여 여행을 허가함.
 - '64 이후부터 연료한 연금생활자, '72 통행협정 이후에야 긴급한 집안 경조사가 있는 경우 친척방문을 점차 해당친척 범위를 넓어가며 방문을 허용하였고, '84년 이후에는 친구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음.
 - 방문 및 여행자 수는 '80년대 여행객의 증가로 대폭늘어나 '86년에 2백만~2백5십만에 달하였음.

(6) 합법이주, 정치범 인도

- o 베를린장벽 설치이후 서로 떨어져 살게된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꾸준히 서독정부의 노력으로 추진되었는데, '62.7 처음 합법이주가 시작된 이래 매년 평균 1만명 정도가 서독으로 허용되었음.

- 특히 '72 기본조약에서 가족상봉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과 동독이 구주안보협력회의의 헬싱키선언에 서명한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의식, 이주신청자에 대해서 노골적인 탄압을 하지는 못하였음.

- 최근 동독인의 대서독 합법이주 현황을 보면

년 도	'81	'82	'83	'84	'85	'86	'87
이주자	11,093	9,113	7,729	34,982	18,752	19,982	11,459

○ 정치범 인도

- '64년 70명의 동독내 정치범(주로 체제저항 세력으로 중형을 받고 있던 사람)이 처음 서독으로 인도된 이래 '89년까지 약 3만3천명의 정치범이 서독측에 인도되었음.
- 물론 서독측은 막대한 댓가를 지불했는데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동독내 부족한 현물(열대과일등)을 공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서독에서는 내독관계성의 차관(Staatssekretaer)이 이 업무를 전담했으며 동독의 변호사와 접촉창구를 만들어, 인도자 명단을 서독측에서 제시하면 동독측에서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했음.
- 양측이 이러한 정치범 인도에 합의한 동기는 서독측으로서는 물질적인 댓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인간을 도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동독측으로서는 체제유지에 부담이되는 인물들을 추방함으로써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또한 서독측이 지불한 대가는 이제까지 동독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주로 정치범들은 지식인들이 많았음) 국가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댓가로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음.

(7) 청소년 교류

- 미래 국가운영의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교류는 본단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큰 의미를 갖는바, 동독의 집권층은 젊은층의 사상오염을 우려 50년대 중반부터 접촉 제한조치를 취해왔음.
'73 세계청소년 축제가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이래 서독의 청소년 단체(DBJR)가 동독의 "자유독일 청년단(FDJ)"과 공식접촉을 갖고 교류를 추진해 왔음.
- '82 동서독간 청소년 단체간에 청소년 교류여행에 합의한 후, 수학여행 형식으로 교류가 증진되었고 '86 문화협정(11조)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교류가 재정지원되면서 적극 추진되었음.
호네커의 방문시 공동성명에서도 청소년 교류증진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간 청소년 교류가 활발해 졌음.
- 동독으로부터 오는 청소년여행은 그 비용을 서독정부가 부담하고, 동독으로의 각종 수학여행과 방문여행은 저렴한 가격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각종 여행정보를 제공하였는바, '88에는 동독으로부터 187개 그룹의 5,500명이 서독을 다녀갔으며, 서독의 학생, 청소년, 대학생등 74,000명이 동독을 여행했음.

(8) 도시간 자매결연

- 동독은 60년대 이후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서방세계 및 제3세계 국가들의 각 도시와 동독의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각 대표단 방문, 문화·예술행사 개최, 체육교류등을 추진하였음.

- 서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86 문화협정의 체결시까지 서독내 도시들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꺼리다가 '86 Saarlouis - Eisenhuettemstadt 간의 자매결연을 시발로 '89년까지 51개의 도시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음.
- 서독은 시·군등 지방행정기관 단위에서 주민들 상호간 당야한 분야에서 접촉을 통해 상호 동질성 회복과 상대방 체제의 이해 제고에 초점을 둔 반면, 동독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독자적인 국가성 인정에 의미를 부여했음.

(9) 문화교류

- 동독의 문화정책은 공산당(SED)의 지도하에 "이념과 문화분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고, 노동자계급과 창조적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지식인을 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최근까지도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었음.
- 기본조약 7조에 따라 문화분야에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수차의 접촉 및 협상을 가졌으나, 문화개념과 협력분야에 대한 상호 상이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86.5에야 양독간 문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음.
- 양독간에 합의되어 실시된 주요사업은
 - 양측에서 각각 도서(문학, 학술서적등)전시회 개최
 - 청소년 음악 콩쿨개최, 상업적인 음악공연 유치
 - 연극 순회공연
 - 학술회의 개최, 학자교류, 공동연구 추진
 - 대학간 자매결연, 학생교환

- 영화 순회상영, TV 프로그램의 교환상영
- 미술전시회 순회개최
- 분산 소장돼 있는 문화재, 주요고문서 등의 교환 전시
- 전쟁으로 인해 분실됐던 미술작품의 반환

(10) 언론분야

- o 동독의 언론인들은 50년대부터 서독지역에서 외국주재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조건하에 활동할 수 있었던데 반해, 서독측 언론인들은 동독지역에서 '72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서독언론들은 동독에서 일어난일에 대해 외국언론에 의존해야 했었음.
- o 양독정부는 기본조약과 관련한 상호서신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73 실무자 접촉후에야 비로소 서독언론인의 상주가 허용되고 활동조건이 개선되었는바, '88말 현재 20명의 일간지, 주간지, TV, 라디오 특파원이 취재등록(akkreditieren)을 하고있음. 본에는 8명의 동독 ADN 소속 특파원이 활동하고 있음.
- o '70년대 후반 동·서간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헬싱키선언 이후 유럽내에서 국제적으로 언론활동의 자유가 현저히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는 동베를린 이외 지역의 취재에는 취재여행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하고, 인터뷰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언론활동 조건을 악화시켰음. 특히 국가보위부 (Stasi) 요원들의 언론인 감시와 취재활동 방해에 대해 서독정부는 항의하며 언론활동 조건개선에 노력해왔음.

(11) 체육교류

- o 50년대초 동독이 국가체육의 장려로 체육역량을 배양한후 사회주의 국가 우월성 과시의 수단으로 체육을 이용하기 시작한뒤 부터

서독체육회(DSB)는 올림픽과 체육정신의 정치적 오염을 이유로 동독과의 체육교류에 적극성을 띄지 않았으나, 곧 교류가 재개되어 '50년대 말까지 동서간 체육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음.('57년 한해만도 1,530회의 경기 개최)

- o '56, '60, '64년 세차례에 걸쳐 올림픽 단일선수단이 구성되어 참가한 이후, 동독선수들의 서독으로의 망명이 잦아, 동독측은 교류를 회피하기 시작했음('66~'70 동안 단 292회 경기 개최)
- o 그러나 기본조약에 의거 양측 체육회는 '74.5 매년 정기적으로 체육경기를 갖기를 합의하고, 경기일정을 매년 작성하고, 운동선수 뿐만아니라 코치, 체육전문가, 체육연구기관 종사자들도 교환하기로 함.
- o '88에는 155회 경기일정에 합의했으나 141회가 개최되었음.
서독정부는 체육교류의 범위와 참가인원수를 늘이기 위해 재정적으로 서독체육회를 지원하고 있는바, 도시간 자매결연이 활발해지고 '86 문화협정에서 스포츠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명시한 이후 교류가 더욱 활발해 졌음.

(12) 보건·환경분야

- o 기본조약의 첫 후속협약으로서 양독정부는 '74 "보건협정 (Abkommen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을 맺고, 양독간 상호 인적교류가 증대됨에 따른 양측 여행 및 방문자들이 긴급한 발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필요시 상대편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기로 합의했음.

- 또한 의학연구와 현대 주요질병인 AIDS, 암, 심장병 등의 임상분야에서 양독간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상호 정보교환등이 활발해졌으며, '84 부터는 서독의 의약품이 우편을 통한 선물 거래 형식을 통해 동독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었음.
- 양측의 보건성장관은 보건협정이 규정한바에 따라 보건분야 "전권위임자(Beauftragte)"로서 매년 2~3회씩 협상을 갖고, 보건분야 제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73년이후 시작된 환경문제에 관한 협상은 간헐적으로 양독간 환경문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주로 국경근방의 환경보호문제와 관련하여 국경위원회(Grenzkommision)에서 다루어졌음.
- '87 환경분야에서 양독관계 협장이 맺어진 이후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기본전제아래 수자원보호, 공기정화, 삼림보호, 폐수처리 등의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경험, 기술적 방법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교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공동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음.
- '88 서독 환경성장관의 동독방문으로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는데, 당시 서독측은 동독지역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동독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안했으나, 동독측은 협상의 타결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기도 하였음. 서독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여,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동독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와 계속 협상을 벌여왔으나 워낙 환경정화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동독측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음.

(13) 과학·기술분야

- o 동독측은 서독에 비해 뒤떨어진 과학·기술의 서독측으로부터 흡수를 위해 이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졌었음. 그러나 이분야 협력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각 연구소와 대학간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 오다가, '87 체결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본격적 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o 당시 상호 합의된 프로젝트는 27건에 이르렀으며, 협력분야도 자연과학·공학 뿐만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의학분야까지 걸쳐 있었음. '88말에는 서독 연구자협회와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간에 과학·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고, 학문적 의견 교환과 공동연구장려, 학술회의개최등이 적극 추진되게 됨.

다. 관계개선 주요일지

- 1969.10.28 Brandt 서독수상,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독일문제에 관해 협상할 용의 선언
- 1969.12.17 Ulbricht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양독간의 관계수립을 위한 조약초안을 Heinemann 서독대통령에게 전달
- 1970. 1- 2 Brandt 서독수상과 Stoph 동독수상간 양국수뇌회담에 관한 서한 교환
- 1970. 3.19 양독수상, Erfurt(동독)에서 회합, 양측의 기본입장을 설명 (제1차 동·서독 수뇌회담)
- 1970. 5. 양독수상, Kassel(서독)에서 회합, 양독관계 수립에 관한 조약내용 및 토의원칙에 관해 의견 교환 (제2차 수뇌회담)
- 1970. 8.12 독·소 불가침조약 체결

- 1970.11.27 서독 수상실 차관(Egon Bahr)과 동독국무차관(Michael Kohl)간 양독관계에 관한 교섭 개시
1970. 9. 3 백림의 지위에 관한 4대국협정(미·영·불·소) 서명
1971. 9.30 양독간 베를린 통과협정 체결(4대국협정에 기초)
1972. 5. 2 양독간 통행협정 체결
1972. 8. 9 서독정부, Bahr 차관에게 기본조약교섭위임, 교섭 개시
- 1972.11. 2 기본조약 가서명(Bonn)
- 1972.12.21 기본조약 서명(동백림)
- 서명자 : 서독 - Egon Bahr 수상실 차관
동독 - Michael Kohl 국무차관
1973. 6.21 기본조약 발효
1973. 9.18 양독, 유엔 동시가입(제28차 유엔총회)
1974. 3.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의정서 교환
(74.6.28 설치)
- 1978.11.29 동·서독 국경에 관한 조사, 개정 및 보완의정서 서명
- 1979.10.31 동·서독 자유통행협정 체결
- 1980.10.13 동독측 인적교류 제한조치
- 1981.12.11-13 제3차 동·서독 정상회담
(슈미트 수상은 Honecker 서기장에게 서독 방문 초청)
- 1982.11.14 Karstens 서독대통령, 호네커 동독서기장 회담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석시)
1983. 4.25 동독, 호네커서기장의 서독 방문계획 취소 발표
1983. 7.24 서독은행, 동독에 10억마르크(4억불 상당) 차관 제공
1983. 7.24 Strauss 기사당 당수 동독 방문, 호네커 서기장 면담

- 1983. 9. 동독, 인적교류 제한조치 일부 완화
- 1984. 2. 14 양독수뇌회담(안드로포프 장례식 참석시)
(Kohl 수상은 호네커서기장에 서독방문 초청)
- 1984. 7. 25 서독, 동독에 9억5천만마르크(3.3억불 상당)의 차관 제공
- 1984. 9. 4 동독, 호네커서기장의 서독방문 취소 발표
- 1984. 3. 12 양독수뇌회담(체르넨코 장례식 참석시)
- 1984. 7. 5 동·서독 경제협정 체결
- 1984. 8. 14 동·서독 고속도로 보수협정 체결
- 1985. 9. 18-20 브란트 사민당 당수 동독방문, 호네커서기장 면담
- 1986. 5. 6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
- 1986. 9. 7-11 호네커 동독서기장 서독방문
(과학·기술협력협정, 환경보호협정, 방사능보호 및
원자로 안전협정 등 3개협정 체결)
- 1986. 1. 14 동·서독간 전력공급 협약 체결

2. 독일통일 배경과 진행과정(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이후)

가. 독일통일 급진전의 배경

- o 통독과정은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베르린장벽 붕괴로 이끈 동독에서의 평화혁명이 가능했던 배경은 크게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외적 배경

- 구주안보협력회의체(CSCE)를 구심점으로 한 유럽내 동·서
진영간의 평화공존체제 정착
 - 체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
(미·소 정상회담, CFE 성공 등으로 긴장제거)
 - 경제 및 기술협력등 물적교류 적극추진으로 상호 이익구조 형성
 - 방송 및 언론개방, 문화교류 확대, 상호 자유여행 허용등으로
동·서 진영간 인간적 접촉 증대
-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 소련의 경제위기 극복과 인간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산주의 개혁시도
 - 신베오그라드 선언('88)으로 표현된 "신사고" 입각한 동구권에
대한 패권전략 포기
 - 고르바초프, 동베를린 방문('89.10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행사)
하여 "너무늦게 오는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라는 비유로 동독의
개방 촉구
- 폴란드와 헝가리등 민중주도에 의한 개혁운동의 성공
 - 호네커 체제가 자유화·개혁·개방물결에 반대할 명분 상실
 - 동독주민 개혁의지 고취
 - 헝가리 국경 동독국민에게 개방 : 동독주민의 탈출계기 마련
- 유럽공동체(EC) 국가들의 경제·정치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들이
범유럽 통합의 긍정적 비전 제시
 - 진영론적 사고에 의해 형성된 유럽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통해 통합을 달성하려는 유럽내의 경제·사회적
역동성의 존재

- 군사동맹체의 정치동맹체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전유럽안보 체제 구축 및 고르바초프의 "유럽공동의 집" 구상 등

0 내적 요인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로 대중의 불만 증대
 - 서구세계로 부터의 정보유입 · 인적왕래등을 통해 형성된 동독대중의 기대수준을 생산력 향상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는 충족시키지 못함.
 - 위계적 · 중앙집권적 경제구조는 경영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고도의 노동생산성 달성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기유발에 실패하여,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국민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생산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아래로부터의 체제개혁운동에 대한 동독공산당의 탄압과 동독주민 자각
 - 지식인을 중심으로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 건설을 요구하는 체제개혁 운동세력을 국가보안기구(Stasi)를 통해 추방 · 투옥하는등 조직적으로 탄압하여 체제스스로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개혁의 기회 상실
 - 소수의 체제개혁운동이 교회를 근거로한 민주적 시민권 회복운동 (Buergerbewegungen)으로 점차 조직화 되면서 일반대중 수준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 민권단체 대표들이 선거감시인으로 참가한 동독 지역선거에서의 득표율 조작사건('89.5)을 계기로 민권운동은 구체적인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띠게됨. 이후 동독의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작가, 종교인, 예술인등의 지식인들이 공산당의 "민주적 집중주의(Demokratischer Zentralismus)" 원칙, "진리 규정의 독점성(Wahrheitsmonopol)", "절대적 영도성" 원칙에 위배되는 Neues Forum, Demokratie Aufbruch, Demokratie Jetzt 등의 정치단체들을 조직
- 대도시 지역(특히 라이프찌히시)에서 이들 정치단체가 민중운동을 주도하고 동독시민들이 대거참여하여 자유·민주·인권보장등 정치 체제 개혁 및 서독과 비교되는 생활수준 요구
- 서독으로의 대이주사태('89년만해도 약 34만명 이주, 베를린장벽 해체이후에도 하루 평균 약 2,000명 이주)에서 보듯, 동독주민은 의사표현의 자유제한, 여행자유제한, 정치적억압, 국가에 의한 감시조종 등을 더 이상 거부했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기를 갈구했음.
- 서독체제의 강한 흡인력
 - 동독체제개혁·민주화운동이 애초 동독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목표 추구로 나타나지 않고, 서독으로의 대이주 사태와 더불어 서독에의 흡수라는 형식의 통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동독국민에 대한 서독체제의 매력에 있음.
 -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적 안정,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 독점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보장) 제도의 정착을 통한 막강한 경제력, 철저한 사회보장등이 매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서독의 점진적인 대동독 교류·협력 정책과 민족의 동질성 유지 노력
 - 서독은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Egon Bahr의 명제에 따라 다른체제를 가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일회적 행위가 아닌 하나의 긴 과정으로 파악하여 끈질긴 접촉과 교류를 통해 질적전환 과정을 거치는 "접촉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erung)" 정책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동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함.
 - 동독 지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분단으로 고통받는 동독주민을 돕기위해 경제적 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동독의 개혁·개방 유도
 - 서독은 동독에 대해 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늘 외국이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법적으로)임을 강조하고 독일인 상호간의 민족 동질성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여 동독의 이주민이 밀어 닦혔을때 부작용이 크지않게 포용할 수 있었음.

나. 통독 진행과정

(1) 통일의 외적인 측면 해결

- o "2+4"(양독 및 미·영·소·불) 외상회담을 통한 실질적 통독문제 해결 교섭
 - 독일의 통일은 그 정치·경제적 비중으로 볼때 유럽의 안보 및 평화문제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고있어 통독후 군사 동맹체 잔류문제, 국제정치적 위상문제, CSCE문제, 유럽통합등 향후 유럽질서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및 위상설정이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이었음.

- "2+4" 회담은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이 전후 독일문제를 종결짓는 수단으로서, 독일과 전승 4개국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된 특수한 방식임.
- 전승 4개국중 서방 3개국과는 "독일조약"을 통해 베를린을 제외하고 주권국가 국가로서 서독의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냉전 구조로 인해 소련은 독일전지역에 계속 점령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통독을 위해서는 소련으로부터 완전주권(Volle Souveraenitaet)을 회복하는것이 국제법상 필수불가결 했음.
- 1차 회담 개최('90.5.5, 본)
 - 독일민족의 자결권에 입각한 독일통일의 조속실현에 합의
 - 서방측은 기존 NATO 전략의 수정과 NATO의 정치기능 강화를 조건으로 통독의 NATO 가입을 제안, 현 MATO의 틀안에서 통독문제해결 및 유럽안보유지 입장고수
 - 소련측은 통독의 NATO 가입을 반대하며, 독일이 양 동맹체로 부터 탈퇴하여 중립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또한 통독이 NATO에 잔류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독주둔 소련군의 완전철수 입장을 표명하며, 통독의 외적인 측면 해결과 양독간의 내적 통일 진행과정의 분리추진 제안
- 재 2차 회담('90.6.22, 동베르린).
 - 유럽의 신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체제를 제도화 할 것과, 이 체제의 테두리속에서 통독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관한 문제해결 합의

- 서방측은 통독후 독일 국가주권의 완전회복과 통일독일의 NATO 가입 입장 재확인
- 소련측은 4대연합국 베를린 철수, 통독후 5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통일독일에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시회원국 지위 부여, 통일독일의 군사력 상한선 20만~25만으로 제의
- 제3차회담('90.7.17, 파리)
 - 독·소 정상회담(코카서스)에서 '통일의 외적측면에 관해 완전히 실질적인 합의(합의내용 후술)에 이룸으로서 전후 독일문제에 종결을 짓는 조약문의 초안을 작성할 것을 합의
 - Oder-Neisse 국경선 확정문제로 폴란드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는 통독의 주권회복을 규정하는 새로운 독일조약 체결 이전에 국경선 승인선언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하는 국경조약 (Grenzvertrag)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통독후 완전 주권을 가진 통독정부와 폴란드 정부간에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의 불가침을 국제법적으로 확정시키기로 합의
- 제4차회담('90.9.12, 모스크바)
 - 6국은 유엔헌장에 따른 제 민족의 자결권행사의 원칙을 존중하고, 통독의 외적인측면 논의에서 이루어진 국경 문제의 타결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확인하며, 통일달성과 동시에 독일전역에 대한 전승4개국의 권리와 의무가 상실되고 독일의 완전주권 회복에 합의
 - 최종합의문 내용은 대부분 독·소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로
 - ① 통독국경규정 및 독일의 평화선언
 - ② 독일의 화생방무기 제조·보유·사용포기선언 및 통독 군사력 37만으로 감축

③ 통독후 독일군대중 NATO 소속군대를 포함한 어떤국가의 군대도 소련군 철수시까지 동독지역 주둔금지 및 군사 훈련 금지

④ 통일독일의 동맹가입권리 보장 등임.

· 최종협약은 구주안보협력회의(CSCE)에 상정, 전 구주국가의 추인을 받을 예정임.

o 독·소간 정상회담 및 외상회담에서 통독문제에 대한 소련의 합의유도

- 독·소 정상회담('90.7.14~17)

· 고르바초프는 NATO가 전략을 수정하는 조건하에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가진 비핵국가 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되는것이 소련의 안보이해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독일과 대타협

· 소련으로서는 내부의 정치·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로부터 자본·고급기술설비·생필품·경제전문가·상품시장화등에 대한 Know-how 등의 경제원조 제공과 소련군 철수비용을 독일정부가 부담할 것을 약속받고 중부유럽지역의 비군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동서간 경제협력체제 형성에 양측 합의함.

· 정상회담이후 콜수상은 통일독일의 완전주권회복과 NATO 가입을 사실상 수락하는 내용의 역사적인 독·소간 합의 8개조항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① 독일통일 대상지역

② 소련의 전승국으로서의 권리 폐기, 통일독일 주권회복

③ 통일독일의 주권행사를 통한 동맹국 결정, NATO 가입
입장 선언

④ 동독주둔 소련군 3~4년내 철수 및 양자조약 체결

⑤ 소련군 동독주둔동안 NATO군 동독주둔 금지

⑥ 동독지역 소련군 주둔동안 베를린에 3대연합군 과도적
주둔

⑦ CFE 협상에서 3~4년내에 통독군대 37만으로 감축

⑧ 화·생·방무기 생산·보유·반입금지 등임

- 독·소 외상회담(6.11, 6.18, 8.17 등3차례)

· 양국 정상회담후 후속협약 및 실무협의, 통독일정 재확인

· 모스크바 "2+4"회담에 앞서 열린 외상회담에서는 소련군의
철수비용(결국은 통일비용의 일부)에 관한 구체적 협의

: 서독이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120억 DM(철수군의
주택건설, 소련군 '94까지 주둔비용, 소련군 철수운송
비용, 소련군 직업전환교육비용) 이외에도 30억 DM을
5년거치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차관제공하며 그이자
10억 DM을 서독정부가 부담기로 함.

· 독·소간 선린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

: 서독이 완전주권성을 회복하고 최초로 맺어진 조약으로

소련과 독일간의 관계를 앞으로 전분야에 걸쳐 확대·

발전시키고 양국이 "결코 어떤 상황하에서도" 서로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치루지 않기로 규정함.

0 각종 국제적인 정상회담, 협력회의 개최로 국제화해 및 통독분위기 조성

- EC 정상회담('90.6.25, 더블린)

- 소련의 개혁추진 성공적 지원을 위해 EC에서 단기차관과 경제원조를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 구주안보협력회의에 보다 큰 역할 부여를 위해, 동회의 정상회의 및 외상회의 빈번한 개최 촉구

- NATO 정상회담('90.7.5~6, 런던)

- 유럽분단의 종식을 의미하는 동·서독 통일과정이 진행되고 바르샤바조약기구로 부터 군사적 위협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국제정세 인식하에, 핵무기 선제사용과 전진방어개념에 입각해 있는 NATO의 방위전략(유연방위전략)을 수정하고 핵무기사용이 "최후의 선택(Ultima ratio)"이 되도록 합의
- 통일독일 보유 군사력의 상한선 규정 및 유럽제국의 군사력 대폭 감축을 결정하고, 비엔나 CFE 협상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
- 구주안보협력회의(CSCE)를 주축으로한 유럽공동안보체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전 회원국의 정기적인 정상회담, 외상회담, 국방상회담 개최와 상설 사무국의 설치 합의
-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에 불가침선언을 맺고 양동맹체를 적대관계로 부터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고, 소련을 조속한 시일내에 서방의 개방체제로 편입시킬 것을 결의

- 선진국 경제 정상회담('90.7.9~11, 휴스턴)

- 탈 냉전,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국제정치 및 경제에 대한 새로운질서 모색

- 장기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합의했으나, 독·불이 공동제외한 대규모 대소 경제원조 계획에는 이견
- 서독은 50억 DM의 대소원조 규모를 밝히며 서방세계의 동참 촉구
- CSCE 외상회담('90.10.1~2, 뉴욕)
 - 4대전승국 독일의 완전주권 회복을 승인하는 공동선언 채택
 - 겐서외상은 연설을 통해 독일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권존중, 민주화와 법치국가적질서, 사회적 정의실현, 평화와 선린우호 관계 유지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임을 강조
 - 유럽통합을 위한 CSCE 상설기구 설립의 첫단계로서 "유럽안보 협력위원회" 본부를 베를린에 유치할 것을 제안(분쟁방지과 분쟁조정 중재 중심지로서)
- CSCE 정상회담('90.11.19-21, 파리)
 - "새로운 구라파를 위한 파리헌장"을 채택
 - 독일의 통일 지지

(2) 동·서독간 내부적 통일 과정

- o 베를린장벽 개방('89.11.9)과 동독주민 대규모 이주사태
 - 호네커 실각후 정권을 이양받은 크렌츠는 여행자유화, 자유선거, 경제사회개혁 등을 요구하는 동독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베를린장벽을 개방했으나 동독주민들은 자유선거와 공산당의 독점지배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함에 따라 퇴진하게 되고, 개혁은건파인 모드로 수상이 취임하여 경제·사회개혁을 위해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과 새로운 선거법제정을 약속함.

- 베를린장벽 해체이후에도 동독이주민이 서독으로 끊임없이 유입됨.
 - 동독탈출자 현황을 보면 소련점령기간동안('45~'48) 약 73만, 베를린장벽 설치시까지('49~'61) 약 270만, 동독에서의 대변혁이 있기전까지('61~'88) 약 61만, 베를린장벽 붕괴전까지('89.1~12) 약 34만이 탈출·이주 하였음.
 - 베를린장벽 해체이후에도 하루평균 약 2천명, 만약 이주 사태를 방지할 경우 '90년 1년동안 약 50만명의 이주민이 예상되었었음.
- 동독 이주민의 대부분은 동독에서 미래에 희망을 가질수 없었기 때문(기술자, 의사등의 고급인력이 많았음) 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서독정부가 현행법상 제공하게 되어있는 사회보장혜택에 매력을 느끼고 이주하였음.
 -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68에 제정된 연금법에 의해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으로 부터 정치적으로 망명한 모든자에게 연금기여금을 서독에서 내지 않았더라도 탈출국에서 일한만큼 연금을 계산해주도록 되어 있었음.
 - 긴급의료보험 혜택 : '74 동서간의 보건협정에 의거 동서독간 인적왕래시 발생한 긴급한 질병에 대한 무료치료 혜택이 부여되는바,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 긴급 의료보험 신청
 - 실업수당 제공 : 서독정부는 동독이주민 실업자에 대해 서독주민과 동등하게 실업수당 지급, 당시 동·서독간 실질 화폐교환율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

- 서독정부는 동독이주민 문제가 동서독관계 및 동독의 안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서독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여, 동독의 경제안정을 위한 원조조치 및 동독에 부자가 유치되도록 방안 강구

o 콜수상의 10개항 통일방안 발표('89.11.28)

- 동독의 모드로 수상이 제안한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 구상을 받아들여,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서 동서독간에 "국가연합적구조(Die Konfoederative Struktur)"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형태의 통일국가 형성을 추구
 - 조약공동체는 구체적 시한설정에 의거 추진되는 정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분야(우선적으로 경제·교통·환경·과학기술·보건·문화분야)에서 협력사업의 중점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새로운 조약체결과 공동협의기구 창설을 통해 추진해가는 통합과정임.
- 동독에 대해서는 인도적 분야와 의료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하며, 동독정부가 헌법개정 및 자유·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선거법개정등 개혁조치를 단행하면,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대동독 지원·협력 확대 약속
- 동·서독 관계발전 및 독일의 재통일은 전유럽의 문제로 EC와의 협력강화와 유럽통합의 틀속에서 진행되는데, 독일인들의 자결권 행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함.
- 구주안보협력회의(CSCE)는 전유럽설계의 핵심으로 계속 발전 시키며, 양 군사동맹체간의 군축을 계속 추진함.

- o 이에대해 야당인 사민당은 먼 장래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동·서 군사동맹체의 존재를 전제로 국가연합단계에 더 전략적가치를 부여함.

- 즉각적인 민족주의적 단독통일정부 수립보다, 동·서독의 주권국가적 실존을 전제로한 느슨한 형태의 통합과정 추진 주장
 - 통일과정과 양독체제의 사회개혁과정을 연계시켜 사회정의 및 복지, 환경보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통해 양체제 접근 시도
- 동독 과도정부의 민주개혁·주민생활수준향상·통일노력
- 동독 공산당(후에 민사당으로 개칭)은 '89.12 채택한 새강령에서 스탈린식 국가사회주의로 부터 탈피하여 당의 지도적우위 포기, 당운영에 있어 비민주적원칙 포기, 시장경제제도의도입등 "제3의길"을 새로운 노선으로 제시했으나, 어디까지나 현재의 내독관계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독내 반정부 소요가 격화되자, 재야대표와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재야의 의견을 반영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즉각적인 통독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을 바라는 동독주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하였음.
 - 모드로수상 4단계 통독방안 발표('90.2.1)
 - 양독이 통일연방국가 건설을 위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로 부터 탈퇴, 군사적 중립유지
 - 양독이 경제·통화·교통 및 법률제도 통합을 통한 계약 공동체 구성
 - 중앙 및 지방의회와 정부기구등을 묶는 공동정책기구 설치·운영
 - 공동정책기구에 양독의 주권을 이양하여 통독 실현
 - 모드로·콜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통화동맹 창설과 서독의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등 논의

- 폴수상은 모드로수상이 사회주의 틀속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하려던 크렌츠와는 달리 동독주민의 통일의를 수용, 통독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유럽통합 과정속의 독일통일이란 대명제하에 모드로 수상이 제안한 중립화 통일방안은 거부

o 3.18 동독총선

- 동독의회는 '90.1.28 동독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조기총선 (3.18)을 결의함으로써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이래 동독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자유선거"가 실시되게 됨.
- 서독 자매당들의 지원속에 무려 24개의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치룬 선거에서, 예상외로 동독기민당을 중심으로한 독일연맹이 48%를 획득(사민당 22%, 민사당 16%, 기타 군소정당 14%), 승리함으로써 기본법 23조에 의한 조속한 통일추진에의 기틀이 마련됨.
- 3.18 총선시 주요정파의 주장 및 공약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독 일 연 맹	사회민주당 (SPD)	민주사회당 (PDS)	자유민주연합 (LDP, NDPD)
정치적 입정 (서독의 우호정당)	그리스교의 보수 가치관으로의 회귀 도모 (CDU, CSU)	사회민주주의 및 유럽사회주의 운동의 전통 계승 (SPD)	공산주의·스탈 주의와 결별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목표(없음)	중도파 (자민당)
통 일	적극 추진. 조속한 통일의 필요성 강조.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추진	신중. 성급한 통일에 반대. 통일독일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주장	신중.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의 단계적 추진 주장	통일에 찬성. 서독 기본법 23조나 146조에 의한 통일에 찬성
통일독일의 위상	동독외 NATO가입 현재의 동독지역에 NATO 군사력 배치 반대. 특수지역화 주장	전유럽안보회의를 축으로 새로운 안보체제 수립. 양독 및 전승 4국 군대주둔을 최소한으로 유지	동독의 NATO가입 반대. NATO와 WTO 군사부문 동시해체	유럽의 신평화 질서 주장

구 분	독 일 연 맹	사회민주당 (SPD)	민주사회당 (PDS)	자유민주연합 (LDP, NDPD)
국 경	현 폴란드 국경 (오데르·나이제) 유지	현 국경 유지	폴란드 국경을 확정키 위해 폴란드-서독간의 국경조약 체결	현 국경선 유지
경제정책	통화통합에 따른 신속한 마르크화 도입 국유기업 민영화 시장경제 도입	사회보장제도 확립후 서독과의 경제·통화통합	민주적 운영의 시장경제. 동독의 생산력 제고후 통화통합	토지 사유화 추진 경제적 효율성 중시. 조기 경제·통화 통합에는 반대

0 화폐·경제·사회통합

- 동독의 드메지예르 신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하의 독일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독 정상회담(4.24)에서 통일의 전단계로서 양독간의 내적통일을 지향하는 통화·경제·사회 통합을 추진할 것에 합의함.
- 서독 연방은행 한스 디트마이어나 동독 수상실 정무차관 귄터 크라우제간의 실무협상을 거쳐 양독의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양측의 합의하에 6장 38조 본문, 각서, 부록으로 되어있는 제1차 양독간 국가조약(Staatsvertrag)을 체결함.
- 조약 전문내용
 - '89 동독시민의 평화적·민주적 혁명이 독일통일에 결정적 계기였음.
 - 유럽의 평화길서 속에서 독일의 통일을 계속추진
 - 서독 기본법 23조에 입각한 동독의 서독연방가입으로 통일 달성
 - 경제사회발전의 기초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하여 주민들의 삶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킴

- 국가통일 달성후에도 유럽공동체(EC)법의 적용을 계속 보장함
-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의 기반을 형성해온 동독헌법 요소 적용 배제
- 조약의 적용에 관해 이견이 생길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 처리함.
- 본조약은 7.1부터 발효기로 함.

- 화폐통합의 내용

- 서독마르크를 공동통화로 함.
 - 서독연방은행(Bundesbank)이 유일한 중앙은행이 되고 독일 전체의 통화공급과 여신수준을 관장
 - 사경제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적 금융제도(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은행영업 시스템, 자유로운 자본·금융시장) 수립
 - 동독의 현금과 여신은 조약발효후 서독마르크로 교환
 - ① 교환율 1:1 적용대상 : 임금·장학금·집세·임차료
연금 및 후생복지비, 은행구좌저축분(14세이하는 2천DM,
15~19세는 4천 DM, 60세이상은 6천 DM까지)
 - ② 교환율 1:2 적용대상 : 기타 채권과 채무
 - ③ 화폐교환은 동독에 거주하거나 본부를 둔 주민들과 기관들에만 적용되며 은행계좌를 통해 실시
- ※ 통합이전 동·서독 공식환율은 1:3이었으나, 암시장에서는 1:10 수준이었음.

- 경제통합의 내용

- 경제정책의 기초 : 동독의 경제·재정정책이 사회적 시장경제가 조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함. 개인소유권 및 생산품수량, 투자, 노사관계, 가격, 이윤사용에 관한 기업의 자유로운 보장, 자본·상품및 용역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 양독무역 : "베를린협정"('51.9 합의)을 통화·경제통합에 맞도록 조정. 동 협정에 규정된 결제거래가 폐지되고 차관의 결산잔고 조정. 양독 국경선에서 통관과 관련한 통제가 완전히 철폐되도록 노력함.
- 대외경제 : CATT에서 제시된바 있는 무역원칙 존중. 동독의 대외경제관계 특히 COMECON 국가에 대한 현존 조약상의 채무이행은 신뢰보호를 받음. 대외경제관계는 EC의 관할권을 준수하면서 양독이 긴밀하게 협조
- 기업의 구조 조정 : 사회적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될수 있으면 많은 중소기업을 가진 현대적 경제구조로 구조조정
- 농업경제 : 농업부문에 대한 EC 규정의 적용. 동독은 EC 시장경제질서에 부응해 가격보조제도와 대외보호제도 도입

- 사회통합내용

- 서독의 중요한 노동법제도가 동독에 적용됨.
 - : 노동단결권, 노동쟁의권을 포함한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 경영조직법, 기업공동결정제도, 해고제한제도, 질병시 임금계속 지불제도

- 동독의 사회보험 조직구조 쇠퇴, 서독의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구조로 조정 : 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고용촉진제도(직업훈련, 단축근로수당, 이주민 동화수당 폐지), 사회부조
- 경제·사회·화폐통합 의의와 문제점
 - 동독국민에게는 미래를 보장하여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을 막고 양독경제 통합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동독 국민들의 통일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취해진 이 조치는 야당에서는 성급하다는 비판과 당분간 사회주의적 구조와 독자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동독의 모든 기존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통합을 늦추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과도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인식하에 취해진 역사적 결정이었음.
 - 이로써 동독은 사회주의 명령지배 체제로부터 자유민주 질서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고, 서독관계법의 동독적용과 연방정부기관 관할권의 확대를 통해 기본법 23조에 의한 동독의 편입의 기초정지 작업이 완료되었음.
 -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독지역의 시장잠재력을 감안 이미 성장한계에 도달한 서독의 기업이 동독에로의 투자기회의 확대에 삼아 진출할 경우 동독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연간 추가성장도 기대할 수 있고, 동독기업은 서구자본의 유치로 기업이 활성화되면 동독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물론 임금이 서독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서독의 사회보장체제로 생활수준의 동질화에 힘씀)

일자리가 창출되어 통합된 동서독 경제가 일정과도기(5년정도)를 지나면 계속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서독 경제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음.

o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조성

- 통독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보전과 동독경제 재건에 필요한 "통독비용"을 연방정부의 재정압박을 가능한한 줄이고, 세금의 추가인상 없이 조달하기 위해 1,150억 DM의 통일기금을 조성키로 함.
- 재원조달
 - 연방예산 절감액(200억 DM) : 분단증식과 더불어 절감이 가능한 국방비, 베를린시 및 국경지역 지원금, 동독이 주민 정착지원금 충당
 - 각 주와 군·읍의 동독지역내의 통화팽창과 동독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위해 향후 4년반에 걸쳐 분할지원('90 : 220억 DM, '91 : 350억 DM, '92 : 280억 DM, '93 : 200억 DM, '94 : 100억 DM)

o 재산권 처리에 관한 합의('90.6.15)

- 소련군 점령('45-'49)하에서 토지개혁에 의해 이루어진 몰수재산은 반환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함.
 - 소련과 동독정부는 당시 취해진 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를 바랍.
 - 서독정부는 동독의 원만한 외적인측면 처리를 위해 동독 의회에서 국가보상 차원에서 고려하도록 결정 유보
- '49년이후 몰수된 아래해당 재산에 관해서는 신고를 받아 반환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함.

- 신고대상 청구권

- 압수 또는 신탁관리된 망명자의 재산
 - 1945.5.8부터 1953.6.11까지의 기간동안 현 동독지역에 상주한적이 없거나 적법하게 동독으로부터 출국한 자로서 상기 기간내에 이미 서독국민이 된 자의 소속재산이기 때문에 임시로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재산
 -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외국재산
 - 전 소유권자가 취득자, 국가기관 또는 제3자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재산
 - 고액의 임차료 및 이로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하로 인하여 압류, 소유권포기, 증여(무상양도 포함) 또는 상속권 포기를 통하여 공유재산으로 된 택지
 - 1952.3.20 파산된 농가에 관한법령(GBL NO.38, 226 페이지)에 의하여 1953.2.19 이전에 소유권자의 근로무능력 또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신탁관리하에 있게된 농가의 청구권
- 이전 소유자들은 동독에서 마지막 살았던 곳의 지방행정 기관이나, 거주지가 없던 소유자들은 그 재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행정기관에 재산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등기부 사본이나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함.
- 추후 체결된 통합조약 41조에 의하면 이러한 재산이 다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동독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률로 규정되는 대지나 건물의 경우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 매상가격으로 보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통독 총선을 위한 동·서독간 선거협약(Wahlvertrag) 체결
 - '90.8.3 동서독 양측정부에 의해 협상이 끝나고, 논란끝에 8.22 동독의회에서, 8.23 서독의회에서 각각 비준된 선거협약은 서독선거법을 모체로 일부 주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양측은 전체유권자의 5% 미만 득표한 정당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되, 동독평화혁명을 주도했고 다른 대중정당과 연합하여 공천명단 작성후 5% 이상을 득표하면 의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함.
 - 동 협약에 의하면 328개 선거구에서 656명의 의원이 선출되도록 되어있음(기존 서독은 259개 선거구에서 518명이 선출되었음)
 - 헌법재판소 동·서독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위헌판결(9.29)
 - 녹색당, 공화당, 좌파연합/PDS 제소에 대해 재판부는 5% Klausel의 전체독일 적용이 창설한지 1년도 안된 동독의 소수정당에게 의회진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 판결
 - 판결문에서 판사들은 동·서독을 각각 두지역으로 나누어 5% Klausel을 따로 적용 득표수를 집계하는 방법제안
 - 동·서독 통합후 처음열린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법 통과
- 동독의회, 서독에의 동독편입 결의(8.23)
 - 연정내에서도 오랜 논란끝에 동독기민당(CDU), 독일사회연합(DSU), 사민당(SPD), 자민당(FDP), 공동으로 발의된 기본법 23조에 의한 10.3 서독에의 동독 편입결정 제안을 3분의 2의 찬성(294:62)으로 가결됨으로써 41년간 지속되어온 동독('49. 10.7 국가수립)은 소멸되게 됨.

- 10.3일로 편입일정이 확정된 배경에는 기민당이 동독 조기 편입을 통한 국가통합으로 동독 경제·사회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연정파트너인 시민당과 독일사회연합 주장을 수용 하면서, 10.14 실시될 동독 주의회 선거로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의 동독내 행정공백상태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특히 동독의 외적인 측면의 원만한 국제적 인정을 위해 9.12의 "2+4"회담의 결과가 10.1~2 양일간 열리는 구주안보협력회의의 35개국 외상회담에서 추인되기를 바라는 서독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동 회의를 끝나는 바로 다음날로 날짜가 정해졌음.
- 동독의회는 통독결의에 대해 서독수상 콜은 40여년만에 헌법 정신인 독일통일과 자유가 실현되는 모든 독일인을 위한 "환희의날(Tag der Freude)"이 도래했음을 자축하여, 조국 분단으로 인해 겪었던 아픔들을 되새기며 돌이켜보고, 헝가리 국경개방 선언으로 부터 동독내 민주적·평화혁명을 거쳐 통독이 결정이 있기까지 협력해준 동·서방의 우방들에 감사함.
- 시민당의 수상후보 라퐁텐은 동독편입선언과 관련 이제까지 조기통합을 주장한 시민당의 입장이 반영되었음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국가통일이 진정한 통일-즉, 양독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 수준에 차이가 없어지는 상태-의 전제조건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동독내 정당중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PDS와 연합90/녹색당 등 좌파들은 이 편입결의에 반대표를 던지고 비난하였는바 PDS 당수인 기지는 동독의회가 "동독의 종말"을 결정한 것 뿐이라고 논평하며 동·서독간의 진정한 통합이 아닌 단순한 합병형식으로 전략된 이와같은 통합방식을 비난했음. 연합 90/녹색당측은 편입선언을 "무조건 행복" "백지수표 위임" 등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했는데 동독정부가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항의하였음.

o 통합조약(Einigungsvertrag) 협상 체결

- 8.31 서독협상대표인 쇼이블레 내무장관과 동독 수상실 정무차관인 크라우제는 2개월이 넘는 협상 끝에 통합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각 분야에 걸친 양독관계 통합에 따른 마지막 법적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독일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결정에 합의함.
- 통합조약은 전문, 9장 45조의 본문, 부속의정서, 부속관계 법령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약안 주요내용
 - 동독 편입으로 새로운 주 구성, 수도는 베르린
 - 기본법 관련 : 새로운 기본법 발효지역. 편입과 관련된 기본법 개정·폐지·삽입부분, 장래 헌법개정, 동독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재정수입의 연방행정부와 주·시·군에 대한 할당, 전독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동·서독 지역예의 분할, 통독기금의 배당
 - 법령의 조정 : 동독지역에 동조약상 별도규정이 없는한 연방법 적용. 연방법 및 해당 EC법에 어긋나지 않는 주 관할에 속하는 동독법령은 계속 유지함. EC에 관한 제규정 편입과 동시 적용
 -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 : 서독측의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 계속 유효. 동독측의 국제법상 조약들은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다만 신뢰보호, 관련국들의 이익, 서독측의 계약상의무, 자유·민주·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따라 작업 진행). EC의 관할권과 관련된 부분은 EC와 협의

- 공공행정과 법률집행 : 현존 동독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주정부의 관할이 됨. 기본법에 명시된 관할권에 따라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은 연방정부 관할이 됨. 주지사 선출(10.14)까지 전권위임자가 대리 행정. 법치국가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한 동독지역에서 이미 결정된 사법심판 및 공공행정기관 결정사항 효력 지속
- 공공재산과 부채 : 동독의 재산은 기본법에서 주정부 재산으로 규정하지 않는한 연방정부 재산이 됨. Stasi 업무수행에 사용하던 재산은 신탁청에 귀속. 행정재산이외의 국가재정 재산은 연방정부의 신탁관리하에 둠. 부채는 특별재산에 의해 인수되는데 이 특별재산은 연방 재무장관 관할이 됨. 이 특별재산은 '93말 해체되며, 그 이후는 신탁청이 총 부채를 인수하며, 각 주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됨. 신탁청은 연방정부 공법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 동독의 국유재산은 동독지역에 제반조치들을 위해서만 사용. 신탁청에 부여된 신용대부 창설 한도액을 170억 DM에서 250억 DM으로 인상. 동독 국영철도와 동독 체신은 특별재산으로 설정되어 관리됨. 동독지역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경제적 장려조치를 강구하며, 중산층에 대한 각별한 고려하에 균형있는 경제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함. 대외경제관계중 특히 Comecon 국가에 대한 현 조약상의 의무는 신뢰보호를 받음.
- 노동·사회보장·가족·부녀·보건·환경보호 : 노동관계법의 통독후 통일화작업 추진, 동독지역 근로자는 57세부터 준노년 연금을 지급하고 또한 동독 연금법을

동독지역에만 과도기적으로 적용하는데 이는 이 지역의
임금·봉급·연금 수준을 서독의 주들과 균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통독후 입법기관은 남녀권리의 균등화를
위한 입법제도를 계속 발전시킴. 자율적인 청소년단체
육성·발전, 동독지역의 제반 의료수준이 꾸준히 개선되도록
노력, 환경문제는 예방의원칙, 원인야기자 부담의원칙,
협력의원칙에 의거 동독의 생태학적 수준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킴.

· 문화·교육·과학·체육 : 통일독일의 세계속의 위상은
문화국가로서 비중에 좌우됨. 동독지역 주정부들 문화·
예술의 보호와 진흥임무를 수행해야함. 방송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공법인에 의해 운영되며 방송대리인과 방송자문
위원회가 구성됨. 방송기관은 연방국가적 성격에 따라
각 주정부로 분산·이양됨. 동독에서 취득된 교육관련
각종 자격, 학위 등은 동독내 지역에서 계속 유효하며,
기타 서독지역 내에서는 동등인정에 관한 해당관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의 동등여부 결정됨. 동독지역의 학문과
연구분야 개혁문제는 학술심의회회의의 감정서('91.12.31
보고서 제출)를 근거로 결정함. 동독 과학아카데미는 순수한
학회로서 계속 존속. 제반 체육기구는 자치체제로 개편.
동독의 우수경기종목은 장래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육성.
재산권 처리에 관한 규정 '90.6.15 재산권 처리에 관한
양독정부 공동성명서 내용이 근간을 이룸.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재산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고용을 확보하고
창출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투자목적에 사용될
때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만 이루어짐.

- 국회의원 파견 : 통독선거가 치루어지기 전까지 동독은 144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연방의회 파견
- 조약발효 : 발효에 따른 양독간 필수전제사항들이 성취 되었다고 양정부가 통지하는 날로부터 발효. 편입완료후는 연방법규에 해당하는 법률로 계속 존속.

o 통일 통일의 날(10.3)

- 베를린에서 공식·비공식 행사 개최

다. 통일과정 주요일지

<1989년>

- 1 - 4월 :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동독을 탈출하려는 동독민 20여명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헝가리, 체코등 제3국으로 몰려듬.
- 5. 2일 :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장애물 철거, 개방된 국경을 탈출구로 착안,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 시작
- 5. 7일 : 동독 지방자치선거 부정 규탄시위 발생(라이프치히)
- 5. 23일 : 서독 건국 40주년 기념일
- 6. 6일 : 서독정부, 동독피난민과 동구정착민 대상 정착안정금 지불 결정
- 6. 12일 : 소련 고르바쵸프 서독 방문, 독·소 공동성명 발표 및 11개 협정 체결
- 7. 16일 : 약 30여명의 동독민이 부다페스트 서독대사관으로 피신
- 8. 1일 :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봉쇄 철폐선언, 동독피난민 급증
- 8. 19일 : 동서독 장벽설치 이후 최대규모(약99명)의 피난민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을 통과, 서독으로 탈출

- 9.10일 : 헝가리, 동독간에 체결된 제3국 출국제한조약(1969년)의 효력정지. 동독내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신광장(Neues Forum)이 창립
10. 4일 : 체코, 특별열차편으로 동독민 1,500여명의 서독으로의 출국 허용. 동독, 체코로의 자유여행 제한조치
10. 7일 : 동독 정권수립 40주년, 소련 고르바초프 동독 방문
- 10.18일 : 동독, 호네커 서기장 사임, 크렌츠 신임 서기장으로 선출
- 10.19일 : 서독, 동독에게 경제원조제공 동의표명
- 10.23일 : 동독, 라이프치히 시위(30만명)
- 10.25일 : 동독, 드레스덴 시위(10만명)
- 10.26일 : 폴-크렌츠 통화, 서독정부가 동독시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
- 10.27일 : 동독, 난민과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해 사면조치
- 10.29일 : 동베를린, 2,000여명이 장벽사망자 추모모임, 최초 장벽철거 요구 시위
- 10.30일 : 동독, 전역의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동독노조, 노조운동의 전환을 공표
- 10.31일 : 크렌츠 서기장 소련 방문후 개혁 약속
11. 3일 : 프라하주재 서독대사관, 동독민 4,000여명 육박
11. 4일 : 동베를린, 약 100만명이 동독의 개혁을 주장하는 최대 규모 시위 발생. 동독 대도시 대규모 시위 확산
11. 5일 : 서독정당, 동·서독 국경개방 요구
11. 6일 : 동독, 국외여행법안 발표
- 제안없는 여행, 자유선거,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야당의 허용, 국가·경제·사회개혁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계속

11. 7일 : 동독, 정부 총사퇴, 중앙위원회 개편 및 크렌츠 피선
11. 9일 : 동독, 베를린장벽(국경) 개방
- 자유선거, 공산당의 정치권력독점 종식등 추가개혁 요구시위 계속
 - 서독 수상실장관 및 각정당 대표, 성명발표
 - 소련, 동독의 개혁을 환영
 - 서독, 최초로 동독난민 정지운동이 일기시작
- 11.10일 : 동독공산당, 광범한 개혁안 공포
- 서독 콜수상, 폴란드 방문 중단, 서베를린 환영대회 참석
- 11.13일 : 동독개각, 개혁파 한스 모드로수상 지명
- 11.16일 : 동베를린주재 서독상주대표부 업무재개
- 서독여당, 동독정부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사회 시장경제도입을 경제원조 조건으로 주장
- 11.17일 : 동독, 내각개편, 서독정부와 긴밀한 협력 강조
- 동·서독 국경, 100만명의 동독여행자로 혼잡
- 11.18일 : 서독 기업인, 대대적인 동독지원 촉구
- 11.19일 : 서독 및 서베를린방문 동독인 250만명 돌파
- 11.20일 : 서독 수상실장관, 동베를린 방문, 서독의 대동독 원조 협의
- 서독여행을 원하는 동독민 비자신청 1,000만명 육박
 - 동독 고위층 호화생활이 공개
 - 라이프치히 10만명 시위, 자유선거 및 공산당 독점권 배제 요구
 - 서독, 합리적 교환조건과 함께 여행기금 설정계획
- 11.21일 : 동독, 경제자유화 정책 발표
- 11.22일 : 서독 공산당, 원탁회의 제안 및 선거법 도달
- 11.24일 : 동·서독 국경개방이후 동독 이주민수 46,000여명에 도달

- 11.27일 : 라이프치히 월요시위 20만명
서독 연방하원의장, 동·서독 의회간 공식관계 수립을
동독 선거후 주장
- 11.28일 : 콜수상, 국가연합형태의 동서독 통일방안 발표(10개항)
- 12. 1일 : 동독헌법에서 공산당의 정치주도권 조항삭제
- 12. 3일 :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총사퇴
크렌츠, 당서기장 및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
- 12.11일 : 베를린분할 4개국 회담 개최(서베를린)
- 12.19일 : 동서독 정상회담, 양독 "조약공동체" 구성 공동선언
- 12.22일 : 동독,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28년만에
개방

<1990년>

- 1. 5일 : 라이프치히(15만명) 등지에서 양독 통일주장 대규모
시위 계속
- 1.28일 : 동독 "원탁회의", 3월 18일 의회선거 3.18일로 결정
- 1.30일 : 모드로수상, 모스크바 방문, 고르바췌프가 동독에
이의없음을 확인
- 2. 1일 : 모드로수상, "독일통일예의 길" 성명발표, 연방제에
입각한 계약공동체 성립이라는 4단계 동독안 제의
- 2. 3일 : 콜-모드로수상, 비공식 회담(파리)
- 2.10일 : 콜수상, 소련 방문, 고르바췌프와 회담
- 2.11일 : NATO-바르샤바 회담(오타와), 양독의 자결권 인정
6개국 외무장관 회의, 6개국("2+4") 동독기구 설치
- 2.13일 : 모드로수상, 서독 방문, 콜수상과 회담
 - 통일통합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 서독, 동독지원위해 57억 마르크 예산 증액

- 2.22일 : 동독, 군통합 회담 제의
- 2.24일 : 서독 콜수상, 미국 방문, 부시대통령과 회담
- 3.18일 : 동독 총선 실시, 우파연합 압승
- 4. 5일 : 서독의회, 동서독 화폐·경제·사회 통합 방안 마련
- 4. 7일 : 동독의회, 기민당의 드 메지에르 수상 선출
- 4.23일 : 콜수상, 양독화폐 교환비율 1:1 원칙 결정
- 4.27일 : 양독간 국방장관, 최초회담, 통일독일의 NATO 가입 논의
- 5. 5일 : 동서독과 4대 전승국간의 제1차 "2+4회담" 개최(본)
 - 독일 민족자결권을 인정
- 5. 6일 : 동독,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동독 기민당
 - 제1당으로 압승
- 5.16일 : 서독, 1,150마르크 "통일기금" 조성 착수
- 5.18일 : 동서독, 제1차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 조인
- 6.19일 : 동독의회, 탈사회주의 헌법 개정 의결
- 6.19일 : 서독, 대소 50억 마르크 경제차관 제공계획 발표
 - 서쪽 국경 불가변성 인정 결의안 채택
- 6.22일 : 제2차 "2+4회담" 개최(동베를린)
 - 쏘련, 통독후 연합군 단계적 철수 제안
- 6.25일 :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정상회담 개최(더블린)
 - 쏘련 개혁추진 지원을 위한 차관, 경제원조 합의(약15억불)
- 6.27일 : 동독, 국경검문소 폐지, 완전 자유왕래 실현
- 7. 1일 : "통화·경제·사회 통합 국가조약" 발효 및 동서독 국경
 - 완전폐쇄 발효
- 7. 5일 : NATO 정상회담(런던), 바르샤바조약기구간 냉전 종결 논의
- 7.6일 : "통합조약"(제2차 동서독 국가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 (동베를린)

- 7.10일 : 선진7개국(G7) 정상회담 개최(휴스턴)
- 7.14일 : 콜총리, 소련 방문, 고르바초프와 회담
 - 통독의 NATO 잔류 수용. 동독주둔 소군 철수
3~4년으로 유예
- 7.17일 : 제3차 "2+4회담" 개최(파리)
 - 폴란드 외무장관 참석
 - 평화조약 체결의 불필요성, 통독군의 NATO 잔류
결정, Oder-Neisse 국경선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 7.22일 : 동독의회 주편성(5개주)에 관한 법률 통과
- 8.10일 : 통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협상 타결
- 8.11~12 : 동·서독 자민단 통합
- 8.17일 : 동·소 외상회담(모스크바)
 - 양국 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약 협의(철군비용 논의)
 - "2+4" (모스크바) 회담 준비
- 8.22일 : 통독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동독의회 비준
- 8.23일 : 동독의회 기본법 23조에 의한 서독편입 결의
서독의회 선거협약 비준
- 8.31일 : 통합조약 협상 최종타결, 서명
- 9.12일 : 제4차 "2+4회담"(모스크바)
 - 통독문제에 관한 최종합의서 채택
- 9.13일 : 독·소간 선린우호와 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
- 9.14일 : 동·서독 노조통합
- 9.16일 : 동·서베를린 시민당 통합
- 9.18일 : 독·불 뮌헨 정상회담
 - 프랑스 주둔군 2년만에 절반으로 감축
 - 양국이 유럽통합의 중심이 될 것임을 다짐

- 9.20일 : 동·서독 의회 통합조약 가결
- 9.21일 : 서독 상원(Bundesrat) 통합조약 가결
- 9.24일 : 바르샤바조약기구로 부터 동독군 탈퇴 서명
- 9.25일 : 동·서독 카톨릭 교회 통합
- 9.16~28 : 동·서독 사민당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 9.29일 : 연방 헌법재판소 통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위헌 판결
- 9.29일 : 동독의회 연방의회 파견될 144명의 의원 확정
- 10.1~2 : 동·서독 기민당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 10.1~2 :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외상회의 개최
- 10.3일 : 독일 통일의 날 공식행사 개최

3. 통독이후 각 분야별 통합현황

(1) 기업 및 경제구조 재편을 통한 통독의 재건

가. 시장경제 체제로의 재편에 따른 통독지역 경제붕괴

- o 4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로 전분야 걸쳐 서방 기업과 경쟁력 있는 업종 거의 전무
- o COMECON 국가들의 수주 격감
 - 과거 통독기업의 대외무역중 70% 차지
(그중 40%는 대소무역)
- o 서방기업의 투자 장애요소
 - 생산수단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인 소유관계 미확정
 - 각종 인.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해 줄 행정체계가 미구축 특히 통기업무 분야 전문인력 부족
 - 투자 입지조건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 o 구통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장애 요소
 - 대부분 기업의 매각조건이 좋지 못함.
 - 노후한 환경정화시설 대체비용 소요
 - 과거 기업재산의 과대평가로 막대한 구채무 존재
 - 기존 고용계약관계 인수에 따른 부담
 -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지연
 - 매각이 안된 기업은 정비하여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하나 막대한 경비와 경영인력 소요
- o 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능가하는 임금인상 요구

나. 경제구조 재편 및 재건현황

o 통독이후 동·서독 경제규모 비교 ('91년말 현재)

구 분 (단 위)	주 요 지 표			구동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독일전체	구서독지역 대 비	독일전체 대 비
1. 인 구 (백만)	62	16.5	78.5	26.6	21
2. 면 적 (천km ²)	249	108	357	43.3	30.2
3. G N P (10억DM)	2,615.2	193.1	2,080.3	7.4	6.9
4. 국내총수요(10억DM)	2,427.3	361.2	2,788.5	14.9	13
5. G D P (10억DM)	2,597.7	183	2,780.7	7.0	6.6
6. 총취업인구(백만)	29.17	7.16	36.33	24.6	19.7
7. 생산성(DM) : GDP/총취업인구	89,046	25,537	76,521	28.7	-
8. 소비자 물가 상승률 (%)	3.5	13.6	-	-	-
9. 실업률 (%)	5.6	11.8	6.7	-	-
10. 실업자수 (천명)	1,880	1,350	3,230	-	-
11. 임금인상률 (%)	7.0	40	6.9	-	-
12. 시간당 임금비용 (DM)	44.7	72.3	46.55	+ 61.6%	-
13.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697	1,647	3,280	44.5	-
14. 임금-생산성 격차 서독을 100으로 할때	100	155.3	103.2	+ 55.3%	-

* 9, 10은 92년 3월말 현재

출처 : 연방경제성 발행 "신설연방주 상황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

(Ausgewahlte Wirtschaftsdaten zur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 P.3

0 농업분야

- '91. 7. 7 농업구조 조정법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을 통과시켜 생산수단의 소유권 확정 및 농업생산 협동조합(LPG) 구조개편 추진
 - . LPG는 '91.12.31까지 해산되어 협동조합, 가족농 형태의 개인자영농, 회사농 등으로 다시 등록함.
 - . LPG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공유자산이던 농기구와 재고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
 - . LPG의 구조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상 과도한 잉여인력의 해고권을 LPG 이사회에 부여함.
 - . 미해결 재산권의 소유권 확정 및 반환과 관련하여 LPG 이사회 임원들이 부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짚.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
 - . 과도한 은폐산업 감소 (구서득과 비교할때 2배정도 과도 인력 존재)
 - . 우수한 농기계, 질 좋은 제초제, 비료사용, 축사의 재건 등 자본확충
 - . 경영개선 및 능률에 상응하는 급료지급
 - . 재산평가를 통한 재산현황 파악 및 구채무 경감
 - . 기업의 규모와 가축수를 경제적·환경보호적 필요성에 맞게 조절
 - . 향토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 농업지원대책

- . 신설농가 육성을 위한 호조건의 융자지원
- . 기업농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청산 및 적응보조금 지원
- . 농지정리 지원 및 농작물의 가격경쟁 증대책 마련

0 상공업 분야

- 국유기업의 사유화 지속 추진

- . 신탁청 관리 11,555개 기업중 6,448개 매각 ('92. 3월말 현재)
- . 사유화를 통해 108만명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1,288억 DM의 투자가 보장됨.
- . 건설업, 수공업, 상업 분야의 사유화 활발

-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 . 구동독지역 투자에 한하여 기한부 투자보조금, 특별감가 상각을 허용하여 개인투자 유치
- . '91에 225억 DM, '92에는 435억 DM 사기업 분야 투자 예상 (Ifo 연구소 추정)
- .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입법 제정·정비 :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정으로 미해결 재산 원소유자에게 반환원칙의 예외 인정

-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촉진

- . 교통, 우편·통신, 도시건설, 환경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현대화

- 교통분야 300억 DM('92-'95), 우편·통신분야 550억 DM ('91-'97)투자
-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건설에 따른 기존의 행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 마련중.

- 기업신설 현황

- '90년 이후 44만건의 영업신규 등록
- 기업신설의 장애 : 영업공간의 협소 (임대료 상승), 유동 자금 미확보(소유권 관계 미확정으로 담보 제공 능력 미흡), 수주량 부족(구동독인들 서방제품 선호) 등

(2) 사회적 통합 분야

o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공식적인 실업 및 은폐된 형태의 실업현황

(단위 : 천명)

기 간	전 체	공식실업	은폐된 형태 실업			
			단축노동자	고용창출조치해당자	전직훈련자	
'90	1/4	13	13	-	-	
	2/4	83	83	-	-	
	3/4	906	309	1,295	-	
	4/4	1,395	556	1,736	12	26
'91	1/4	1,909	756	1,926	41	75
	2/4	2,116	835	1,962	101	80
	3/4	2,156	1,023	1,464	234	70
	4/4	2,058	1,037	1,113	357	75

0 동·서독간 실업·단축조업 추세 비교

		서독지역	동독지역
실업 (만명)	'90.8	182	35
	'92.3	177	122
단축조업(만명)	'90.8	27	186
	'92.3	27	49
실업률 (%)	'90.8	6.9	4.1
	'92.3	6.5	12.1

0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전문인력 이주 지속

- 임금격차, 자녀교육, 문화생활 향유 가능성 고려
- 화폐·경제·사회통합 발효 이후 1년동안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36만명 이주 (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사람)
 - 매년 17만명 증가 예상
- 집은 동독에 있으면서, 서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35만 ('91년)

0 동·서독지역간 생활수준 격차

- 실업노동자
 - 구동독 평균실업수당 : 1,038~1,120 DM ('90년 구동독 노동자 평균임금 1,647 DM의 63~68% 수준)
 - 구서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 3,697 DM ('91년)
- 공공기관 종사자
 - 200만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중 새로운 행정기관에 인수되지 못한 자들은 6개월 (50세 이하) ~ 9개월 (50세 이상)동안 최종봉급의 70%를 받는 대기 경과기간을 거친후 자동실직됨.

- 현재 140만에 이르는 잔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서독지역 70% ('92. 5. 1부터)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음.
- 연금생활자
 - 구동독지역의 60만명의 연금대상자들은 최소한 '91.1부터 545 DM ('91.7월부터는 인상되어 600 DM)의 연금혜택을 받음.
 - 45년동안 기여금을 불입한 경우 구동독지역은 평균 773 DM, 구서독지역은 1,751 DM의 연금을 받고 있음.
- o 통독전에 비해 구동독지역 실질임금은 상승 (If0 연구소, '91.8월 조사)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으로부터 막대한 사회보장 이전 지출과 명목 임금 상승에 기인함.
 - 2명의 취업자가 있는 4인 가족의 평균임금은 3,691 DM으로 '89년에 비해 실질임금 28% 상승
 - 1명의 취업자에 1명이 실업수당을 받는 4인가족의 평균임금은 3,436 DM으로 '89년에 비해 실질임금 19.1% 상승
- o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 및 사회보장 대책 마련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서독의 각종 사회보장체계 확대
 - 대등한 의료·보건혜택 부여를 위해 의료보험기관에 국가보조
 - 연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생활자 격차해소
 -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되는 빈곤계층에 사회부조금 지급
 - 무주택자에게 주택임대 보조금 지급
 - '91년 서독지역으로 부터 동독지역으로 재정이전 지출된 1,530억 DM (IW 경제연구소 추정)중 38%인 580억이 투자부분에 활용되고, 62%인 950억 DM은 사회보장경비 (서독 수준으로의 실업수당,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등) 지출에 사용되었음.

- 적극적 실업대책 마련
 - . 각 기업체와 협력하여 고용창출 조치 (ABM) 확대
 - .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직능을 개발하기 위해 전직·자질향상 훈련 실시

(3)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가. 구동독지역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취약

o 세입 격감의 원인

- 구동독지역 기업의 도산으로 법인세 부문 세수부진
- 구서독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개인소득세 세수부진
- 국유재산의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부문 세수부진
- 세무행정체계의 미확립으로 세원포착 미흡

o 조세수입 현황 (DIW 연구소 추정)

- '91년 구동독지역 각주는 구서독지역의 1/3, 지방자치단체는 1/10 수준
- '95년까지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나 1/2 수준 유지 추정
- 주민 1인당 조세수입현황

(단위 : DM)

	'91	'92	'95
구서독 지역주	3,300	3,500	4,300
구동독 지역주	1,150	1,300	2,100
구서독 지자체	1,300	1,400	1,650
구동독 지자체	150	300	800

나. 동독지역 재건에 필요한 재정지출수요 증가

서기 2,000년까지 통일비용 내역

(단위 : DM)

○ 통일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직접 경비	약 3,700억
- 신탁청 관리기업으로 인한 부담액	2,500억
- 동독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된· 채권·채무 차액 보전	1,000억
- 구동독 체제 희생자·복권 보상	157억
· 형사처벌자 보상 : 7억, 미반환 재산 보상 : 150억	
- 소련군 철수비용	130억
○ 동독재건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 비용 (과거 서독지역의 못사는 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	약 6,400억
- 환경정화시설 투자	2,000억
- 교통망 개선	1,270억
· 철도 480억, 도로 700억, 하운 80억, 공항 10억	
- 에너지산업 설비 현대화	1,000억
- 교육환경 격차 해소	700억
- 우편·통신분야 시설 투자	550억
- 주택분야 보수·유지, 현대화	500억
- 의료시설 확충	300억
-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지원금	70억
* 구동독지역의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적자분은 각 기금에서 각출금 요율 조정으로 지원	
○ 구동독지역 노동자(750만 기준) 노동생산성을 서독수준 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 현대화 또는 신규투자	약 1조
- '91년말 현재 구동독지역 생산성은 서독지역의 28.7%	
총 계	약 2조

* 대사관 추정치 (각종자료 참고 자체 작성)

o 상기 추정에 의하면 매년 2,000억 DM 이상 소요

- 이 중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공공부분의 이전 지출액
(연방경제성 제공)

(단위 : 10억 DM)

	'91년	'92년
1. 연방예산		
1.1 총 이전 지출(1)	86	105
1.2 구동독지역에서 세입	23	29
1.3 분단 관련 세출 삭감	4	5
1.4 순 이전 지출 (1.1-1.2-1.3)	59	71
2. 구서독지역 주/자치단체 예산	7.5	9
3. "독일통일기금"용 차입(2)	31	24
4. 유럽부흥계획(ERP)에 의한 지원	9.7	10
5. 채무 청산 기금	2.5	16.5
6. 공공기관 이전 지출액 (1.4+2+3+4+5)	106	125
7. 사회보험기관 (실업·의료·연금) 이전 지출액	22	50
8. 공공부문 이전 지출 총액 (6+7)	<u>128</u>	<u>175</u>
* 2년동안 매년 평균 1,500억 DM 투입		

주 : (1) 각 부처 통독관련 부문 세출예산 총액과 총 이전 지출액이 다른
이유는 각 부처 예산에는 대동독 직접 이전액 이외에 구서독
지역을 포함한 국가전체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 동 보고서 '다'에서 제시한 "독일통일기금" 연도별 지원액과
다른 이유는 "독일통일기금"중 일부는 연방예산에서 지불하기
때문임.

- 나머지는 사기업 분야의 투자에 의존

· '91년 255억 DM, '92년에는 435억 DM 투자 예정

다. 통독비용 확보를 위한 각종 재원조달 수단

o "독일통일기금"에 의한 지원 : '94년에는 완전 소진

- 연도별 지원액

(단위 : 십억 DM)

년 도	'90 하반기	'91	'92	'93	'94	총액
지원액	22	35	28	20	10	115

-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주·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o 세금인상조치를 통한 재원 마련

- '91. 7. 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인상

- 인상내용

·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한 7.5% 초과과세 : 220억 DM
('91.7부터 1년간 한시적 인상)

· 석유세, 담배세, 보험세 : 매년 160억 DM 추정

- 국민의 추가부담액

(단위 : DM)

매월소득	추 가 자 부 담 액	
	독신자 가정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
1,400	32.80	25.50
2,000	41.10	25.60
3,500	84.40	58.50
5,000	118.50	82.80
6,500	158.80	111.60
8,000	223.20	160.60
10,000	294.80	206.50

- 주민개인소득에 대한 담세율 변화 추이

(단위 : %)

년 도	'70	'75	'80	'85	'90	'91	'95
담세율	33.9	36.6	39.3	42.0	41.5	43.0	45.2

o 적자재정 운용

- 지속적 적자재정 운용은 공공부문의 자본시장 차입을 증가시키고, 결국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부자저해로 동독 지역의 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방만한 팽창예산 운용은 경화로서 마르크화의 신뢰문제와도 관련되어 상당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부문 적자 누계액(연방정부, 주정부, 신탁청, 각 특별회계, 연방철도, 연방우편 적자 포함)

(단위 : 10억 DM)

년 도	'85	'86	'87	'88	'89	'90	'91	'92
누계액	847	894	951	1,000	1,039	1,171	1,300	1,600

o 각종 특별부과금 도입 검토

- 동독지역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수당 기여금 증액 :
매년 240억 DM
- 환경정화시설 개수를 목적으로한 환경특별부과금

o 통독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계층으로부터 일정액의 연대기여금을 징수하여 부담을 조정(Lastenausgleich)하는 방안 논의중

- 이전 몰수재산을 반환받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 이전 몰수재산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 부동산, 주식, 저축, 보험 등의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는 잘사는 사람에 대해 일정 부담액 징수

* 전후 서독에서는 1952년 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을 입법화하여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소련점령지역으로부터 재산을 잃고 쫓겨난 실향민이 서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음. (부담조정 기금에서 '89년말까지 총 1,390억 DM 지불)

(4) 소유·재산권 문제

가. 공권력에 의해 몰수된 이전재산권의 반환 및 보상

- o '45-'48 (소련점령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재산은 미반환
 - 약 320만 ha로서 구동독지역 토지의 1/3에 해당
 - "2+4" 회담에서 소련측에 양해사항으로 통합조약에서 미반환에 등·서독 합의함.
 - 이전 소유권자들은 상기 통합조약의 규정들이 기본법(헌법) 제3조(평등권), 제14조(재산권), 제79조(기본법 개정불가 사유)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합헌 판결을 내림.
 - 통합조약 4조 Nr. 5에 의해 기본법 143조 3항에 삽입된 상기 몰수재산의 미반환 방침은, 79조 기본법 개정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당시 서독의 국가권력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적으로 동독 지역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마치 외국의 국가권력작용에 의한 제반조치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을 질수 없듯이 당시 소련점령군이 행한 몰수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수 없으므로" 기본법 제14조 (재산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다만 기본법 제3조 (평등권)에 의거 입법권자는 사후 보상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판시함.
- 이 판결에 의거 재무성은 현재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입법추진중임.
 - 보상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이자를 계상하여 주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o '49.10. 7이후에 반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몰수된 재산권은 재산법 (Vermögensgesetz)에 의하여 이전 소유자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함.
 - 담당부서인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에서 이를 심사·처리하고 있으나 막대한 행정인력 소요
 - '91년말 현재 115만명이 264만건의 재산에 대해 신청했으나 8만 5천건 (처리율 3.2%) 해결
 - 다만 재산법 제3조에 의해 공공단체 (예를 들어 지방행정기관)나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일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구동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환신청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고 신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임대되거나 매각될 수 있음.

- . 토지나 건물의 경우
 - ..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 ..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때
 - ..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에 필요할때
- . 기업의 경우
 - .. 고용을 창출,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제고시킬 때
 - ..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 이러한 개인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로 간주되는 특별예외의 규정은 '92.12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됨.
- 공공단체나 신탁청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도 투자법(Investitionsgesetz)에 의해 반환신청에도 불구하고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음.
 - .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Investitionsbescheinigung)를 시·군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하는 바, 발급조건은 상기 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 재사유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운영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소유권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 되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소유권리를 지정 (Einweisung) 받아 기업을 자기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이러한 임시적인 권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자가 재산법을 담당하는 해당 주정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 신청권자가 기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며,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 신청권자는 기업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업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함.
- . 원소유자(Alteigentümer)와 현재의 관리자 (Verfuegungsberechtigten, 보통 신탁청)의 법률적 관계는 관리자가 매매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대계약 (Pachtvertrag)의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 이때 임대료나 매매대금 지불은 완전히 소유관계의 확정으로 관리자에게 기업의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gestundet) 됨.
- . 해당관청에 의한 이러한 임시적 권리 지정이외에도 원소유자와 해당관리자는 언제라도 기업의 잠정적인 이용에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해당관청에 통보되어야 함.

나. 원소유자의 권리신청이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 o 구동독의 지방행정기관 관리하의 국유재산은 통합조약 21조와 22조에 따라 행정재산(Verwaltungsvermoegen)과 재정재산(Finanzvermoegen)으로 분류되는데, 신탁법(Treuhandgesetz)과 지방재산법(Kommunalevermoegensgesetz)의 규정에 따라 신설 5개주 지방행정기관의 신청으로 신탁청이나 주국세청(Oberfinanzdirektion)의 결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
 - 통합조약 21조에 규정된대로 '89.10.1부터 '90.10.3 (통독) 될 때까지 직접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소용되었던 행정 재산 (Verwaltungsvermoegen)

- 신탁청이 이관결정을 하는 재산 :
 - 시내교통운수회사, 청소회사, 쓰레기수집 및 운반회사,
 - 이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 도제들의 기숙사, 공장소속 유치원, 공장소속 스포츠센터, 공장소속 종합병원, 공장소속 문화센터
- 주국세청이 이관결정을 하는 재산 :
 - 학교 (고등), 전문대, 유치원 (유아원), 스포츠센터,
 - 시립수영장,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동묘지, 시립공원,
 - 시립도서관, 시립극장, 박물관, 유적지, 시청, 행정기관 건물, 시립 망명자 숙소, 소방서, 쓰레기처리장, 기초정기진단을 위한 병원, 종합병원, 양노원, 재활원, 장애인복지원, 문화회관, 청소년클럽, 재향군인회클럽, 관개시설, 시립근교 휴양지
- 신탁청 제1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재정재산 (Finanzvermoegen)
 - 신탁청이 이관 결정
 - 상·하수도 사업소, 난방공급회사, 도축장, 항구 및 항만 시설, 전기회사, 가스회사
- 통합조약 22조 4항에 의한 주택조합 재정재산 : 주국세청이 이관 결정
 - 주택건물, 쓰레기처리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녹지, 난방용 기구 및 건물, 관리사무소, 관리인 주거지
- 통합조약 부속문서 II, Kap II, Sachge A, Abschim III d에 의한 구동독 정당 및 대중외곽단체 재산 : 신탁청이 이관 결정
 - 휴양시설, 주택건물, 관리사무소, 관리인 주거지, 인쇄소, 교육시설, 여가선용시설

- Stasi가 소유하고 있던 행정 또는 재정재산: 주 국세청이 이관 결정
- 인민공유 (국유) 동산, 산림회사 : 신탁청이 이관 결정

(5) 주택문제

가. 주택분야 소유권의 확정

- o 통합조약 22조 4항과 의정서 주식 13항에 의하면 구동독 인민공유 (국유)재산중 국유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주택협동조합(Wohnungsgenossenschaft)에 의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소유권을 이양하기로 되어 있음.
 - 각 지방행정기관 (Gemeinde, Staedte, Landkreise)은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 처분권이 있는 바, 해당 재산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경제구조에 적응하도록 완전 사유화 (privatisieren)시키던가, 지방행정기관이 지분을 가지면서 회사형태로 전환 (ueberfuehrung)시킴.
 - 다만 재산법에 의해 이전 몰수재산에 대한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해당재산은 상기조치와 관계없이 반환되거나, 보상조치됨.
- o 각 지방행정기관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건설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현대화와 보수유지할 하기 위해 해당재산을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사유화할 책임이 있고 각 주정부는 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그 사유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 지방행정기관이 자본지분을 갖는 개인회사 형태 (유한회사, 주식회사)
 - . 주택조합의 소유로 대지와 건물 이관
 - . 제3자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매각
 - . 주택소유권법 (Wohnungseigentumsgesetz)에 의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인별 주택재산 형성자에게 매각
- 그러나 해당재산의 제3자에게 완전 매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을 받음.
 - . 그 대지가 사회복지주택 (Soziale Wohnung)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 . 주택조합이나 개인의 주택재산 형성의 목적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주택사정 해소에 이용되는 경우
- o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전 몰수재산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만 이루어짐.
 - 재산법 제5조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동주택 (Complexe Wohnungsban)이나 단지 (Siedlungsbau) 조성에 사용될 경우
 - 통합조약 22조 4항 2절에 의해 해당재산이 주택부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건축 시행계획하에 포함된 경우 ('90.10. 3 이후)
 - 재산법 5조 1항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유치원, 병원 등)

나. 구동독지역 임대료 인상문제

- 통합조약에서는 동독지역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주택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인상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구동독지역의 주택환경은 너무도 열악함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고 집주인들이 주택개량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의욕을 갖게 하고, 주택시장은 시장경제 구조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 불가피
 - '91. 8. 1부터 평방m당 3DM의 임대료를 인상함.
 - 구동독지역의 임대료 : 평균 평방m당 1~2DM에서 4~5DM으로 인상됨.
 - 소득수준이 일정액 미만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 보조금을 지급함.

(6) 환경오염제거 문제

- 계획경제 실패 유산으로서 그 체제가 안고 있던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구동독지역 환경오염 잔재 심각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무슨 일을 하려하지 않았음으로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음.
 - 반면 서독에서는 각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적 정신을 가지고 주위의 것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쓰레기 분리수거, 세제안쓰기 등)

- 계획경제체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 할당량 채우기만 강요해, 생산수단 투자에 있어 환경보호적 장치마련과 환경보호적인 산업구조적 조정을 어렵게 만듦.
 -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자원갈이 경우 억제작용이 없이 마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환경오염 가중
 -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로 환경보호 기술과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보호분야의 국제적인 노동분업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됨.
 - . 더구나 자립경제체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더라도 사용 가능한 자국의 자원만 마구 쓰게 됨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킴.
 - 농업분야에서 생산기술이 열악하고, 환경보호적이 아닌 화학 비료·농약을 마구 사용 대지오염 가중
- 구동독 국유기업의 환경오염 잔재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인수를 꺼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환경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음.
- 영업상 또는 경제활동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과거 동독 기업이나 대지를 인수하려는 자는 '90. 7. 1 (화폐, 경제, 사회통합 발효시점이자 동독지역에 서독의 법에 준하는 환경보호법 도입시점임) 이전에 원인제공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의 책임을 면제함.
 - . 이러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구채무 (Altlast) 면제신청은 주정부 해당관청에 늦어도 '91.12.31까지 제출되어야 함.

- 이러한 조치로 구동독 공유기업 매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환경오염잔재 문제 (과거 서독의 법률적 기준으로 각종 환경정화와 시설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재원 소요)는 매입투자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청이 인수하게 됨.
- o 2,000년까지 서독수준으로 동독지역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2,000억 DM으로 추정 (Ifo 경제연구소)
 - 폐수처리 시설 : 1,250억 DM
 - 공기정화 시설 : 230억 DM
 - 쓰레기처리 시설 : 340억 DM
 - 오염지대정화 : 110억 DM
 - 식수문제 해결 : 170억 DM
- o 정부의 구동독지역 환경재건 프로그램
 - 심각한 환경오염 부담지역에 즉각 대응책을 마련, 환경정화와 아울러 실업감소 도모
 - . 이미 조사된 12,250에 달하는 구오염잔재 부담지역중 심각한 196개 지역에 우선 정화 실시
 - . 25만 ha에 이르는 구동독과 쏘련군 주둔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 . 강유역에 27개 정수시설 긴급 건설
 -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 환경정화 국제전시회 개최, 초현대적 환경정화기술 도입
 - . 특수 폐기물 적치장 건립

- 투자재원 마련
 - . 폐기물 특별부과금, 탄산가스 특별부과금 징수 예정
 - . 사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정화회사 설립시 세제상 혜택 부여
- 구동독의 환경정화인력 자질 향상
 - . 환경전문가들 파견 자문.교육훈련

(7) 연구·과학·기술분야 재편

o 현재 연방 연구·과학·기술성 (BMFT), 각주의 과학·기술담당부처, 각 주대표로 구성된 청산 및 조정실무위원회(KAI)는 학술심의회 (Wissenschaftsrat)의 권고에 따라 구동독 과학아카데미(Akademie der Wissenschaft)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91.12.31까지 연구종사자들의 고용관계는 신설주정부가 인수하며 새로운 주법에 의해 장래가 결정됨.
 - . 기존대학 연구소에 이관되는 방법
 - . 새로운 주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존속하는 방법
 - . 기본법 91조 b에 따라 연방-주정부간 공동재정 부담 비율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Max-Planck-Gesellschaft (연방과 모든 주정부간의 재정부담 비율은 50:50)가 되거나, Fraunhofer-Gesellschaft (연방과 모든 주정부간 부담비율 90:10)이거나, Grossforschungseinrichtung (연방과 연구기관 소재지 주간의 부담비율은 90:10)이거나 "Blauen Liste" (각 연구기관별 부담비율은 다름)에 따른 새로운 연구기관이 되는 방법

- 사경제 주체에게 매각을 통해 이관되는 방법
- 이러한 기존연구의 존재문제는 학술심의회에 전문감정서에 의한 권고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됨.
- 학술심의회는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연구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구동·서독지역 및 EC의 과학자로 구성된 7개의 전문가 그룹(Arbeitsgruppe)을 결성했으며, 건축 아카데미 (Bauakademie)와 농업아카데미 (Akademie der Landwirtschaftswissenschaft)를 위해 각각 1개씩 전문가 그룹을 따로 결성함.
- 학술심의회는 현재까지 조사를 근거로 하여 구동독 과학 아카데미 소속 연구자 2만 4천명중 9천 - 만명정도가 인수 되어, 새로운 연구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연방 연구·과학·기술성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음.
 - 이중 2천명은 각 주정부 특히 대학연구소에 흡수될 것임.
 - 이중 7천 - 7천 500명을 연방 - 주정부 재정 공동부담의 연구기관으로 흡수할 계획임.
- o 과거 국유기업에 종사하던 산업체 기술연구원 (8만 6천명)의 장래가 불투명한바 이중 이미 2/3가 서독으로 이주하였거나 실업에 직면했거나 조기정년퇴직을 하였음.
 - 일부는 사유화된 기업을 따라 과거 국유기업으로부터 분리 되어, 독자적으로 연구용역기술회사 (Forschungs-GmbH)가 되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체 연구기관은 생존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도 신탁청 (Treuhandaanstalt)의 관리하에 있음.
- o 청산 및 조정실무위원회 (KAI : Koordinierungs-und Abwicklungsstelle) 활동

- KAI는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와 베를린의 동의를 얻어 각주에서 파견된 인원을 중심으로 '91.12.31까지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기관 청산을 위해 설치된 업무·조정협의 기구로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

o 기존연구기관 고위직 연구원들 쇄신

- 모든 연구기관의 소장 (Direktor), 실장(Abteilungsleiter), 과학아카데미 간부들에 대해서는, 과거 Stai 등과 연루된 과거 전력이 없는지를 전면 심사함.
- 현재 구동독 연구기관 소장급중 절반이 해고되었음.

o 연방정부는 구동독 연구기관중 더이상 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 존속하지 않게 되는 기관들은 사경제 주체에게 사유화 매각할 예정임.

- 이 매각 자금은 과학기금재단 (Wissenschaftstiftung)을 만들어, 신설 5개주 과학 진흥에 사용할 예정임.

(8) 동·서독간 심리적인 이질성 극복 문제

o 국가적·제도적인 통일은 행정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1년 전에 완료되었지만, 많은 구동독 주민들은 아직도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채 심리적인 격차 상존

- 구동독 공산정권의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 교육에 의해 양성된 인간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구서독인들의 그것과 편차를 보이지 않고 양독지역 국민들이 공통의 정체성(gemeinsame Identitaet)를 갖는다는 약 1세대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구동·서독간 상이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다른 조건에 기인하는 경험 및 인식체계를 동등화시켜 양지역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 그러나 이미 독재체제를 57년동안 (히틀러 독재로부터 통독이 될 때까지) 경험한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위로 부터의 행정적인 지시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형식의 교육은, 새로운 질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또다른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o 현재 동독주민들은 익숙한 것들이 모두 폐기되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이 도입됨에 따른 "대변혁의 쇼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심리적 불안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음.
 - 인간의 존재는 인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제도와 구조속에서 규정되어 지는 바, 새로운 제도를 익히는데 동독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함.
 - . 마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던 사람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했을때 느끼는 답답함과 똑같이, 통합조약에는 통독이후 양독간에 법률의 동화가 완료되어 대부분의 서독의 법률이 동독에 이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독주민은 실생활에서 너무도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실업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상실하였음.

- 구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의 후견에 의해 완전교육과 직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통독후 경쟁사회에 던져져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구서독인들에 비해 엄청난 심적 부담임.
- 더구나 물적인 생활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생 자아 실현의 장으로서 자기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자기 과거의 노동이 전혀 가치없는 곳에 투입이 되었다는 자기비하와 함께 생의 의미를 재확인 해 봐야 하는 엄청난 고뇌를 겪고 있음.
- 미해결 재산권 문제가 많은 동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국유(인민공유)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각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내어놓을 경우는 덜한데,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언제 서독지역으로부터 반환신청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 하고 있음.
- 통독이후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가 제기될 때 구동독주민들에게는 체제전환에 따른 심적 고통이 존재함.
 - 48년간의 사회주의는 각 개인에게는 기억속에 살아 있는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를 완전히 범죄로서 단죄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범자 (Mittaeter)로서의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자기가 직접 연루가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체제와의 단절은 자기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고통스러운 불안을 수반함.

- biathlon,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여자승구, 레슬링, 썰매경기, 봅슬레이 경기 등에서는 동.서독간의 체육선수는 훌륭한 통합이 이루어져 서독인들과의 접촉공포와, 동독인들간의 "강제결혼"에 따르는 공포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적이 한팀으로 용해되었음.
- 유명선수가 프로진출로 시장화(Heike Drechsler, Karin Krabbe 등) 되었으나, 서독식 체육장려 등으로 과거처럼 서독의 돈줄을 향하는 선수유출은 감소되었음.
- '91년 초봄까지 교체될 것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이미 트레이닝과 경기에 있어 기본인식의 차이점이 사라지고, 트레이너의 숨겨진 과거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안되고 있음.
- 대부분 구동독 체육인들은 어마어마한 변화에 직면하여 과거의 전체주의라는 환경으로부터 책임감이 중만한 자유체제에 적응하고 있음.

결 론

동.서독 체육통일의 심리적 잔재는 체육계 자체가 짊어져야 함. 과거 독일내 체육단체가 언제나 국경을 무시해 버리면서, 동.서간의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듯이, 오늘날 독일체육인은 독일의 거대화에 대한 외국의 공포심을 완화시켜 주면서 어려운 과제인 통일독일의 정체성(Identity) 모색을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함.

0 현재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수준에서는 연방내무성과 연방정치교육센터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맡고 있음.
- 각 주정부 산하에 정치교육센터가 있음.
 - 현재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에는 주정부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센터가 설립이 안된 곳도 있어, 자매를 맺고 있는 구서독지역 주정치교육센터가 많은 지원과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정당의 학술재단이 중요한 정치교육기능을 맡고 있음.
- 각 대학의 연구기관과 종교·사회단체등도 자체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방정치교육센터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정치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구서독지역·구동독 기관중에는 교회가 가장 구동독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각 지방 자치단체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서독 지역간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구동독지역에 결핍되어 있는 문화적인 사회간접자본 (Kulturelle Infrastruktur)를 확충하는데 많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각종 협회·단체 등 자발적인 이익단체와 동호인 클럽들도 구동독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이 가입을 두고 있는 바, 이들 또한 동·서독인들간의 이질감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9) 행정체계 확립

가. 행정조직 재편

○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인력 감축

-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감축 기준
 - Stasi 등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자
 - 구동독 공산당(SED)와 대중 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 자
 -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협약('66.12.19)에 보장된 인권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48.12.10)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 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자
 - 더 이상 통독후에는 행정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 과도기적 경과기간(50세이하는 6개월, 50세 이상은 9개월)동안 과거 급여의 70%를 받으며 전직준비, 그 이후는 자동실직
 -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조치의 위헌여부를 제소했으나 패소
 - 과거 200만의 구동독 공무원중 140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
- 잔류공무원중 앞으로 몇명이 정식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지는 각 연방부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예산운용의 가능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임.

- 계속 근무가 확정되는 자들은 공무원 법에 의한 제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고, 구체제와 관련된 과거경력이 없는지,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받음.

o 공무원 법 (Beamtenrecht) 등 관계법령 마련

- 통합조약(Einigungsvertrag)에 따라 우선 연방 공무원법이 신설5개주에도 도입됨. 각 신설 5개주는 '92.12.31까지 주공무원법(Landesbeamtenrecht)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시까지 과도기간 동안 연방공무원법의 규정과 통합조약에서 합의된 별도 규정이 적용됨.
- '91.1.9. 연방내무성에 의해 제정된 "구동독 공무원중 해고되지 않고 인수되는 자들에 요구되는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 (Verordnung Ueber die Bewahrungsfor derungen fuer die Einstellung von Bewerbten aus der oeffentlichen Verwaltung im Beitrittgebiet in ein Bundesbeamtenverhaeltnis)이 신설5개주에도 그대로 적용됨.
 - 이 규정에 의하면 새로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들은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Bewahrungszeit)을 갖기로 되어 있는바, 고위직(hoehere Dienst)은 4년, 고급직(gehobene Dienst)은 3년, 중급직(mittlere Dienst)는 2년, 단순직(einfache Dienst)는 1년 임.

o 잔류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법적인 고용관계

- '91.1.1.을 기해 주요한 고용관계 제 법규는 거의 그대로 신설5개주에도 도입하여, 과거 서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적용되던 제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계약 관계가 형성 됨.

- 다만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91.3.5. 임금협상을 통해 구동독지역 보수수준은 구서독지역의 60%선 합의
- 단계적인 봉급인상 예정 : '92(70%), '93(80%) 수준

나. 신설 5개주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 능률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고 연방, 주, 각 지방자체 단체에 인수되는 과거 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 특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념고취등 정신교육도 중요함.
 - 행정법, 헌법, 재정학, 행정학(인사, 재무관리)등이 주요 과목
- 현재 재교육 현황은 '90말까지 15,000명, '91말까지 30,000명에 대해 실시
 - 이와 별도로 35,000명의 체신 공무원, 1,360명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됨.
 - 특히 각주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방 재무성에서 직접 23개 교육 프로그램은 작성, 실시함.
- 연방 정부는 신설 5개주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함.
 - 각 주의 공공행정 전문학교와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에 더 많은 공무원 예비자를 양성 토록함.

- 연방 중앙공무원교육원(Bundesakademi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의 교육 계획에 신설5개주 공무원 교육 반영
 - . 특별반 운영(민주법치국가 질서와 전문 지식 제고를 위함)

다. 구 서독지역 공무원 신설 5개주로 파견.전보 장려 조치

o 봉급 지불상의 혜택

- 만약 파견되는 공무원이 신설 5개중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Zulage)을 지급함.
- 또한 '91.4.9. 연방 내각 결의로 구 동독에서 행정체계 구축에 참여한 구서독 공무원들은 그 근무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금 산정시 각 근무기간에 대해 2배의 근무 기간 산정을 허용 받음.

o 이전에 따르는 생활 비용 보상 (Aufwandsentschaedigung)

- 구 서독지역으로 부터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91.3.20 연방하원의 결의 (내무성 건의)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매월 1,500 ~ 2,500DM 을 지급함.

o 여행경비, 별거 수당 지변

- 파견일 경우 기혼자는 한달 2번, 미혼자는 한달에 1번의 귀향에 따른 여행 경비와 별거수당이 지불됨.

o 승진에 있어서 혜택 부여

- '91.4월말 연방 인사위원회(Bundesperssonalausschuss)는 구동독지역 파견공무원에게 경력 평정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 하도록 결정함.

- '91년말까지 파견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구 동독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하게 되는자는 경력 평정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함.
- 또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력상 더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는 구 서독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선발심사, 교육, 경력에 필요한 자격 확정등 인사상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 동독지역에 전보 조치함.
- o 퇴직한 공무원 파견
 -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도 '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구동독 지역 행정체계 재건에 참여토록 함.
 - 이 경우 과거 퇴직시 상용할 직급에서 임금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데 연금 신청권은 계속 보장 받음.
 - 아울러 구 동독지역에서 근무한만큼 연금년도 산정에 가산함.(최고 75%까지)

o 구서독에서 구동독지역으로 공무원 전보·파견 현황
('92년 4월현재)

(단위 : 명)

	총 인 원	전 보	파 견
o 연방정부기관(서) ⇒연방정부기관(동)	13,679	4,637	9,042
o 연방정부기관 ⇒주정부기관	1,322	299	1,023
o (서독)주정부기관 ⇒(동독)주정부기관	8,375	2,995	5,380
총 계	23,376	7,931	15,445

라. 지방자치 행정체계 구축

-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지역에는 비로서 1950년대 없어졌던 신설 5개주가 부활되고 구서독지역의 지방자치 형태 (Staedte, Gemeinde, Kreise)에 따라 새로운 지방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했음.
 - 연방내무성과 구서독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물자 지원,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구서독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구서독의 각 지방행정기관의 연합회는 행정의 연방주의에 의거 각지방 행정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구동독에 신설된 각 Staedte (중·대도시에 해당), Gemeinde (소도시·읍에 해당), Landkreise (군에 해당)의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서독으로부터의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있음.
- 통독이 되기전 '90년초부터 구서독측은 구동독지역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형태의 행정지원을 제공해 왔음.
 - 이미 동·서독간 교류협력기간중 맺어졌던 도시간 자매결연 (Staedtepartnerschaft) 통로를 통해 주로 초기에는 물가지원을 제공했음.
 - 통신수단 (전화, 팩시밀리), 각종 정보유인물 제공
 - '90년대 중반부터는 새로이 자문, 세미나 강사파견, 행정인력 파견 등 인적지원이 증가하였고, 건축자재 자동차, 사무용집기 등의 지원도 행해짐.

- 통독이후에는 통합조약 제15조 ("연방정부와 구서독의 주정부는 신설 5개주 행정체계 확립에 행정지원함")에 따라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짐.
 - . 행정자문단의 조직.파견
 - . 상주전문인력 파견 : 연방내무성은 "인력파견에 따른 보조기금"을 '91.'92 각각 1억 DM씩 계상함.
 - . 구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지원
- 상기 행정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내무성, 각주내무성, 각지방행정기관 연합회측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 '90. 7.29 서독에 각주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기존의 동·서독간 도시자매결연 형태로는 구동독의 중·소도시가 망라되어 있지 않아 (구동독의 5만 이상 도시는 거의 서독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음.) 서독측으로부터 충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서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새로이 어떤 서독의 주가 구동독의 어느 지역을 관할하여 행정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함.

(10) 사법체계 확립

가. 사법조직의 개편

o 주헌법재판소의 신설

- 구동독에서는 사법에 의한 헌법적 규제통제기능이 존재치 않았으며, 국가권력기관인 국가평의회 또는 인민의회에서 법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

- 서독 기존의 각주는 연방의 모델에 따라 각주의 헌법규범을 척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이념의 보장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 운용
- 헌법규범의 정치적 통제는 더 이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독 신설 5개주에서의 헌법재판소 설치에 각주의 연방주의에 의한 헌법적 책무임.

○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의 폐지

- '90.10.3을 기하여 동독의 헌법기관이었던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은 각기 폐지되고 그 청산작업은 연방법무부와 연방 재판소 또는 연방검찰청이 분담하여 수행
- 최고재판소에 상고 또는 항소중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연방의 최고재판소들로 이송되며, 제1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주정부 소재 지구 재판소의 특별부에서 심리 계속
- 대검찰청에서 담당하던 사건은 연방검찰청 또는 각주의 검찰청에서 인수

○ 동독 법무성의 해체

- 동독법무성은 해체되어 각주정부 산하의 주법무성으로 변용
- 연방법무성은 동베를린의 구법무성 청사에 외청을 과도적으로 설치하고 법무부해체, 각 주법무부 창설, 통일적인 입법작업 등을 통괄

○ 재판소 및 검찰청의 관할과 조직개편

- 신설 각주에 서독과 같은 심급의 법원조직 (구재판소 - 주재판소 - 주고등재판소)이 정비될 때까지 기존의 지구 및 군재판소에서 재판권 행사

- 검찰도 서독과 같은 조직 (주검찰청 - 주고등검찰청)이 정비 될 때까지 지구검찰청에서 검찰권 행사하되 군검찰청은 폐지
- 소위 일반적 적법성감독의 권한, 민사·가사·노동사건 소송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관여권 등 종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폐지되고 그 직무상 감독도 과거의 대검찰청 대신 각 주법무부에서 행사

○ 행정·재정·노동·사회재판소 등 특별법원의 설치

- 동독에는 행정·재정·노동·사회사건 등을 독자 관할하는 재판소는 존재치 않았으며 특히 행정사건, 사회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관념도 없었음.
- 사회복지국가와 정치국가를 지향하는 통일이념상 서독의 모델에 따라 각 특별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설 각주의 당연한 과제
- 각 특별법원이 설치될 때까지는 기존의 지구·군재판소에서 해당사건별로 재판권 행사

○ 변호, 공증기능의 한시적 존속

- 서독의 연방변호사법, 연방공증인법이 연방단일법으로 정비 될때까지 과도적으로 동독의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관계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 계속
- 변호사, 공증인은 서독의 변호사, 공증인과 동등한 지위 내지 권한을 부여하되, 동독인가 변호사의 서독지역으로의 인가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종전의 법무부에서 행하였던 직무감독권은 각주의 법무부로 이관되고, 징계재판 등의 최종심은 연방재판소에서 관할

나. 구동독 판·검사 심사 및 재임용

- o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불법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였던 판·검사들을 사법으로부터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법치국가 수립을 위한 통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대두
- o 각 신설 5개주와 베를린주는 구동독에서 '90. 7.22 공포한 법관 선출위원회법에 의거 6명의 의원 (주정부 및 지방의회 의원)과 4명의 판사(또는 검사)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검사임용위원회 설치하여 적격자 심사 선발중
 - 심사기준 (각주마다 조금씩 다름)
 - . 구체제의 과거전력과 관련한 정치적·도덕적 하자유무,
 - . 법률전문지식 소지유무, 객관적·독립적 판결능력 유무,
 - . 재교육에 대한 준비자세
 - 법관선출위원회를 통과한 법관들도 3-5년의 시보기간을 거친 후 종신법관으로 임명
 - 통합조약에서는 '91. 4.15까지 각주별 선발문제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선발에 애로
 - . 선발위원들 자체가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많음.
 - . 심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곤란 .

다. 구동독지역 법조인력 부족과 연방정부 지원 조치

o 법조인력 소요현황

(단위 : 명)

	총소요인원	선발가능 구동독인력	추가 소요인원
법 관	5,000	600 - 700 (1,200)	4,000 이상
검 사	1,200	400 - 450 (900)	700 이상
법률집행인 (Rechtspfleger)	3,000		3,000

o 연방정부 지원 조치

- '90에 130명의 판·검사를 파견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의 50% 연방정부 부담.
- 구서독 주정부에서 실시한 판·검사 재교육에 50% 연방정부 부담.
- '91. 2.27 연방각의에서 1억 2천만 DM 상당의 지원계획 발표
 - . 은퇴한 판·검사·법률집행인 동독지역 파견 : 연금 (75%), 사례급 (35% 이상) 지급, 이전비용, 여행경비 보전
 - . 130명의 판사·검사 파견 (50% 연방정부 부담)
 - . 500명의 법률집행인 파견
 - . 기금조성 : 구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 사법기관에 채용을 신청한 법조인들에게 서독지역에 준하는 봉급 지불을 위한 기금

(11) 군사통합 문제

- o '90.10. 3 통독과 더불어 연방국방성은 구동독 인민군의 지휘권과 병력, 장비 등 모든 것을 인수하기 위해 동부사령부 (Das Bundeswehrkommando Ost)를 설치하여 '91. 6.30까지 9개월동안 통독에 따른 군사통합 문제를 관장케 하였으며, '91. 7. 1부로 동부사령부는 해체되고 해고되지 않고 잔류하게 되는 병력은 각군 예하에 소속시킴.
- o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인원선발과 감축(해고)에 따른 문제임.
 - 현재 통독에 따른 국제적인 제조약에 따라 독일연방군은 65만 (구동독인민군 포함)에서 '94까지 37만으로 감축하기로 되어 있음.
 - . 감군은 퇴직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퇴직후의 사회적 적응, 새로운 직업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구동독 인민군중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인력심사. 선발문제는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2년동안의 시보기간 (Probezeit)을 설정, 일단 선별된 자들을 시한부군인 (Soldat auf Zeit)으로 근무케 한뒤, 최종적으로 정식 군인으로 채용할 계획임.
 - . 구동독 인민군 총 9만명중 5만명을 일단 인수했는데 그중 15,000~17,000명이 장교와 하사관임.
 - . 구동독 인민군의 특징은 장교는 많은데 유능한 하사관이 부족하다는 것임.

- 0 과거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던 분단상태의 의식을 극복하고 통합 연방군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문제도 있음.
- 구동독 인민군중 50세 이상과 대령이상의 현역들은 모두 전역시켰기 때문에 구체제와 관련된 주요 권력기반은 제거되었다고 볼수 있음.
 - 2,500여명의 서독군 장교들이 동독지역에 파견되어 구동독 인민군을 큰 문제없이 지휘하고 있으나, 근무환경·보수·생활방식 등에서 차이가 상존하고 있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님.
 - 잔류 구동독 인민군들중 5천명의 장교와 3천명의 하사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제하의 민주군대에 적용하도록 2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케 하였음.
 - 그러나 봉급체계가 다르고, 구동독지역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동·서독군간에 갈등이 존재함.
 - . 군인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서독수준의 60%에 해당하는 봉급 (점차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격차를 줄어갈 계획이지만)을 받고 있는 바,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병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격차를 해소할 방침임.
 - . 최근 ('91. 1~5간) 동부지역 사령부에 접수된 1,600건의 소원수리(Eingabe)중 700건이 봉급차별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80건이 인간적인 차별대우를 호소하고 있음.
 - . 국방성이 산정한 바에 따르면 동·서독 군시설 (특히 내무반, 위생시설·취사장 등)의 격차를 줄이는데 최소한 160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동독이후 예산중 국방비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격차해소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음.

- 통독과 함께 독일연방군에 인수된 장비와 탄약들은 감축폐기될 예정인데 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
 - CFE 협정에 의거 전차·전투기, 대포, 함정, 미사일 등 5대 무기체계에 대해서 NATO 16개국이 각자 얼마만큼의 무기를 줄일 것인가가 결정되었는 바 구동독 인민군의 장비는 MIG-29기 (성능검사에서 우수한 비행기로 평가, 동독인민군이 상당한 부속품 재고량을 갖고 있어 10~15년 사용 결정)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비를 폐기 또는 판매할 계획임.
 - 장비(탄약 포함) 처리시 제3국에 판매문제는 현존 조약상 명시된 제한규정은 없으나, 가능한한 NATO 회원국에 판매할 예정이며, 연방안보이사회에서 매건별로 가부를 결정할 예정임.
 - 구동독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탄약 30만톤의 처리가 가장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약폐기에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산정조차 못하고 있음.
 - 탱크 1대를 폐기하는데 평균 10만 DM의 비용이 들며, 약 2,800대를 폐기해야 하므로 그 비용만 2억 8천만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구동독 주둔 소련군은 '94말까지 점진적으로 철수할 계획임.
 - 통독당시 소련인은 군인 34만명과 민간인 21만 등 총 55만명이었으며,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병영·훈련장 등의 부동산 가치는 1,000억 DM으로 추정되고 있음.
 - '94까지 매년 4~5개 사단이 철수할 계획이며 약 4,000기에 달하는 각종 무기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

- 잔류 소련군의 탈영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소련 군대의 기강 해이와 독일의 경제·사회적 매력 때문에 귀향을 거부하고 현재도 250만명의 소련군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있음.
- o 통독과 더불어 동독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기밀 서류 2만 6천건이 독일연방군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다수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 군사활동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음.

(12) 교육통합문제

가. 보통교육 (초·중·고)

o 학제의 변경문제

- 구동독지역에 단선형 학제 대신, 구서독의 다원적인 학제가 도입됨.
 - . 10년 공통과정에 2년의 아비투어 과정 뿐이었으나, 초등과정 (국민학교, 1-(4)6학년), 중등과정 (종합학교, 김나지움, 실업학교 (5)7-10학년), 고등과정 (종합학교, 김나지움 11-13학년)으로 분화됨.
 - . 학제의 변경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94년까지 과도기간동안 기존학제의 졸업증 및 자격증이 그대로 인정됨.
- 교육은 주정부 소관임으로 신설 5개주 (구동독지역)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방향은 구서독을 기준으로 정비되어 질 것임.

o 기존 교사의 해고 및 재교육 문제

- 각주별 공통적인 교사의 해고기준

- . SED의 대중외곽 청소년 조직이었던 동독 자유청년연맹 (FDJ)의 간부, SED 각 지부 지도위원, 국가보위부 (Stasi) 및 동독인민군 (NVA) 및 국가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예 : 유아, 초등교육의 수준 차이가 큼. 학업이후 준비과정인 예비교육기관 2년이 구동독에는 없음.) 구서독의 모형을 따를 것임.
- . 사회과목과 영어과목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시급함.
- . '89 후반기 모드로 정권하에서 해당전공지식이 없이도 교직을' 받은자.
- . 국가보위부 (Stasi)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했던 자
- . 다른 전공없이 국가 및 사회강좌 (Staatsbuergerkunde)를 강의한 교사
- . 러시아어 교사
- . 동독어린이 단체인 "Pionier Gruppe"의 지도교사

- 각주별로 상기 기준에 의한 교사선발은 '91.5월까지 서면 질의를 통해 마쳤으며 현재는 각 주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공무원으로서 최종 채용여부는 제반자격조건 (헌법정신에 충실, 해당자격 소지)이 충족 되어야 결정됨.

- . 각주별로 결정된 Stasi 문서 보관소 (Ganck-Behoerde)에 잔류교사들이 과거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중임.
- . 가장 빠르게 학교체계를 확립한 Brandenburg주는 34,500명의 교사중 6,500명을 해고했으며, 이중 1,000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됨.

- 구동독지역 교사들은 구서독지역에 비해 현재 60%의 봉급을 받고 있으나, 수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80% 정도의 실질임금을 받고 있음.
 - 잔류교사의 재교육문제는 교사교육법(Lehrerbildungsgesetz)을 입안중임.
 - 구동독의 교사의 자질은 구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짐.
- o 교과서 배급
- 통독이전에도 3천 3백만 마르크의 예산으로 구서독이 구동독에 교재 공급
 - 예산상 독일어, 역사, 지리학, 영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8~12학년 학생에 제한하여 교재를 공급했었음.
 - 구서독에는 학교교재 출판사 (Volkundwissen Verlag)가 단 1개 밖에 없었으나 통독이후 이 출판사도 구서독 출판사에 병합되었음. 구동독 6,000개의 학교에서는 600종의 교재중 학교별 선호하는 교재를 고를 수 있게 됨.
 - 신학기를 맞아 1,600만권의 교과서가 단시일내에 구동독 지역에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출판사 사정으로 인해 교과서 부족현상 극심
 - Curriculum Reformskommission이 결성되어 현재 교과내용 논의중.
- o 학교시설 확충
- 연방정부는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Aufschwung Ost)를 만들어 구동독 경제재건을 꾀하고 있는 바, 이중에 50억 DM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학교, 병원, 사회보호시설 (Soziale Pflegeeinrichtung) 신·개축 비용으로 주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음. 그안에 학교시설비로 지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발주하고 있음.

- 각주별로 세금에 따라 할당되는 예산이 다르므로 주별 경제 능력에 따름.
- 구동독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규모가 작으므로 학교건물로 계속 쓰이는 경우엔 장기적인 증축계획 필요

나. 대학교육 (대학교 이상)

o 구동독대학 잔재 청산

- 통합조약 13조에 의거 신설 5개주와 베를린 주정부는 '91. 1. 1부터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구체제와 관련된 학과와 연구기관을 철폐키로 하고, 해당 연구종사자는 이 기간동안 기본봉급의 70%를 받으며 전직 또는 퇴직시키기로 결정함.
 - . 동 조약 13조에 의하면 기존동독의 학술·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행정기관에 대해서 주정부는 주정부 업무 관할에 속하는 그 존속여부와 철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관련학과는 이념문제와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학과로 해당자는 약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철폐학과
 - .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관련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연구소
- 또한 SED 정권 붕괴이후 대학내부적으로 구체제와 관련한 잔재 정화작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통독이후 동독지역 대학에도 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학 자치권이 도입되고 대학교육기본법에 의해 주요정책결정 위원회 (Beschlussgremien)의 교수들에게 자율권이 보장되었는 바, 과거 구체제와 관련있는 교수들이나 무능력한 학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과거의 연고를 활용, 동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였음.
 - 기껏해야 학과의 이름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사회이론"으로 "과학적 공산주의"를 "과학적 정치사회학"으로 바꾸는 정도에 그쳤음.
 - 한편 이데올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학 학과외에도 특수한 연구기관과 같은 경우는 주정부의 현재 재정보조능력이 없어 철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o 구동독 대학교육 쇄신을 위한 연방정부 및 신설 5개주 전문가 회의 결과
- '95년까지 교육내용 및 시설 서독수준으로 개혁·현대화
 - 총 소요액 170억 DM은 연방정부에서 75%, 각 주정부 25% 부담.

(13) 과거청산 문제

가. 구동독 정권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

- o 통합조약 17조에 의하면 과거 동독 공산정권의 반법치국가적 행위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통독이후 입법권자가 적절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통합조약에 의하면 복권·보상 (Rehabilitierung)과 거거형사처벌 무효화 판결(Kassation)의 2중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되어 있음.

- 현재 10만으로 추정되는 과거 구체제 피해자인 동독주민들이 각각 법원에 복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연방법무성은 '91. 7월 관계법률안인 "구체제 불법행위 청산법"(Unrechtbereinigungsgesetz)를 제출하였는데 국회 계류중임.

o 법무성이 마련한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상액 문제인데 구금자들의 구금일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구금일당 보상액 결정문제와 관련, 정부의 재정형편이 문제가 되었었음.

. 현재 법무성안은 구금기간 1달을 기준으로 모든 피해자가 300 DM을 기본적으로 보상받되 서독으로 이주하지 않고 동독에 잔류했던 사람은 추가로 150 DM을 더 받아 450 DM을 지급하기로 했고, 또한 피해자중 노약자, 병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구속자 지원 기금" (Stiftung fuer ehemaliger Haefthlinge)에서 추가로 150 DM을 더 받아 600 DM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다만 이제까지 베를린 장벽 이전에 동독을 탈출하거나 이주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피해자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액을 구금한달 기준 450 DM이 아닌 300 DM을 책정해 놓고 있음.
- 현재 추진중인 법안에는 피해자 보상의 범위를 우선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자와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조치된 사람,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국경근방에 살던 사람중 강제이주조치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그러나 체제에 저항하다가 받은 많은 직업상 차별(강등, 해고, 직업교육 방해, 승진기회 박탈),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이러한 피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금과 같은 정도의 피해라고 많은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구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생계보조 형식의 지원을 규정한 구속자 지원법(Haeftlingshilfegesetz)을 보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보상피해의 범위를 넓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나치만행에 대해 피해보상을 규정한 연방피해보상법(Bundesentschaedigungsgesetz)에 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인 SPD와 피해자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음.
- * 연방피해보상법에 의하면 "정치적, 종교적, 세계관적, 인종적인 차별로 육체와 건강, 자유,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직업적, 경제적 성장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직업상 차별 및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은 법무성 내에 전담과를 설치하여 작업을 추진중인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재정형편을 고려, 그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이제까지의 구속자 지원법에는 과거 동독의 체제에 "폭력을 사용하여"(gewaltsam) 저항한 경우(특히 '53. 6.17 민중봉기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법무성 보상법안은 이들 전부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또한 소련점령통치하에서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이번 피해자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러한 입법조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게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보상의 혜택을 많이 못받을 것으로 피해자 대표들은 안타까와 하고 있음.
 - 실제 피해자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치적인 구금자들의 70% 정도가 나이가 이미 65세 이상으로 연로하며, 또 많은 구금에 따른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함.
 - 반면 구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복권·보상 신청서류가 쌓여 있어 이를 심사 확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 예를 들어 Erfurt시 같은 경우는 3명의 판사가 3,000여건의 서류를 심사해야 하는데, 그 처리는 빨라야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함.
 - 이번 법무성 법안은 이러한 복권·보상 및 형사상 재심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많은 피해대표들은 또한 물질적 보상에 앞서 우선 자신이 죄가 없었고 단지 정치적 동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명예회복에 관한 선언이 연방하원과 같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함.

나.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가해자들 처벌 관련

- 구체제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폭행사태에 대해서는 신설주들의 사법체계가 확립되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할 방침임.

- 기존 서베를린 검찰이 주축이 되어 동베를린 검찰을 흡수, 가장 빨리 사법체계를 확립한 베를린 검찰은 "정권적 범죄 행위" (Regierungskriminalitaet)를 전담하는 임시조직을 편성하여 과거 체제수호를 위해 법치국가적 질서에 어긋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치국원, 국가안보위원회, 국경수비문제를 담당했던 국방성, Stasi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 호네커가 지난 3월 소련으로 탈출한 이후 베를린주 검찰은 4명의 구동독 당과 정부 고위급 인사를 베를린 장벽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 바 있음.
 - . 이들 4명은 '74. 5. 3 당시 Honecker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안보위원회(8명으로 구성, 주요국가 안보사항을 다룸)의 일원으로서 동 회의에 참가하여 베를린 장벽을 사수하기 위해 국경탈출자에 대해서 사격명령(Schiessbefehl)을 내리는 결정에 동의한 인물들임.
- 테러조직인 적군파 (RAF)에 대한 방조·지원 혐의로 전 Stasi 부장과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음.
- 현재 5,000명으로 추정되는 과거 동독 스파이들의 처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입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입장임.
 - .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형식적으로는 같은 스파이활동이었지만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거 서독의 정체성 (Identitaet)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독의 스파이들은 서독정부의 비호하에 이러한 활동을 한 반면, 동독의 스파이들은 당시 서독에 대해 서독의 내적·외적인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위해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격적인" (offensiv) 동독스파이 활동과, "방어적인" (defensiv) 서독 스파이 (BND)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4) 언론체제의 재편

가. 방송체제

o 구동독 방송 해체와 신규방송사 설립

- 통일독일정부는 구동독에서 당과 국가의 시녀노릇을 하던 방송의 해체작업을 위해서 동독방송해체 전권위원 (Muenfenzl)을 임명하였으며, 동인 주도하에 현재 동독국영 TV사에 근무하던 7,500명의 인원중 3,100명을 해직시켰는데, 금년말 해체작업이 끝날때에는 4,000명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함.
- 구동독방송의 해체작업과 함께 신규방송사 설립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바, 신규 5개주의 방송사 설립현황은 아래와 같음.
- 신규 5개주의 남부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
 - . 독일 신규주(구동독)의 남쪽에 위치한 삭센(Sachsen), 삭센-안할트(Sachsen-Anhalt), 튀링겐(Thuringen) 등 3개주는 "중부 독일방송(Mitteldeutscher Rundfunk : MDR)"을 설립하였으며, 임시사장에 Udo Reiter를 임명하였음.
 - . 중부독일방송(MDR)의 사장직은 드레스덴(Dresden), 에르푸르트(Erfurt),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 소재 하게 될 주 방송국의 장이 교대로 하게 될 것이며, 본사의 소재지는 라이프찌히(Leipzig)가 될 것이라 함.
 - . 중부 독일방송은 91. 8월 ARD의 가맹사가 되기 위한 신청을 이미 마쳤음.
- 신규 5개주 북쪽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
 - . 북부지역에 속한 동베를린(Ost-Berli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Mecklenburg-Vorpommern) 등 2개주 관할의 공영방송의 장래는 남부 지역에 비해 확실치 않음.

- "북동독일방송 (Nordostdeutscher Rundfunk)"란 명칭으로 위 2개주가 하나의 방송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맥클렌부르크-포포머른 주정부와 주의회의 대립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통일독일후의 방송체제 개편을 위한 제반조치

- 1991년 7월말 16개주의 수상들은 기존 구서독 11개주들이 체결한 "방송구조 재편에 관한 협정 (1987.4월)"을 통일후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처하려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동 회의는 ZDF의 방송협의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정당간 구성비 문제와 각 방송공사의 유럽 미디어와의 협력관계에 있어 일부 주간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성과없이 끝났으며, 91. 8.31일 재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특히 분단상황하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서독의 국익 홍보를 해왔던 라디오방송, 즉 Deutsche Welle, Deutschlandfunk, Rias 방송 등 세가지 방송의 개편도 논의되고 있음.
 - 이 세방송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연간 약 6억 마르크 (약 2,400억원) 지원해왔음.
 - Deutsche Welle (독일해외라디오방송)는 해외홍보방송이라는 성격상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
 - Deutsche Welle는 이를 계기로 Deutschlandfunk (동독인 대상 라디오방송)의 외국어 프로그램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Deutschlandfunk는 이에 대해 전독일지역을 카바하는 독립된 하나의 방송사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음.

- . Deutschlandfunk와 Rias 방송개편과 관련 정당간의 이견도 만만치 않은데, 기민당과 신규 5개주의 주수상들은 라디오방송이 없는 독일 제2TV 방송공사 (ZDF)가 두 방송을 인수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시민당이 두방송을 독일전역을 카바하는 두개의 방송 (문화, 정보)으로 개편, 각각 ARD와 ZDF의 산하에 놓이게 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음.

나. 구동독 신문·잡지 개편

- o 구서독의 전국에서 판매되는 유력일간지들이 독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함.
 - 동독주민 생활수준에 비해 신문의 값이 너무 비싸고, 신문량이 많아 새로운 독서습관에 동독인들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임.
 - 흥미위주의 짤막한 기사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판 신문들의 인기가 늘고 있음. (빌트지, 슈퍼짜이퐁 등)
- o 구서독의 대형 신문·잡지사들이 구동독의 신문사를 대부분 구입하고 있음.
 - 신탁청은 1명의 서방신청자에게 한개의 지방신문을 매각하기로 함.
 - 정치적 색채가 강한 구동독 정당신문은 존재하고 있으나 독자는 격감되었음.
- o 잡지의 경우는 청소년층을 겨냥하는 잡지, 서독의 여성지, TV 등 방송프로그램 잡지가 인기가 있음.

(15) 구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가.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처리

- 과거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은 다자간이 600건, 양자간 2,400건으로 총 3,000여건에 이룸
 - 과거 동독정부는 서독과의 외교경쟁에서 독자적인 국가적 승인을 최대의 외교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외국과 될수 있으면 많은 조약·협정을 체결하려 하였음.
 - 정치·군사, 경제·무역, 환경, 문화·과학, 보건, 영사, 노동·사회(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분야 등에 이르는 협정중 서방제국과는 다자간 협정을 주로 맺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이전 동구권 및 제3세계 국가와의 양자간 협정 처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동독이 통독전에 맺은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통합조약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양자간 조약·협정의 경우는 통일정부가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협의(Konsultation)를 거쳐 계속 유효(Fortgeltung)·조정(Anpassung) 또는 효력상실(Erloeschen) 여부를 결정함.
 - 이 작업은 5가지 기준에 의해 진행됨.
 - 신뢰보호
 - 관련당사국들의 이해
 - 서독측의 계약상 의무
 - 자유·민주·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따라
 - EC의 관할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독일이 가입하려고 할때 모든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를 함.
- o 그러나 통합조약 내용은 단지 외국의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앞으로 협상을 거쳐 처리할때 기준만은 언급하고 있을 뿐, '90.10. 3 통독시점까지 동독이 맺은 조약과 협정으로 확정된 기존관리는 과거 서독이 맺은 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더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여기에는 통합조약 8조와 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동화 (Rechtsangleichung)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봄.
 - . 즉 기본적으로 서독이 맺은 조약과 협상이 우선하여 동독 지역에까지 확정 적용됨.
 - . 다만 동독이 맺은 조약·협상 내용의 계속 유효성 여부는 통합조약 제9조의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서독의 법령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유효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통일된 독일과 새로운 조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
- o 현재 연방외무성은 상기 원칙에 의거 각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각 주무부처와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확정할 계획임.
- 국경문제와 관련된 구동독의 조약들은 통독후 새로운 독·소간 독·폴간 우호·협력 조약을 통해 그 내용이 계속 유효함.
 -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조약·협정 등은 '90.10. 3을 기준으로 수지결산 잔액 (Saldo)을 확정하여 새로운 의무이행과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여 새로운 조약·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 UN 및 그산하기구, CSCE등 동·서독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정의 경우는 통일독일이 단독대표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 동독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통일독일이 더이상 가입할 의사가 없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의 경우는 관련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할 의무가 없어,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의 회원자격은 자동효력상실된 것으로 봄.
- 양자간 조약·협정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와는 이미 협의(Konsultation)을 끝냈으며, 소련과 협의를 진행중이나 소련 사태로 진전이 안되고 있음.

나. 동독의 대외채무 및 채권처리

- o '90. 7. 1 (화폐·경제·사회통합 발효시)까지 서독 및 제3국에 대해 동독이 지니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동독시까지 계속 유효한 경우 연방재무장관의 지시와 감독하에 청산됨.
 - 우선 화폐통합에 따라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DM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바, 환산비율은 2:1임.
 - 통독이후 체결될 각 당사자국과의 채무 및 채권이전 협정 체결시에는 상기 5절에서 언급한 통합조약 12조의 기본 원칙이 적용됨.
 - DM 환산비율이 2:1로 책정되어 채권과 채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재무성은 기금을 조성하여 그 차액을 보상해 줄 방침임.
 - 해당 채권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한 재무성의 지시로 신탁청에 의해 신탁관리되거나 연방재산으로 이양됨.

- o 동독이 회원국으로 있던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기구 특히 과거 COMECON에 대해서 지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통독이후 특별관리 대상이 됨.
 - 구 COMECON 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는 참가국들의 시장 경제적 질서로 개혁과정과 해당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EC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감.

(16) 체육통합 문제

- o '90.12.15 신설 5개주의 주립체육협회가 독일체육연맹(DSB)에 가입함으로써 45년이래 분단되었던 독일체육계는 드디어 통일이 되었음.
 -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체육분야 최고기관인 독일체육연맹은 구동독의 신입회원 200만과 더불어 회원수가 2,350만명이 되었으며, 총재에 Haus Hansen이 재선됨.
 - 내무성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7차 연방체육 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체육예산을 2억 4,800만 DM으로 책정되었는 바, 그중 1억 3,500만 DM이 신설 5개주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서독 스포츠의 기구적 통합은 일단 거의 완료되었으니 도핑을 무릅쓰고서라도 스포츠를 이데올로기의 교련장으로 보던 SED의 독재정권의 잔재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
 -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구동독 스포츠의 "업적"으로 지칭되는 초정상급 선수의 능력잠재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35,000개의 구동독 체육시설의 확장과 개축에 필요한 돈은 8억 DM인 것으로 나타남.

- 정상급 스포츠는 연방정부의 국가지원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음.
 - 스포츠의학, 트레이닝 진단법, 교육학적·심리학적 상담 등을 포함한 완벽한 서비스를 갖춘 15개의 올림픽 지원 기지에 구동독의 6대 스포츠 클럽이 합류하여 정상급 스포츠인 육성의 중심지가 됨.
 - 통합에는 인력감축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나 동·서베를린의 스포츠 통합으로 Berlin이 독일의 최대 올림픽 지원 기지화 하였으며, 포츠담 소재 구동독군 스포츠클럽은 독일연방군 체육학교의 분교가 됨.
 - 구동독의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하던 24개의 구동독 청소년 스포츠학교는 통독후에도 계속 유지 존속되고 체육장려 김나지움이나 실습학교의 귀감이 되도록함.
 - 구동독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던 6,200명의 정상급 운동 선수들중 1,500명만이 독일체육 보조기금으로부터 2,000만 DM 받으며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 구동독에서 주업으로 종사하던 5,000명의 트레이너의 진로 문제가 심각함.
 - 그중 260명은 계속해서 주임 트레이너로 근무할 수 있으며, 300명은 명예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의 인수 및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구서독 트레이너의 능력과 비교할때 구서독 트레이너의 직장의 위협이 되고 있음.
 - 구동독 체육협회(DTSB)의 유명 트레이너들은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함.

- 기초적 스포츠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한 협회가 자생력이 있어야 하나 인사 및 물질적, 재정적으로 공고한 기반은 아직도 조성되지 않아 생존문제가 매우 심각함.
 - 지금까지 Lotto-Totto (복권) 법규가 없으므로 구서독식 모델에 따른 주립 체육협회의 수입이 조성될 수 없으며, 서독지역의 Lotto 수입에 의한 지원의 가능성 조차 현재 많은 기관들이 신탁청의 관리하에 있어 연대의식적 재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0 소홀하게 방치된 체육시설의 정비역시 전반적으로 재정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과중한 부담거리임.
- 구동독정권의 체육도시라는 간판이 붙었던 Leipzig의 경우 중앙구장의 현대화에만 6억 DM이 필요하나 91년도 보수 유지비에 겨우 4,000만 DM이 책정되어 있음.

統獨以後 獨逸情勢 不安의 理由

“지금부터 닥쳐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 함부르크 출신으로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 랄프 다렌도르프 경은 독일을 밖에서 볼때 존경심은 사라지고 악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불쾌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독일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

Die Zeit 92.5.15

- o 독일이라는 국가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불길함을 예고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노동자들이 봉기하며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불평불만을 노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안의 원인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o 독일정부는 지쳤고, 새로운 문화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틀림없다. 그러나 유럽의 그 어느국가의 정부가 과연 지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작년 12월 Maastricht에서 개최되었던 유럽 평의회에서 25명의 수뇌들(EC 12개국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12명, 12개국 외무장관, EC 집행위원장)은 네델란드 여왕과 기념촬영을 했다. 마스트리트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수뇌들중 그 1주년 기념일에 절반이상이 그 권좌를 상실하게 된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서유럽은 한 시대의 종말에 처해 있다. 과연 그 누가 새롭고 힘차고 희망에 가득찬 시대를 제시해 줄 지 아무도 모른다.

○ 이미 얼거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은 비단 독일의 문제점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불길한 주장의 주요근거는 독일통일인데, 독일은 통일후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모험의 비용은 너무나 비싸고 통일비용은 너무 엄청나 산정하기 힘들어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언대의식은 나약해지고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노동조합과 고용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만을 위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세계속에 비친 독일의 모습은 심각하다. 과연 독일이 소유럽에서, 대유럽에서 나아가 대서양에서 전세계적인 문제점과 올바르게 대처하게 될지, 대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 아무도 모르고 있다. 결국 통일은 거대한 실수였나?

○ 독일통일이 거대한 실수가 아니었음은 틀림없고 더구나 독일불안의 원인을 통일에만 돌리는 사람들의 판단은 너무 근시안 적이다. 동독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서독인들이 마구 동독당을 유린하는 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만 하다. 그들은 간혹 서독의 침투에 대하여 보복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서독신문 구독을 거부하기조차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멘클라투라가 독점적 권력을 향유하던 정권이 멸망한뒤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 밖에 없었던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그래도 동유럽의 그 어느 국가의 골짜기보다 훨씬 깊지 않고 수월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 서독사람들은 인생이란 결코 궁극적으로 마지막 승리를 가져주는 긍정적 사건들로만 구성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불안은 처음에는 일단 고용주 같은 강력한 사람들에게 향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외부로부터 정주민, 이주민 등 힘이 약한 새로운 주민들에게 향했다가 결국 신연방주(구동독지역)에 있는 자국민을 향하게 된다.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도시가 동독과 함께 부유하게 되었으며, 실직상태에 처했었거나 승진의 기회가 막혀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독일전체가 통독으로 덕을 보고 있다. 통일독일은 국제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이나 이와 무관하게 발전을 계속했다. 세계 도처에서는 기본적인 경제문제 때문에 전전공공하고 있는 동안 독일은 늘 있어왔던 비

용을 수반하는 분배를 둘러싼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 독일통일이 곧 현재 재난의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듯 싶다. 독일통일이 재난을 촉발했을 수도, 또는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으나 엄청난 불안의 원인은 다른곳에 있다. 독일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세계경제로부터 오는 거센 돌풍을 수년간 잘 참고 견뎌왔다. 독일은 높은 경상수지의 흑자를 보여왔고 안정된 내적풍요를 보장하면서도 경쟁자에게 실질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나라이다. 독일은 자기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훌륭한 스웨덴이 되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게임이 잘 풀려가지 않는 순간이 갑자기 도래하였다. 세계경제는 독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방지해주던 보호막이 갑자기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더이상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되겠다는 점을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그리고 뒤따라 시민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도전이라는 것이 심각하고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되었다.

○ 그렇다면 독일이 유럽의 일본 내지 유럽의 스웨덴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전세계에 걸쳐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독일? 그곳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와 유명은행과 대기업간의 조직적인 협조체제 때문에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 부분이 위협에 빠지게 되면 다른 부분이 돕는다는 것이며, 만일 어떤 국외자가 독일에 발붙이려고 하면 일련의 독일인들이 그를 막아 버린다는 것이다. 80년대에 걸쳐 독일은 다른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도 적었을 뿐더러 다른 선진산업국들보다 훨씬 적은 기업이 도산했다는 사실 역시 독일적 특징이다. 통독이후 구동독에서 비토소 주변국의 대기업이 큰 어려움 없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막론하고 아직도 시장을 제한시키는 독점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 실례중의 하나가 연방체신(Bundespost)이다. 독일에서는 그 어느곳보다 더 시장경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유럽의 여타 국가보다 훨씬 시장화 되어 있지 않다.

○ 물론 “사회복지적” 시장경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적 조합주의 (Wirtschaftlicher Korporatismus)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300만명의 실업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망명신청자들은 국가로부터 훌륭한 대접만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보다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잘 훈련된 막강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구가 있기도 하다.

○ 스웨덴에서는 10년 전까지 국가공무원 비율이 20%를 상회했으며 거의 30%나 되는 사람들이 재정이전 소득(Transfereinkommen)의 수령자들이었다.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이 숫자가 그리 높지는 않은듯 하다. 그러나 공직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중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준해 보상을 받고 있음은 괄목할만한 사실이다. 본에 있는 경제 로비스트들이 장관급 봉급정도를 받고 있다고 해서 놀랄일은 아니다.

○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그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부담율(Staatsquote)은 자유의 확보에 위협을 초래한다. 자유 역시 무상이 아니라 유가로 사들여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나라나 마찬가지로 (독일같은) 수출의존 국가는 국제경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국제경기는 더이상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갑자기 이와 같은 사실은 독일에서도 반대효과과로 나타나고 있다. 장래가 더이상안정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물가를 정확하게 물어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그들이 더이상 (값비싼) 독일상품을 구입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구동독지역 독일인들이야 어쨌건 이와 같은 구매형태가 구서독 사람에는 못미치고 오히려 저렴한 일본제 승용차의 신뢰감이 독일제라는 권위를 앞지르고 있다. 신언방주와 (동유럽 및 걸프전으로 인한 미국에 대한) 재정이전은 국가의 재정부담율을 높이고 재정조달 능력을 약화시켰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뒤따른다. 즉 공휴일과 휴가일수가 가장 많으며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과 같은 나라가 근로자를 위한 최고액의 사회복지 소득과 최대의 직장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한번 파국이 도래할 것인데 그것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태는 더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 프랑스는 1983부터 경제구조를 변환시켜 왔는데 양득간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의 체제수립기준(Konvergenzkriterien)을 충족시키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독일의 경우는 인플레이가 상승하고 이자율은 너무 높으며 국가부채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악순환에 처해있다. 따라서 먼저 과거의 안경을 깨뜨리고 난후 새로운 구조적응을 해야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공서비스는 더이상 이런 상태로 비대해져서는 안되며 독일의 사회복지 역시 더이상 경제력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투쟁 대신 훨씬 유연성(Flexibilität)이 많아져야 될 것이며 가망이 없는 기업의 도산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구조변경에는 매우 큰 진통이 뒤따를 것이며,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전후의 독일은 다행스런 시기였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었고 경제전체가 점점 호전되어가는 시기였다(스페인 80년대에 이와 비슷한 행운을 누렸으나 동유럽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가 불가분의 관계로 걸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Harold James는 독일인의 정체성에 관한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독일민주주의의 최대약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적 성공과 경제적 성공이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경제적 실패는 항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경제위기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반면 독일의 경우(유럽의 다른국가에서처럼) 경제위기는 최소한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바이마르공화국의 몰락도 간접적으로는 이 경제의 위기에 기인한다.

○ 그렇다고 오늘날 독일의 사회복지적 경제가 흔들리는 징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주변여건은 물론 내적구조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독일은 기민당에서 사민당으로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2중적 정권교체라는 실험"(Test des doppelten Machtwechsels)에 성공했다. 국가적 위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위협도 없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잘 인식하고 있듯이 역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질소득의 하락, 점증일로의 불만족 상태 등은 사회반항적

심리를 조장하여 망명신청자에 대한 증오 및 극우 공화파에 대한 지지투표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공동체(EC)에 대한 비관론에도 충분한 근거는 있는데 만일 유럽 비관론이 결합된다면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 이와 같은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독일은 더이상 사치를 향유하지 못할 것이며, 풍요와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생존문제와 동떨어진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생존문제란 오로지 환경보호주의자들만의 주장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 명료성이라는 것은 비단 철저한 진실만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조언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실질소득과 사회복지적 소득이 아무런 대가없이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연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흘리는 땀은 천금같은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지난 수년간, 나아가 지난 수십년간 그랬듯이 항상 편안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1992년도의 독일의 불안정을 극외자로서 먼 발치에서 새로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가까운 미래나 머나먼 미래를 결정해 줄 몇가지 테마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첫째, 독일은 1982년도에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혁을 체험하지 않았다. 그대신 독일은 정당정책적 기교와 조합주의적인 요소가 영킨 가운데 국가나 대규모 사회전체보다 개인의 이니셔티브와 활동이 조금 더 두드러졌을 뿐이다. 전술한 재정 이전 급부라는 관점으로 볼때 매우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일단 소득세율이 대대적으로 인하된 다음에야 비로소 변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비단 그 의미 자체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국민경제로 하여금 유동성이 있게 하고 적응력이 있도록 해주는 목표이다.

○ 둘째, 독일식 사회복지국가의 평가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 노조측은 그들이 주장하는 소득증가요구로 인하여 경제발전이 이

러한 사회복지삭감이 해가 된다고 비난할 것이나 국가의 사회복지계획은 이보다 훨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다. 노인에 대한 장기간 간병은 공동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만일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병이 우선시 되려면 질병시 임금계속 지불은 후일이나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근로자들이 인정하여야 한다. 증가하는 실질임금이 항상 고액의 사회복지 급부제공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없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 세째, 이제부터 다가올 독일경제의 구조변경은 대대적인 사회복지적 과제를 안고있다. 무엇보다도 목표지향적 교육정책에 대한 과제가 중요하다. 만일 국가의 독점권이 폐기된다면, 만일 시장이 서서히 개방하면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독일상품을 밀어부치게 된다면, 만일 도처에 걸쳐 관대하게 눈감아졌던 초과 고용상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인간들로 하여금 구조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서독인중에는 오늘날 동독인과 같은 상태가 될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아마도 동독지역으로부터도 배울점도 많게 될지 모르겠다.

○ 네째, 독일 외교정책의 기본노선결정에 있어 진실하고 새로운 사상을 담아야한다. 지금까지 독일은 유럽과 국제기구로부터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주위에서 의심을 하면 항상 돈을 지불할 수 있었고 그러면 평화가 보장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 우리는 사회복지적인 현재 상태를 건드릴 수가 없다. 스트라이크도 계속될 것이며, 불안과 소요도 있을 것이며, 극우정당에 대한 등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얼마간 이해할만하고 부분적으로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슬금슬금 다가오던 위기가 점점더 급격하게 전개되는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반신반의 하면서 해결될 문제를 방구석에 숨겨두고만 있다.

韓半島 統一을 위한 統獨敎訓

('92. 6)

1. 이 자료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Roland Bleiker, Doug Bond, 이명수 교수가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역학에 대한 합의에 관해 공동으로 작성한 영문 논문 (봉독연구자료 100 - 163)을 번역·요약한 것임.
2. Roland Bleiter, Doug Bond, Myung-Soo Lee, " Unification from Below? German Unit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Dynamics" in: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 92-4,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 서문

- 0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은 전후 양극체제하에서 더욱 공고화 됨.
- 0 이념적 장벽과 양극체제가 와해됨으로써 독일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외적 장애가 사라지게 됨.
 - 그러나 통일된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는 쌍방간의 화해 움직임이 있긴 하나 여전히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된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음
- 0 본 논문의 목적은 통일의 선례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가능성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있음.
 - 한반도 통일은 두 가지 주요 변수, 즉 지속적인 (단계별) 통합접근과 쌍방간의 이념적 관용에 달려 있음.
 - 이러한 선결 조건은 개방적 사회를 지향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음.

1. 독일과 한반도 통일역학의 동이(同異)

- 0 전후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은 보다 평화로운 신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음.
 - 전후 양극 국제질서가 잠정적 분단을 지속적인 민족분단으로 장기화시킴.
- 0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와 소연방의 해체로 독일과 한반도내에서의 민족내부간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함.
 - 마침내 독일은 통일을 이룩했지만,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상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족내부간 역학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음.

2. 통일역학의 수여버스

가. 폭력.본쟁의 민족적합의 형성에 미친 영향

0. 한국의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한국이 독일보다 유리한 통일여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 한국은 7세기 통일 신라시대 이래로 통일국가였던 반면,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의 통일이후로 통일역사가 짧음.
- 독일의 분단은 전승국에 의한 패전국 처벌의 결과인 반면, 한반도 분단은 세력경쟁(Power struggle)의 무고한 희생물임.
- 동.서독에는 40만 NATO군과 36만 바르샤바 조약군이 주둔한 반면 한반도에는 미군 4만명이 남한에 10여명의 군사고문단이 북한에 있을 뿐임.

0 이러한 이유들은 동서독이 직접적 군사대결을 피할수 있었던 반면, 남북한이 3년간의 내전을 겪었다는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음.

- 내독관계는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상호적대감, 증오, 불신, 이념교육 등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음.

0 남북한 상호 적대적 접근은 심리적 긴장을 조성, 실질적 화해를 저해

- 5.16혁명, 한일국교정상화, 10월 유신, 광주사태 등의 한국내 소요와 폭력사태는 북한이 선전용으로 이용,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민족 내부간 합의형성에 악영향을 미침.
- 남한언론도 비록 용어선택이 덜 자극적이지만, 남침용 땅굴과 북한주민귀순 등을 선전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전복기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를 대변함.

0 남북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주요원인은 남북한간의 통일접근 방법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념적 차이와 전쟁과 관계된 깊은 심리적 장벽 때문임.

- 상호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증오가 없었던 독일의 경우 국내정치에서 이념적, 지정학적 장애가 제거되자 말자 통일을 위한 희망찬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음.
- 따라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한은 우선 상호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잠정협정(modus vivendi)에 도달하여 건설적이고 타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함.

나. 사회적 개방과 통일역학 : 강제와 동의 영역간의 상호작용

- 0 동서독과 남북한간의 역학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공산독재정권의 안정성 여부임.
- 0 동독과 북한은 각각 Stasi와 사회안전국에 의한 사회침투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협박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음.
- 0 또한 이들 국가는 메스컴과 교육제도를 장악하여, 지배계급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이용함.
- 0 이러한 유사한 강제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정권 반대세력이 지배적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능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통제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보소스를 정부검열 메스컴에만 국한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동독보다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말살)력이 월등함.
 - 한편, 동독주민들은 수십년간 외국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서독 텔레비전을 시청함.
- 0 동독과 북한간의 사회에 대한 정권 지배력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면에서 민족내부간 역학에 영향을 미침.
 - (1) 경제적 절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 독재정권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적 실적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이외의 다른 경제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여타 공산국가들이 국가 통제 경제체제의 단점을 어떻게 제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이에 따른 경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임.

- 서독 메스콤(TV, 신문, 잡지), 서독 관광객 방문, (제한적이지만) 경화에 의한 소비재 구입 등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서구 이웃국가들과 동독간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영향요소였음. 오랫동안 소비재에 굶주린 동독주민들에게 풍요한 서독사회가 제공한 물질적 인센티브는 현동독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초래함. 성공적인 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정제된 계획경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킴.
- 비록 경제상황이 동독보다 훨씬 나쁘지만, 현경제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가 북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이는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경제상황을 남한과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없기 때문임.

(2) 정권정통성에 대한 주민 인식의 조정과 사회변화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통제

- '반사회주의적' 가치가 동독주민의 의식속에 침투함으로써 동독 지배집단은 계급이해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함.
- 외국정보소스는 서구생활을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동구의 독재 정권들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유자본주의의 사회적.정치적 취약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지 않았음.
- 상업광고를 비롯한 서독 텔레비전 프로는 보통 동독인들이 억제할 수 없는 소비자 천국에 대한 환상을 불러 일으킴.
- 록, 비트, 펑크음악, 카프카와 프로스트의 소설, 실존주의. 전위주의. 초구조주의 문학전통 등의 자본주의 요소가 '70 - 80년대에 동독사회에 침투하여, 동독공산주의 이론의 정수, 특히 유물사관과

합리적.과학적.관료적 계획을 통한 해방이론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킴.

- 이러한 비정치적 영향요소들이 SED 정권 정통성의 근원인 이념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지배집단의 사회에 대한 패권적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서 정권안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침.
- 그 결과 동독주민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반하는 자본주의 세계관을 정통성있고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통치자와 주민들간의 계리가 계속 커져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지정학적 규제가 사라지자 민중불만이 강도높게 표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지배집단이 굴복함.
- 반체제적 정보유입의 강력한 통제와 더불어 극도로 야만적인 탄압 기구를 통해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비교적 강한 유기적 통일성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이러한 독재통치에 대한 주민들의 도전이 불가능
- 강제영역(정치적 사회)이 동의영역(시민사회)을 실질적으로 말살해버림으로써 김일성 독재정권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의 대두를 차단해 옴.
 - * 덜 탄압적인 대안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전에 봉쇄되어 경쟁적 이데올로기와 정보의 대두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방지할 수 있음.
 - * 그러나 동독에서와 같이 주민들이 대안을 인식하게 되면, 어떠한 폭력과 강제로서도 정권의 통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임.

3. 교훈적 조망 : 독일과 한반도 통일 역할

- 0 한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정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쌍방간 정치.문화.경제 교류의 점진적 확대, 교차승인, 유엔동시가입 등을 추구하는 이른바 "단계적 통합접근노력과 이념적 관용의 거부"를 특징으로 함

- 사회·경제 제도의 우위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국제적 지지에 확신을 갖고 한국은 단계적 통합 접근 전략으로 북한 정권의 시민사회 말살정책 (통제, 강제)을 약화시키려고 노력
- 0 북한은 이 접근을 거부하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나마 "이념적 관용"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통해 1 국가내에 두개의 상이한 정치·이념체제가 공존하는 연방제 통일을 추진
- 0 북한의 통치집단이 국내정보체계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한, 비록 북한의 현 체제가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라 하더라도 인민대중에 의해 비판받게 되지는 않을 것임.
- 0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략이 지탱될 수 없을 것임.
 - 파탄에 이른 경제, 국내시장과 생산성의 한계를 감안하면, 평양정권은 자력갱생 경제정책을 고수할 수 없을 것임.
 - 이념에 대한 대외적 지지와 경제원조의 부족때문에 북한은 문호를 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특히, 「남북 기본 합의서」가 실천에 옮겨질 경우, 인적왕래, 우편·체신 교류, 철도·도로 연결 등의 교류촉진은 북한정권의 사회에 대한 강제영역을 위축시키고 시민사회 내부에 지배를 위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결국 전제주의적 통치에 대한 묵시적 지지를 유지시킬 능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임.
- 0 이러한 사태 발전을 가정할 때 적어도 두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함.
 - 하나는 북한(또는 남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두개 주권정권간의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일방에 의한 타방의 흡수통일을 가져올 것임.
 - 둘째, 남북한간의 지속적이고 깊은 적대심을 고려할 때 이념적 관용이 결여된 단계적 통합접근전략은 불안정과 폭력의 위험을 내포

0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폭력과 흡수통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관용과 단계적 통합접근"을 병행시키는 통일 노력을 경주해야 함.

가. 폭력, 단계적 통합접근, 통일역학

0 반체제 이념이 지배하게 될 때, 즉 그것이 주민 대다수에 의해 도덕적, 합법적이라고 간주될 때, 사회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그람시"의 논리는 점진적 통합접근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Karl Deutsch의) 교류주의 등의 통합이론은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간에 보다 긴밀한 관계와 통일된 습관을 촉진시키는 단계적 통합접근에 관한 이론들임.
- 교역, 주민간 비공식적 접촉 등 하부접촉은 정치지도자간의 동화와 협력, 정부간의 합의형성을 촉진시킴.

0 수십년동안의 비교적 긴밀하고 빈번한 양육간 하부접촉은 개인간의 상호이념적 동질의식을 형성시켜, 동독정권의 붕괴후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킴.

- 한반도에 이러한 단계적 통합접근이 결여될 경우, 깊은 적대감이 계속되고, 침략가능성이 위협요소로 상존하며, 지도자간의 성공적 협력을 위한 정치적 카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임.

0 남북총리회담, 유엔동시가입, 불가침 선언 채택(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긴 하지만, 민족간 역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음.

0 과거 30년간 (1960-90) 동독과 북한의 민족적/국제적 정치, 사회, 경제적 통합상황을 경험적으로 비교해보면, 사회적 통합(정보이용 가능성, 인적교류, 민족문화발전)과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최근까지 북한주민들과 그들의 사고와 문화는 남한과 단절되어 왔음.

- 0 같은 시기의 서독과 남한의 민족적/국제적 정치, 사회, 경제적 통합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국제적 체제변화와 서독의 높은 수준의 민족적, 국제적 통합 성과에 힘입어 베를린 장벽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단절없이 강력하고 꾸준한 과정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통일이 달성되었음.
 -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국제사회와의 편입과는 대조적으로 (적어도 수년전까지) 민족관계에서는 단절을 보여왔음. 민족적 통합접근이 걸어질 경우, 동독의 비폭력적 해체와 같은 상황을 북한에 대해서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남북한 엘리트간의 정치적 합의형성이 빈번한 하부접촉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것임.

0 남북한간의 화해에 단계적 통합접근이 적용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는

- 다방면의 교류를 위한 하부구조, 특히 통신, 철도체계의 연결, 동일민족간 대규모 접촉에 대한 현존 법률적 장벽의 제거임.
- 보다 실질적인 장애는 단계적 통합접근에 대한 북한지도층의 강한 거부감인바, 북한 정권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어느 정도의 이념적 관용조치를 취하고 단계적 통합과정을 추진해야할 것임.

* 남북 시민사회간의 단계적 통합접근으로부터 형성되는 대중적 합의는 현재 북한의 이념적 세계관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

나. 이념적 관용, 안정, 통일역학

0 동독과 북한은 정치적, 민족적(이념적) 관용 정도가 매우 낮았음

- 그러나 정치적 사회(정권)가 시민사회와 상호작용하는 헌법체계인 구조적 관용에 관한한 동독과 북한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바, 시민사회가

국가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 또는 여지가 북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동독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불관용이 70년대말부터 무너지기 시작함
- 0 서독과 한국은 민족적 관용(특히 상대방의 이념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실제)이 낮은 수준이었음.
 - 동방정책 표방이후부터 서독에서의 이념적 적대감은 한반도보다 낮았음.
- 0 빈번하고 깊은 단계적 통합 접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정권은 상대방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근본적 이념을 타협할 용의가 없었음.
 - 이러한 이념적 적대감을 고려할 때 두개의 동등한 주권국가간의 상호합의를 통한 독일통일은 불가능하고, 다만 어느 일방의 완전한 이념적, 정치적 붕괴에 따른 타방에 의한 지배형식으로 통일이 가능할 뿐이었음.
- 0 통일과정을 서독이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과 냉전 절정기보다 더 심한 민족간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종속관계가 형성되었음.
 - 통독후 2 - 3 개월만에 동독사회전반은 주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영원히 잃어버림.
- 0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심한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왔음.
 - 장기적 전망은 낙관적이나, 통일의 단기적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불안정적이고 파괴적임.
 - 동독인들의 기대와 달리 공산당 선언포기와 시장경제 도입이 즉각적인 부와 생활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 못함.
- 0 통독비용 또한 예상보다 몇배 높아서 콜 수상은 선거공약과 달리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고, 10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함.

- 0 결국 사회-경제적 본단이 과거(통일전)의 정치적-이념적 본단을 대체하고 있음.
 - 구동서독지역간의 임금, 생활수준, 부의 차이로 인한 심한 긴장이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침
 - 구동독지역의 사회적 불안정 가중
 - * 파업, 사기, 부동산, 외화 투기, 은행강도, 신파시스트/대머리 젊은 갱, 백색지상주의단체, 외국인기피증, 매춘, 마약, 자살, 교통사고 등이 현저히 증가
- 0 전혀 다른 법률, 행정, 교육제도를 가진 두개 국가의 통합은 독일 정치지도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
- 0 한반도 통일은 성급한 독일흡수결과로 생긴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균형적인 통일방법은 쌍방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대두될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강구할 시간을 제공하고, 가치관, 행동, 기대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져 올 심리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임.
- 0 이러한 점진적 통일방안은 신냉전적 이념적 분열이 지배하는 민족내부 관계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함.
 - 상호관용과 융통성에 기초한 합의형성 과정만이 어느 일방의 붕괴와 그에 따른 혼란과 폭력사태의 가능성을 방지해 줄 수 있음.
- 0 그러나 두개의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이념간에 합의형성을 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문제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와 같은 대규모 이주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비롯한 몇가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
- 0 다만 남북정권이 단계적 통합접근과 이념적 관용을 각자의 통일 노력에 반영시킨다면 안정되고 평화적인 해결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임.

政治 · 外交分野

1次 Brandt-Stoph 兩獨 頂上會談 (Erfurt)

1. 頂上會談 開催 提議

- o 兩獨間의 첫 頂上會談은 Brandt首相이 1969.10.28 就任 施政演說에서 兩獨間의 關係를 特殊關係로 規定하고 東獨側에 協商을 提議한 이래, 먼저 東獨側의 구체적인 會談開催 提案에 의해 이루어짐.
- '69.12.17 東獨 國家首班인 Walter Ulbricht는 西獨 大統領 Gustav Heinemann에게 보낸 書信을 통해 東·西獨間 동등한 關係樹立을 骨子로 한 國家條約案 協商을 위해 頂上會談을 提案하고, 協商代表로 Willy Stoph 東獨首相과 Otto Winzer 外相을 지명함.
- 이에 대해 Heinemann大統領은 Ulbricht에게 '69.12.19 協商提案을 歡迎하며 西獨聯邦政府가 이 문제를 責任지고 處理할 것이라고 回信함.
- '70.1.22 西獨 Brandt首相은 東獨首相 Stoph에게 書信을 보내고 “ 두 國家間에 存在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중에서도 同等한 關係의 設定問題에 관해 意見 交換을 할 수 있는 機會” 를 갖고, “ 實質問題에 관한 協商을 통해 住民들의 分斷苦痛 緩和를 위한 制度的 裝置 마련을 위해” 兩獨間 頂上會談(首相間)을 受諾한다고 밝힘.
아울러 會談의 事前準備와 進行 등 技術的인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實務接觸代表로 西獨側에서 Egon Franke 內獨關係省 長官을 指名함.

- 東獨首相 Stoph는 '70.2.11자 答信에서 東獨의 國際法的 認定問題에 대한 東獨側의 立場을 再闡明하면서, “ 東獨側에서는 兩獨間의 회동에 Winzer 外相이 함께 參席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히며, '70.2.19 또는 2.26에 東獨의 東베를린에서 開催할 것을 提案함.
- 西獨首相 Brandt는 '70.2.18자 答信에서 會談日程 延期와 아울러, 實務接觸을 재차 提案함.
- 그 以後 Dr.Horst Ehmke 西獨 首相室 長官과 Michael Kohl 東獨 內閣事務處長間의 電文交換을 통해, '70.2.20 兩側은 '70.3.2일 첫 會談準備 實務接觸을 갖기로 함.
- 實務接觸代表로 西獨側은 首相室 次官補인 Dr. Ulrich Sahm을, 東獨側은 內閣事務處 副處長인 Dr.Gerhard Schuessler를 각각 任命함.
- 이 實務接觸은 東獨 內閣廳舍에서 '70.3월 3,5,9,12일에 각각 開催됨.

2. 實務接觸

○ 實務接觸 過程에서는 議題問題보다 會談場所問題가 더 爭點이 되었음.

- 東獨側은 '70.3.9 兩獨 頂上會談 準備 實務接觸에 대한 立場을 表明하고, Brandt 西獨首相이 西베를린을 거쳐 東베를린을 訪問하는 것에 反對立場을 명확히 함.
- 東獨側의 立場에 의하면 西베를린은 西獨에 속하지 않는 地域으로 특별한 地位를 갖는 政治單位體이며, 兩獨間에 同等한 關係樹立을 위한 協商을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西베를린을 먼저 訪問하여 東獨側에게 政治的 示威를 하는 것은 主權尊重의 原則에 어긋난다고 抗議함.
- 西獨側은 Tuebingen의 Wicker-Institut가 實施한 輿論調查 결과, 西獨住民의 86%가 會談場所로 베를린 이외의 地域을 拒否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立場을 굽히지 않았음.
- 결국 東獨側은 西베를린問題로 提起된 難關을 打開하기 위해 제3의 場所로 Erfurt를 提案했고, 西獨側도 이를 受諾함.

3. 兩側 代表의 相面 및 構成

- o Brandt首相 일행은 特別列車편으로 '70.3.19, 7:45 國境에 도착했으며, 東獨 內閣事務處 處長인 Dr. Michael Kohl과 外務省 儀典長인 Horst Hain의 영접을 받음.
- o 特別列車는 '70.3.19, 9:30 Erfurt 中央驛에 도착했으며, 마중나온 東獨首相 Willy Stoph는 “ 나는 당신이 東獨땅을 밟게 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나의 招請을 受諾하여 준데 대해 感謝하다” 라고 짤막한 인사말을 건네고 兩側은 各 會談代表를 紹介함.
- o 兩側의 會談代表는 首相이외에 각 5명씩이었음.

- 西獨側 :

- Egon Franke 내독관계성 장관
- Wolfram Dorn 내무성 의회담당 차관
- Conrad Ahlers 공보처장 (당시는 차관급)
- Ulrich Sahn 수상실 차관보
- Juergen Weichert 내독관계성 차관보

- 東獨側 :

- Otto Winzer 외무성 장관
- Michael Kohl 내각사무처 처장 (차관)
- Guenter Kohrt 외무성 차관
- Gerhard Schussler 내각사무처 부처장 (차관보)
- Hans Voss 외무성 차관보

4. 頂上會談의 內容

- '70.3.19 Erfurt 첫 頂上會談에서, 兩側은 基調演說을 통해 다음과 같은 協商을 위한 基本原則을 提示함.

가. 兩側이 提示한 協商基本原則

○ 東獨側 (7개항)

- ① 國際法의 基礎위에서 모든 差別을 없애고 東獨과 西獨間에 同等한·正常的인 關係의 樹立, 어떤 形態로든지 西獨政府에 의한 單獨代表라는 越權의 拋棄
- ② 다른 國家의 對外關係에의 不干涉, 할슈타인原則의 窮極的이고도 명백한 拋棄
- ③ 유엔憲章 第2條4項에 따라 제한없는 國際法上 主體의 相互承認, 領土保全과 기본 國境線 不可侵性의 相互承認下에 東·西獨間의 武力拋棄
- ④ 東獨과 西獨의 유엔機構에의 加入申請
- ⑤ 核武器 所有의 拋棄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核武器 處分權의 拋棄, 生化學武器의 生産, 使用 및 貯藏의 拋棄, 軍費支出의 50% 減縮

- ⑥ 第2次 世界大戰의 모든 殘滓의 除去와 關係되고 있는 問題들의 討議
- ⑦ 東獨에 대한 西獨의 모든 負債의 清算과 西獨에 의한 賠償規程 마련

o 西獨側 (6개항)

- ① 兩 國家는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할 義務를 짐. 兩 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님.
- ②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특히 모든 差別의 排除, 領土保全의 尊重, 모든 紛爭問題의 平和的 解決義務 및 兩側 境界의 尊重義務 履行
- ③ 條約 파트너의 領域안에 있는 社會構造를 暴力으로 變化시키려고 試圖하지 않아야 함.
- ④ 兩政府는 善隣關係的 協力, 특히 政府間 合意에 의해서 相互便利를 도모할 수 있는 專門的인 技術協力の 制度化를 위해 努力함.
- ⑤ 전체로서의 獨逸과 베를린에 관한 強大國의 現存하고 있는 權利와 責任들은 尊重되어야 함.
- ⑥ 베를린 그리고 베를린을 에워싼 地域의 改善에 관해 合意하려는 強大國의 努力을 支持해야 함.

나. 兩側의 演說內容

- 東獨側은 Stoph의 演說을 통해 이날 會談에서 東獨이 독자적인 主權國家로서 西獨側으로부터 制限條件없이 國際法的인 認定을 받기를 원한다는 立場을 분명히 했음.
- 西獨이 이미 파리條約을 통해 스스로 外國으로 宣言했기 때문에 兩國家間의 關係는 內獨間의 關係가 될 수 없다고 主張했음.
- Stoph는 兩獨은 서로 상이한 社會體制를 갖고 있으며, 서로 그 어떤 干涉이나 體制間의 잘못된 妥協도 있을 수 없다는 Brandt의 見解에 동조하면서도, 東獨 共產黨(SED)은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기초위에 차후에 統一을 可能하게 할 수도 있는 西獨內 社會主義의 勝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또한 西獨이 平和를 이야기하면서도 西獨 國防省이 東獨과 社會主義 陣營에 대한 攻擊計劃을 세우고 있다고 非難함.
- 原則問題 7項에서 提起한 賠償은, 1961.8.13 베를린 障壁 構築以前에 國境이 開放되어 있을 때 西獨側에 의해 저질러진 “經濟戰爭”(Wirtschaftskrieg)으로 인한 人力의 流出(東獨으로부터 西獨으로 脫出한 高級人力)에 대한 댓가라고 함.

- 西獨側은 兩獨間의 關係는 差別禁止, 同等性의 原則에 依據해야 하며, 한편이 다른 한편을 對外的으로 代表할 수 없다는 立場을 밝혔음.
- Brandt는 Stoph의 西獨 國防省에 대한 非難을 반박하고, 상호 差別禁止는 상대방에 대한 誹謗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함.
- Brandt는 자신의 '69.10.28자 西獨議會에서의 施政演說을 상기시키며 東獨의 국제관계에 관한 西獨과 그 友邦의 태도는 전적으로 東獨側의 態度에 달려 있다고 함.
- 아울러 Brandt는 獨逸民族의 自決權은 그 어떤 條約을 통해서도 變更시킬 수 없다고 확인함.
- 마지막으로 第2次 頂上會談을 위해 '70.5월초에 Stoph를 西獨으로 招請하고, 實務協議를 위해 特別全權委任者나 共同委員을 任命하자고 提案했음.

다. 兩側 頂上間의 單獨面談

- '70.3.19 오후에 續開된 會談은 Brandt와 Stoph間의 單獨面談으로 이루어졌는데, Stoph는 Brandt의 特別全權委任者나 共同委員의 任命提案을 東獨의 大使交換 提議를 沮止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였고,

Brandt는 原則問題 7항에서 東獨側이 提案한 배상요구를 “ 양측이 각기 도입한 社會秩序의 結果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댓가를 지불할 수 없다” 고 거부함.

라. 其他 日程

- '70.3.19 오후에 Brandt首相은 Winzer 東獨 外相의 안내로 이전 나찌수용소기념관이 있던 Buchenwald를 방문하여 獻花함.
 - 이곳 訪問時 데모대들이 “ 西獨국민의 自由와 人權을 保障하라”, “ 軍國主義와 新나찌主義에 對항하여 싸우는 西獨의 勞動者와 學生들의 民主的인 諸權利를 保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70.3.19 저녁 兩側은 짝막한 共同聲明을 記者들 앞에서 發表함:
 - 兩側은 '70.5.21 Kassel에서 第2次 頂上會談을 갖기로 合意함.
 - 兩國의 會談代表中 東獨 外相과 西獨 內獨關係省 長官은 각각 “ 長官” (Minister)으로만 호칭됨.
- 東獨政府는 Erfurt 頂上會談에서 51개국 616명의 言論人에게 取材를 許容함.
 - 이중에는 136명의 西獨 言論人과, 15명의 西베를린 言論人이 包含되어 있음.

2次 Brandt-Stoph 兩獨 頂上會談 (Kassel)

(’92. 1)

1. 2次 頂上會談의 進行日程

- 1970년 5월 21일 兩獨國家는 Erfurt에서 合意한대로 兩獨間의 關係樹立을 위한 第2次 首相間 頂上會談을 가졌음.
- 兩側의 會談代表는 Erfurt 頂上會談時와 똑같았으며, 長官級으로는 역시 東獨側에서 Otto Winzer 外務省 長官이, 西獨側에서는 Egon Franke 內獨關係省 長官이 각각 陪席함.
- 會談場所는 Kassel의 Wiehlmshoehe城이었음.
- 午前에는 兩側의 基調演說(西獨側 먼저)이 각각 있었는 바, 東獨側의 Stoph 首相은 基調演說에 앞서 西獨 聯邦法의 國際法上 違法性에 대해 西獨側을 非難했음.
- 午前 基調演說後에는 Brandt와 Stoph간에 單獨會談이 있었음.
- 午後에는 兩側이 상호간의 立場을 각각 說明했으며, 그 以後에는 또다시 Brandt-Stoph간의 單獨會談을 가짐.
- Erfurt에서와는 달리 會談後 다음번 會談續開를 言及하는 共同聲明을 發表하지 않았음.
- 東獨으로 떠나기 앞서 東獨側은 브란트 首相의 案内로 나치즘 犧牲者 위령탑을 訪問하고 獻花함.

2. 西獨 極左·極右團體들의 動態

- 會談이 進行되는 동안 會談場 밖에서는 極右團體와 西獨共產黨(DKP)이 主導하는 極左團體間的 충돌이 일어났음.
- 極右團體의 青年 3名은 會談場의 東獨國旗를 끌어내려 찢어버렸으며, 東獨會談代表들에게 投石을 하고, 나치즘 犧牲者 위령탑에 獻花하는 것을 妨害하려고 試圖함.
- 한편 西獨共產黨(DKP)은 1968년 西獨政府로부터 創黨이 許容된 이래, 이번 東獨首相의 訪問을 自身の 勢力을 과시하는 主要 契機로 삼고, 대대적인 人力動員을 計劃하고 西獨政府에게는 東獨政府와 妥協을 하도록 壓力을 가하려 함.
 - 西獨共產黨은 애초 勞組, 社民黨內 左派와 自民黨內의 進歩적인 勢力을 網羅하여 십만이상의 示威隊를 Kassel로 動員할 計劃이었으나, 西獨共產黨員과 소수의 다른 左派그룹 등 3,000명을 動員하는데 그침.
 - 그러나 많은 數의 젊은층을 動員하여 이를 契機로 西獨內에서 西獨共產黨의 潛在的 支持階層을 確認할 수 있게 됨.
 - 西獨共產黨의 示威計劃의 目標은, 東獨共產黨인 社會主義 統一黨(SED)이 東獨住民에게 그러했듯이, 西獨共產黨은 西獨住民에게 Kassel에서의 協商失敗가 西獨政府에 전적으로 責任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었음.

3. 兩獨의 同等關係 規定위한 西獨側 提示 20個項

0 브란트首相은 兩獨間의 同等한 關係를 規定하기 위한 原則과 條約의 主要內容과 關聯하여 20個項을 提示함.

1. 自身の 憲法에서 民族의 統一(單一性)을 目標로 하고 있는 西獨과 東獨은 平和와 保障, 未來와 民族의 結 合을 염두에 두고 獨逸안에 있는 兩國家間의 關係를 規定하고, 住民과 兩國家間의 結束關係를 改善하며, 相互 分斷으로 인한 不利益들을 除去함에 寄與할 條約에 合意함.
2. 그 條約은 憲法에 明示되어 있는 形態로 兩側의 立法 機關들의 同意를 받아야 함.
3. 兩側은 國際法의 一般原則으로서의 人權, 同等權, 平和的 共同繁榮 및 差別禁止의 基盤위에서 關係를 맺겠다는 意思를 公表함.
4. 兩側은 相互間 暴力의 使用 또는 使用하겠다는 威脅을 中止하고, 그들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題들을 平和的인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짐. 이것에는 領土, 保全과 既存 境界線 尊重義務도 包含됨.
5. 兩側은 그들의 內的인 統治權에 該當하는 事項에 있어 兩國家의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重함.

6. 兩側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代身하여 行動하거나 다른 나라를 代表할 수 없음.
7. 兩側은 다시는 獨逸땅에서 戰爭이 시작되어서는 안된다고 言明함.
8. 兩側은 諸民族의 平和的 共同繁榮을 沮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止시킬 義務를 짐.
9. 兩側은 歐州安保를 強化시킴에 寄與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한다는 自身の 意志를 確認함.
10. 이 條約은 두개의 國家안에서 살고 있지만 한 민족의 構成員이라는 獨逸과 獨逸人의 特殊狀況과 제2차 世界大戰의 結果로부터 出發해야 함.
11. 베를린과 전체로서의 獨逸에 관한 이들 強大國의 特殊한 權利와 合意에 立脚하는 불란서, 英國, 美國 및 蘇聯에 대한 모든 義務들은 불변임.
12. 베를린과 獨逸에 관한 4大強國 合意들은 尊重됨. 西베를린과 西獨間에 成立된 規程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兩側은 베를린 地位의 正常化를 위한 4大強國의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짐.
13. 兩側은 어떤 分野에서 兩國家의 立法措置들이 相互 抵觸이 되는지를 檢討해야 함.

아울러 兩國의 國民들에게 不利益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相互 抵觸性이 除去되어야 함.

또한 兩國은 兩側의 國家高權이 각기 自國의 領土안에 限定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함.

14. 이 條約은 相互間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키고 또한 自由往來의 目的을 追求하는 措置에 관한 內容을 담아야 함.
15. 離散家族으로 생긴 問題들이 解決되어야 함.
16. 兩獨間 境界線에 접한 郡과 面들이 그곳에 現存하고 있는 問題들을 이웃끼리 解決함을 可能케 해야 함.
17. 兩側은 특히 交通, 通信, 情報交換, 科學, 教育, 文化, 環境問題들 및 '스포츠' 分野에 걸쳐 相互間의 利益이라는 觀點에서 協同을 強化하고, 擴大함은 물론 具體的 措置에 관한 協商을 開始하려는 姿勢를 보여야 함.
18. 兩獨間의 經濟交流를 위해 앞으로도 既存의 協定, 委任(事項)과 合意들이 效力을 가짐. 通商關係는 계속 維持·發展되어야 함.
19. 兩側의 政府들은 長官級의 全權代表者를 任命하고 全權代表者의 常駐 受任者를 위한 事務所를 設置함.

全權代表者와 그의 受任者의 과업은 상세히 確定되며, 그들에게는 각기 政府廳舍가 있는 곳에서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에 필요한 業務免除와 特權이 保障됨.

20. 西獨과 東獨은 그들간에 合意할 수 있는 條約을 基盤으로 하여 國際條約에의 加入과 協力을 規定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講究할 것임.

4. 基調演說에 앞선 東獨側의 抗議

- o 東獨側 Stoph 首相은 基調演說에 앞서 西獨側의 東獨에 대한 差別的인 立法措置에 대해서 抗議함.
- 그는 “ 여전히 西獨에는 西獨의 政府機關들과 裁判所가 國際法을 위반하여 西獨의 國境線을 넘어 東獨과 東獨市民들에 대한 權利와 管轄權을 侵害하고 있는 法律, 判決, 國家的 行爲의 全體系가 存在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認定된 國際法에 대한 중대한 違反이다” 라고 主張함.
- 아울러 Brandt 首相에게는 “ 西獨의 法律과 法令, 判決文, 西獨 國家機關의 決定 및 行爲들이 그 既存 國境안에 있는 西獨과 그의 市民에 대해서만 效力을 가질 수 있고, 東獨과 그의 市民들에게까지 國際法을 違反하여 擴大함은 無效라는 事實에 同意할 것” 을 要求함.

5. 東獨側 抗議에 대한 西獨側 反駁

이에 대해 브란트 首相은 聯邦公報處에서 作成한 東·西 獨立法措置에 관한 文書를 전달하고 東獨側의 主張을 反駁하였는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음.

가. 西獨立法에 있어서 提起된 東獨側의 抗議 內容

“ 東獨은 西獨 立法에 있어 ‘內國’ 이라는 概念이 19 37.12.31의 境界線안의 帝國領域으로 알고 이에 대해 批判하고 있음. . . . 東獨의 見解에 의하면 西獨은 이 로써 다른 國家와 그 國家의 住民들에 관한 고유한 主權을 侵害하고 있으며, ‘國際法 違反的인 單獨代表라 는 越權’ 이 問題되고 있고, 새로운 東方政策과 歐州 平和秩序를 위해 西獨政府가 努力하고 있는 배후에는 侵略的인 意圖가 숨어 있다고 하고, 이는 ‘法的인 侵略’ 또는 ‘計劃된 合併의 法律的인 先制措置’ 라고 主張하고 있음

나. 『法律的 侵略』 問題

○ . . . 西獨政府는 東獨을 差別할 意圖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西獨政府는 東獨에 대해 ‘法律的인 侵略策’ 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음. . . . 오히려 일련의 우리 法律들은 東獨住民에게 명백히 利益을 주고 있음.

특히 內獨間(兩獨) 經濟交流에 關稅免除 惠澤을 주고 있고, 그리하여 東獨에게 相當한 財政的인 利益을 만들어 주고 있는 1961년 6월 21일자의 關稅法은 물론, 歐州經濟共同體內에서 西獨의 努力에 의하여 獨逸內의 兩國家의 貿易과 歐州經濟共同體의 共通的인 貿易政策의 規制들을 歐州經濟共同體의 條約에서 除外시키고, 그리하여 東獨에 매년마다 1억 '마르크' 이상 規模의 利益을 提供해 주고 있는 規定을 관철시킨 1957년 3월 25일자의 兩獨間 通商에 관한 '議定書'를 言及할 수 있음.

다. 『主權侵害 立法』 問題

- ...西獨政府의 獨逸政策은 獨逸 땅위에 있는 獨逸民族은 1970년에 現存하는 事實上의 境界안에 두개의 國家로 나누어져 있다는 認識으로부터 出發하고 있음. 이러한 認識의 基盤위에서 西獨은 그의 立法 실제에 있어 基本法의 憲法秩序가 基本法의 效力圈에 대해서만 立法權限을 부여하고 있다는 確信에 의해 主導되고 있음.

東獨이 異議를 提起하고 있는 西獨의 法律들이 그의 形式的인 效力을 1937년 12월 31일자의 境界안에 있었던 옛날에 獨逸帝國의 領域에까지 미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法律들은 그의 實際的인 적용을 基本法의 效力圈에 局限시키고 있음.

그래서 예를 들면 國內的으로 形式上 ‘1937년 12월 31일자의 境界에 있던 獨逸帝國의 領域’ 에까지 요구하고 있는 1967년 5월 29일자의 賣上稅法의 적용은 關稅官廳 管轄權에 관한 規定들에 의해 오직 獨逸聯邦共和國의 領域에서 企業을 經營하고 있는 企業家에 局限시키고 있음.

- ...1945년 이후 獨逸 占領地帶들간에는 완전한 法の 平等이 있으나 年次的으로 東獨과 西獨에 法律體系가 각기 別途로 發展했고 1949년 이후 東獨에서는 東獨 法을 새로운 立法에 의해 부분적으로 修正하거나 완전히 廢棄하려는 傾向이 명백히 나타나기 시작했음. 東獨의 政治秩序와 社會秩序를 지향하는 이러한 새로운 立法은 어떤 경우 빈번히 그의 效力을 西獨에도 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음. 그에 대한 좋은 예는 소위 1950년 12월 15일자의 平和保護法이 바로 그것임.

라. 『國籍規定』 問題

- ...西獨의 國籍規定에 관한 基本法 제116조는 東獨에서 살고있는 獨逸人에 대한 西獨國家 權力行使權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 아님. 基本法 제116조는 그의 실제적인 運營에 있어 基本法의 效力圈안에 자기 住所 또는 일시적인 滯留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거나 자신이 西獨의 國家機關에 要求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함.

...東獨의 刑法 제3장 제80조를 근거로 하여 ‘다른 國家의 市民들 및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東獨의 主權에 대한 犯罪을 또는 東獨에 대한 犯罪을 범한 경우, 東獨밖에서 범한 범행때문에 責任을 묻게될 수 있음.

1950년 12월 15일자의 平和保護法 제3장 제10조는 ‘獨逸國家 市民의 行爲가 東獨의 領域안에서 범해지지 않는 경우, 비록 그 行爲者가 東獨의 領域안에 여하한 住所나 通常的인 滯留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東獨의 最高裁判所가 管轄한다고 闡明하고 있음.

...1965년 12월 12일자 東獨親族法 施行令 제1장 제15조 제2항을 根據로 東獨市民과 다른 國家의 市民間의 結婚은 ‘비록 그 結婚이 東獨밖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戶籍制度 問題를 관여하고 있는 國家機關의 허가’를 필요로 함. 이것은 西獨聯邦地域안에서 東獨의 住民과 結婚하고자 하는 모든 옛날의 東獨 避難民들은 물론 그의 후손들도 東獨의 管轄官廳의 許可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意味함. 이러한 規制로써 東獨은 상당한 정도로 그의 立法과 管轄權의 영역을 西獨 市民에게까지 擴大시키고 있으며, 東獨이 西獨을 비난하고 있는 점을 자신이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임.

6. 東獨側의 演說內容 【要旨】

- 브란트 首相이 提示한 20個項은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認定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보면 분명히 拒否의 立場을 보이고 있다고 함.
- 東獨側으로서는 東獨의 國際法的 認定없이 는 그 어떤 規定을 통해서도 兩獨關係의 制度化는 不可能함.
- 東獨側은 파리條約 7조의 效力에 대해 결코 同意할 수 없음.
- 獨逸民族의 統一은 이미 不可能함.
- 東獨에서는 이미 포츠담協定の 基本精神이 實現되었기 때문에 4대 占領國의 獨逸에 대한 責任은 단지 西獨과 관련된 問題임.
- 西베를린은 결코 西獨에 속하지 않으며, 東獨 領土內에 存在하는 政治的으로 獨立된 單位體임.
- 兩獨 國家가 UN에 同時 加入해야 함.
- 西獨側이 東獨의 國際法的 認定問題에 관하여 現實的인 態度를 보일 때에야 協商을 재개할 수 있음.

Erfurt·Kassel 頂上會談 관련 聯邦首相室 關係者 面談要旨

駐獨大使館 염돈재 공사와 統一研究官은 70년 당시 제 1, 2차 兩獨 頂上會談에 參與했던 前首相室 舊東獨地域局長 Stern과 Germelmann 課長을 面談했는 바, 기 송부한 報告書 內容에서 言及이 안된 부분만 간추려 報告함.

1. 會談準備 實務接觸

- 事前 實務接觸에는 西獨側에서 西獨側 首相室 次官補 Dr. Sahm외에 實務的인 諸般 節次를 協議하기 위해 公報處(公報), 內務省(警護), 內獨關係省, 首相室, 外務省(儀典) 擔當者 등 5명이 參與함.
- 事前 實務接觸에서는 兩側의 既存立場(西獨側은 實質關係改善에, 東獨側은 國際法的 認定問題에 注力함)이 전혀 相反되었기 때문에 事前 議題討議는 없었으며, 會談場所 決定問題로 대부분 論難을 벌임.
- 會談場所가 Erfurt로 決定된 背景은 國境에서 가장 큰 都市로서 會談을 치룰 만한 便宜施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며, 第2次 會談場所의 Kassel 決定도 마찬가지임.

- 또한 사전 實務接觸에서 많이 論議되었던 事項은 國旗의 揭揚, 設置問題였음.
- 東獨側은 國旗問題를 西獨의 東獨에 대한 國家性 認定問題로 看做하여 중요시 여겼으며, 西獨側이 결국 이를 받아들였음.
- 實際 記錄필름에 의하면 Erfurt(東獨)에서는 거리에 東獨國旗와 赤旗를, 代表團이 머무르는 호텔 앞 國旗揭揚臺에는 兩國 國旗를, 會談場內 테이블 위에는 兩獨國旗를, 兩獨首相이 同乘한 車輛에는 兩國의 國旗를 각각 揭揚하였음.
- 그러나 Kassel(西獨)에서는 거리에 國旗를 揭揚하지 않았고, 회담장 테이블에도 國旗가 없었으며, 車輛에는 兩國 國旗를 달았고, 代表團 호텔 앞에서도 兩國 國旗를 揭揚함.
- 兩側代表團 輸送手段은 기차를 利用했으며, 보통 國境 通過時의 慣例에 따라 國境에서 기관차만 해당국의 것으로 交替하고, 客室은 出發地것을 그대로 維持함.
- 兩 頂上會談中에도 모든 主要人士의 國家禮訪과 마찬가지로 獻花가 있었음.

- 1次 會談에서는 東獨側이 Erfurt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부헨발트 나찌 集團收容所 기념관을 推薦했고, 西獨側은 이 收容所가 2차대전후 蘇聯軍에 의해 나찌 전범 收容所였던 이중적인 性格을 갖고 있던 場所였기 때문에 즉각 이를 받아들임.

2. Erfurt 第1次 頂上會談

- o 會談은 對話(Dialogue)形式이 아니었고, 兩側이 자신의 主張이 담긴 聲明書만 一方的으로 읽어 내려가는 獨白(Monologue)形式이었음.
- o 會談代表 6名(名單은 既報告) 이외에 11名の 會談進行 實務關係者, 9명의 速記, 警護, 儀典關係者가 會談에 參席함.
- o 會談場 內에는 公式會談代表 이외에 6명의 實務關係者가 덧열에 陪席했음.
 - 西獨側(6名): 首相室 Stern課長, 公報處 Dr. Mueller 局長, 首相 個人秘書였던 外務省 1등 서기관 Dr. Ritzel, 內獨關係省 Mahnke 課長, 內獨關係省 Schierbaum課長, 聯邦搜查局 Dr. Fritsch課長

- 東獨側(6名) : 外務省 局長 Lorf, 外務省 局長
Dr. Wuensche, 首相 個人秘書 Boethling,
外務省 局長 Dr. Suess, 外務省 副局長
Seidel, 外務省 課長 Baumgaertel

o 브란트首相이 기차로 東獨國境에 들어서자 많은 시골
동네 住民들이 손을 흔들었으며; 심지어 지방에서 수
건을 흔들었음.

또한 Erfurt의 중앙역 광장에는 安全要員들의 制止에
도 불구하고 代表團이 通過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했음.

- 東獨住民들은 “ 빌리 빌리 ” (공교롭게도 兩獨首相의
이름이 똑같이 빌리였으나 여기서는 Brandt의 이름
임이 틀림없었음.)를 외쳤으며, Brandt가 호텔에 들
어간 후에도, 한참동안이나 群衆들이 환호하여 Bra-
ndt가 창문에서 이들에게 應答했으나, Brandt는 群衆
들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努力함.

- 이처럼 Brandt에 대해 歡呼한 群衆은 2시간후에 곧
東獨國家保衛部 要員들에 의해 反對勢力 데모대로 교
체되었고, 이들은 “ 우리는 東獨의 認定을 要求한다 ”
라는 구호를 외침

- 이렇듯 一般 東獨住民들은 東獨의 指導部가 아무리 民族을 갈라놓으며 社會主義國家로서 東獨의 독자성을 確保하려고 努力했지만, 自由往來 保障과 人的接觸 등 人道的인 實質關係 改善을 강하게 希望했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었음.
- 東獨이 提起한 原則問題 7項의 具體的인 賠償額에 대해 Stoph首相은 1,000억마르크를 提示했다고 함
- 이 問題를 提起한 背景은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西獨側으로부터 이를 구실로 經濟協力을 더욱 얻어낼 속셈이었고, 政治的으로는 西獨側이 提起하는 實質問題 改善, 人的 自由往來問題에 대해 東獨體制에 대한 副作用을 想起시키며 미리 췌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評價됨.
- 會談은 非公開로 進行되었으나, 會談內容은 별도의 記者會見을 통해 밝힘.
- 西獨에서 代表團의 기차에 同乘한 記者數는 24名이었음.

3. Kassel 第2次 頂上會談

- 東獨首相이 西獨共產黨(DKP) 黨首와 만난 것은 東獨側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 물론 西獨側 行事を 進行하는 關係官들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미 共產黨이 合法化되었고 별로 影響力이 없는 黨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음.
- 極右團體 青年들에 의한 東獨國旗 毀損事件에도 불구하고 會談이 계속 進行된 背景은 이미 CSCE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蘇聯側의 의도가 作用한 것으로 分析됨.
- 兩側은 다음 會談 日程을 提案하지 않고 共同記者會見도 없이 會談을 마침.

※ 추후 西獨과 蘇聯·폴란드간의 東方條約 締結以後 西獨 首相室 長官이었던 Egon bahr와 東獨 內閣事務處長이었던 Michael Kohl이 兩獨關係 改善에 관한 實務會談을 계속함.

4. 兩 會談의 成果

○ 形式的으로는 전혀 合意點이 없었기 때문에 成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內容上으로는 서로의 立場을 相對側에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나중에 基本條約 協商時 兩側이 主張한 內容이 折衷式으로 포함됨.

- 특히 Brandt首相이 Kassel에서 提示한 20個項은 추후 西獨政府의 獨逸政策上 基本方針이 되었음.

○ 당시 東獨이 會談에 임한 背景은 美·蘇間 緊張緩和 추세속에서 당시 蘇聯은 東·西獨 관계가 解決되지 않으면 東獨이 영원히 國際關係에서 孤立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東獨 수뇌부도 西獨에게 認定을 받지 못하면 결코 다른 세계로부터도 國家로 認定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임.

- 또한 東獨住民들에게는 西獨과 協商을 가짐으로써 무엇인가 關係改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誇示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東獨住民들에게 旅行自由化 등 分斷苦痛을 緩和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이 會談을 試圖한 것은 아니었음.

Schmidt 首相의 東獨訪問 細部日程

(1981. 12. 11~13)

(’92. 2)

1. 隨行員

【西獨首相 隨行員】

內獨關係省 長官

經濟省 長官

首相室 國務長官

東獨駐在 常駐代表部

部長 兼 國務次官

西獨政府 公報處長

兼 國務次官

經濟省 國務次官

內獨關係省 第1局長

內獨關係省 第2局長

首相室 獨逸政策

實務團長

外務省 局長

에곤 프랑케

오토 그람 람스도르프박사

군터 후몽커

클라우스 빌링

쿠어트 베커박사

디 터폰 뷔어첸박사

에드가 히어트

권터 마익스너

헤어만 프라이헤어 폰 리흐트호펜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박사

【實務要員】

首相室 擔當官

東獨駐在 西獨常駐

代表部 次長

首相室 課長

經濟省 內獨貿易課長

에어스트 권터 슈테른

한스페터 헬벡박사

빌헬름 회잉크박사

프란츠 뢰쉬박사

【其他隨行員】

首相室 事務長
西獨政府 公報處
擔當課長
軍醫官 大領
經濟省 代辯人
儀典擔當官
西獨政府 公報處
當直部長
常駐代表部 代辯人
首相 女秘書
西獨政府 公報處
速記士
使節團 事務室長
儀典擔當官
首相室 女秘書
首相室 女秘書
西獨政府 公報處
寫真師
小貨物 擔當官
小貨物 擔當官

베어너 브룬스박사

쿠어트 플뤼박사
볼프강 뢰펠박사
디트리히 포켈박사
만프렌트 쿤터

외억 메어켈박사
크리스치안 슈미트라인
리셀로테 슈마아소

게옥 폴레스
헤어만 웅거
에곤 몬츠카
헬가 되어너
카린 비히만

앵켈베어트 라이네커
쿤터 쉬츠
빌리 뮐러

【通信要員】

聯邦 國境守備隊
”

한스 뮐러
롤프 하아틱

聯邦 國境守備隊

”

”

”

알폰스 디틀

헤어베어트 타머

에언스트 권터 플로쉬티스

하쑈 길렌

【特別列車관련】

鐵道廳 課長

프리드리히 위리스 등

隨行員 12名

【警護員】

局長

에리히 디번

刑事課長

위어겐 비트네벤

警正

페터 아만

”

볼프강 아우어

”

요아힘 윈스터

”

하인리히 노이세

”

권터 바안홀츠

警監

페터 바인푸어터

警衛

에버하아트 블랑크

”

빌헬름 드라이어

”

미샤엘 카일

”

발터 베버

警査

볼프강 멩겔

”

콘라트 켈너

【東獨側 隨行員】

東獨外務省 長官	오스카 피셔
東獨外務省 儀典長	프란츠 야놉스키

2. 日 程

【1981年 12月 11日 (金曜日)】

- 13:30 聯邦軍 特別機(보잉 707)로 킬른. 본空港(軍用部)出發, 機內에서 午餐
- 15:00 쇠네펠트空港(特別區域)到着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인 에리히 호테커의 迎接
= 歡迎人士 : =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 政治局員兼 中央委書記兼 國家評議會 委員 귄터 미탁博士, SED 中央委 委員兼 東獨外務省長官 오스카 피셔, 東獨國家評議會 議長室長 國務次官 프랑크 요아힘 헤어만, 對外貿易省 國務次官 알렉산더 샬크 골로드콥스키博士,

東獨外務省次官 쿠어트니어, 西獨駐在 東獨常駐
代表部 部長 에발트 몰트, 東獨外務省 公報總局長
볼프강 마이어, 東獨外務省 西獨部 部長 카알 자
에델 大使, 儀典長 프란츠 야놉스키, 東獨駐在
西獨常駐代表部 部長 클라우스 빌링, 東獨駐在
西獨常駐代表部 職員

15:10 호네커 書記長과 함께 “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
으로 車輛移動

16:15 同 狩獵宮에 到着

16:30 호네커 書記長과 作別人事

18:45 國家評議會 迎賓館 “ 하우스 암 딜른제 ” 로
車輛移動

19:00 슈미트首相과 호네커書記長간 非公式 會談 및
晚餐

동시에 迎賓館 會談에 參席치 않은 隨行員들은 “ 狩獵
宮 후베어투스슈톡 ” 의 본관 엽사지하실에서
저녁식사

이어서 “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 으로 車輛移動

【1981年 12月 12日(土曜日)】

09:35 國家評議會 迎賓館 “ 하우스 암 딜른제 ” 로 車輛移動, 東獨外務省 長官 오스카 피셔 隨行

10:00 호네커 書記長 및 使節團員과 會談

13:00 獨逸聯邦共和國 헬무트 슈미트 首相을 위한 獨逸社會主義 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에리히 호네커 招待 午餐, 國家評議會 迎賓館 “ 하우스 암 딜른제 ” 식당

이어서 “ 하우스 암 딜른제 ” 에서 休息 및 “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 으로 車輛移動, 休息

6:15 “ 하우스 암 딜른제 ” 로 車輛移動

이와 동시에 a) 14:30 프랑케長官 작센하우센으로 車輛移動
儀典室 次長 하우슈타인 隨行

15:00 프랑케長官, 西獨首相 대신 獻花(追慕所)

15:30 歸還

16:00 후베어투스슈톡에 到着

b) 14:30 후옹커 國務長官 할베로 車輛移動
儀典室 次長 바이어女史 隨行

16:00 후옹커長官, 西獨首相 대신 獻花(追慕所)

16:30 후베어투스슈톡으로 歸還

18:00경 到着

- 16:30 슈미트 首相, 호네커 書記長과 “ 하우스 암 딜른제 ” 에서 소규모 會談
- 동시에 프랑케長官, 후베어투스슈톡에서 會談
람스도르프長官, 딜른제에서 會談
- 이어서 “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 으로 車輛移動
- 20:00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에리히 호네커를 위한 헬무트 슈미트 西獨首相 招待晚餐
- 검정색 양복 -

【 1981年 12月 13日 (日曜日) 】

- 07:55 호네커 書記長, “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 에 到着
- 08:00 슈미트 首相과 호네커 書記長, 首相專用 스위트에서 朝餐
- 08:40 西獨首相과 書記長이 “ 하우스 암 딜른제 ” 國家評議會 영빈관으로 함께 車輛移動
- 09:00 슈미트 首相, 호네커 書記長 및 使節團 일행과 會談
귀스트로 日程에 參席하지 않을 隨行員과 作別人事

- 09:45 西獨首相, “ 빌헬름 피크 靑少年大學 ” 記者室로
車輛移動 (보건제의 비센탈 所在)
- 10:15 西獨首相 記者會見
- 11:00 西獨首相 TV 인터뷰
- 11:15 간이식사
- 11:25 “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 으로 車輛移動
- 12:00 호네커 書記長 “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 에
到着
西獨首相과 書記長이 함께 귀스트로로 車輛移動
- 동시에 13:00 特別列車 밀머스도르프역으로부터 귀스트
로로 運行 (到着 15:30)
- 14:20 귀스트로 到着 (에언스트 발락 紀念館 하이트 베
엑 아틀리에) 地域代表 迎接, 동 아틀리에 訪問
- 15:10 마르크트 플라츠 (市場廣場)로 車輛移動
- 15:20 市場參觀 및 聖堂으로 徒步移動
- 15:50 聖堂參觀
- 16:40 驛으로 車輛移動, 作別人事
- 16:45 特別列車 發車

3. 具體的인 行事進行

【行事 1 쇠네펠트空港 迎接】

東獨 儀典長 야놉스키大使와 東獨駐在 西獨常駐代表部長 빌링 國務次官이 特別機內에 들어가 西獨首相과 그 側近에게 人事를 함.

西獨首相이 航空機로부터 내림. 뒤이어 야놉스키 儀典長, 빌링 常駐代表部 部長, 公式隨行員, 專門家 順으로 내림. 其他 隨行員들은 後門을 利用하여 내린후 儀典擔當官들의 案内를 받으면서 즉시 乘用車로 감.

호네커 書記長, 西獨首相이 보도에 내리자 西獨首相과 隨行員들에게 人事함.

호네커 書記長, 西獨首相에게 迎接차 나와 붉은 양탄자에 도열한 人士들을 紹介함.

빌링 國務次官이 西獨首相과 호네커 書記長에게 迎接차 나온 常駐代表部 職員들을 紹介함.

호네커 書記長이 西獨首相과 함께 영빈관인 “狩獵宮 후 베어투스슈톡” 으로 타고갈 乘用車로 案内함

【行事Ⅱ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到着】

후베어투스슈톡 境內 入口에 2열의 儀仗隊가 敬禮,
乘用車는 西獨首相의 宿所인 本館 건물앞에 停止함.
入口 맞은편에 TV記者와 카메라가 자리함.

西獨首相은 入口에서 영빈관 管理所長 힐페어트女史로부터
人事받음.

호네커 書記長과 西獨首相이 홀을 지나면서(寫眞撮影技師團
地上層의 살롱으로 들어가 소파에서 寫眞撮影함.
음료수가 提供됨.

이어서 書記長이 西獨首相을 宿所인 스위트까지 案内한 후
作別人事함.

【行事Ⅲ “ 하우스 알 뢰른제 ” 第1次 會談】

西獨首相은 宿所로부터 뢰른제에 있는 國家評議會 영빈관
까지 車輛移動하는 中 儀典長 야놉스키 大使가 隨行함.

迎賓館 경내 진입로에서 2명의 경비병이 敬禮함.

호네커書記長이 영빈관 입구에서 西獨首相에게 人事한 後 관내로 案内함. 영빈관에는 會談室을 비롯하여 西獨首相을 위한 1동의 아파트와 秘書室이 있으며 12月 12日에 람스도르프長官과 會談할 2개의 客室이 더 있음.

소규모 單位의 第1次 會談時 좌석은 다음 會談때 隨行員들이 參加하는 규모로 擴大될 수 있도록 배치됨.

【行事 IV 公式午餐 “하우스 암 뢰른제”】

호네커書記長은 隨行員 規模의 第1次 會談이 끝난 後 西獨首相과 그 側近들을 옆에 붙은 식당으로 午餐에 招待함.

다른 實務陣들은 영빈관내에서 식사함.

午餐은 식사전에 거행되어 記者들이 完全히 取材할 수 있으며 取材後 나감.

西獨首相은 “하우스 암 뢰른제”에 있는 客室이나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狩獵宮”에서 午餐後 休息을 취할 수 있음.

【行事 V 公式晚餐 “狩獵宮 후베어투스슈톡”】

호네커書記長의 隨行員들이 19:50까지 西獨首相에게 인사하며 살롱으로 입장함.

西獨首相이 宿所入口에서 호네커書記長을 迎接함.
홀에서 寫眞撮影

간단히 乾杯後 식사시작, 모든 미디어에게 완전 取材開放
식탁위에는 모카커피

西獨首相이 宿所入口에서 來賓들에게 作別人事

【行事 VI 귀스트로】

來賓들은 인젤제의 하이트베역에 있는 에언스트발락
記念館앞에서 SED 슈베린 지구당 제1서기장 하인츠 지그너,
슈베린地域議會 議長 빌프리트 슈버트, SED 귀스트로
郡黨 副書記長 루디 플렉, 귀스트로市 市長 만프렌트
키어쉬로부터 인사받음.

마티아스 에버트 博物館長은 에언스트 발락이 1938년
死亡하기전까지 作品活動을 했던 아틀리에를 案内함.

동독상주대표부 무역정책실 지소로서 변경됨에 합의하였다. 이에 동독은 만일 서독정부가 이에 부응하는 규정과 더불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제5 의정서각서는 파견국의 대표부용 대지구입 및 기타 공용 대지구입시 세금과 기타공과금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o 제6 의정서 각서는 서Berlin 포함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독상주대표부는 "'71. 9.3자 4대 전승국 협정에 따라 서Belrin의 이권을 대변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동독정부와 서Belrin 시정부와 합의사항은 이에 무관하였다. 이 의정서 각서는 그 내용상 '72.12.21자 기본조약 서명을 기해 있었던 서Berlin에 관한 양측의 선언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o 서독정부는 의정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의정서가 기본조약 제8조에 대한 후속 협정 (Folgeabkommen)이 아니라 시행합의 (Durchfuehrungsvereinbarung)라고 확정 하면서 "시행합의는 동.서독간의 정치적 관계가 이미 기본조약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o 이에 반해 참고문헌상에는 부속 의정서가 기본조약 제8조에 의한 후속 합의 (Folgevereinbarung)라는 견해가 있다. 부속의정서는 서독헌법재판소의 기본 조약에 관한 확정판결에 구속되므로 당시까지 기본조약 해석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의미상 제7조에 따른 추가의정서의 체결에도 의미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정서는 기본조약의 수행에 고려될 수 있는 동독과의 후속조약 (Folgevertrag) 및 후속합의 (Folgevereinbarung)로 봉용된다. 또한 의정서가 일종의 불완전한 행정 협정 (Verwaltungsabkommen)으로서 기본법 제84조 제2항 및 제85조 제2항과 연계 하여 볼때 제59조 제2항 제2면의 제규정으로 인하여 입법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바, 당시 야당이 다수였던 서독상원이 의정서의 시행을 차단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점은 의정서에 관한 의회처리과정중 실제적으로 대두된 바 없었다.

4. 一般車輛 運行計劃

【儀典車輛】

야놉스키 大使
슈테른 局長

【西獨首相車輛】

西獨首相

호네커 書記長

(단 쇠네펠트空港으로부터 후베어투스슈톡까지, 후베어투스슈톡으로부터 뮐른까지 : 12월 13일 08:40), 후베어투스슈톡으로부터 귀스트로까지의 運行時에만, 12월 12일 09:40 후베어투스슈톡으로부터 뮐른까지는 피셔 外務長官이 西獨首相을 隨行하고 其他 運營時에는 儀典長 야놉스키 大使가 隨行함.)

【차량M】

브룬스博士

軍醫官 大領 뵐펠博士

【車輛2號】

프랑케長官

피셔 外務長官

【車輛 3 號】

그람 람스도르프長官
政治局員 미탁博士

【車輛 4 號】

후옹커 國務長官
몰트

【車輛 5 號】

빌링 國務次官
헤어만 國務次官

【車輛 6 號】

國務次官 베커博士
마이어 大使

【車輛 7 號】

國務次官 폰 뷔어첸 博士
國務次官 샬크 골도드콥스키博士

【車輛 8 號】

히어트局長
니어 外務長官

【車輛 9 號】

마익스너局長
자이델大使

【車輛 10 號】

局長 폰 리히트호펜博士
局長 브로이티감博士

【車輛 11 號】

브룬스博士
호잉크博士

【車輛 12 號】

局長 헬빅博士
슈테른局長

【車輛 13 號】

副局長 뢰쉬博士
副局長 포겔博士

【車輛 1 4 號】

슈미트라인 局長補
플릭博士
아커만박사

【車輛 1 5 號】

局長補 메어컬博士
권터博士

【車輛 1 6 號】

슈마소女史
웅지補佐官

【버스】

其他 隨行員

5. 귀스트로 行事 車輛 運行

【警察善導車輛】

【儀典車輛】

【西獨首相車輛】

西獨首相
호테커 書記長

【車輛 2 號】

프랑케 長官
피셔 外務長官

【車輛 3 號】

후옹커 國務次官
몰트 常駐代表部長

【車輛 4 號】

빌링 國務次官
國務次官 폰 뷔어첸博士

【車輛 5 號】

國務次官 베커博士
마이어 大使

【車輛 6 號】

히어트 局長
局長 폰 리히트호펜博士

【車輛 7 號】

마익스너 局長
局長 브로이티감博士

【車輛 8 號】

브룬스博士
軍醫官 大領 빌펠博士
슈마소 女秘書

【車輛 9 號】

권터博士

Honecker 書記長의 西獨訪問 細部日程

(1987. 9. 7~11)

(’92. 3)

1. 日程概要

【1987年 9月 7日 (月曜日)】

- 10:00 킬른·본 空港 到着
- 10:30 聯邦首相 迎接, 儀仗隊 查閱
- 10:50 聯邦首相과 會談
- 12:15 聯邦大統領과 會談
- 13:15 聯邦大統領 招待 午餐
- 16:30 聯邦首相과 會談
- 20:00 聯邦首相 招待 晚餐

【1987年 9月 8日 (火曜日)】

- 09:00 獨逸聯邦議會 議長과 會談
- 09:45 聯邦首相과 會談
- 12:00 3個 協定 署名
- 15:15 社民黨 黨首와 會談
- 16:00 基民黨·基社黨 院內交涉團 議長 및
 基社黨 院內代表와 會談
- 16:45 自民黨 院內交涉團 議長과 會談
- 17:30 綠色黨 院內交涉團 代表와 會談
- 18:15 마덴-뷔어템베르크 州知事와 會談
- 20:30 獨逸社會主義統一黨 書記長 招待 晚餐

【1987年 9月 9日 (水曜日)】

- 08:30 經濟界 代表들과 會同
10:4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知事와 會談
12:3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知事 招待 午餐
14:50 프리드리히 앙겔스 生家 訪問
16:45 經濟界 · 學術界 · 文化界 人士들과 會同
20:15 빌라 화양스에서 소규모 晚餐

【1987年 9月 10日 (木曜日)】

- 09:30 라인란트-팔츠 州知事와 會談
10:30 訪問計劃
- 포오타 니그라
- 카알 마르크스 生家
- 주립博物館
12:00 라인란트-팔츠 州知事 招待 午餐
15:25 자알란트 州知事와 會談
16:20 루트빅스 교회 訪問
18:30 노인키르헨 시청 訪問, 芳名錄에 署名
20:30 자알란트 州知事 招待 晚餐

【1987年 9月 11日 (金曜日)】

- 10:05 바이에른 自由州 州知事와 會談
11:35 닥하우 나치 收容所 訪問

12:30 일부 일행 古蹟地 訪問
 13:15 바이에른 自由州 州知事 招待 午餐
 16:00 뮌헨 림 空港 出發

2. 隨行員

가. 東獨側

귄터 미탁博士	獨逸社會主義統一黨 政治局員 兼 中央委員會 書記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副議長
오스카 피셔	獨逸民主共和國 外務省 長官
게어하아트 바일博士	獨逸民主共和國 對外貿易省 長官
프랑크 요약힘 헤어만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室長 兼 國務次官
쿠어트 니어	獨逸民主共和國 外務省 次官
에발트 몰트	獨逸民主共和國 西獨駐在 常駐代表部 代表

나. 其 他

군터 레트너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國際 政策 및 經濟部長
엘리 겔름(여)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個人秘書
귄터 볼프	少將
클루우스 크웁케 교수	귄터 미탁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副議長 個人秘書
에언스트 크라바치	大使, 外務省 企劃局長
볼프강 마이어	大使, 外務省 公報總局長
프란츠 야농	大使, 儀典長
만프렌트 니크라스	大使, 外務省 長官 秘書室長
카알 자이델	大使, 外務省 西獨擔當局長
볼프강 슈테지	對外貿易省 總務局長 兼 事務長

디터 파울	對外貿易省 總務局長
랄프 데보	外務省 參事官
빈리히 로렌샤이트	外務省 公報局長
페터 조어	外務省 儀典局 課長
이레네 쿠셀	女秘書
에리카 베서	”
플란트 메너	閣僚評議會 儀典局
프랑크 라우에	”
라이너 지몬	”
헬가 비트브로트	女醫師
女教授	
하넬로레	女醫師
바나샤크	博士
만프레트	醫師
지머트	博士

베 언트 루카스 獨逸民主共和國 常駐代表部 1等 書記官

지그프리트 通信局長 等(通信公報員 4명 대동)
호니히

루돌프 警護團長
크라우트대령

군터 슈미트 警護副團長 (警護員 15명 대동)

다. 西獨側

한스 오토 國務次官, 獨逸聯邦共和國 東獨駐在
브로이트감博士 常駐代表部 代表

클라우스 위어겐 聯邦首相室 獨逸政策局長
두이스메역博士

<儀典>

메어너 그랍 폰 大使, 儀典局長

슐렌부익

다트마 크로이셀 박사

미샤엘 쾰너 課長級

<醫師>

볼프강 헤이데겐 軍醫官 大領

<使節團 事務室(김니히 宮)>

리디아 몬츠카

3. 細部日程

1987年 9月 7日

10:00 에리히 호네커 인터폴르크航空 特別航空機 利用,
쾨른·본空港 到着
民間區間 特別席
儀典堵列
聯邦首相室 볼프강 쇼이블레長官 迎接

< 歡迎客 >

西獨側 :

한스 오토 브로이트감 常駐代表部 代表
루트비히 레링거 聯邦內獨關係省 國務次官
베어너 그랍 폰 데어 솔렌부익 大使兼 儀典長
클라우스 위어겐 두이스베익 聯邦首相室 獨逸
政策局長

東獨側 :

에발트 몰트 常駐代表部 代表
常駐代表部 職員

10:00 聯邦首相室 볼프강 쇼이블레長官 隨行 聯邦首相室
로 出發 - 차량 제1진

10:05 隨行員 일부 聯邦首相室로 出發 - 차량 제2진

10:20 其他 隨行員 김니히宮으로 出發 - 차량 제3진

10:30

到着

獨逸聯邦共和國 首相 헬무트 콜의 歡迎, 儀仗隊
사열

< 歡迎式 參席者 >

마아틴 방게만博士	聯邦經濟省 長官
도로테 빌름스博士(女)	聯邦內獨關係省 長官
볼프강 쇼이블레博士	聯邦首相室 長官
한스 오토 브로이터감 博士	國務次官, 西獨常駐 代表部 代表
프리트헬름 오스트	國務次官, 聯邦政府 公報處長
디터 폰 뷔어첸	聯邦經濟省 國務次官
루트비히 레링거	聯邦內獨關係省 國務次官
클라우스 위어겐	聯邦首相室 獨逸政策局長
두이스메억博士	
에언스트 쾨터 슈테인	局長, 聯邦首相室 業務 團長
발터 노이어博士	局長, 聯邦首相室 事務長
디터 카스트롭博士	局長級, 外務省 課長
부억하아트 보비에博士	聯邦內獨關係省 局長
볼프 홉슈테터博士	1등 書記官, 外務省 課長
크리스토프 폰 플라토대령	聯邦國防省 儀典團長
이어서 휴게실로 이동	

사진촬영

- 10:50 聯邦首相과 會談, 사절단 일행 參席
- 12:00 聯邦大統領의 執務室로 車輛 移動 - 차량 제 4a진
- 동시에 聯邦首相室에서 使節團 歡談
- 12:10 도착
- 이어서 獨逸聯邦共和國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大統領과 會談
- 13:00 使節團中 一部 聯邦大統領 執務室로 車輛 移動 - 차량 4b진
- 13:10 到着
- 13:15 聯邦大統領 招待 午餐, 소규모
- 동시에 사절단중 일부 聯邦首相室에서 午餐
- 이어서 헬기 離着陸場으로 車輛 이동, 본 라인아우에 공항 - 차량 5진
- 15:00경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김니히宮으로 향발 - 헬기 1진
- 16:20 到着
- 이어서 聯邦首相과 會談

- 동시에 獨逸社會主義統一黨 政治局員 兼 中央委員會 書記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副議長
 쾨터 미탁博士와 獨逸民主共和國 對外貿易省 長官 게어하아트 바일博士와 聯邦經濟省 長官
 마아틴 망게만博士의 會談
- 동시에 獨逸民主共和國 外務省長官 오스카 피셔와
 聯邦內獨關係省長官 도로테 빌름스博士의 會談
- 18:15 헬기 이착륙장으로 車輛 移動, 본 라이안우에
 공항 - 차량 5진
- 18:2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김니히宮 향발 - 헬기
 1진
- 19:40 到着
- 19:3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마트 고데스베르크로
 향발 - 헬기 1진 헬기 이착륙장 리갈세 비세
- 19:50 到着
- 19:55 레두트로 향발 - 차량 5진
- 20:00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에리히
 호네커를 위한 聯邦首相 招待 晚餐
 (검정색 양복, 짧은 양장)
- 22:30경 김니히宮으로 車輛 移動 - 차량 5진

1987年 9月 8日(火曜日)

08:3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본으로 향발, 라인아우에
- 헬기 2진

08:50 到着

이어서 獨逸聯邦議會 議長執務室로 車輛 移動 - 차량 6진

동시에 獨逸民主共和國 外務省長官 오스카 피셔를 위한
特別日程 - 차량 7b진

08:55 到着

09:00 獨逸聯邦議會 議長 필립 예닝거博士와 會談

09:40 聯邦首相室로 車輛 移動 - 차량 6진

09:45 到着

이어서 聯邦首相과 會談

10:10 獨逸社會主義統一黨 政治局員 겸 中央委員會
書記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副議長
귄터 미탁博士와 獨逸民主共和國 對外貿易部
長官 게어하아트 바일博士와 遂行員 일부가
聯邦首相室로 車輛 移動 - 차량 7b진

10:50 到着

- 11:00경 使節團과 最終 會談
- 11:50 팔레 샤움부르크로 도보 이동, 고벨런 자알
- 12:00 - 放射能 保護分野의 情報交換 및 經驗交換에
 관한 協定
 - 環境保護分野의 關係改善에 관한 協定
 - 學術과 技術分野의 協力에 관한 協定
 호네커 書記長과 聯邦首相이 參席한 가운데
 關係長官들이 署名
- 12:20 個人 日程 - 차량 4b진
- 동시에 使節團中 일부 본의 라인아우에 헬기 이착륙장
 으로 車輛 移動 - 차량 8진
- 12:25 到着
- 12:3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김니히宮으로 향발
 - 헬기 3진
- 12:50 到着
- 13:1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마트 고데스베르크 리갈
 세미세 出發
 김니히宮으로 향발 - 헬기 4진
- 13:30 到着

이어서 個人的 午餐

15:15 社民黨 黨首 兼 社民黨 聯邦議會 院內 交涉團 議長
聯邦議會議員 한스 욱헨 포겔博士와 會談

16:00 基民黨 基社黨 聯邦議會 院內交涉團 議長
聯邦議會議員 알프레트 드레거博士와 聯邦議會內
기사당 院內代表 聯邦議會議員 테오도어 바이겔博士
와 會談

16:45 自民黨 聯邦議會 院內交涉團 代表
聯邦議會議員 볼프강 미슈닉과 會談

17:30 녹색당 聯邦議會 院內交涉團 代表
聯邦議會議員 말트라우트 쇼페(女),
聯邦議會議員 카리타스 헨셀(女), 레기나 미샬렉
(女)과 會談

18:15 바덴-뷔르템베르크州 로타 슈페트州知事와 會談

19:15 隨行員中 일부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라인아우에
헬기 이착륙장 향발 - 헬기 5진

19:30 到着

이어서 브리스톨호텔로 車輛 移動 - 차량 9a진

19:45 到着

19:45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라인아우에 헬기 이착륙
장으로 향발 - 헬기 6진

20:00 到着

20:30 聯邦首相을 위한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에리히 호네커 招待 晚餐
(검정색 양복, 짧은 양장)

22:30경 聯邦首相이 作別人事

이어서 使節團中 일부 김니히宮으로 車輛 移動 - 차량
9c진

23:15경 到着

23:00경 김니히宮을 車輛 移動 - 차량 9d진

23:40경 到着

1987年 9月 9日 (水曜日)

08:0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쾰른 빙상경기장 헬기
이착륙장 향발 - 헬기 7진

08:15 到着

- 이어서 商工會議所로 車輛 移動, 쾰른 운터 작센하우센
- 차량 11진
- 08:30 到着
獨逸商工會 會長 인토 볼프 폰 아메롱겐의 迎接
- 08:35 經濟界 代表와 회동
- 09:45 빙상경기장 헬기 이착륙장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1진
- 09:55 到着
- 이어서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뒤셀도르프 향발, 라인
크니 브뤼케 헬기 이착륙장 - 헬기 7진
- 10:15 到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副知事 니터 포셔博士
迎接
- 10:25 부지사의 案内下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츠 州知
事公館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1진
- 10:30 到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知事 요하네스 라우 迎接
- 10:45 요하네스 라우 州知事와 會談

이어서 擴大會談

11:50 멘라트宮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1진

12:10 到着
紹介

12:30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에리히 호네커
를 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知事 요한네
스 라우 名譽博士 招待 午餐
(검정색 양복, 짧은 양장)

14:3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부퍼탈 향발, 州知事
隨行 - 헬기 8진

14:45 到着
부퍼탈市 女市長 크라우쓰 영접

이어서 프리드리히 엥겔스 生家로 車輛 移動
- 차량 12진

14:50 到着
管理所長의 迎接

이어서 生家 觀覽

15:20 헬기 이착륙장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2진

- 15:3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에센의 빌라 휘겔로 향
발 - 헬기 8진
- 15:45 到着
메어톨트 바이츠 名譽博士 迎接
- 이어서 個人日程 - 차량 13진
- 16:45 經濟界, 學術界, 文化界 人士와 會同
- 18:0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뒤셀도르프공항 향발
- 헬기 8진 특별 착륙장, 州知事 隨行
- 18:15 到着
- 18:20 요하네스 라우 州知事와 作別人事
- 18:30 聯邦空軍 特別機 B707로 자르브뤼켄 향발
- 航空機 待機
- 19:10 자르브뤼켄 空港 到着, 特別着陸場
자알란트 州知事 오스카 라폰텐 迎接
- 19:2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영빈관 딜링거 휘테로
향발 - 헬기 9진
州知事 隨行
- 19:30 到着, 간단한 음료

동시에 隨行員 일부 버스로 호텔(구사제관 보마레)로
移動

20:20 州知事 隨行 말버판겐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4진

20:30 빌라 화양스에서 소규모 晚餐

이어서 딜링거 취체 영빈관으로 車輛 歸還 - 차량 14진

1987年 9月 10日(木曜日)

08:15 隨行員 일부 버스로 보마레로부터 딜링거 취체
영빈관 이동

08:30 到着

08:5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트리어 향발 - 헬기 10진
카이저테어맨 헬기 이착륙장

09:15 到着
라이란트-팔츠 州知事 메언하아트 포겔博士 迎接

이어서 選帝候宮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2진

09:30 도착
연회실에서 寫眞撮影

이어서 베어하아트 포겔 州知事와 會談

10:30 車輛까지 徒步 移動
콘스탄틴 교회당 조망

이어서 포르타 니그라로 車輛 移動, 州知事 隨行
- 차량 12진
上記 建造物 觀覽

이어서 카알 마르크스 生家로 車輛 移動 - 차량 12진

11:10 到着
管理所長 迎接
生家 案内

11:45 주립박물관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2진

12:00 到着

이어서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에리히 호네커
를 위한 라인란트-팔츠 州知事 베어하아트 포겔
博士 招待 午餐 (일상 양복, 짧은 양장)

13:45 헬기 이착륙장 카이저 테어멘으로 徒步 移動
車輛 移動 - 차량 12진
포겔 州知事와 作別人事

- 14:0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딜링거 휘테 영빈관으로
향발 - 헬기 10진
- 14:20 到着, 간단한 음료
- 14:40 자아브뤼겐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5진
- 15:15 州知事公館 到着
자알란트 州知事 오스카 라폰텐 迎接
- 15:25 閣僚會議室에서 隨行員 會談
- 16:00 오스카 라폰텐 州知事와 會談
- 16:20 루트빅스 교회로 도보 이동
교회 관람
- 16:35 비멜스키르헨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6진
- 동시에 獨逸社會主義統一黨 政治局員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副議長 쾨터 미탁博士와 對外 貿易省
長官 게어하아트 바일博士를 위한 特別 日程
- 차량 7a진
- 동시에 東獨 外務省 長官 오스카 피셔를 위한 特別日程
- 차량 7b진
- 16:50 個人日程

- 18:30 노인키르헨市 市廳 到着, 페터 노이머 市長 迎接
 이어서 동시 芳名錄에 署名
- 19:20 딜링거 휘테 영빈관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5진
- 20:00 到着
- 20:30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을 위한
 자알란트 州知事 오스카 라폰텐 招待 晚餐
 (검정색 양복, 짧은 양장)

1987年 9月 11日(金曜日)

- 08:10 隨行員 일부 버스로 부마레로부터 딜링거 휘테
 영빈관으로 이동
- 08:30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자아브뤼켄 향발, 오스카
 라폰텐 州知事 隨行 - 헬기 9진
- 08:45 到着
 오스카 라폰텐 州知事와 作別人事
- 09:00 聯邦空軍 特別機 B707로 뮌헨 향발 - 항공기대
- 09:45 뮌헨림 空港 到着
 바이에른 자유주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名譽博
 士 迎接

- 이어서 바이에른 州知事 公館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7진
州知事 隨行
- 10:05 到着
슈트라우스 州知事와 會談
- 이어서 영국공원내 헬기 이착륙장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7진
州副知事 카알 힐러마이어博士 隨行
- 11:20 到着
- 11:25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닥하우 향발 - 헬기 11진
- 11:35 到着
닥하우市長 로렌츠 라이트 마이어博士 迎接
- 이어서 나치 強制收容所로 徒步 移動
- 11:40 나치 犠牲者 위령탑에 獻花
- 12:00 헬기 이착륙장으로 도보 이동
- 12:05 聯邦國境守備隊 헬기로 뮌헨 향발 - 헬기 11진
영국공원내 헬기 이착륙장
- 12:15 到着

이어서 뮌헨 왕궁으로 車輛 移動 - 차량 17진

12:30 到着
왕궁중 일부 觀覽, 州知事 遂行

이어서 王國 室內庭園으로 徒步 移動

13:15 바이에른 州知事가 귀빈 紹介

이어서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長 兼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을 위한 바이에
른 自由州 州知事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名譽
博士 招待 午餐 (검정색 양복, 짧은 양장)

15:30 뮌헨림 공항으로 車輛 移動, 州知事 隨行
- 차량 17진

15:45 到着
슈트라우스 州知事와 作別人事

16:00 인터풀루트 航空 特別機로 베를린 쇠네펠트
향발

4. 特別日程

獨逸社會主義統一黨 政治局員 兼 國家評
議會 副議長 권터 미탁博士와 對外貿易
省 長官 게어하아트 바일博士를 위한
特別日程

1987年 9月 10日(木曜日)

16:35 자알란트 상공회의소로 車輛 移動 - 차량 7a진

16:45 到着
자알란트 商工會長 요스프 프림博士 및 자알란트
手工業協會長 兼 州議會 議員 만프리트 프랑크
迎接

이어서 經濟界 代表들과 회동

17:45 노인키르헨市로 車輛 移動 - 차량 7a진

18:15 시청 到着

이어서 본 日程에 合流

1987年 9月 8日 (火曜日)

08:50 西獨 外務省으로 車輛 移動 - 차량 7a진

08:55 到着

西獨 外務省 長官 한스 디트리히 겐서 迎接

이어서 西獨 外務省 長官과 會談

10:45경 聯邦首相室로 車輛 移動 - 차량 7b진

10:50 到着

이어서 本 日程에 合流

1987年 9月 10日 (木曜日)

16:35 州首都인 자아브뤼켄 시청으로 車輛 移動
- 차량 7b진

16:45 到着

시장 한스 위에겐 콕닉 迎接

이어서 동시 代表들과 會談

17:45 노인키르헨市로 車輛 移動 - 차량 7b진

18:15 동 시청 到着

이어서 本 日程에 合流

過去 東·西獨間 頂上會談 事例調查

('92. 2)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 회담일시	- '70. 3. 19	- '70. 5. 21	- '81.12.11 - 13 (3일간)	- '87. 9. 7 - 11 (5일간)
○ 회담대표	- 서독측 · 브란트 수상	좌 등	- 서독측 · 슈미트 수상	- 서독측 · 콜 수상
	- 동독측 · 슈토프 각료회의 의장 (수상)		- 동독측 · 호네커 당서기장겸 국가 평의회 의장	- 동독측 · 호네커 당서기장겸 국가평의회 의장
○ 영부인 대동여부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수행원	- 서독측 (공 식) · 프랑케 내독관계 성 장관 · 도른 내무성 차관 · 알리스 공보처장 · 삼 수상실 차관보 · 바이허르트 내독 관계성 차관보 (비공식 실무진) · 슈테른 수상실 과장 · 뮐러 공보처 국장	좌 등	- 서독측 : 54명 (공 식) · 프랑케 내독관계성 장관 · 랍스도르프 경제성 장관 · 후옹커 수상실 국무장관 · 벨링 상주대표부 대표 · 베커 공보처장 · 뷔어첸 경제성 차관 · 히어트 내독관계성 제1국장 · 마익스너 내독관계성 제2국장	- 동독측 : 51명 (공 식) · 미탁 정치국원 겸 국가평의회 부의장 · 피셔 외무성 장관 · 바일 대외무역성 장관 · 헤어만 국가평의회 의장 비서실장(차관급) · 니어 외무성 차관 · 몰트 상주대표부 대표 (비공식 실무진) · 레트너 당 중앙위원회 국제정책·경제부장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첼 수상비서 · 만케 내독관계성 과장 · 쉬어바움 내독관 계성 과장 · 프리취 연방수사 국 과장 · 그외 9명의 속기, 경호, 의전관계자 <p style="text-align: center;">- 동독측 (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찌 외무성 장관 · 콜 내각사무처 처 장 · 코르트 외무성 차 관 · 슈쉴러 내각사무 처 부처장 · 보쓰 외무성차관 보 <p style="text-align: center;">(비공식 실무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르프 외무성 국장 · 빈세 외무성국장 · 뵘틀링 수상비서 · 쉬쓰 외무성국장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흐트호펜 수상실 국장 · 브로이티감 외무성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비공식 실무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테른 수상실 국장 · 헬벡 상주대표부 부대표 · 회잉크 수상실 과장 · 브룬스 수상실 수상비서 · 플릭 공보처 과장 · 피펠 주치의 · 포겔 경제성 공보과장 · 귄터 의전담당 참사관 · 2명의 기자담당자 (공보처, 상주대표부) · 3명의 수상실 여비서 · 1명의 공보처 속기사 · 1명의 상황실 요원 · 1명의 문서기록 요원 · 1명의 사진사(공보처) · 2명의 화물담당자 · 6명의 통신요원(연방 국경수비대) · 13명의 특별열차 운행 관계자 · 15명의 경호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젤름 당서기장 개인 비서 · 볼프 소장 · 크뤼케 당 부의장 개 인비서 · 크라바치 외무성 기획 국장 · 마이어 외무성 공보 국장 · 야농 외무성 의전장 · 니크라스 외무성 장관 비서실장 · 자이델 외무성 서독 담당 국장 · 슈테지 대외무역성 차관보 · 파울 대외무역성 국장 · 테보 외무성 본부대사 · 로렌샤이트 외무성 공 보 과장 · 조어 외무성 의전과장 · 2명의 여비서 · 3명의 각료회 문서기 록 요원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p>0 교통수단</p> <p>- 왕래교통수단</p>	<p>· 사이델 외무성 부국장</p> <p>· 바움게스텔 외무성 과장</p> <p>- 특별열차</p> <p>· 국경까지는 자국 열차 이용, 국경에서부터는 객차는 그대로 유지한채 기관차만 상대편 것으로 교체</p>	<p>좌 동</p> <p>좌 동</p>	<p>- 동독측</p> <p>· 피셔 외무성 장관</p> <p>· 야놉스키 외무성 의전장</p> <p>- 갈때는 특별공군기 (보잉 707)</p> <p>올때는 특별열차</p>	<p>· 3명의 의사</p> <p>· 1명의 상주대표부 1등 서기관</p> <p>· 5명의 통신요원</p> <p>· 17명의 경호요원</p> <p>- 서독측</p> <p>· 브로이트감 상주대표부 대표</p> <p>· 두이스베역 수상실 국장</p> <p>· 슐렌부익 외무성 의전장</p> <p>· 2명의 의전관계자</p> <p>· 1명의 주치의</p> <p>- 인터플르크 특별민항기</p>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 상대편지역내 이동	- 의전차량	좌 동	좌 동	- 헬기, 의전차량
- 수상전용차량의 대동 여부	- 불대동, 초청국 의전차 이용	좌 동	좌 동	좌 동
o 도착시 영접				
- 기상영접	- 없었음	- 없었음	- 동독외무성 의전장,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 외무성 의전장, 동독상 주대표부 대표
- 영접자	- 슈토프 수상 · 각 공식 수행원 도열	- 브란트 수상 · 각 공식 수행원 도열	- 호네커 당서기장 겸 국가 평의회 의장 · 미타크 정치국원 겸 국가 평의회 부의장 · 피셔 외무성 장관 · 헤어만 국가평의회 의장 비서실장(차관급) · 니어 외무성 차관 · 몰트 상주대표부 부장 · 마이어 외무성 공보국장 · 사이델 외무성 서독담당 국장 <서독측> · 벨링 상주대표부 대표 · 상주대표부 직원 도열	- 쇼이블레 수상실 장관 · 브로이트감 상주대표부 대표 · 레링거 내독관계성 차 관 · 두이스베어 수상실 국 장 · 슐렌 부역 외무성 의전 장 <동독측> · 몰트 상주대표부 대표 · 상주대표부 직원 도열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 도착 환영식				
- 장소	- 행사 따로 없었음 · 바로 회담장인 호텔로 직행	좌 동	- 행사 따로 없었음	- 수상실
- 국가연주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양독국가연주 있었음 · 동독국가 먼저
- 의장대 사열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있었음
- 예포발사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국기계양				
- 환영식장	- 환영식 없었음	좌 동	- 공항의 국기계양대에서 각각 1개씩	- 수상실에서 각각 8개의 동독국기와 서독국기 계양
- 숙소	- 회담장이자 숙소인 호텔앞에 양국국기 1개씩	좌 동	- 영빈관에 양국국기 각각 1개씩	- 영빈관에 양국국기 각각 1개씩
- 거리	- 동독국기와 적색기 계양	- 계양하지 않음	- 계양하지 않음	- 계양하지 않음
- 회담테이블	- 양독 국가를 놓았음	- 없었음	- 양국 국기를 놓았음	- 양국 국기를 놓지 않았음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동독의 의전관례)	(서독의 의전관례)
- 차량	- 수상 동승차량에 양국 국기 부착	좌 동	좌 동	좌 동
- 기관 및 지역 방문시	- 기관 및 지역방문 없었음.	좌 동	- 국가의전사항은 아니고 각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	좌 동
o 도착후 숙소 또는 회담장까지 동행	- 슈토프수상 동행	- 브란트수상 동행	- 호네커 당서기장 숙소까지 동행	- 쇼이블레 수상실 장관이 수상실까지 동행 · 수상실에서 숙소까지는 의전장이 동행
o 모터사이클 동원	- 없었음	- 없었음	- 13대 동원 · 국민대우	- 7대 동원 · A급수상 실무방문 대우 · 본지역과 주간에만 동원 · 바이에른주에서는 국민으로 대우하여 15대 동원
o 가두시민 환영 또는 시위	-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앞과 연도에 서 브란트수상 환영 (브란트의 첫 이름인 '빌리, 빌리' 를 외침)	- 서독공산당(DKP)을 위시한 극좌파와 독일민족주의당(NPD) 등의 극우파가 시위 중 충돌을 벌임	- 회담이 동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호숫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담장 주변에서 주민들의 환영 또는 시위없었음	- 극우파 단체의 시위는 있었으나 미미했음. · 동독에서 데려온 경호 요원 15명이외에도 상주대표부 직원 50명이 경호에 참가, 경호조치에 동독측이 신경을 많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0 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정부에 의해 동원된 관제 데모대가 플랑카드(“우리는 동독의 승인을 원한다 : 신나찌주의를 철폐하라”)를 들고 구호를 외침 - 브란트수상이 부헨발트 나찌 유대인 집단수용소 기념관 방문 현화 · 빈찌 동독외무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우파 청년 3명이 호텔앞에 게양된 국기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음 - 슈토프 수상, 카셀의 파씨즘 희생자 위령탑에 현화 · 브란트수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스트로 방문시 · 보안요원들이 주민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에어푸르트에서와 같은 자발적인 지지시위 없었음 - 슈미트수상이 직접하지 않고, 내독관계성 장관이 작센하우센을, 후온커수상실 국무상이 할베를 각각 방문하여 나찌집단수용소 기념관에 대신 현화 · 외무성 부의전장이 각각 안내 · 서독측에서는 국가예방적인 성격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여 슈미트수상이 직접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썼음 ·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 주민들과의 거리에서의 대화는 없었음 - 뮌헨방문시 근교의 다하우 나찌희생자 위령탑에 현화 · 다하우시장 안내 · 동독측이 다하우를 택한 것은 호네커 자신이 개인적으로 나찌의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려 하였고, 본 근교에는 “전쟁과 폭력지배 희생자” 묘역이 있으나, 서독에서는 폭력지배 희생자의 범주에 나찌 희생자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 희생자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독측에서 이를 반대함.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0 공식연회				
- 만찬	- 없었음	- 없었음	- 슈미트수상 초대만찬 (12.31)	- 콜수상 초대만찬(9.7) 호네커 서기장 초대만찬 (9.8)
- 오찬	- 없었음	- 없었음	- 호네커 당서기장 초대오찬 (12.12)	- 바이체커 연방대통령 초 대오찬(9.7) 라우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츠 주지사 초대오찬 (9.9) 라폰텐 자알란트 주지사 초대 (9.9) 포겔 라인란트 팔츠 주 지사 초대오찬(9.10) 슈트라우스 바이에른 주지사 초대오찬(9.11)
- 공식연회시 공연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0 지역방문	- 회담개최 장소와 현 화장소 이외에는 다 른 지역 방문 없었 음	좌 동	- 귀스트로 방문 · 슈미트수상이 개인적으로 현대미술가인 에언스트 발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기념관 방문 · 시장이 열리는 광장을 지나 교회 방문	-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라 인란트 팔츠, 자르란트, 바이에른 등 4개주 방문 · 각 주지사 면담 · 부퍼탈 프리드리히 앵겔 스 생가 방문 · 트리어칼팜스 생가 방문 · 노인키르헨 호네커 고향 방문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p>0 환송식</p> <p>0 숙소</p> <p>- 장소</p> <p>- 숙소에 환영현판 설치여부</p> <p>- 음식준비(메뉴 결정, 기피음식 기호음식 통보)</p> <p>- 검색</p> <p>- 전용요리사 대동 여부</p>	<p>- 슈토프 수상이 에어푸르트역에서 귀환하는 브란트 수상 전송</p> <p>- 역에서 가까운 호텔</p> <p>- 현판설치 없음 도착역에서 “동독은 평화와 사회주의의 국가다” 라고 적힘</p> <p>-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p> <p>- 없었음</p>	<p>- 브란트 수상이 카셀역에서 귀환하는 슈토프 수상 전송</p> <p>좌 동</p> <p>- 환영현판 설치 없음</p> <p>-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p> <p>- 없었음</p>	<p>- 호네커 서기장이 수행원과 함께 귀스트로역에서 전송 ·외무성 의전장 기차내까지 안내</p> <p>- 영빈관 ·후베어투스슈톡城</p> <p>- 현판설치 없음</p> <p>-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선발대가 기피음식, 기호음식 사전 통보</p> <p>- 방문자측에서 원하면 할 수 있으나, 서독측은 하지 않았음.</p> <p>- 없었음</p>	<p>- 슈트라우스 바이에른주 지사가 공항에서 전송 ·바이에른주 의전장이 기내에까지 안내</p> <p>- 영빈관 ·김니히성</p> <p>- 현판설치 없음</p> <p>-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선발대가 기피음식, 기호음식 사전 통보</p> <p>- 동독측은 경호요원들의 요구로 했음.</p> <p>- 없었음</p>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p>0 본국과의 통신수단</p> <p>- 통신장비</p> <p>- 직통전화 가설</p>	<p>- 가져갔음</p> <p>- 통신요원간의 협조 하에 가설</p>	<p>좌 동</p> <p>좌 동</p>	<p>좌 동</p> <p>좌 동</p>	<p>좌 동</p> <p>좌 동</p>
<p>0 경호용 무기 반출입</p>	<p>- 사용무기 명세를 상대방에 통보하고 반출입</p>	<p>좌 동</p>	<p>좌 동</p>	<p>좌 동</p>
<p>0 선발대 파견</p>	<p>- 회담준비 사전 실무 접촉을 갖음 · 공보, 경호, 의전 회담 장소문제 논의</p>	<p>좌 동</p>	<p>- 서독 외무성 의전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선발대 파견 · 다른국가 방문시와 마찬가지로 선발대 구성 · 각 행사별로 공보, 경호, 의전사항 확인</p>	<p>- 동독 외무성 의전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선발대 파견 · 다른국가 방문시와 마찬가지로 선발대 구성 · 각 행사별로 공보, 경호, 의전사항 확인</p>
<p>0 체제 및 행사비용 부담 한계</p>	<p>- 행사비용 동독부담</p>	<p>- 행사비용 서독부담</p>	<p>- 체제 및 행사비용 모두 동독 부담 · 동독측은 수행원 규모에 관련없이 항상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주장</p>	<p>- 체제 및 행사비용 모두 서독부담 · 서독측은 국빈과 15명의 수행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동독측과는 상호주의에 의거 모든 비용을 다 부담</p>

사례 / 행사	에어푸르트('70)	카셀('70)	동베를린 근교('80)	본('81)
<p>○ 주치의 대동 및 구급차량 제공</p>	<p>- 주치의 대동하지 않았으나, 동독측 구급차량 대기</p>	<p>- 주치의 대동하지 않았으나 서독측 구급차량 대기</p>	<p>- 1명 주치의 대동, 동독에서 제공한 구급차량이 주치를 태우고 행사에 따라다님</p>	<p>· 각 주를 방문할 때는 연방에서 교통, 통신분야 비용만 부담하고 숙식은 각 주가 부담</p> <p>- 3명의 주치의 대동, 서독에서 제공한 구급차량이 주치를 태우고 행사에 따라다님</p>

西獨政府의 東方政策은 東獨體制의 崩壞를 加速化시켰는가 遲延시켰는가?

('92. 4)

올바른 방법 : 한 단계 한 단계 (Schritt um Schritt)
- 긴장 완화 정책과 더불어 비로소 국민들의 봉기가 가능할 수 있었다.-

* 마리온 그레핀 뉘호프 (Marion Gräfin Dönhof)

긴장 완화와 상호 접촉을 모색하고 군비 증강이나 위협적인 행동 대신 정치적인 대화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은 결코 타협만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었고 현실적인 정치가였다. 즉 현실 정치가들은 마르크스 레닌 주의식 사회 이론에 따라 공산당이 장악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정당성이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동독은 세계 역사상 가장 조밀한 상호 감시.밀고 체제를 구축하여 놓았었는데 히틀러의 Gestapo나 스탈린의 NKWD 조차 동독의 완전 감시 체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었다.

밀고당한 자가 금서를 읽고 국가의 명령을 비판했고 서독인과 접촉했음을 시인하면 순식간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린 후 로베르트 하베만(Robert Havemann)처럼 특별 감시를 받았거나, 현저하게 위험한 인물이라고 간주될 경우 투옥되거나 국외로 추방되기도 했다.

* 디 짜이트 (Die Zeit) 지 발행인

Die Zeit '92. 2. 21

동독 공산주의 지배 체제로 하여금 드디어 무릎을 꿇게 하였던 것이 거리의 저항이었다는 사실은 옳다. 그런데 하필 40년 후에야 비로소 이와 같은 거리에서의 저항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 대답은 거리의 저항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대한 전제 조건이 불가피 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독일(1953년), 헝가리(1956년), 체코슬로바키아(1968년)에서 거리의 저항이 성공적으로 관철될 수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브레즈네프 대신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후에야 드디어 1989년도와 같은 사태가 용인될 수 있었다. 우선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국제적 긴장 완화가 동독과 동 유럽 공산지도자들을 불안스럽게 만들었다. 즉 위로부터 전제 조건이 마련됨으로써 드디어 아래로부터의 봉기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란 전쟁이 아닌 한 외적으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뿐이다.

긴장 완화가 아니었다면 대규모 폭동은 좌절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권력자와 회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변화도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인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 권력자의 권력이란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의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권력자의 이와 같은 만행을 막을 수 없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취임 1 주일 만에 소련에 대하여 “본인은 다른 국가도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또한 본인의 도덕적 의무 수행의 일부라고 본다”라고 선언하자 모스크바에서는 CSCE의 영향을 받고 마침 조직된 민권 운동 단체의 지도자

5명 (알렉산더 긴스베르크, 유리 오로프, 아나톨리 자란스키, 미콜라 루덴코, 알렉세이 티치이)이 체포되었다. 쥐드도이체 차이퉁 지 특파원이 보도한 바와 같이 프라우다지에는 다음과 같은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전대미문의 강력한 선전 포고문이 실렸다. “불과 몇명에 지나지 않는 반 소비에트 인사들이 조국과 민족을 중상.비방하고 있는데 ...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헨리 키신저는 “우리는 고통스런 체험을 통해 다른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기실 키신저는 대중이 모르는 가운데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 도브리닌과 수차례 만나 하나의 명단을 전해주면서 수록된 인사들이 석방될 경우 미소간 회담이 매우 쉽게 진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 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되찾아 주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비밀 외교의 공적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카터 대통령과 리건 대통령 역시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공공연하게 칭하며 타협할 줄 모르는 적국으로 몰아 부쳤다.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하던 중 “레히 바웬사와 만나는 것을 회피하였음”이 결코 그에게도 수월한 일이 아니었음은 틀림없지만, 바웬사로 하여금 브란트와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그 수 많은 고민거리를 덜어 주었음도 숨길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긴장 완화가 거론되지 않던 50년대와 60년대를 회고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 1953년부터 1959년 까지 미국외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는 강력하게 버텨야 된다고 rollback 과 liberation 을 주창하였다. 서독에서도 단독 대표권과 할슈타인

독트린으로 구현된 힘의 우위정책이 독일 정책의 기본 원칙이었다. 쌍방이 모두 스스로 단단한 콘크리트만 쌓아 올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가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었다. 동독 공산당과 국가 보위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횡적으로 통치했다. 아마도 당시 동독에게는 이와 같은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었으며 동독 최고의 시기였을 지도 모른다.

1956년 전후한 어느 날 동독 공산당은 “독일인들이여 대화를 위해 한 테이블로”라는 매력적인 구호를 만들어 냈다. 아마도 동독 공산당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동독의 국가로서의 인정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 같다. 당시 필자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에 고무되어 다음과 같은 어조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단체, 청소년 단체, 노동 조합의 회원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면 참으로 경탄해 마지 않을 노릇이다라고 ! 이 기사에 대해 필자는 전독문제성 (내독관계성 전신)으로부터 항의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각이며 필자는 처벌받아 마땅한 순박한 사람으로서 동독이라는 그 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증법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라는 것이었다. 동.서독 양 측에는 공포와 불신이 지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호 교감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장애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 1963년 6월 케네디 대통령이 평화 전략 (Peace Strategy) 연설에서 그의 평화의 전략을 발표한 이래 비로소 변화되었다. 그 전략의 요지는 우리들은 공산 정권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 없고 다만 진화적인 방법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군비 증강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의 에곤 바 (Egon Bahr)는 투칭(Tutzing)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와 같은 착상을 개진한 바 있다. 만일 장벽이 공포와 자기 보존의 본능 때문에 구축된 것이라면 정권의 그와 같은 공포를 점차적으로 제거하여 “국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이 바로 “접촉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naeherung)”라는 공식으로 함축할 수 있는 정책이다.

기민당은 이러한 “처음부터 강력한 저항을 통해 봉쇄해야 할 이완추세”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견해차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70년대초 빌리 브란트가 단안을 내린 바 있던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동방 정책 역시 기민당으로부터 배척 당했다. 즉 “서독의 양대 국민 정당이 그들의 동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소극적 (defensiv)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67년도의 하르멜 독트린(Harmel - Doktrin)은 나토 각료 이사회로 하여금 “군비증강과 대화”라는 정책을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기본 원칙이 되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69년 드디어 브란트가 수상으로 취임하자 사민당/자민당 연립 내각은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무력 사용 포기 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972년 동독과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이정표가 1975년도의 헬싱키 최종 선언이다. 선언문에 제 III 항목의설

정과 더불어 공산정권 담당자들에게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었다. 드디어 수 없이 많은 작은 걸음들이 있는 다음의 최초의 커다란 전진적 도약이 있게 되었다. 즉 소련을 비롯한 동 유럽 곳곳에서 그 후 몇 년간에 걸쳐 시민운동단체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긴장 완화 정책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점점 더 경직되어 가던 반공주의도 극복될 수 있었다. 그때까지 헬싱키 선언을 반대했던 기민당조차 정권교체 이후 브란트로부터 슈미트에 이르는 동방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1987년 9월 호네커의 서독 방문 초청과 더불어 기민당은 난관을 뚫고 적극적인 (offensiv) 동방정책으로 구 동독과 타협을 했던 정치가들(Beschwichtigungspolitiker)에 반대하는 비난은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데 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브란덴 부르그 주지사 스톨페(Stolpe)가 종교평정관으로서 국가보위부(Stasi)와 협상하면서 더러운 경력을 쌓았다는 주장 역시 논리에 맞지 않는다. 교회는 전체주의 국가내에서는 야당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의 대표자라면 신념에 투철한 윤리자로서 청교도적 공지에만 만족할 수 없으며 그는 일단 책임감있는 윤리자로서 행동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을 구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국가권력과의 관계 정상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보위부와 그 문서가 새로운 독일의 건설 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동독인들의 국가보위부에 대한 반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독인들조차 국가 보위부 문서를 선거전을 위한 공격 수단으로서 소모해 버리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으며 언론의 일부는 문서를 범죄시하면서도 발행부수 증가

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의 합성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신적인 파국으로까지 치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 십년간의 분단 이후 행복스럽게 서로 얼차안고 서로 화해를 했던 그 날이 얼마나 지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래로는 항상 퇴보만 계속되고 있다.

잘못된 방법 : 위로 부터의 정책 (Politik von oben)
 - 서독의 “현실 정책 (Realpolitik)” 은 동독의 변화를 지연시켰다 -

* 헬가 히어쉬 (Helga Hirsch)

동독의 과거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과거 동독의 체제 반대 세력들이 서독의 타협적 논쟁 문화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정의 문제를 법률적인 방법으로 환원시켜 보려고 하지 않는데 흥분하는 서독인들의 발언 신청 역시 많아지곤 한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복수심이 허용되기 전에는 결코 동독인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또한 동독인들이 과거와 상처의 아픔을 모두 잊어버리기 전에 과거를 다시 한 번 해부한 후 상처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시도할 때 서독인들은 더욱 흥분하게 된다.

서독 중도 자유주의자 대부분에게 과거라는 “오점”과 논란을 벌이는 일은 체면 손상으로 받아들여지며 마치도 우리가 근로 의욕에 넘치고 진취적이던 50년대의 독일인들이 벌써 60년대라는 역사를 앞질렀던 사실을 그때 가서 늦게야 알게 된 것처럼 비생산적인 것으로까지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독의 논평가들이 과거와의 논쟁이 볼프 비어만

* 디 짜이트 (Die Zeit) 지 기자

Die Zeit '92. 2. 21

의 말처럼 "절대적으로 짧았다"라는 사실에 찬성한다면, 과거 동독의 체제 반대자들이 그 반응에 있어 "약간 도가 지나쳤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랄 필요는 없다 하겠다.

후기 공산주의 국가에 살던 인간들이 유럽식 대화를 통해 서방측에 줄 수 있었던 것은 한 때 폴랜드의 역사학자 아담 미츠닉이 말했던 것처럼 한계 상황에 처한 생존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방 측은 동구권이 서방측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 중 극히 일부만을 이해하고자 했음이 분명해 졌다.

서독 시민들은 45년간이나 정치적 극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다. 다행히 그 어느 누구도 선과 악, 옳음과 그름과 같은 생존과 직결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정치적 극한 상황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그 어느 누구도 아침과 순교의 선택을 강요받지 않았다. 우리는 "뒤 늦게 출생했다는 은총", 서독에서 출생했다는 은총, 그리고 억압적인 동구 체제와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던 저항 세력 모두를 배제했던 무관심 덕분에 정치적 극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현재 바츨라브 하벨을 후기 공산주의적인 민주정부 대통령으로서 추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공산 독재하에서 너무 소홀히 취급받던 이상주의적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뮌헨이나 쾰른에서 망명권자로 인정받아 독일로 온 민권 운동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지성인 세계에 의해 수용되려면 레프 코펠레프(Lew Kopelew) 정도의 인물임이 증명되어야 했다. 그 반대로 체제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였다는 낙인이 찍혀 버리면 그는 심한 고난을 참아야 했고, 강해야 했으며, 레히 바웬사처럼 카톨릭 교도였거나 알렉산더 솔제니친처럼 민족주의자였어야

했는데, 그 결과는 치졸한 반공주의자로 경멸과 동정어린 냉소를 받으며 결국은 그 세계에서 배제될 뿐이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관점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서독인들이 즐겨 쓰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옳았는지 그 누가 알았단 말인가?” 라는 말은 자신에 대한 무죄 변명은 물론 타인에 대한 무죄 변명으로서도 적합치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책임과 시민의 용기와 같은 문명화된 도덕을 원래 고도 민주주의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초능력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척도로 현실세계에서 잘 잘못이 가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작가 페터 슈나이더 (Peter Schneider)는 이미 오래 전에 역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독이라는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도 전체주의 체제와 격정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한계 상황에 처했던 동독이라는 존재가 변모됨에 따라 아직도 서독에 풍미하던 상대주의 속에 스며있는 심리적인 위안감을 위협이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좀 더 심오한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현상유지는 20년 동안이나 서독 외교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통했다. 사민당원들은 민족문제 해결을 묻어 두었고, 집권 당시의 기민당조차 동독 공산정권의 독자적인 국가성에 대하여 더 이상 의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호네커가 연금 생활자들에게 여행을 허용하고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등 소규모나마 양보하였기 때문이었다. “접촉을 통한 변화”가 곧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는데, 이로써 동독에서 체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았지만 사실상 이는 동독 주민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수호하고자 함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단지 상층부에서의 접근만을 겨냥한 긴장완화정책 때문에 서독의 정치가들은 동독의 인권 운동은 물론 폴랜드의 연대 노조운동에 의해 이러한 상층부에서의 접근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마저도 그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산주의 권위에 도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공교롭게도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1981년 12월 에리히 호네커를 방문하던 중 폴랜드의 연대노조운동이 진압되었을 때 이에 대해 상호 이해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80년대 말만 해도 빌리 브란트는 폴랜드를 방문하면서 레히 바웬사를 피했고 바츠라브 하벨이 회상하는 바에 따르면 77 헌장 (Charta '77) 그룹 역시 서방측 방문자들로부터 자체 정권의 대표들로 부터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체제 인사들은 정치가 아닌 도덕성만을 추구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서독의 2대 국민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그들의 동방정책에 있어서 모두 소극적이고 국가위주였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좌파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선별적 변호를 통해 자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하지 않았고 반공주의 논쟁 때문에 “우파”라는 냄새를 풍길까봐 더욱 걱정스러워 했다. 즉 그만큼 체제 반대 세력의 영향력은 역사 과정에 아무런 뜻이 없는 듯이 보였다. 이와 같은 출발점에서 비추어 볼 때 브란데부르크주의 스톨페 지사를 변호하는 인사가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로부터 빌리 브란트를 비롯하여 헬무트 슈미트에 이른다는 사실이 전연 의아스런 것이 아니다. 상층부에서 좀더 예측 가능한 진전 상황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독 공산당이나 심지어 국가 보위부와 같은 국가 기관과 접촉을 가졌으므로 그는 서독의 긴장 완화 정책에 대한 동독의 한쪽 대화 상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독간에 타협추진자들 간의 연합은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한 단절될 수 없었으며 일부나마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구주안보협력회의의 문서와 함께 국제적으로 구속력있는 표준을 설정하였으니 민권운동가들은 바로 이 표준에 맞추어 기존 권위주의에 반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나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반 스탈린주의나 반공주의와 같은 저항의 전통이 생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반 스탈린주의자나 반공주의자와 같은 체제 비 적응자들은 축출된 후 다시 서독으로 팔려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70년대 중반부터 다른 동 유럽 국가에서 저항 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했을 때 동독 반체제 인사들이 국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만일 볼프 비어만이 독소에 가득찬 산문을 계속 품어 댔더라면, 지금 우리들로부터 자의식이 결핍되어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구 동독 시민들이 체제에 덜 적응하고 다소 의연하게 행동했다라면, 동독은 서방측으로부터 연대 의식을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며 호네커 정권 역시 궁극적으로 훨씬 더 빨리 붕괴되었을 것이다.

비록 역사를 새롭게 기록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조명하면서 다소나마 자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단지 오점을 숨기며 자기 정당화만을 관철하려고 하면 내독간 타협 추진자들 간의 연합은 구 동독의 야당을 두번 다시 패배자로 몰아 부치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를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었을까? 신설 연방주 희망의 상징인 만프레트 스폴페가 지난날 국가보위부와 접촉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에 빠져 든 이래 그를 옹호

하는 수 많은 저명인사들은 그의 비밀외교가 현실 정치적으로 효율적이고 도덕적이었으므로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설득력은 없다. 만일 클라우스 폰 도냐니 (Klaus von Dohnanyi : 전 함부르크 시장, 사민당)가 스톨페를 그랍 폰 슈타우펜 베엑 (Graf von Stauffenberg : 독일 제국군 대령으로 히틀러 암살에 실패함)이나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 신학자로 반나치운동의 선봉)처럼 격상시킨다면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착각하고 있다. 즉 스톨페는 동독의 권력기구내에서 여하한 기능도 명시적으로 수행치 않았으며 독재자를 폭력적으로 배제하려 시도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스톨페는 동독 지배자의 전복을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단지 지배자들의 통찰력을 믿기만 했을 뿐이다.

소련 공산 세력의 핵심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스톨페의 기교를 현명한 것으로 보려는 시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를 그 권력 엘리트를 통해 변화시켜보려던 시도는 동 유럽에서도 여러 번 있었으나 (1956년도 헝가리와 폴란드, 1968년도 체코 슬로바키아) 그때 그때마다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방 여행자 수를 증가시키고 야당 인사를 수 년간 옥중에 가두어 두는 대신 48시간 동안만 구금하는 등 헝가리 공산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 헝가리식 공산주의 (Gulaschkommunismus)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일당 지배체제는 변함이 없었으며 공산당의 정보독점권과 권력독점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었고 여하한 형태의 허용이라 할찌라도 언제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은총 아닌 은총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미 30년 전에 폴란드의 철학자 라스첵 콜라콥스키 (Laszek Kolakowski)가 주장한 대로 공산주의란 구체적인 반응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아둔한 반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연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과거의 개혁 공산주의자들이 소망하던 것 보다는 훨씬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70년대 폴랜드의 KOR 나 프라하의 Charta '77 과 같은 민주적인 반체제 그룹은 의식적으로 권력기구내에서 영향력 행사를 피했으며 아래로부터 저항에 주력하였다. 즉 폴랜드와 솔리다르노쉬는 공동 책임과 더불어 마침내 권력에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누가 오늘날의 지식 수준으로 이와 같은 것이 환상적이며 모험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모스크바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더라면 1989년의 와중에서도 폴랜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독의 공산 정권은 무너질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솔리다르노쉬가 10여년간에 걸쳐 공산주의가 진흙탕 속에 빠져 있다고 공산주의의 실정을 입증하지 않았더라면 모스크바 당국이 동맹국의 붕괴를 용인할 리가 있었겠는가?

민주적 반체제 인사들의 타협할 줄 모르던 순결성이나 스톨페의 연루 여부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일 거리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공산주의가 비록 수 십년간은 아닐지라도 수 년간은 더 버틸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역사의 해석이 옳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비밀 외교라는 압력 자체만으로 공산주의의 목을 꺾어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재 체제와의 대화가 비로소 동독의 변화를 가능케 했다

* 에어하르트 에플러 (Erhard Eppler)

항상 그렇듯이 이미 발생한 일들은 사후에 갑작스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나 제 3자 들까지도 그 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결코 당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심지어 역사를 대할때도 마치 소비자처럼 행동하곤 한다. 마치 잔인한 추리 소설을 즐기듯 인류의 대 재난과 전쟁등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다. 사건이 우리가 기대하던 것보다 더 유리하게, 운수 좋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성공한 TV 연속극을 대하듯이 역사를 취급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감사하는 마음은 결코 생겨날 수가 없으며, 또한 왜 모든 일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잘 해결되었을까 라고 곰곰히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 소비자처럼 행동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 바로 공산체제의 놀라운

* 사민당 (SPD) 국회의원

Die Zeit '92. 2. 28

붕괴 현상을 대했을 때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 변혁이 유혈사태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 을 대했을 때이다. 이러한 평화적인 이행과정은 공산체제 붕괴 그 자체보다도 우리를 매우 당혹케 했다.

비교적 공산독재체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우리들 중에 그 누가 1989년 여름에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이 물리적 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 사회를 지배했던 보안기구를 동원하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순순히 양도하리라고 믿었겠는가? 또한 우리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을 때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조용하게 감사하면서 언제 놀라와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몇일만 시간을 내서 잘 생각해 보았다라면 이러한 전개과정을 달리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모두가 - 구 동독의 교회와 서독의 각 정당들 포함 - 구 동독의 권력자들을 마치 나병환자처럼 대하며 이들과의 접촉을 꺼려했었다면, 또한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득의양양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했었다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리는 50년대와 60년대 냉전기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해 왔었다. 만약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계속되었더라면 더 이상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던 공산체제는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라져가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러한 과정이 전개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자들도 단지 추상적으로 계급의 적에 대하여 비난만을 할 수 있는 자들과, 비록 적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걱정에 동감하고 이를 경감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 구분된다.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전 기사당 당수)의 SED(구 동독 공산당) 지도부와의 접촉은 그런 의미에서 공산당에게는 하나의 이로운 일이었다. 공산당 지도부가 몇 십년을 제국주의 적의 대표라고 비난하던 인사와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차관을 얻어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SED가 경제적인 성공을 통해 그들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 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권력 정통성 유지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간다. 슈트라우스는 이러한 적대감을 원초적으로 웃음 거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지배계급은 지배 영역 외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다. 그러나 SED와 국가보위부의 간부들은 자가지배 영역 바깥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희망했고 또한 기대할 수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그들은 얼마간 감옥에 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이다. 250만 SED 당원들이 민주적인 질서로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동독에서는 무혈혁명이 가능했다. 이러한 동화의 여지가 존재했다는 것은 동.서독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독내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와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SED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그들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강화시키기를 희망했고 또한 그러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것은 대화를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SED는 이를 위해 많은 댓가를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SED가 치를 댓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브란트의 경우 슈미트나 콜이 보는 것과 달랐다. 또한 슈트라

우스 경우와도 사민당의 기본정강정책위원회 (Grundwertkommission: 필자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임.)의 입장이 각각 달랐다. 동.서독의 만남을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사진이나 찍는 의례적인 것으로만 많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80년대 서독내 모든 당의 정치가들이 다투어 이러한 대화를 가질려고 노력한 것처럼 거기에는 어떤 얻을 것 (동독측으로 보면 댓가)이 있었다. 대화를 계속하면 우리보다도 더 SED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방측은 자체 진영의 결속을 위해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선전적으로 동구권을 과대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방측의 자세는 공산주의자들을 허영으로 들뜨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보다도 그들이 경제, 정치, 지정학적으로 또는 늦어도 60년대 부터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열세에 있으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불필요하게도 우리에게 추월당한 것들을 따라 잡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결과 점점 우리에게 예속되어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느 편이 우월한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었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우리가 SED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그러한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라이프찌히의 한 철학 교수가 사민당의 기본정강정책위원회가 SED의 지식인들과 가까이 이데올로기 문제를 토론할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해 왔을 때 그의 동기는 더 이상 단순히 SED의 지위 격상 또는 정통성 제고만이 아니었다. 공산주의 지식인들은 이념적인 천박성에서 벗어나 다시금 기본 가치에 관한 문제 토의를 시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측은 공산주의자들이 고립과 부자연스러움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서구에서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논쟁을 벌이

는데 큰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그럴 경우 우리보다 더 더욱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비록 우리측에서 일부 사회민주주의자들마저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하고, 연방정부 또한 아마도 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사민당과 SED와의 이념논쟁을 묵묵히 참고 있기는 했지만 ...

그러나 SED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권력독점원칙에 손상이 가는 것을 무릅쓰며 이데올로기의 제 전제조건들을 토론의 대상으로 허용했다. 국가 대 국가간의 협상이나 대화인 경우에는 그들 권력의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가 전혀 논란의 여지가 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해 주는 진리규정의 독점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 대답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이 명확했다. 사민당과의 대화의 댓가로 동독측은 동독내에서, SED내에서 그리고 SED와 교회 또는 교회의 보호 아래 독자적인 입장을 주장할 수 있었던 단체들간의 대화를 허용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동독의 교회는 양측이 대화하는 내용에 늘 정통하고 있었다. 또한 동독의 교회는 사민당이 SED와 “이데올로기 논쟁과 공동 안보 (Der Streit der Ideologien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라는 공동 문서를 작성토록 하는데 많은 용기를 주었다. 호네커가 본(Bonn)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기 몇일전인 1987년 8월 27일 이 공동문서가 공표되었을 때, 동독신교연맹 지도자인 요하임 가르스테키 (Joachim Garstecki)는 이제까지 구 동독의 교회가 주장했지만 SED가 늘 부인해왔던 그러한 낯익은 많은 명제들이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카나리아 군도에서 휴가를 즐기듯이 동독의 평화적인 종말을 그저 굴러 온 선물처럼 즐겨 온 사람들은 이제 격분하여 이렇게 물어 올 것이다. 당신들은 왜 기본 가치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대등한 대화 상대를 보며 공산주의자들의 지위를 격상시켰는가 라고.

동독에서 평화혁명을 준비하고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SED의 공식 이데올로기상으로 "제국주의"라고 저주되던 서방 체제의 평화능력보유성(Friedensfaehigkeit)이 공동문서에 표기됨으로써 1946년 이래 처음으로 SED내에서는 공개적인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SED 정치국도 다음과 같은 공동문서의 귀절을 허용했다. "체제간의 자유 경쟁과 그 체제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체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각자 체제내에서 언제나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장려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체제간의 실제적인 경쟁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많은 보통사람들이 이러한 문서귀절 때문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국가내의 문제에 관여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 이 귀절 하나가 도덕적인 위엄을 뽐내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오늘날의 판사보다도 더 오늘날 피해자인 구 동독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했다고 생각된다. 만약 1989년 단지 SED에 반대하는 운동만 있고, 유일한 국가 정당이었던 SED 내에서 반대하는 운동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아마도 유혈 상태로 인해 몇 십년은 더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1987년 가을이 SED가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호네커가 자신의 지위격상을 노리면서 본(Bonn)에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면서도 동독내에서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을 때, 정치국원 하거(Hager)가 보수적으로 회귀하며 SPD - SED 공동문서를 동독의 보통 이데올로기 정도로 다시 격하시켰을 때, 대화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기대하에 참고 있던 주민들은 그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했다. 나는 1989년 6월 17일 연방하원에서 SPD - SED 공동문서에 “어느 한편도 다른 편 스스로가 붕괴하려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구절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미 동독의 많은 사람들은 서독측이 이제 대화를 통한 방법에 지쳐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신호로 받아 들었다.

나는 3주후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교회대회에서 루카스교회의 반국가적, 반교회적인 인사들과 대담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동독의 위기는 독일이 통일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교회대회에서 동독지역의 교회가 더 이상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교회는 걱정하고 있었으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정치적인 의식을 갖고자 하지 않는 보수적인 루터주의자들의 조심스러움 이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교회만을 생각했지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심이 없는 그런 그룹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교회 지도자들인 포록(Forck), 슈티어(Stier), 뎀케(Demke), 스톨페(Stolpe) 등은 “교회는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SED와 의견이 일치했던 많은 보통 신자들과 교회 동료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였다.

스톨페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SED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권력자들과 독자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의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다.

반체제 인사들 중 합리적인 사람들은 교회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 놓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교회와 일체감을 느끼지 않아야만 교회가 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그래야만 교회가 재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80년대에 내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만프레드 스톨페 또한 반체제 그룹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꼭 행동하지는 말아야만 자신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공동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결코 평화적인 혁명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제쯤이나 자신을 민권운동가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도덕적으로 절대화시키며 부여된 다른 과제를 충실히 이행했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을 그만두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이나 지금 그들이 비난하는 일들을 다른 몇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한 일들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면 누가 제일 먼저 그 희생자가 되었을까?

스콜라 철학자들이 일찌기 간파했듯이 도덕적인 총체성 가까이에 있는 늘 비도덕적인 총체성이 잠복해 있다.

동구권 변화의 발효 과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서방측은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

- 서방측 긴장완화정책 추진자들은 동구권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

* 아담 크르체민스키 (Adam Krzeminski)

동방정책과 긴장완화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은 부활절이 성탄절을 능가한다는 폴란드
의 풍자 촌극을 어느 정도 연상케 한다.

동방정책이란 - 70년대의 정치학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 오늘날 가끔 비
난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그토록 일차원적으로 구상되었던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위로 부터(von oben)”의 현실정책 추진이나 “아래로 부터 (von unten)”
의 시민운동 강화나 등 양자택일식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조성, 즉 상처의 흔적이 더덕 더덕 하던 동구권 사회로 하여금 내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각종 집단과 정치세력이
이 긴장완화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은 동구권 사회
의 내적 운동 유발을 교과서에 기록된바 대로 적절하게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그 동방

* 폴란드 언론인

Die Zeit '92. 3. 6

정책에 따른 결과의 한 가지가 유럽의 영토현황에 대한 인정 및 각국 고위층 간의 회담이며 그 중 다른 한 가지는 저변으로 부터 발생한 시민운동의 횡수가 점점 더 증가함으로써 철의 장막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결과는 모두 상호 보완적이었다.

대다수 동구권 국가의 지도층들은 동방정책의 위험성을 즉시 알아챘다. 그들은 이데올로기가 둔화되는 것을 두려워 했고 무제한 인적, 물적 접촉과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우려했으며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는 서방측 특파원의 보도활동을 경계했다. 공산당내 개혁파들이 긴장완화정책의 이와 같은 결과를 직시하였음은 물론인데 그들은 이 기회를 - 최소한 폴랜드에서는 - 소련 헤게모니로 부터 예측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기술관료들도 서방측의 원조와 더불어 경제 붐이 일것을 믿었으며 곧 이어 국제적으로 명망높은 정치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즐거워했다.

1970년 1월 스테틴 조선소에서 그가 통치하는 한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에드바르트 기어렉의 약속이 그가 실각한 1980년 까지 지켜졌다는 사실은 그가 서방측과 매우 빈번히 접촉한 결과였음이 틀림없다. 그만큼 정치적 능력이 고상하게 세련되어 갔던 것이다. 1976년 중 폴랜드에서 스트라이크 파동이 일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구타 당하자 “노동자방어위원회”라는 야당 그룹이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었고 집권정당으로부터 사실상 묵인되었다는 사실 역시 긴장완화의 결과였다. 이와 같은 긴장완화의 결과로 1980년 여름 레히 바웬사는 단치히에서 세계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1년 12월이 중요한 기점이었다. 비상사태선포로 인하여 폴랜드는 긴장완화라는 회전
목마로부터 내동댕이쳐져 버렸다. 이것은 동독 지도층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동독 지도층은 동서 대화의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어떠한 형
태든지 내부개혁을 선도할 용의는 전혀 없었다. 동독공산당 고위층 대부분의 발언내용
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폴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존하는 사회주의의 구조 변화에 따
르는 필연성을 둘러싼 모든 갈등과 같은 것은 동독과 전연 무관하다고 공공연하게 주
장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양독간 “평화를 위한 책임공동체”를
주장했으나 내적인 변혁을 거부하는 자세는 콘크리트나 다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독일인들은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서로” 계속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듯이 실지로 그러한 고위층간의
대화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비밀스러운 면이 있는 가운데 천
의 모든 실마리를 다 풀어 버리지 않았던 것이 옳을 수도 있었는가? 폴랜드 지도층이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였지만, 잔인무도한 권력의 하수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위 “온건파”들이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사민
당 지도자 허버트 베너 (Herbert Wehner)는 바르샤바행 여행을 감행했음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야루젤스키 장군을 사후에 변호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1982년
초만 해도 “우리가 최소한 2,000명을 처단하지 않으면 사태를 장악할 수 없을 것”이라
고 흡혈귀처럼 피에 굶주린 지역공산당 간부들의 거침없는 으름장이 들렸음에도 이러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 서방측 정치가들이 야루젤스키와 초우체스
크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치란 곧 때로는 가능성의 예술이기도 한데 정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일종의 수공업자이다. 5년 전에 호네커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오늘에 와서 그 서독 정치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민당이 폴란드 연합노동당(PVAP) 내 개혁파를 도와 주려고 하던 참이었으므로 빌리 브란트와 레히 바웬사의 만남이 성사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으며 그래서 브란트는 아담 미츨니크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업보로써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일은 일단락되어 버렸다. 오늘날에 와서 긴장완화정책의 과실 하나하나를 꼬치 꼬치 파헤쳐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긴장완화정책으로 훌륭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하여 각종 재단과 교회 관계자들과 심지어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지하운동과 시민운동을 너무나 소홀하게 지원하였고 그 대신 공산당의 “상층부 세력”과 만 있으나 마나 한 결탁관계를 유지했다는 정치가들에 대한 비난은 쉽사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쉽사리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식있는 정치가라 할찌라도 무엇인가 분명한 것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지만 성사되지 못할 것 같으면 때때로 기교를 부리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실례 중의 하나가 폴란드 공산당에 맞서 대항하던 추기경 슈테판 비진스키(Stefan Wyszynski)가 암울하던 스탈린 시대인 1950년 4월 로마교황청의 노선에 반대하면서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교회의 자유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자들이 “국가의 권력과 법률”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무를 스스로 짊어졌다. 비진스키 추기경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지하운동그룹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0년 8월에는 스트라이크 중이던 노

동자들에게 조선소로 돌아 가라고 요구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동독의 교회 관계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비진스키 추기경을 경멸하고픈 생각을 하는 폴란드인이라곤 추호도 찾아 볼 수 없다. 개성이 뚜렷한 한 남자의갈 지자걸음은 장기간에 걸쳐 살펴 보면 매우 곧은 직선임이 입증될 수 있다.

지난 수 년간 서방측의 “현실 정책”은 결코 머뭇거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속력을 내본 적도 드물다. 서방측의 현실정책은 혁명에 장애물을 설치하고자 원하지 않았고 그대신 혁명이란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자체의 힘이있었기에 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솔리다르노쉬가 1988년에 정치무대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웬사를 방문했던 리건 대통령과 일부 서방측 정치가의 덕분이 아니고 폴란드의 사실상의 권력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던 잇다른 스트라이크 파동의 결과였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권력자들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안심하고 야당과타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곧 이어 정권교체가 뒤 따를 수 있었던 것이다.

동독에서도 상황은 다를 바 없었다. 동독 지도층을 열렬하게 포옹하던 서독 정치가들의 기교는 “동구권내 주민들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유럽의 평화만”을 보장하려던 타협이 아니었다. 서독 정치가들은 그 반대로 집권층내 구 세대들을 은퇴하도록 유도한 후 차기세대 출신의 동독 공산당 지도층이 문명인다운 행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정치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지만 정치가들의방문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체제 인사들이 하나의 반체제그룹으로 조직화될 수 있었다. 공산주의체제하의 한 사회는 시민운동권을 형성하고 개혁을 단행

할 내면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든지 두가지 중의 한 가지이다. 동독 사회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더구나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독으로 끊임없이 추방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동독내 변화에의 발효 과정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서독은 어떠한 “정부”정책을 취했어야 했을까? 장벽을 완전히 차단해 놓고 사실상의 동독국적을 인정한 상황하에서는 언젠가 한번은 봉기가 일어나겠지라는 한가닥의 희망을 갖거나 아니면 “분단에 따른 인간적인 고통의 완화”를 통해 그 체제가 좀더 유연해 지겠지 하는 희망과 함께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독의 경우 아래로 부터의 진정한 시민운동은 주민들의 대 규모 탈출, 피난사태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지 조직적인 저항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즉 동독사회는 긴장완화정책을 체제개혁의 절호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동독 사회는 오로지 동베를린과 모스크바의 “권력상충부”만 한눈 팔지 않고 주시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희망을 걸었던 동구권 인접국의 경험으로부터 별로 배운 바가 없었다고 본다.

동구권의 인접국들은 서방측 현실정치가들과 함께 “고르비 열광”의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그들은 고르바초프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현한 것이 소련이라는 대제국에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있던 내적 모순의 비난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었음을 망각하기도 하였다. 우리 모두가 그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지만 그에게만 모든 것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르바초프 자신도 1985년에 “솔리다르노쉬” 운동이라는 현상으로부터 교훈을 찾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래로부터 내적인 개혁압력이 없었더라면 고르바초프도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

들은 단지 끝없이, 아무런 성과없이 모든 것을 위로부터 조종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독공산당 고위층은 오늘날까지 회전의자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체제 적응이라는 나쁜 선례:

- 서독의 “현실 정책 (Realpolitik)” 은 구 동독 반체제 인사들을
경시했으며, 오늘날 내적 통합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

*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긴장 완화 정책과 동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비단 우리의 과거와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하는 문제점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두 개의 상이한 동.서독이라는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한 독일 속의 깊은 골은 점차로 없어지기는 커녕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다.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의 관련 정책에 관한 가능한 다른 대안에 대하여서는 장시간에 걸쳐 토론해 볼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엄청난 조치의 결과에 따른 사회심리적 파국 현상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다. 동독 사람들의 머리는 온통 심란한 불신으로 꽉 차있다. 그들에게는 통일이 공개적인 민주사회 창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기도 했지만 낯선 체제를 받아 들여야 했고 익숙해 있던 국가적 보호 상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들과 연계되어 통일에 따른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있다. 그와 더불어 구 서독 지역에서도 심각한 불신과 분노가 자라나고

* 구 동독. 민권운동가

Die Zeit '92. 3. 13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를 재조명해 본다면 당면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동독이 멸망하기 전에 동.서독이라는 양 국가와 두 사회간의 교류 협력 과정이 잘못된 자체 한계를 설정한 결과가 오늘날 그 파급 효과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왜 정계, 학계, 문화계의 독일 엘리트들은 최소한 독일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에 목표를 두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들은 왜 지금도 단지 구태의연한 상투 수단만 재현하고 있던 말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 차원에 걸친 문제점과 과제 역시 급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동.서독 독일인들에게는 역사의 구각을 벗어 버리는 순간이 잠시나마 다시금 민족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늦어도 미래의 유럽을 위한 경제, 화폐, 정치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수 년간에 걸쳐 독일 고유의 것을 찾는 작업 또한 가시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과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관료기구와 행정부만이 앞으로 서 유럽의 일부 대 도시에 모여 새로운 미래의 유럽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 전역에서 각 분야에 걸친 민주 세력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의회 권능이 성공적으로 확장되지 않고는, 또한 제도의 개혁없이, 나아가 조금 불편하지만 활기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동참케하여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 없이는 이와 같은 도전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더불어 과거의 동방 정책과 긴장완화정책의 구체적인 오류와 태만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은 오늘날 체제간의 적대성이 해소된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훌륭한, 기대했던 의도와 결과는 수 없이 많이 기술된 바 있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화된 결론 이외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

서방측의 긴장완화정책이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정책 대변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정치적인 현상 유지를 위한 체제간 인정을 안이하게 목표로 하였다고 평가 절하될 수 없듯이, 동 유럽의 반 체제 인사들이 단순히 주의 주장만 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하였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한 행동만을 했다는 평가 역시 옳지 않다고 본다. 바츠라브 하벨, 아담 미츨닉, 기오르기 콘라트 등 저명 인사들의 글 속에는 늦어도 80년대부터 유럽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라는 방안이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의미있는 일은 못했지만 존립하고 있던 동독의 반 체제 그룹은 이와 같은 대화에 공식 엘리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즉 반체제 인사들간의 동·서 대화라는 망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대화는 서 유럽 및 미국의 친구들의 협력으로 불력을 초월한 토론과 협상을 가능케 했다.

공산주의 체제의 개혁 가능성에 관한 환상이 제거되면서 반 체제 인사들도 권력자들과의 대화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권력이란 서방이나 동방이나 마찬가지로 운동권 인사들보다는 다른 대화의 상대자를 더 선호하는 법이다. 이제와서 다시금 정부와 정부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각 차원에 걸쳐 정치의 분업화가 있어야겠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지만 진부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튼 필자도 서독의 정치가들이 동독 정부가 아니라 오로지 동독 반 체제 인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상호이해가 아니라 상호대결에 주력했어야만 했다는 대담한 주장을 폈던 주목할 만한 동독 반 체제 인사가 동독에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방측 각 정치집단의 정치가들을 결속시키는 것은 동 유럽 체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그와 같은 평가는 너무나 상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많은 서방측 정치가들은 동 유럽의 반체제 운동권이나 인권운동가들을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는데 무능력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오히려 용기있는 보수주의자나 극우세력은 그들의 성향때문에 언론에서 별 문제가 없고, 또한 일부 저항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동조를 했기 때문에 구 동독 반체제 인사들 대표와의 만남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강경론을 폈던 사람들조차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에서는 비밀 외교를 펴기는 했지만 말이다.

사민당측이 당면한 딜레마가 훨씬 심각했다고 본다. 그것은 당내 교조주의적 좌파들이 이들 반체제인사들과 동지 의식을 느끼면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혁파들에게 어떻게 고르바초프식 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발전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유럽에서 개혁파의 확산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사민당의 고민 거리였다. 그러나 사민당이 생각하듯 오로지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고 오로지 평화적인 과도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야루젤스키조차 그와 같은 방법을 취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호네커에게 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였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집착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도그마와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사민당측과 실존하는 반 체제 인사들과의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측은 정부측대로 반체제인사를 만나기 위해 방문 프로그램의 여하한 변경이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방문 일정에 대하여서는 차단조치를 취했음은 물론이고 가방 속에 든 비밀문서 따위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예가 없지는 않다. 자기 국가의 국제적 인정에 굽주리다 지쳐버린 동독과 같은 국가는 외국의 정계나 학계나 예술계의 저명 인사들과의 접촉 모색에 지칠 줄 몰라했다. 페트라 켈리(Petra Kelly), 게르트 바스치안(Gert Bastian) 같은 불력 초월적 인권 정책을 대변하는 몇몇 유명인들은 그 입장이 녹색당의 대다수와는 물론 기타 정당의 입장과 전혀 일치할 수 없었지만 수 년간에 걸쳐 공개적이고 독자적으로 금기를 초월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리 유명하지 못한 대 다수의 동지들도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대화가 성사되도록 하였으며 지원과 연대가 이룩되도록 노력하였다.

동 유럽 모든 국가에 있어서 반 체제인사들이 처한 조건은 달랐지만 당면한 문제점은 심각할 정도로 비슷했는데 다음과 같은 프라하에서 있었던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서독으로 망명한 후 80년대에 녹색당의 정치가가 된 밀란 호라체크(Milan Horacek)는 수 차례에걸친 헛된 시도 끝에 드디어 프라하의 정부공식기관인 평화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호라체크가 녹색당의 사절단 뿐만 아니라 반체제 동료들과 함께 프라하에 도착하자 초청자 측은 극도로 불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호라체크씨, 이건 정말 점잖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초청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과 함께 왔

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란 말이요?”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훌륭한 주인께서 갑자기 몇 개만 식탁에 더 올려 놓으면 될 것이 아니요” 였다.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체제가 갖고 있는 숙명적인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룩한 모든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 이상이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스크바로 부터 부다페스트에 이르는 도처에 전파되어 국민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간섭이라는 권한행사로 표출되었는데, 이것은 거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취해지는 그 어떤 조치보다 더욱 값진 것이었다.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문화인과 엘리트들이 결코 대담하게 시민 불복종이라는 용기나 국가에 대한 거리감 유지 같은 것을 보여준 바 없었는데, 동.서독 간에 마치 관계 “정상화”가 이룩된 양 착각했던 정치 행태나 의사 소통 방법 등은 숙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조심스런 비판에 만족하는 체제 적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취득이나 국제적인 정치, 학술, 의사교류집단에의 참여라는 보상 정도였다. 경기 규칙을 위반하고 반체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빈민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구제가 불가능한 체제의 적으로서 매도당하는 것이었다. 반체제 그룹의 입장과 윤리에 꼭 동조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서독의 지식인 층과 예술계가 그 책임을 인식하려는 마당에 왜 그러한 것까지 방해하려 하는가?

원칙적으로 올바른 동방정책이 왜 마지막에 부분적으로
운영상 실패로 귀결됐는가

* 로베르트 라이히트 (Robert Leicht)

왜 하필이면 흑백논리에 입각하여 이렇게 자주 논쟁이 벌어지는가? 마치 서독의 동방정책이 절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또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말이다. 독일 민족의 분단뿐만 아니라 1933년 부터 1945년에 이르는 분단 이전의 역사와 같은 것은 스스로 인정하건 말건 행위자의 후손들에게는 극단적인 악몽같은 체험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험과 연계된 모든 것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며 서로 극단적으로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일단 이와 같은 견해들이 옳은가 그른가하는 문제만이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즉 1969년 이후의 신동방정책추진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또한 성공적이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경

* 디 짜이트 (Die Zeit) 지 기자

Die Zeit '92. 3. 20

과함에 따라 동방정책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도 없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동방정책을 끊임없이 반대한 사람들, 그들의 정치거부현상 때문에 타판이 초래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불행을 자초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오늘날 마치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인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

동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얻어진 결실에 대한 확신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헬무트 콜 수상도 들 수 있는데 그는 연방의회에서 자기가 속한 원내 교섭단이 애초에 CSCE 과정을 옹호하였던 점을 자인하면서 브란트/셸 정부와 슈미트/겐서 정부의 업적을 치하했다.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래 물론 세상은 달라졌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멸망 이전까지 세계는 단지 모스크바로 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동방정책과 신독일정책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 동구권 독재자들의 경직성과 잔인성으로 인한 괴로운 체험이었다. 서방측은 독일의 현상유지 상태를 변경시키는 아무런 시도도 한 바가 없다. 당시에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명하게 표현해주던 독일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위협부담을 자초하지 않으려는 한 당시 상황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기정사실이였다. 단지 수사학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이러한 괴로운 상황을 통해 비로소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미래지향적 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점에 있어 양독간 긴장완화정책의 주장자들은 국내의 반대세력에 대해서만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관철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역설적인 상황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으로 강대국들은 골칫덩어리인 독일때문에 긴장완화에 대한 자기 자신

들의 이익을 희생할 용의가 없었으므로 독일인들은 결국 이와 같은 국제적인 긴장완화 과정에 동참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단 독일인들이 국제적인 과정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려고 하면 강대국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독일인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동방정책 대신 대외정책적으로나 독일정책적으로 존트호펜(Sonthofen : 뮌헨대 정치학 교수)의 전략에 따라 팔장이나 끼고 공산주의체제의 기약할 수 없는 멸망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면 동독사람들을 잠정적이거나 역사의 정치적 희생자로 전락시켜 버렸을 뿐만 아니라 서독을 서방세계로 부터 위협천만하게 고립되도록 하였을지도 모른다. 동방정책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 늘 망각되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동방정책추진에 있어 최종단계에 대한 자아비판적 토론 또한 허용되어야만 한다.

과연 동방정책이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공산주의 체제 붕괴에 일조를 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는가? 그와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동방정책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현실을 처음으로 직시하면서 동독의 내적인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외적인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동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돕고자 함으로써 공산주의 붕괴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즉 안정화를 통한 변화 (Wandel durch Stabilisierung) 유도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결국 통일과 자유를 교환하자는 제안과 같은 것이었다. 두 개냐 한 개냐의 독일이라는 국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풍요와 자유의 격차가 문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외교정책적인 근거는 수 없이 많다. 동독이 체제의 내적 개

방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CSCE 최종선언의 인권수준으로 접근하자 분단을 규정짓던 국경은 점점 사라지고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완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체제가 언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계속 생존해 갈 수 있다는 가정은 정당한가? 각고의 노력으로 공산체제로부터 성취한 인도주의적인 허용조치가 진정코 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해해도 되는가? 우리는 그때 실제 체제를 전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민주주의가 부족한 상태로 그대로 감수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처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시 상황 하에서는 체제의 붕괴가 가능하게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제가 전복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폭발적 차원으로 진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애초 서로 합의된 타협점만을 취하며 정권이 안정되도록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사적인 표현 이외에 어느 정치 진영의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동구권이 변화한 것은 고르바초프 덕분이라는 말은 사후에 문득 떠오른 재치있는 말일 뿐이다. 지난 수 주 동안 고르바초프 독일 방문시 기사당 수뇌부는 마치 대목 장날을 맞은 듯 “고르비” 축제를 벌였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긴장완화정책을 필사적으로 반대하였을 뿐 더러 고르바초프의 약속을 믿어야한다는 1987년도 겐셔의 촉구를 “겐셔주의”나 “고르비광”이니 하면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비방하던 사람들이다.

붕괴냐 지원이냐 하는 선택가능성은 존재한 적도 없고 단지 붕괴시키기 위한 지원만이 있었다.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런 선택 가능성은 소련에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끝

나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선언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방정책에 대한 자아비판적인 검토기간은 80년대, 특히 80년대 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동방정책의 추진에 있어 위기는 사실상 1981년 12월 13일 폴란드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역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야루젤스키의 결단으로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방지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유명한 독일 정치인 한 명이 “유럽의 평화가 폴란드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고 기술했는데 우리독일 땅의 평화가 우리들에게는 폴란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식으로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로섬게임과 같이 다른 편이 댕가로 우리 편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이미 당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매우 단순한 생각이었다. 더구나 폴란드에게 거부했던 것을 동독에 대하여 요구할 수는 없었다.

아무튼 80년대는 정책 운영상의 미숙 및 거리감 유지의 상실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점철되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은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허용된 규모 내에서 정책을 추진코자한 사람이라면 그 규모에 입각하여 상대방의 행동조건으로 입장을 뒤바꾸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는 과연 상대방이 주어진 상태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만든 법칙이나 체제의 포로가 되어 버릴 것이다. 다행스럽게 거의 대부분이지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오늘날에야 80년대 중반부터는 동독에서 결코 양독간 타협으로 인해 허용된 개방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정도가 심해지기도 했지만 사실상 억압적이고 위기감이 감도는 반동이 시작되었음을 알게되었다. 주민들의 분위기

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경제적 침체는 점점 더 가속되었으며 Stasi는 그 규모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반체제운동인사들이 드디어 말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서독의 정부나 야당을 비롯한 정계는 이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결과 오늘날에야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 바와 같이 에리히 호네커가 최대의 외교적 성과라 할 서독방문을 마치고 동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야당과 교회의 목을 조이는 국내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책 운영상의 미숙과 거리감 유지의 상실과 같은 것이 진실파악을 가로 막았으며 이러한 반동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방해했다. 연방정부는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고 사민당은 그들의 부차적 외교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등 어느 곳에서나 에리히 호네커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정치가의 능력을 반영하는 증명서나 다름없었다.

실례를 들자면 SPD(사민당)와 SED(동독공산당)간에 합의된 공동문서가 동독 반체제운동 내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비판적 지식인을 희생하면서 지불된 댓가가 아니었는가, 즉 인권보다 평화보장문제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마치 그것은 제로섬게임이나 다를 바 없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당시에 제기되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동독 공산당의 “개혁능력” 여부가 인정되었어야 할 순간에 그 반증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정책운영상의 무지때문에 오판을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89 동독 사태 이후 서독 정치가들의 변화에 대한 예리한

판단이 동독에서 아무런 유혈사태 발생없이 체제가 이행되도록 정치적 재량의 여지를 열어주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남아 있다. 호네커가 실각하기까지 사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천안문식 해결 방법도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위로부터의 잘못된 정책과 아래로부터의 올바른 정책 사이에서 다른 대안이 가식적으로 양립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한편이 다른 한편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제로섬 게임의 분명한 원리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쨌든 당시 동독 지도부는 정권이 붕괴되어감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서독 정치가들에게 “당신네들은 오로지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판할 수 있을까? 분명코 동방정책의 원칙은 아니며, 그 실천과정에서 있어서 후기에 서독 정치가들이 지쳐버렸다는 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점들이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원칙적으로 올바른 것에만 익숙해 있으면 한가지 것에만 익숙해져 있다 눈을 돌렸을 때 눈의 망막이 흐려지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상황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우리가 동독인들은 호네커와 그 정권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지 않았나라고 비난해 본다면 과연 우리(서독인을 의미)는 어떠했나라는 반대질문이 당연히 따를 수 밖에 없다.

統一後 東·西獨人들간의 政治的 同化

Politik und Zeitgeschichte '91. 3. 8

I. 양극화한 독일인

40년간이나 두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독일은 아직도 두쪽으로 갈라져 있어 경제와 노동시장으로부터 환경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적 안정으로부터 보건분야를 비롯하여 도시 주거의 질이나 생활의 질로 부터 지자체와 각주의 재정자립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분위기와 소비형태, 그리고 종전의 문화생활에서 보여주던 자주적인 의식으로부터 오늘날의 능률본위사회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할 자아의식에 이르기까지 공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질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인은 40년간이나 분단되었었지만 구서독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주 반영되었듯이 독일인이라는 공속성(共屬性 : Zusammengehörigkeit)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구동독지역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89년 가을 혁명이 일어나자 "우리는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로부터 "우리는 한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로 변하여 "변혁속의 변혁"(Wende in der Wende)를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후 두개의 독일이라는 국가가 각각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공동유산에도 불구하고 2세대에 걸친 분단, 상반된 정치체제내에서의 정치적 사회화, 상이한 경제체제에의 편입과 그에 따른 직업적 적응 등으로 한쪽에서는 각 개인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참여하였음에 반해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후견을 통해 탄압이 계속되어 독일인의 개성은 판이하게 되어 버렸다.

Adorno는 독일인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독일의 파쇼주의 및 히틀러의 부상을 독일인의 국민성과 연관시키고 있다. (Theodor W. Adorno,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 London 1950). 즉, 권위주의적 성격은 정신사회학적으로 질서의식, 청결성, 의무감, 복종성과 같은 덕목으로 부각되어 있고 그 정치적 차원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한 맹신, 편협심과 호전성, 폭력주의로부터 군국주의에 이르는가 하면 나아가 자포자기 및 이상주의적 무분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제국(히틀러제국)이 항복하고 종전되자 서방측 동맹국은 그 점령지역에서 권위주의 의식으로 접철되어 있던 서독인들에게 민주주의적 의식전환계획(Umerziehungsprogramm)을 시행하였음에 반해, 소련 영향하에 있던 독일공산당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건국과 함께 반파쇼주의 저항문화(Widerstandskultur)의 실현을 늘 의무로서 받아들였다.

60년대초, 미국인 정치학자 Almond와 Verba는 인텔리겐차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서독인들이 일단 민주주의 제도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교훈을 배우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열정적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해 민주주의 문화에 관한 빈곤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Gabriel A. Almond/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 New York 1963). 바로 이 시점에 독일공산당 지도층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향하는 이주민 물결을 막으려고 쌓은 Berlin 장벽을 반파쇼주의 보루라고 지칭하였는데 동독의 인텔리계급 역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견해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 수년이 지난후 또다시 미국인 학자에 의한 연구를 통해 Bonn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판단은 대학생 소요와 그에 따른 개혁정책 추진으로 수정되었다. (David P. Conradt, *Changing German Political Culture*, in : Gabriel A. Almond/Sidney Verba (Hrsg.), *The Civic Culture Revisited*, Boston 1980). 그때부터 서독은 광범한 중도적 동의로 지지되는 안정된 서방식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통하게 되었는데, 점증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의식으로 새로운 후기물질주의적 가치관과 CDU/CSU, SPD, FDP라는 대중 정당 카르텔을 형성시켰을 뿐만아니라 새로운 정당인 녹색당(Die Gruenen)을 탄생시키므로써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의 요구사항을 정치적 공동 결정에 반영하여, 일종의 투쟁의 가치가 있는 저항문화(Protestkultur)를 통해 민주주의를 풍요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반하여 동독의 정치적 야당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국가기관에 반대되는 메가폰격인 대변기구를 찾아내지 못하여 인텔리겐차와 예술계의 엘리트들은 자의든 타의든 동독을 떠나 밖에서 동독의 정치적 국내상황을 보도하였다. 동독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서 처럼 반체제운동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회와 같은 자유스런 공간을 통해 평화운동, 인권운동, 시민운동과 같은 것은 발전되고 있었으니,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이 89년 가을 혁명의 정신적 주도 세력을 잠시나마 맡아 그때까지만 해도 둔감하던 대중을 혁명과정속으로 영입 하였던 것이다.

즉, 동. 서독은 각각 그 사회에서 통용되던 가치관과 규범으로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사회화하여 집단적 경험과 학습 체험이 곧 개별적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결정하고 능력을 부여하였는데 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심리적인 흔적을 깊이 남겨 놓아 통일 독일에 관한한 대체적으로 상이한 정당환경 및 그 하부문화와는 무관한 두개의 정치 문화가 생성되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장이다.

최초의 전독의회 총선과 더불어 국가적 통일(Staatliche Einheit)이 성취된 이후 정치적 통합(Politische Vereinigung) 역시 수행되었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듯이 보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관상으로는 서독의 정당제도가 동독으로 수출되었고 서독의 선거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패러미터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서 동독이 기본법에 따라 가입했듯이 마치 서독의 선거민주주의에로 가입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선거분석에는 이와 상반되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바, 동독 최초의 인민의회, 지자단체 및 주의회의 자유선거로부터 최초의 전독의회 총선에 걸친 동독특유의 투표활동에는 무시못할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Dieter Roth, Die Wahlen zur Volkskammer in der DDR. Der Versuch einer Erklaerung, in :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1 (1990) 3, S. 369-393).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동독은 서독과 구별된다.

- 정당소속성의 정도 : 동독유권자의 1/5만이 일개의 정당에 결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반면, 서독에서는 교회나 노조와 같은 정치적 전위조직에 연계되어 거의 2/3나 되는 유권자가 일개 정당에 결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즉 구동독의 투표형태는 서독보다 더 "직접적"이고 덜 "사회적으로"(sozial) 결정되었다.

- o 정당의 사회적 기반 : 서독과는 반대로 CDU와 FDP는 구동독에서 산업노동자의 대다수를 동원하여 그들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환경으로부터 지지표를 흡수할 수 있었는데, SPD는 특정한 사회복지적 주안점도 없이 과거로부터 노동운동이나 노조 운동의 전통을 갖지않는 계급이 없던 동독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젊은이들과 지식층의 저항정당인 서독의 Die Gruenen은 동독지역에서 어느정도 특정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o 중도좌파 정당의 분산 : 서독에서는 SPD와 약화된 Gruene만이 중도좌파 지지 유권자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반면, 동독에서는 SPD, PDS, Gruene 및 90 동맹 (Buendnis 90)과 신광장(Neues Forum)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중도좌파 유권자의 잠재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결합하였는 바, SED의 후계정당인 PDS는 연립 내각 구성에 기피정당임은 명백한 사실이나 당분간 좌파세력의 두번째 정당으로 남게 될 것이다.
- o 원내야당의 역할 : 동. 서독지역으로 분리하여 실시되었던 5% 의회진출차단조항의 적용 덕분에 PDS와 Buendnis 90/Gruene만이 유일한 군소야당으로서 독일연방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서독정당이 아닌, 동독의 두개 정당이 동독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독일연방의회내에서 새로우면서 저항문화를 개진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서독측 좌파연합은 저조한 선거결과로 인하여 PDS 및 좌파의 연합공천 명단 출신의 원내그룹보다 발언권이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모순성에 관하여 Konrad Schacht는 "독일통일은 40년간이나 적대적으로 발전해 온 두개의 사회를 서로 결합시켰다. 그러나 동독이 행정기술상의 제규정이나 정당구조를 공식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동화작용' (Akkulturation)은 아직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Konrad Schacht, Droht eine Polarisierung der deutschen Gesellschaft ?, in : Die Tageszeitung vom 7. Jan. 1991, S. 14)고 강조하고 있다.

본 분석은 여하한 조건하에 독일인들이 동화작용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소개되는 모든 자료는 90년 9월부터 11월간, 구서독 및

구동독지역에서 1,000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였는 바, 따라서 자료의 완성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연한 결함은 이 자료가 곧 독일통일의 시점에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는 기여로써 상쇄될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심과 정치에 대한 이해심의 주안점으로서는 1) 사회적 가치관 2) 기구에 대한 신뢰도 3) 정치적 참여 및 공동결정에 관한 관점

요인분석을 근거로 하여 설문대상 기구에 대한 반응의 공통점을 연구함과 동시에 이질성을 열거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스칼라에 관한한 동. 서독의 정치적 진영에 관하여서도 확대 관찰해 보았다.

II. 가 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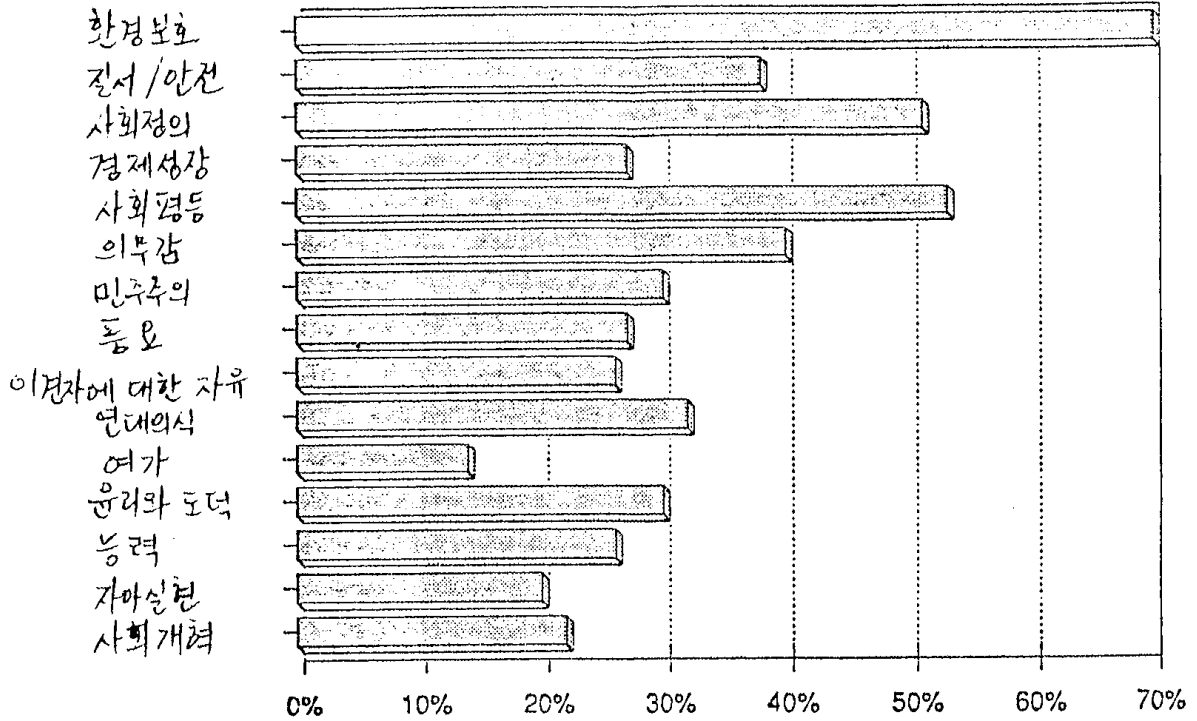
Inglehart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1977)의 산업사회의 가치변천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소득, 사회복지적 원호, 내외적 안보와 같은 물질적 관심은 그 비중이 잃어져 감에 반하여 물질이후적 욕구인 참여, 자아실현, 공동결정, 여성해방과 같은 것이 점점더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응용사회학 연구소(infas)는 스칼라를 연구하였는 바, 이는 어떤 것이 미래의 사회를 지배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스칼라중 중요한 것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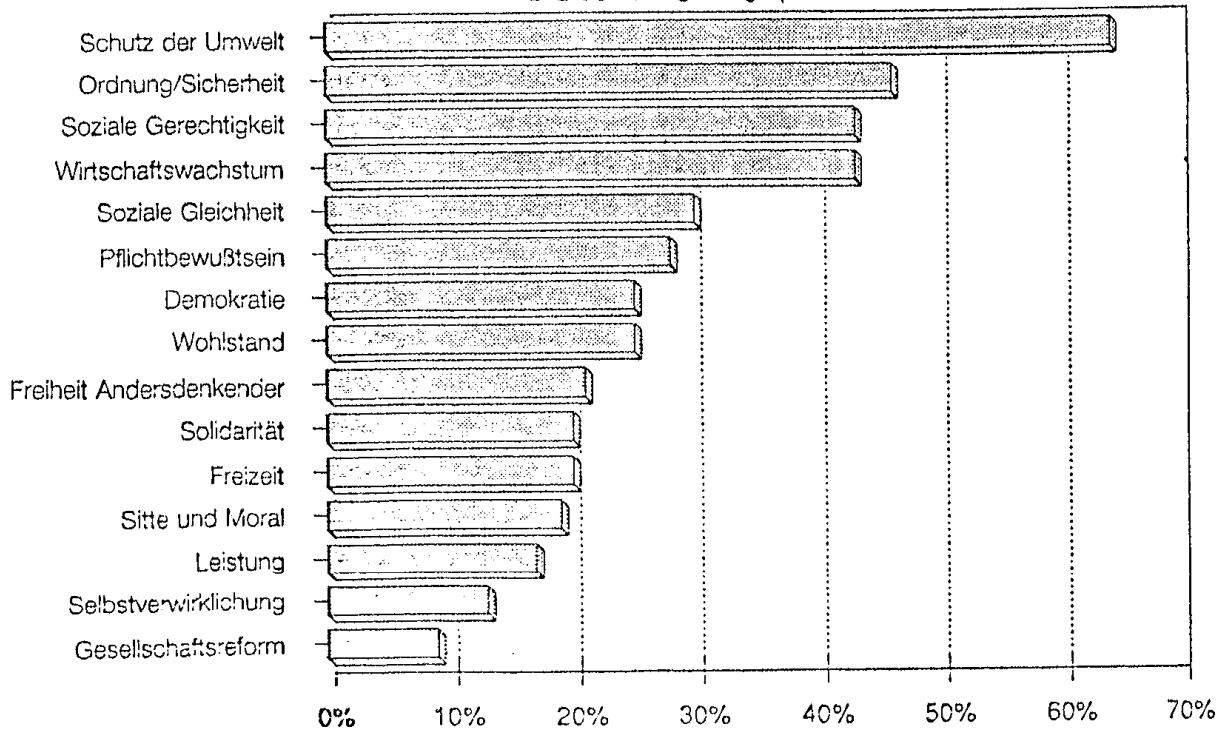
- 권위적 (의무감, 윤리도덕)
- 보수적 (질서, 안보)
- 사회복지적 (연대의식, 사회적 평등, 사회적 정의)
- 경제적 (풍요, 성장, 능력)
- 사회이상주의적 (민주주의, 이견자에 대한 자유, 근본적인 사회개혁)
- 개체적 (여가, 자아실현)

상기 15가지 문항에 대하여 동독과 서독에는 공통성보다 이질성이 더 많이 나타났다. (도해 1 참조). 다만 동독인들은 질서, 안보, 경제성장, 여가선용에 대하여 서독인들

도해 1: 가치기준
Westen (구서독)



Osten (구동독)



Quelle: infas Deutschland-Politogramm 54/1990.

보다 더욱 명료한 반응을 보였으며 기타분야에 있어서는 서독인들이 동독인들보다 훨씬 분명한 표현 즉, 단호하고 의식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보호문제는 동.서독 공히 최고의 가치판단기준을 도달하였으며 동독인들에게는 질서안보, 경제성장, 사회적 정의가 환경보호문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지도 (40%이상)를 획득하였다. 그 다음부터 가치기준의 곡선은 30% 정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20% 미만인 가치기준은 윤리도덕, 능률, 자아실현과 같은 것이었으며 근본적인 사회개혁은 단지 9% 정도였다.

Ⅲ. 기구에 대한 신뢰도

기본법, 행정조직, 국민대표의 선출, 시장경제의 도입과 같은 규범적 기구의 인수와 함께 구동독지역의 주민은 구서독지역에서 일상생활화된 정치기구와도 친교를 맺게 되었다. infas는 동.서독 지역에서 문항을 설정 (도해 2 참조), 특히 입법, 행정, 사법, 미디어, 대규모 사회단체와 같은 분야에서 선정된 15개의 기구에 대하여 그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신뢰도를 연구하였다.

동.서독 지역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커브의 진행과정만 보아도 중요한 결론을 알 수 있다. 구서독지역의 응답자중 50% 이상이 문항에 나타난 기구에 대하여 신뢰를 보이고 일부만이 무응답상태임에 비해 구동독 지역에서는 불신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점철되어 있다. 단지 수년간에 걸쳐 서방세계에의 창문이었던 TV만은 70% 이상의 신뢰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와 경찰 및 신문에 대한 측정치는 50% 정도이며 대학, 연방의회, 연방헌법 재판소에 대한 측정치는 50% 미만이었다. 구서독지역에서는 경찰, 연방헌법재판소, 시.동 행정기관, 연방의회, 법조계 및 연방군과 같은 기구들이 80% 이상에 달하는 최고의 신뢰를 누리고 있으며 연방정부자체마저 그 임무의 정치화로 말미암아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지만 75%라는 신뢰도를 얻고 있다.

체제에 대한 광범한 신뢰에 있어서도 구서독지역은 구동독지역의 단면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구서독지역에서는 전통적 대중조직(노조, 교회, 정당)의 헌법기구에 대한 민주적 결속과정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긴장은 기구화된 갈등으로서 마치 하수장치처럼 걸러지고 그에 부응하는 규범적 기구로서 가공되지만 특정한 사회집단이 이와 같은 컨센서스에 결속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항상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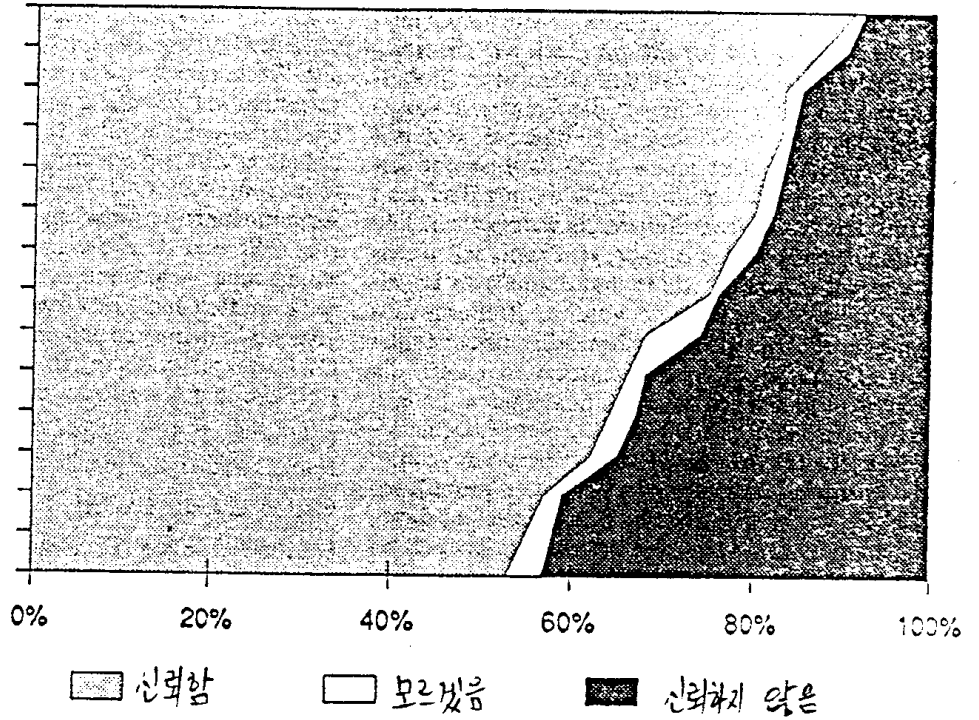
지금까지 구동독지역에서는 광범하게 토착화되고 민주화된 기구적 결속이 없었다. 이에 대해 Pappi (Franz Urban Pappi, Von der stillen Revolution zum kulturellen Umbruch : Nimmt die Dramatik des Wertewandels zu ?, in : Soziologische Revue, 14 (1991) 1, S. 21 - 26)는 SED정권 붕괴도 "개별적 차원의 인식력 동원"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Pappi에 따르면 시민의 주의력이 점차적으로 엘리트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스런 인식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는 교육에의 넓은 문호 개방을 비롯하여 텔레비전과 같은 것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동유럽 이웃나라가 모범이 되었을 수도 있다. 즉, 그와 같은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점점 더 많이 미디어(특히 최고의 신뢰도를 만끽하는 텔레비전)를 통해 전달되었고 교육을 통한 정신적 해방감의 증대는 인식적 동원을 촉진시켜 드디어 구지도층은 모순의 다양화로 인하여 대중조직을 통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IV. 민주주의 이해도

서독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적 의식전환교육과 더불어 민주적 기구를 형식적으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내부로 깊숙히 자리잡도록 배웠으며, 문화적 변화와 함께 독일의 내적 심성(innere Verfassung Deutschlands)을 민주화 하도록 배웠다. 또한 Bonn의 독일연방공화국이 광범한 민주적 컨센서스로서만 지지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민주주의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늘 토론의 대상이었다. 차기세대가 학생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구서독과 마찬가지로 1989년 가을의 동독혁명 역시 정치적 후견상태로부터 자체를 해방한 후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역량을 실증해 주었다. 그러나 동.서독 어느 곳에서도 전위정당(Avantgarde)이 대중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이해도를 대변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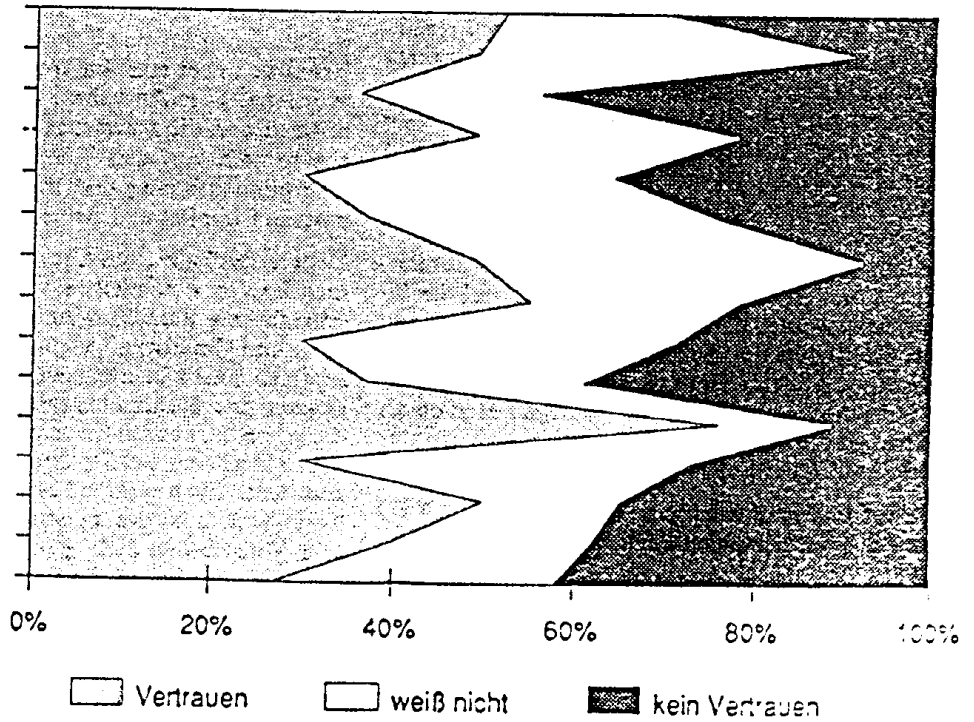
도해 2: 기구에 대한 신뢰
Westen (구 서독)

- 경찰
- 헌법재판소
- 도시행정
- 연방의회
- 사법계
- 연방군
- 대학
- 연방정부
- 고용기관
- 교회
- TV
- 헌법보호청
- 신문
- 노조
- 대기업



Osten (구 동독)

- Polizei
- Verfassungsgericht
- Stadtverwaltung
- Bundestag
- Justiz
- Bundeswehr
- Hochschulen
- Bundesregierung
- Arbeitsämter
- Kirchen
- Fernsehen
- Verfassungsschutz
- Zeitung
- Gewerkschaften
- Großunternehmen



Quelle: infas Deutschland-Politogramm 39-40/1990.

10개의 문항으로 된 스칼라와 함께 - 그중 일부는 국제적으로 응용되었으며 - 동.서독간의 정치적 참여의 원칙에 관한 동의의 정도가 조사되었다. 문항은 정치적 관심을 대의원을 통하는 모델인 기초민주주의적 민주주의 사상과 (계몽되어 실력이 있는) 엘리트를 통해(무지한) 대중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의 모델로 혼합되었다. 주민들에게 광범한 교육의 기회균등이 허용되어 사회적 평등 사상이나 보통선거의 원칙과 같은 것이 관철되기 전까지만 해도 엘리트 모델이 정치과정의 조직화를 위한 모범이었다. 그래서 구서독의 기본법은 Weimar 공화국의 경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표원칙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회선거시에만 광범한 국민적 참여 (Volksbeteiligung)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Gruenen들은 직접 민주주의 운동 관점에서 정치적 공동결정의 참여방해를 처음부터 비판해 왔다.

동.서독지역에 나타난 반응표본을 일별해 보면 (도해 3 참조) 서로 완전하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즉 국민투표의 지지도가 대의원 원칙(Delegationsprinzip)과 비슷하게 많은 동의를 받았고 민주적 공동결정의 제한은 자료의 복잡성이나 정보의 결핍에 근거할지라도 가장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동.서독간의 커다란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문항에 나타났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이 소수집단이라고 이해하므로) 소수집단의 보호를 자주 역설하면서도 정보결핍으로 선거권의 제한을 많이 주장하고 오히려 엘리트를 통한 지배원칙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구서독지역 독일인들은 책임감있게 인격이나 외모와는 상관없는 "One man - One vote"의 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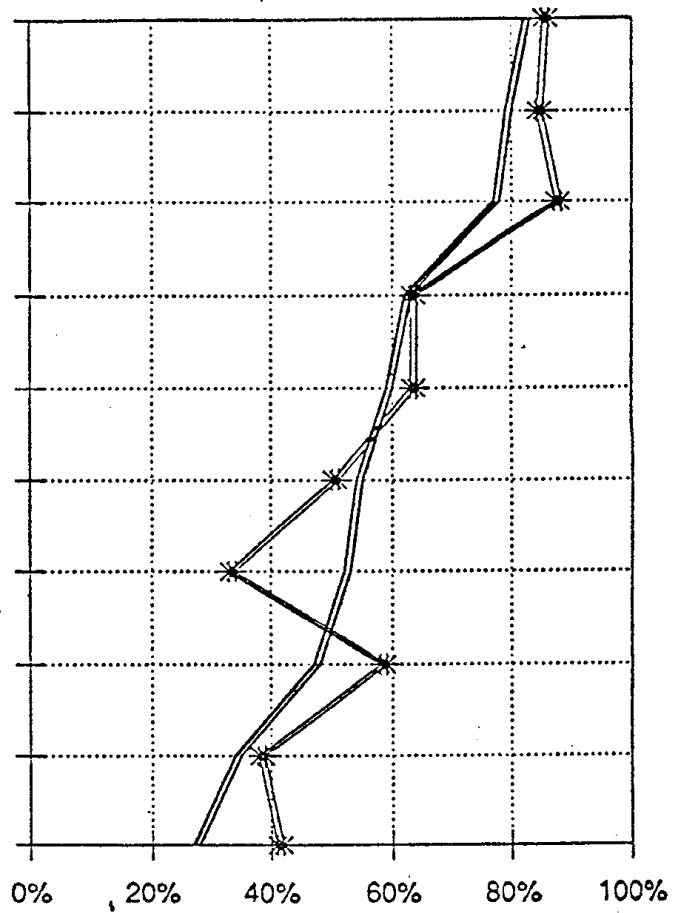
동.서독지역으로 분리하여 커브의 진행과정으로 산출한 인자분석과 함께 동.서독간의 민주주의 이해도 분석은 동.서독간에는 일치점도 많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불일치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구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Demokratievorstellung)은 지배(Fuehrung), 대의(Delegation), 참여(Partizipation)와 같은 상이한 3가지 정치적 공동생활의 원칙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자모델(Faktorenmodell)은 - 한단계의 다른단계에 대한 분명한 제한과 함께 - 엘리트(계급이나 신분)를 통한 후견, 대리인을 통한 이권

도해 3: 정치적 참여에 대한 견해

다음문항에 대하여 (전적으로/어느정도)
동의함

- 공공생활의 중요한 문제의 결정에는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최선의 민주주의는 주민이 정치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통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귀임함이 있다.
- 다수의 결정만이 통용될 것이 아니라 소수집단이 원하는 것도 배려되어야 한다.
-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한 광범한 참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마찰을 불러 일으킨다.
- 원칙적으로 정치적 결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일임시켜야 한다.
- 최선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정치적 관심사와 관련된 스스로 대변함에 있다.
- 문제점을 이해할 때는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적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 정치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정치 지도층이 유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향유하는 한 분담묘하다.
- 현대사회의 제 문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은 단순한 사실에만 경청되어야 한다.
- 한 문제에 고소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Westen
구서독 * Osten
구동독

Quelle: infas Deutschland-Politogramm 38-41/1990.

대변, 민주적 공동결정과 같은 민주주의 발전의 전분야를 망라한다. 한가지 민주주의 모델에 귀의한자는 다른 모델을 거부하며 또 그 반대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구서독인의 입장은 명확하게 개방적이다.

지배원칙, 대의원칙, 기층민의 공동결정이라는 역사적으로 상이한 3대 모델이 구서독에서 묘사되고 있음에 반해, 구동독에서는 지배와 대의의 차원이 유일한 인자가 되어 버려 2가지 모델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지배와 대의의 원칙은 혼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망사항이었음이 공공연하다. 그러나 기초민주적 공동결정은 동.서독 정치문화의 독자적 인자로서 해당되는 것이나 분단독일의 두부분의 정치적 집단이 수렴한다는 증좌인데 동독에서 민주적 자결을 요구했던 그 현실적 실례에서도 나타났다.

상이한 민주주의 방안은 실제적으로 정당소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때 매 설문대상자는 각 인자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지 산출하였다. 엘리트층을 통한 지배는 구서독지역에서 Gruenen 으로부터 가장 지속적인 거부반응을 보였다. (도표 1 참조). 양대 국민정당에 있어서는 진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지지도와 신중성이 절반정도임에 반해 FDP 추종자들은 중위적인 입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모델로서 CDU/CSU, SPD, Gruenen 지지자들은 광범한 컨센서스를 즐겨워하고 있으나 FDP 동조자들에 대한 위상은 매우 산만함을 알 수 있다.

적용된 대표모델과 현격한 차이를 두는 유일한 것으로서는 정당정치적 결속성이 없는 유권자들인데 이들은 기존세력에 대하여 현저한 회의적 반응을 노골화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이 이들의 결속력 약화에 공동책임이 있는지,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권대외가 무의미하다고 봄으로써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된 바 없다. 결국 국민투표(Plebiszit)나 자체대표(Selbstvertretung)에 대한 요구는 일차적으로 Gruenen 추종자들의 관심사이지 기타 정당의 진영에서는 지지도와 신중성이 오히려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구동독지역(도표 2 참조)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모델은 정치적 진영에 따라 결합되어 있는데 엘리트와 대의원을 통한 지배원칙이 CDU/DSU 주장자들의 이권과 함께 높은

도표 1: 구서독의 민주주의 이해도
(%로 나타낸 지지도)

각정당	인자 1: 엘리트층을 통한 지배		
	고	중	저
CDU/CSU	31	36	33
SPD	32	36	32
FDP	23	57	20
GRÜNE	7	39	54
기타	23	47	30

인자 2: 이현의 대변과 대의			
CDU/CSU	27	45	28
SPD	34	42	24
FDP	33	31	36
GRÜNE	29	50	21
기타	12	37	50

인자 3: 국민투표와 자체대표			
CDU/CSU	24	43	33
SPD	36	36	28
FDP	31	36	33
GRÜNE	60	24	16
기타	30	50	20

도표 2: 구동독의 민주주의 이해도
(%로 나타낸 지지도)

각정당	인자 1: 엘리트와 대의원을 통한 이현의 지배		
	고	중	저
CDU/DSU	45	38	17
FDP	20	48	32
SPD	22	49	29
PDS	12	35	53
GRÜNE	7	27	66
Bündnis '90/ Neues Forum	13	31	56
기타	24	46	30

인자 2: 국민투표와 자체대표			
CDU/DSU	17	41	42
FDP	19	16	65
SPD	32	41	27
PDS	42	39	19
GRÜNE	31	54	15
Bündnis '90/ Neues Forum	51	37	12
기타	50	29	21

Quelle Tabellen 1 und 2: infas Repräsentativerhebung 9-10/1990.

지지를 받고 있음에 비해 점차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순수야당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PDS 및 Buendnis '90 / Gruene와 같은 군소정당 추종자들에게는 거의 회의적으로 단죄되고 있다. SPD나 FDP 추종자들은 중간에 높여 있으며 기초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도는 그 반대이다. 즉 CDU/DSU를 비롯하여 FDP의 추종자 대다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민주적 공동결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 반대로 민주적 공동결정은 시민운동정당 및 PDS를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적 무소속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동독 Gruene와 SPD 추종자들은 비슷한 지지율과 함께 반응하고 있으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추세상 정치의 기초민주적 실현에 더욱 거부하는 입장을 공표하고 있다.

구서독에서나 구동독에서나 마찬가지로 보다 큰 참여에의 중압(Partizipationsdruck)은 군소야당의 추종자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 군소정당 추종자들은 전혀 상이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Demokratieerwartung)으로 파악되는 동.서독의 CDU, CSU, DSU, FDP, SPD 추종자들보다 참여에의 중압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하여 더욱 쉽사리 규합될 수 있기 때문이리라.

V. 동.서독 비교

동.서독지역에서 병렬적으로 실시된 3대 문항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보면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구서독인이 현대화 진전에 앞섰으며 위기대처능력(Krisenfertigkeit)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후기물질주의(Postmaterialismus)에로의 문화적 변천이 구서독에서 훨씬 발전되어 있으며 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동독시민의 대다수에게 민주적 적응의 선결요건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미 서독에서는 대체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다. 민주적 공동결정의 관점하에 구서독의 정치적 대체사고(Politikalternativen)는 장기간에 걸친 민주적 논리체계의 결실로서 명확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구동독에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정치적 지배에 관한 전통적으로 틀에 박힌 사고방식의 틀(Denkschemata)과 혼합되어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틀은 더 많은 기초민주주의적 공동

발언에 대한 요구와 대치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지난 혁명의 주체자들이나 변신한 PDS로부터 제기되었다. 따라서 구동독에서는 중간적 지위나 중재하는 층이 없으므로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독일통일로 안정되어 있는 거의 완벽한 서독의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사회복지적으로 실패해버린 무력한 사회적 정치실험 대상(동독)과 만나고 있다.

구동독주민은 낙오자(underdog)라는 감정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구서독인의 1/3은 구동독시민이 상당기간 2등시민으로 쳐져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더우기 구동독의 75%나 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항이 옳다고 보고 있다. 20가지중

16가지 특성에 있어서 구서독인들이 더욱 훌륭한 독일인일고 평가되고(Werner Harenberg, Vereint und verschieden, in : Spiegel Spezial, (1991) 1, S.12,16 참조),

구서독인의 91%는 구동독인들이 서독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거나 (38%), 최소한

약간은 (53%) 배워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인 자신은 그와 반대로

9%만이 구서독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믿거나, 어느 정도(55%)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infas, Repraesentativerhebung im Bundesgebiet, November

1990 참조). 최근에 있어서 PDS 전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PDS/좌파의 연합전선

자체내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문화적 장애 때문에 이질감, 불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Carl Christian Kaiser, Tiefe Risse am Rande, in : Die Zeit, Nr.6

vom 1. Feb, 1991. S. 13 참조). PDS의 Gregor Gysi 당수는 이와 같은 개념을

구서독인의 점령군적 거동(Besatzer-Alluere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여인은 "너희들은 아직도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안돼"라는 끊임없는 서독인의 말이

지긋지긋하다고 털어놓았다.

오늘날 동.서독을 갈라놓으며 팽배한 위기감이 감돌게 하고 있는 커다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민주적 공동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最近 舊 東·西獨地域 指導層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 結果

('92. 3)

0 이 자료는 알렌스바하 여론 조사 연구소가 구 동·서독 지역 정치, 행정, 경제계 지도층 600 명을 대상으로 통독 및 통독 이후의 제반문제에 대한 평가, 대 동구 진출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보고서 번역본임.

0 자료출처 :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llensbacher Berichte

1992년 / Nr. 3. (Konstanz, 1992)

< 서 문 >

0 알렌스바하 여론조사 연구소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의 소장 엘리자베트 노엘레 노이만 (Elisabeth Noelle-Neumann) 교수는 1992년 1월 29일 동베를린에서 “Made in United Germany”라는 제하에 개최된 독일 경제인협회 (BDI) CAPITAL - Kongreß에서 “동.서독지역 지도층은 모두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을 향해 노를 젓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시 CAPITAL지에 연3회에 걸쳐 연재된 정치계, 경제계, 행정계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

0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는 1991년 여름 이후 구동독지역인 신연방주의 지도층에 대한 익명여론조사도 포함되어 있는바, 동.서독지역 지도층은 주민들보다는 훨씬 낙관적으로 판단, 앞으로 3년이면 구동독지역에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과연 어느 시점에 구동독 지역의 경제상태가 최악상태에 도달하고 그 이후 경기가 부양될 것인가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훨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이미 1991년 8월에 낙관적으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경제 데이터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는 바, 이는 구동독지역에서 경제 최악의 상태가 지나갔음을 뜻하는 것임. 위험부담이 따르는 경제적 재건에의 착수가 성공할 수 있었음은 동.서독지역 지도층이 공통으로 자질과 동기유인을 갖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을 향해 노를 젓고 있다고 하겠음.

0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과거 통독과정과 통독이후 문제점에 대한 일반주민들과 지도층의 견해 및 동구제국진출방안에 대한 견해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있음.

< 여론 조사 대상자 >

0 경제계, 정치계, 행정계에 걸친 총 600명의 정상급 지도자 대상

- 구서독지역 : 500명
- 구동독지역 : 100명

0 경제계

- 구서독 기업주 127명 (종업원 1,000명 이상)
 - ” 25명 (종업원 5-20,000명 이상)
 - ” 25명 (종업원 20,000명 이상)
- 구동독 기업주 66명 (종업원 1,000명 이하 및
 - ” 1,000명 이상 각각 반반)

0 정치계

- 구서독 14명 (주지사 및 장관)
 - 51명 (차관)
 - 10명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
 - 26명 (원내교섭단체장)
 - 17명 (원내분과위원장)
- 구동독 3명 (장관)
 - 7명 (차관)
 - 4명 (주의회의장)
 - 6명 (원내교섭단체장)

0 행정계

- 구서독 38명 (연방기관장)
 - 36명 (주립기관장)
 - 30명 (연방 부서 국장)
 - 3명 (주정부 부서 국장)
- 구동독 2명 (주립기관장)
 - 14명 (주정부 부서 국장)

< 여론 조사 결과 >

구동독지역 경제 기적 발현 가능성

질문 : 향후 3년 만에 구동독지역에 경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

구동독지역에서 경제기적이	지도층		주민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일어날 것으로 본다	64	55	24	25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33	38	58	58
일어날지 모르겠다	3	7	18	17

구동독지역 경제의 대서독 연속성

질문 : 수 많은 사람들이 구동독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구서독지역의 부속 공장, 즉 경영은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조종되고 구동독지역에서는 단지 생산만 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걱정이 옳다고 보십니까?

(%)

	지도층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전체	경제계	대기업경영주	전체	경제계
걱정할 필요없다	56	60	59	59	37	29
걱정된다	42	37	38	37	62	70

구동독지역의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가능성

질문: 몇년만 지나면 구동독지역에서는 구서독보다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스트럭처가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

	지도층 전체		경제계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옳다고 본다	64	80	61	77
옳지 않다고 본다	33	18	36	20

구동독지역 근로자의 근로의욕

질문 : 구동독지역 근로자를 구서독지역 근로자와 비교할 때 능력 발휘태세나
근로의욕이 매우 넘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구동독지역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은	구서독지역의 경제지도자로서 구동독지역에서 직접 경험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질문	
	1991년 1월 중	1991년 11월 중
넘치고 있다	34	35
아무런 변화가 없다	-	33
오히려 줄어 들었다	34	20
어떤지 모르겠다	32	12
총	100	100

구동독지역 투자여건

질문 : 구동독지역의 투자여건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

	지도층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1931년 1월	6월	11월	1991년 6월	11월
유리해졌다	22	40	25	32	38
불리하다	72	49	64	55	49

신탁청에 대한 평가

질문 : 신탁청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관점하에 난제를 우선적으로 처리.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도층전체	구서독지역 지도층	구동독지역 지도층
기업의 신속한 사유화	62	66	42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45	43	54
직장의 보전	41	40	46
고객의 매각 가격	2	2	2

구동독지역 직장조성대책에 관한 평가

질문 : 구동독지역에는 직장조성대책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직장조성 대책이 과연 노동시장정책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직장조성대책이	지도층전체	경제계 지도층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올바른 방법이라고 본다	66	61	56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	28	33	33

구동독지역에 대한 서독 마르크의 도입에 관한 평가

질문 : 1991년 7월 1일자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

경제. 화폐통합은	지도층			경제계				
	전체	구서독 지역	구동독 지역	전체	구서독 지역	구동독 지역	구서독 제조업	구서독 서비스
올바른 결정이었다	88	89	86	88	89	84	91	76
잘못된 결정이었다	10	10	10	10	9	13	8	21

경기 전망

질문 : 다가 올 6개월 이내에 독일의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까?

(%)

경기가	구서독 지도층										
	'87.5	87.9	88.1	88.6	88.9	89.1	89.6	89.9	90.1	90.6	90.9
호전될 것이다	33	51	21	63	68	63	72	68	71	76	62
악화될 것이다	32	17	43	8	3	3	3	2	2	3	5

경기가	구서독 지도층			구동독 지도층	
	91.1	91.6	91.11	91.6	91.11
호전될 것이다	56	38	28	68	67
악화될 것이다	11	20	23	16	15

현 독일정부에 대한 신뢰도

질문 : 현 독일정부가 강력한 정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세정부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까?

(%)

현 독일정부가	구서독지역 지도층 전체									구동독	
	'89.1	89.6	89.9	90.1	90.6	90.9	91.1	91.6	91.11	91.6	91.11
강하다	62	32	37	71	87	92	78	48	59	75	67
약하다	32	65	59	25	10	6	14	49	38	21	27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재정조달에 관한 평가

질문 : 구동독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조달이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재정조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험도가 크다고 보십니까?

(%)

재정조달은	지도층			경제계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건전하다	10	8	14	6	13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67	66	71	65	69
위험도가 너무 크다	21	24	9	26	11

구동독지역 경기 최악 시점

질문 : 신언방주 경제개편에 따르는 경기 최악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 올 것으로 보십니까?

(%)

경기최악시점은	구서독지역 지도층		구동독지역 지도층	
	91. 1	91. 11	91. 6	91. 11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93	53	91	79

경제발전에 관한 구동독주민들의 관점

질문 : 향후 6개월간의 독일경제 발전상태가 호전되리라고 보십니까?
악화되리라고 보십니까?

(%)

경제발전상태가	90.9	90.10	90.11	90.12	91.1	91.2	91.3	91.4	91.5
호전될 것이다	43	46	44	48	43	29	32	33	30
악화될 것이다	21	19	17	16	22	31	26	28	27

경제발전상태가	91.6	91.7	91.8	91.9	91.10	91.11	91.12
호전될 것이다	23	26	28	28	31	31	26
악화될 것이다	35	38	32	31	28	29	31

구동독지역 주민의 정서에 관한 잘못된 판단

질문 : 앞으로 12월간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걱정투성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 구동독지역주민의 현재의 정서가 낙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이고 패배감에 짝 차 있다고 보십니까?

(%)

	구동독지역주민의 자신의 정서에 관한 견해	구동독지역주민이 구동독지역내 타인의 정서에 관한 견해
낙관적이다	58	19
비관적이다	15	65

구동독주민의 통독 만족도

질문 : 독일 통일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걱정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

독일 통일이	90.5	90.6	90.7	90.8	90.9	90.10	90.11	90.12	91.1	91.2	91.3
기쁨	62			61	61	63	65	65	57	59	51
걱정	23			24	22	20	19	20	23	24	33

독일 통일이	91.4	91.5	91.6	91.7	91.8	91.9	91.10	91.11	91.12
기쁨	59	62	59	58	68	61	56	58	59
걱정	26	19	21	23	16	22	24	23	22

구서독주민의 통독만족도

(%)

독일 통일이	90.4	90.5	90.6	90.7	90.8	90.9	90.10	90.11	90.12	91.1	91.2
기쁨	50		43	51	50	52	58	57	59	56	49
걱정	27		37	33	33	31	26	25	25	25	32

독일 통일이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1.10	91.11	91.12
기쁨	45	44	47		44	52	49	52	48	45
걱정	37	39	32		36	32	35	33	36	34

구서독지역주민의 통독과정에 대한 공지

질문 : 통독과정에 관하여 구서독지역주민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환담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느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십니까?

주민 1 : “우리 독일인들은 지금까지 달성해 온 통독과정에 관하여 공지를 가질만하다.

화폐통합도 성공적이었고 신언방주를 위해 각종 지원대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지 않은가!”

주민 2 : “구동독지역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비추어 볼 때 공지를 느낄만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실패된 것도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창한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주민 1의 생각에 동조한다	47 %
주민 2의 생각에 동조한다	36 %

구동독지역의 기능발휘현황

질문 : 어느 분야가 문제점이 없이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분야	지도층 전체		경제계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서비스업, 소기업, 중기업	24	8	23	4
소비, 무역, 물자공급	19	27	20	27
건축분야	17	15	17	17
인간의 의지	6	9	6	9
기능이 훌륭한 것이라곤 없다	10	11	10	14

구동독지역의 문제점

질문 : 구동독지역 재건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제점	지도층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인간성, 노동과 경제활동에서 사고방식 전환	43	26
소유권 문제, 기업의 사유화	31	38
행정 체계 구축	19	10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문제점	11	13
인프라스트럭처 문제	11	10
구잔재, 환경오염문제	10	3
투자지연	7	18
과거청산, 구체제 연루관계	4	2
교육제도	2	2

구동독지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

질문 : 구동독지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구동독주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원칙을 숙지시키기 위하여 홍보활동이 매우 낫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백일하에 증명되었으므로 홍보활동이 필요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보 활동이	지도층 전체		경제계		정치계		행정계	
	구서독지역	구동독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	구동독
필요하다	73	71	72	64	76	81	75	81

구동독지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의 담당자

(%)

홍보활동의 담당자는	지도층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경제계, 산업계, 고위 경영진	30	16
정치가	26	24
모든 사람 즉 시민과 시민간의 대화를 통하여	16	10
연방정부, 주정부	13	11
사회단체	10	5
미디어	9	10
노동조합	8	3
정당	6	11
교육기관	7	4

독일의 대동구 진출방향 설정에 관한 판단

질문 : 동구권의 변화는 독일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전체적 조건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독일은 친서구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동구권진출에 진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독일은	지도층 전체	구서독지역지도층	구동독지역지도층
친서구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9	20	10
동.서구정책을 동등하게 강화해야 한다	33	36	21
대동구권 진출에 진력해야 한다	46	42	66

서방측과의 분쟁가능성 타진

질문 : 유럽에는 대동구 개방에 관한 방법과 동구권과의 신속한 경제교류를 둘러 싸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둘러 싸고 독일과 기타 서구 제국과 분쟁이 일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분쟁이란	지도층 전체	경제계	
		50세 이하	50세 이상
가능하지 않다	66	65	68
가능하다	31	33	30

미래의 경제발전 가능성 진단

질문 :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동구권과 서구권 중 어느 지역이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지도층			경제계		대기업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
서구권이 유리하다	22	24	10	26	6	31
동.서구권이 공히 유리하다	21	23	14	19	11	25
동구권이 유리하다	55	52	72	54	80	42

동구권의 생산공장 설립에의 적합성

동구권은 생산공장설립에	경제계 지도층		기업 단위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근로자 500명 이하	근로자 1,000명 이상
매우 흥미진진한 지역이다	20	27	24	22
흥미있는 지역이다	53	60	52	55
총계	73	87	76	77

동구권 제국가의 경제발전 가능성

질문 : 동구권 제국가중 어느 나라가 가장 신속하게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보십니까?

(%)

국가	경제계 지도층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헝가리	90	83
체코슬로바키아	83	86
폴란드	35	22
발틱 3국	9	8
러시아	7	10
우크라이나	2	3

직업수행상 동구권과의 접촉경험

(%)

분야	구서독지역 지도층	구동독지역 지도층
경제	58	83
정치	57	48
행정	44	48

東 獨 의 滅 亡 原 因

1. 이 자료는 동독체제의 붕괴 원인을 기존의 동독정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치학 이론중 민주화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는 글을 전문 번역한 것임.

2. Wolfgang Merkel,

Warum brach das SED-Regime zusammen ?

in : Ulrike Liebert / Wolfgang Merkel(Hg),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1991) PP. 19-49

동독 공산정권은 왜 무너졌나?

- 민주화 이론에 비추어본 동독 사례 -

서 언

- 우리는 독일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 대대적인 변형과정 ” 의 증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전환은 1944년 Karl Polanyi가 지은 “ The Great Transformation ” 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인상깊게 기술한 것보다 더욱 심각하고 많은 갈등을 내포한채 진행될지도 모른다. Polanyi는 국가적 차원에서 스스로 통제되는 자본주의적 시장이 전세계적 체제로 확산·이행되어가는 제과정과 형태를 연구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19세기 유럽문명이 종말을 고하고, 전통적인 유럽사회의 구조가 파괴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인간의 노동력과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자 예언이었다.
- 그후 45년이 지나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무너지거나 심각한 변혁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Lucian Pye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국제화라는 또다른 관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Polanyi는 Pye가 지적한 바를 못보았거나 볼 수 없었던것 같다. 각 부분의 활동이 자체적으로 조정되어가는 시장메카니즘은 각 국가간 또는 경제적 개별 주체간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었으며, 기술적·정보적 혁신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비단 서구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하여금 그 경제와 사회를 개방할 것과 정치체제에 있어서의 통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긍정적, 발전적인 효과도 파급시켰다. 만일 권위주의적 정권의 지도층 엘리트들이 경제적·정치적 현대화에의 역사발전 원칙을 거부했었거나 “ 뒤늦게 대응 ” 했었다라면 이제

더이상 공공연한 압제수단으로써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의 철저한 권한박탈과 붕괴라는 결과와 더불어 사후 “처벌”을 모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자유화에의 시도를 허용하였거나 심지어 스스로 자유화라는 시도를 발의했었다라면 이는 다름아닌 권위주의적 통치의 종말이 시작됨을 뜻하는 것이었다.

- 권위주의적 정권의 붕괴라는 연쇄현상을 사실상의 새로운 “대대적 변형” 과정이라고 파악해 보자면 1974/5년을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1974년과 1975년 중에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에서 독재통치가 종식을 고했다(Pridham 1984, O'Donnell/Schmitter/Whitehead 1986, Kraus 1990, Merkel 1990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독재통치의 종식은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촉매제(EC 가입희망)이자 그 이후에 뒤따른 민주화 과정을 공고화시키는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전반기 남아메리카에서 제2차 민주화 선풍이 일어났다.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권은 무너지고 (아르헨티나) 민주화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거나 심지어 민주화를 스스로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사례는 에쿠아도르(1978/9),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볼리비아에서 일어났으며, 비록 시간적으로 뒤늦게나마 칠레에서도 일어났다(Nohlen 1986, O'Donnell/Schmitter/Whitehead 1986 등 참조). 이와 같은 정권들은 60년대나 7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좌익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구제한다는 명분하에 “국가적 안보” 유지 및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적·자본주의적 현대화를 위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유지라는 독트린을 통해서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이와 같은 정권들은(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부분적 제외) 바로 경제적 현대화라는 목표의 실현에서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
- “지역적 도미노 효과”에 따라 80년대 말에 동유럽에서 제3차의 거대한 민주화 선풍이 일어났다(von Beyme 1990). 경제와 사회의 심층적 변화는 한편으로는 정치제도에 있어서의 정권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으며(헝가리), 민주화 과정의 결과로서 비로소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중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그 반대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소련의 변화는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이렇다할 민주화 과정이나 심지어 자본주의적 변형과정을 거론하기에는 미흡한, 불안하고 우발적이면서 미해결인 상태이다.

- 이와 같은 정치와 경제의 “대대적 변형”은 동독의 경우, 민주화운동이 시작되고 SED 정권이 지리멸렬하게 붕괴하자 그 속도가 급속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급속한 속도를 염두에 둘때 Polanyi의 예언의 배경과 일치하며, Lucian Pye가 제기하는 현대화 이론의 논점으로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록 동독경제가 COMECON 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정권변화는 그 어느곳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민주화운동은 가장 짧은 기간내에 단호하게 친자본주의적 운동, 나아가 서독과의 “재통일”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이미 1990년초의 “자유선거” 실시이후 동독 주민의 대다수가 서독식 자본주의 모델과 민주주의 체제의 즉각적인 수용을 지지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동독내에서 생성중인 민주화와 경제형태의 변화는 동유럽에서 생성일로에 있던 그 어느 다른국가의 정권변화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일어났던 것이다.

I. 동독의 정권변화를 설명할 이론과 개념

- “평화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정권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단순한 서술을 넘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연구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경험적 혁명 연구
 2. 동독연구
 3. 근대화 이론
 4. 민주화 연구 및 “변화” 이론

1. 경험적 혁명 연구

- o 정치가나 여론에서 언급하듯 동독의 정권교체를 과연 “(평화)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동독의 정권교체가 진정한 평화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변혁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이론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는가?

- o 혁명이라는 현상을 미국의 사회심리학적 혁명연구에 근거하여 단순한 집단 권력의 붕괴로 볼 것인가? 또는 제3세계의 혁명에 관한 연구처럼 엘리트들이 선도하는 측면을 불가피한 것으로서 강조할 것인가?(Krumwiede 1985 : 874면) 혁명이란 사회적 변혁과 정치적 변혁의 특수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혁명이란 정치현상과 사회현상의 급격하고 심층적인 변화를 뜻한다. 국가 통치자로서의 위치로부터 언제나 철저히 배제되었던 사회의 제집단에게 일방적인 통치소유권의 재분배를 통해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효율적 규정이 제시된다면 혁명이라고 거론될 수 있다(Rittberger 1973 : 41/2). 그렇지만 Rittberger 자신도 통치권의 재분배에 관하여 “일방적인” 측면을 주장하면서 혁명에 관한 정의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불가피한 요소로서 자유민주주의적 이론에 관한 최소합의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통치기능에의 진입은 공식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방법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Robert Dahl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차원을 “inclusiveness” (Dahl 1971 : 7)라고 표현하고 있다.

- o Rittberger의 추상적 개념정의 이외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요소를 고려한다면 동독의 변혁은 대체적으로 평화혁명, 민주혁명, 나아가 “뒤늦은” 혁명(Habermas)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 새로운 국가의 통치자로서 진출은 일방적으로 새롭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보편적인 공개성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다.

- 변혁은 비단 정치제도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 비폭력적 변혁이라 할지라도 혁명이라고 일컬어져야 한다.
 - 혁명을 항상 미래의 사회발전을 위한 혁신적 원칙만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혁명은 뒤늦게 실현되는 성격(Habermas 1990 참조)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도 보아야 한다.
- o 이와 같은 4가지 요소는 동독에서 정권교체가 진행되던중 그리고 정권 교체의 결과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제도에 있어서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진입은 1990년 3월에 실시된 최초의 자유, 평등, 비밀 선거와 더불어 자유민주적 다원주의 방식에 의한 가장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SED라는 국가정당의 단독대표권을 위시한 독점적 권한, 권위주의적 영도적 권한은 박탈되었다.
- o 이에 병행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권력배분, 영향력 배분, 자원배분 역시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기초생산 및 분배규범을 대체하였다. 기존의 규범에서는 이론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리라는 사회주의적 원칙이 명시되어있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국가관료적 기관을 통해 시장경제에서 생산수단과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사유재산제도보다 훨씬 불평등하게 모든 기능이 수행되고 있었다. 여하간 동독의 경제관계의 변혁과 이와 더불어 일어난 사회의 제관계의 변혁은 철저한 근본적 변화를 뜻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변혁은 이미 정치분야에 있어서 일어났던 것이다. 만일 동독의 “뒤늦은 혁명”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미래지향적 아이디어가 거의 전적으로 결여” 되어있는(Habermas 1990 : 181면) 특징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회주의” 라는 것이 어느정도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사회형태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므로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엘리트의 위치와 자원의 배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0 경험주의적 혁명연구는 혁명적 변혁을 뒷받침해주는 정치, 경제, 사회, 사회심리 분야에 걸친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경험주의적 혁명연구는 혁명후의 발전에 관하여서는 거의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정권이 민주적 정치제도로 변하는 혁명적 변혁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서도 별로 언급이 없다. 즉 혁명후의 민주화 과정과 같은 것은 경험주의적 인식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볼때 경험주의적 혁명연구와 Rittberger의 개념정의는 전반적으로 동독의 정치적 변혁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동독에서의 정권교체를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론, 방안, 유형으로서는 불충분하다.

2. 동독 연구

0 만일 서독의 동독연구로부터 SED 정권붕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방안을 모색한다면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현존 사회주의체제하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한다는 것도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1988년과 1989년까지만 해도 Gert Foachim Glaessner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저자들은 동독의 정치, 문화, 사회에 관한 2가지 책을 발간한 바 있는데, 이 책들은 일반적으로 비록 동독체제가 결함투성이기는 하나 그래도 안정된 “제2”의 독일공화국이라는 인상을 암시하였다(Glaessner 1988 : 989면). Glaessner는 구동독 정권이 붕괴되기 바로 1년전에 ‘호네커 시대의 동독’ (Die DDR in der Ara Honnecker)라는 책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독은 15년간에 걸친 호네커 시대를 통해 국제적 비중을 높였고 내적안정을 획득했다” (Glaessner 1988 : 11면). 그리고 Glaessner는 “동독의 체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에 관한 혁명이후의 분석에서조차 동독의 일간지와 주간지를 비롯하여 당시까지 국가를 장악하고 있던 SED와 그 제휴정당의 공식성명 분석이라는 훈고학적 이론의 전통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Glaessner가 유일한 경우만은 아니다. 그 반대로 동독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범해지는

오류다. 동독연구는 사회과학적 현지연구가 불가능했으므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문서나 협약따위의 분석에만 만족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동독 연구가 우선 동독의 경제, 사회, 정치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했고 주민들간의 정권에 대한 수용태세가 변화되고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 “ 이와 같은 체제내재적이며 무비판적인 연구방법 ” (Bleek 1990 : 13면)은 주민들을 객체로서만 인식했지 정권교체를 위한 가능성 있는 주체로서 볼 수 없었다. 왕왕 동독연구는 반공주의적 방향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데올로기에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통치조직의 불안정성 같은 것을 정확하게 연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수출이라는 팽창욕과 침투욕에 대한 의례적인 경고정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Christian Peter Lutz가 주장한 이래 진지하게 통하고 있던 “ 체제내재적 방법론 ” 마저도 가치판단의 유보(Werturteilsfreiheit)와 미래진단에 대한 조심성(Prognostische Enthalttsamkeit) 때문에 현존사회주의의 진전과정에 관한 현실적인 판단 가능성을 축소시켜 버렸다.

- o 단 몇명의 예외중의 한사람이 Dietrich Staritz이다. Staritz는 1988년, 호네커 시대에 관한 앞의 공동저서에서 동독의 구조적 현대화 문제를 진단한 바 있는데 젊은세대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조명해보면서 재래식 종속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방법에 의한 사회통합의 제도가 느슨해지고 있음을 암시하였다(Staritz 1988 : 298면 참조). 그는 이와 같은 주장을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다시한번 다루고 있다(Staritz 1990). Staritz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40년간이나 동독 체제를 존속시켜온 다음과 같은 주요요인을 다시한번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1) 정치적 권력수단과 물질적 자원에 관한 사용권의 독점, (2) 보잘것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 동독인들의 사회복지적 협약(Sozialvertrag : Staritz 1990 : 23면)을 비롯하여 현존 사회주의 상태에 대해 부분적인 동의 내지 참여, (3) 사회심리적으로 불태 잘 훈련되어 순응하는 경향(전게서 19면), (4) 반체제 인사의 예방조치적

추방, (5) 동독이라는 독자적 국가성에 대한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보장 등이다. 그러나 동독을 떠받들어 주고 있던 이와 같은 기둥들이 부너지거나 썩어들어감으로써 권위주의적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며 정권 엘리트에 의한 위기극복 능력은 급속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Staritz에 따르면 “(저자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 동독연구자들이 동독을 관측함에 있어서 당과 국가의 탄력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전게서). 비록 Staritz가 장기적인 체제위기 원인(체제의 근대화 능력 및 새로운 것을 배움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 결여)과 단기적인 체제위기 원인(헝가리 국경 개방)을 구별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현존사회주의체제의 궁극적 실패에 관한 외교정책상의 근거와 문화사회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젊은세대에 의한 “사회복지적 협약”의 해약 이유에 관한 신뢰할만한 사회화 이론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의 분석에는 아직도 체계적 연구의 틀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Staritz는 “서구식” 권위주의 체제에 관한 민주화 연구 및 변화연구에 따르는 이론, 개념,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동독연구는 제공된 정보를 설명함을 넘어서서 동독의 정권교체를 설명하는 것을 소홀히해 버렸다. 즉 동독연구의 기존 접근방법 때문에 그와 같은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 하였다.

3. 근대화 이론

- o 60년대 근대화 이론의 석학중의 한명인 Lucian w. Pye 자신도(Pye 1966 참조) 동유럽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및 “강요된” 개혁속에서 근대화 이론(Pye 1990 : 7 ff)의 핵심적인 가설의 정당성을 뒤늦게 찾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 학문과 기술의 가속적 전파, 교육분야의 확충, 국가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체제와 같은 것이 동유럽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이 침해당하도록 기여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텔레비전, 인공위성, 마이크로 칩스의 문화적 발전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동독정권의 통치는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 매일 저녁 동독인들의 거실에 찾아오는 서독 TV라는 형태의 계급의 적” (von Beyme 1990 : 173면) 때문에 서독 소비문화의 가치관과 생산품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체험되면서 동독인들의 욕구속에 뿌리깊게 박혀버림으로써 동독이라는 자체체제로는 온갖 이상적인 진보적, 발전적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동독으로 유입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우월성은 물질적 발전을 의무로 삼던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와 특히 평준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체제의 정통성은 점점 침해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통성 문제는 사회의 하부구조가 고르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다. 비단 교육제도는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배출되도록 하였지만 경제의 하부체제는 이와 같이 훌륭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장에서 일거리와 승진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덧붙여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재화와 기회에 대한 정치적 독점화는 국가의 권위에 따라 개인의 직능그룹이나 능력그룹간에 엄청난 소득격차(Wielgohs/Schulz 1990 : 23면)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단된 직업승진 기회의 자기계발 기회는 - 2명의 동독 사회학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 바로 훌륭한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주민그룹으로 하여금 불만이 커지도록 하였다.

- 0 그렇지만 동·서독이라는 한민족이 갖고 있던 2개의 상이한 사회체제가 동일한 상태로 근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대화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구권 국가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형태인 동독의 정권교체과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고가 되는 모범적사회(Referen gesellschaft)로서 서독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이라는 이웃나라의 사회가 갖고 있던 자유의 영역과 소비의 기준에 점점더 자신의 목표를 맞추게 되었다는 사실은 SED 정권에게는 부단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동독정권은 그들이 당면했던 이와 같은 2가지 도전에 단 하루도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버렸다.

- o 그러나 필자처럼 근대화 이론을 단순히 민주화 과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적부분을 설명하는 이론만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근대화 이론은 사회발전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과 배치되는 구조적·기능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근대화 또는 경제발전이라는 변수는 민주화 과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보면 이중적이다. 즉 경제와 사회의 근대화가 성공하게 되더라도 (스페인처럼) 권위주의 정권의 불안정 역시 초래될 수 있으며, 경제적 실패는 (아르헨티나처럼) 그 반대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서는 남아메리카에 관한 Dieter Nohlen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변수는 그 극단적 특징상 동일한 결론, 즉 권위주의 통치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Nohlen 1986 : 10).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되는 과정에 관한 전근대적 해석방법의 제한성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형태론적 고려 및 정치적 변수를 이용한 근대화 이론적 가정을 보완하거나 가능하다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결합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행동주체와 관련되거나 조직과 관련된 민주화의 발상이라는 가설이 가장 적합한것 같은데 이와 같은 가설은 최근의 변화 과정 연구(Transitionsforschung)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민주화 연구 및 “ 변화 ”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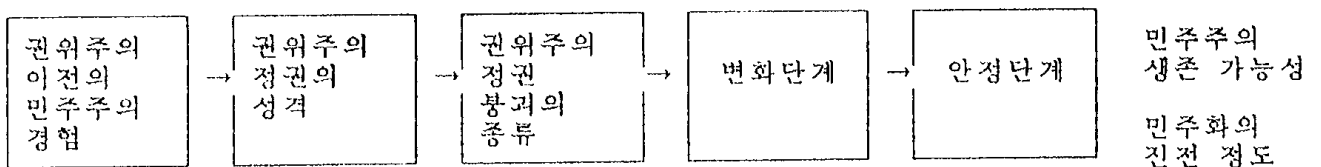
- o D. A. Rustow는 1970년 “ 민주주의에 친숙한 ” 사회경제적인 발전인자들의 누적이 결코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필연성으로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이론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유전적 발상을 지배적인 기능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시하였다(Rustow 1970). Rustow는 스웨덴 (1890-1920)과 터키(1945년 이후)를 우연하지만 임의로 선정한 사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민주화를 위한 4단계 모델을 만들었다. (1) 불가분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민족국가통일, (2) 경제와 정치의 핵심적 문제를 둘러싼 계급과 그룹간의 갈등, (3)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민주적 행동규범의 의식적

정착(Rustow 1970 : 355면), (4) 정치 엘리트와 선거주민에 의한 민주적 행동규범의 연습 및 행동화 제단계의 변화가 새로운 문제상황을 제기하며 따라서 새로운 행동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한다는 Rustow의 탁월한 지적은 동독사례에 있어서도 나중에 증명되었지만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화 과정의 이상적 순간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민주화 과정의 이상적 순간은 동독의 정권교체시 그 실제 진행과정에서 명확하게 부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Rustow가 주장하는 민족통일이라는 제1단계가 동독의 민주화를 위한 불가결한 출발조건이 아니었고 그 반대로 제1단계가 곧 민주화 과도과정의 결론인 최종단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유럽에 여러 민주국가가 있다는 “의적 변수”와 민주주의 서독이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비교적 근대화된 동독사회라는 “내적 변수”와 같은 것은 동독의 민주화 절차의 조직화, 기구화, 행동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였음에 비해 20세기를 전후로 민주화에 돌입한 여러 국가의 민주적 제도화와 절차의 실현과 연습에는 (Rustow가 스웨덴의 사례와 더불어 지적하는 것처럼) 수십년이 필요했다.

- o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기능주의적 발상에 따르는 결함을 극복함과 동시에 일원화 추세를 보이는 역사적·유전적 접근방법에 따르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탁월한 이론적 지적 및 명확한 발상점은 O'Donnell, Schmitter, Whitehead의 공동 주도하에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이라는 대규모 국제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연구 개발되었다(O'Donnell/Schmitter/Whitehead 1986). 특히 Przeworski는 이 프로젝트에 기고한 논문에서 거시적 분석차원과 미시적 분석차원을 서로 결속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Przeworski 1986 : 47 ff). Przeworski의 주장에 따르면 거시적 분석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객관적” 조건은 오로지 정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활동에는 특정한 인식하에 개인과 집단의 권익을 추적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행동주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전략은 결코 행위자의 이해관계로부터만 필연적으로 도출되어서는 안된다. 그 반대로 그와 같은 전략은 명확한 행동주체의 상황과 이에 따라 개방되는 전략적 선택 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여러가지 행동 가능성으로부터 선택되어진다. 하나의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로 교체됨에 나타나는 행동주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결론과 더불어 어떠한 목표를 추적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권교체의 진행과정에 관한 제단계를 소개할 수 있다.

도표 1 : 이상적 형태의 제단계로본 정권교체



○ 필자는 이제부터 권위주의 SED 정권의 붕괴과정 및 변화단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각 단계마다 중요한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상황, 국내정책적 행위주체와 대외정책적 행위주체, 권력의 근원, 행동가능성, 행동전략, 정치결과와 같은) 정권교체의 변수를 열거해 본다. 필자는 Schmitter의 단순화된 단계모델을 이용하여 2장에 걸쳐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SED 정권붕괴의 원인
2. 민주화 과도기간

II. 구동독 공산당(SED) 정권 붕괴의 원인

1. “서방식” 권위주의 정권과 “동구식” 권위주의 정권의 차이점

- 1945년 이후에 출현한 “서방식 권위주의 정권은 오로지 과도정권으로서만 그 통치의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O'Donnell/Schmitter 1986, Part IV: 15 참조). 그 반대로 동구권의 공산당은 그들의 정치적 지배질서와 사회주의적 사회형태를, 그와 같은 단계 이후에 “시민적(buergerlich)”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하지 않았다. 동구권의 공산당은 그들의 사회를 목표지향적인 역사철학으로 무장한 후 인류사의 최고의 발전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사회의 전단계로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회주의내 권위주의 정권은 이와 같은 역사관과 사회의식에 근거하여 그 질서법칙을 따랐으므로 “서방식” 독재와는 분명히 구별되었다.
- SED 통치 붕괴 방식을 설명하는 2가지 중요 착안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독경제는 다소간 시장경제적으로 구성되었던 남아메리카와 남유럽 독재정권의 경제와는 달리 국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된후 중앙으로부터 통제되었다. 둘째, SED 정권 치하에서는 시장경제의 존립과 자동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회의 제세력에 대한 “제한적이거나 다원주의”(Juan Linz)적 질서보장은 교회, 예술, 문학 분야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이 제세력들이 국가 후견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없었다. 기업체, 기업연맹, 노조와 같은 것은 예외없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며 충실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력전달용 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 정권의 엘리트들과 공산주의 연구가들에게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및 중앙집권적 정치통제 구조가 완전히 일치되어 서로 모순성이 없었으므로 자유화나

민주화에의 여지가 전연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와 같은 저발전 상태의 문명사회에서는 정권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집단적 행동주체나 자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civil society”가 조심스럽게 형성되는 조짐이 문화분야와 신교도 중 일부 및 새롭게 형성된 민권단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Glaessner 1986b : 529면과 Knabe 1990 참조).

- o 나치스 독재와 현존사회주의가 동독에서 57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동안 권위주의 정권으로 하여금 제도적으로 자유화를 위한 개방이라는데 관심을 갖게할 만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요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비록 동독 헌법 제48조에 인민의회가 “국가의 최고권력기구”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지 - 그것도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에만 입법절차상 무조건 동조하는 정도로 참여하였을 뿐이었다. SED의 영도적 역할이라는 핵심적 헌법 명제를 통해 제후정당과 대중단체에 대해 완벽한 제도화된 통제를 하였으므로 동독의 인민의회는 “SED의 인민대표”가 되어버렸다 (Sontheimer/Bleek 1975 : 106면).
- o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전반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일종의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실득력이 부족하다. 그와 같은 이유 중의 하나는 동독은 히틀러나 스탈린에 의한 대량학살체제와 동일한 형태의 체제로 보기에는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만 타당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또 다른 이유로써 Friedrich 및 Brzezinski와는 달리 전체주의 정권을 일종의 독특한 형태로 간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유화되고 제한적인 다원주의적 특성을 지닌 정권을 거쳐 전체주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 이르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종착점이라고 보고 싶다. 나아가 Friedrich와 Brzezinski에 의한 전체주의적 독재에 관한 6가지 판단기준

(1) 이데올로기

(2) 단 한명에 의해 영도되는 유일 정당의 존재

(3) 테러기구나 다름없는 경찰 조직

(4) 통신수단의 독점

(5) 무기의 독점

(6)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경제

은 현존체제를 단순화된 이상적 형태로 분류하고 있어 세분화가 요구된다.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라는 판단기준 한 가지만 본다면 본다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하면 1941년 이전의 파시스트적 이탈리아나 나치스적 독일을 전체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며, 그 반대로 동독과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은 전체주의체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o Juan Linz는 권위주의(autoritaere) 정권과 전체주의(totalitaere) 정권의 구분에 따르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소련과 동유럽의 스탈린 이후 체제를 “후기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혼합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Linz 1986 : 64면). 그러나 필자에게는 동독의 경우 이와 같은 개념이 완전히 들어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비록 50년대의 발터 울브리히트 치하의 동독정권이 후기 호네커 시대의 동독정권보다 훨씬 테러리스트적 정권이었음이 틀림없지만,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무역과 생산분야에 걸쳐 개인경제적인 분야가 이미 출현하였었다. 또 80년대에도 동독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는 극심하여 “매우 전체주의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였으므로 동독의 역사발전에 있어서 전체주의체제로부터 후기 전체주의체제에로의 과도기를 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 o 이와 같은 역사적 부정확성을 피하고 자본주의적(“서방식”) 권위주의 독재와 현존 사회주의적(“동구식”) 권위주의 독재를 보다 훌륭하게 구분하기 위하여서는 “권위주의적 국가 사회주의”(“autoritaer-staatssozialistisch”) 체제라는 것이 동독에게는 가장 적절한 개념이라고 보인다. 전체주의에 관한 연구의 어마어마한 오판 투성이의 진단 역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Friedrich와 Brzezinski는 전체주의 정권이 내적으로 폭발하여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들은 “ 전체주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연구분석에 따르자면 그와 같은 혁명이 감행되기는 커녕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Friedrich/Brezezinski 1965: 628면)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전체주의 연구가로 유명한 Friedrich와 Brezezinski의 이와 같은 견해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1989년도 동베를린, 프라하, 부카레스트에서 정권이 무너질 때 당황했던 전체주의 체제 수령들의 견해와 일치했음이 드러났다.

2. 구동독 공산당 (SED) 정권의 급속한 붕괴 원인

Przeworski는 권위주의 정권이 자유화되거나 붕괴되도록 하는 4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Przeworski 1986 : 50ff).

-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이 입법화하여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여 스스로 자신을 더이상 필요 없게 만든다.
- 통치블럭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일부파로 하여금 블럭 외에서 새로운 지지세력 내지 동맹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든다.
- 권위주의정권은 그 “ 정통성” 을 상실하였으며 붕괴된다.
- 외교정책적 압력이 민주화개혁을 재촉한다.

가. 목표의 달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철학이 제시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무로 삼았던 동구권의 현존 사회주의 정권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르자면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은 오로지 계급이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는 헤겔이 주장하는 식으로 그와 같은 독재체제 속에서 지양(Aufheben)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80년대 동독에서 마르크스의 “ 독일 이데올로기” 에서 제시하는 비유적 정의에 따라서나 SED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골수분자들의 해석에 의할지라도 달성되지 못했다(Grosser,G./Reissig,R./Wolter,G. 1988 : 282 ff 참조). 오히려 그 반대였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헛되이 주장되던 “국가통치 구조의 사멸”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자유스런 사회구조나 연대적인 조직의 결사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조장되지도 않았다. 그 반대로 전능한 괴물이 생겨 자유스런 개체가 자유스런 결사를 조직하여 국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방해했다. 특히 현존 사회주의는 이와같은 관점하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체가 입법화한 목표 달성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등독정권의 붕괴를 설명하는 Przeworski의 제시 이유 중 첫번째 이유는 완전히 배제된다.

나. 지배집단내의 갈등

이것은 Przeworski가 주장하는 정권교체의 원인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O'Donnell과 Schmitter가 남아메리카와 제한적이거나 남부 유럽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O'Donnell과 Schmitter는 정권엘리트를 온건파(soft-liners)와 강경파(hard-liners)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배집단에 관한 이와 같은 구분은 권위주의 지배의 모든 과정에 걸쳐 관찰된다고 볼 수는 결코 없다. O'Donnell에 따르면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배엘리트들은 이와같은 성공 단계에서 그들의 권익을 어떻게 하면 미래에 가장 잘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지배엘리트의 유형이 분류된다 (O'Donnell 1986, Part IV: 15ff)고 한다. “온건파”들은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제한적인 자유화 및 민주화를 위한 일정한 정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일정한 정도의 개혁이 이미 불가피하다고 볼 때 사이비 야당 단체와 연대하고 권위주의체제를 조심스럽게 감시하에 개방하면서 권좌에 머무르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고려는 권위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온건파”가 다른 단체와 생존을 위한 결속체를 구성하는 동기는 명백히 정권의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엄격히 통제된 개혁에의 가능성과 정권엘리트중 특정 파벌의 권좌 유지 가능성은 첫번째 경우보다 훨씬 적어진다.

동독에서는 SED 지도층 일부의 반대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의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1989년 9월까지도 정치국 내에서는 아직도 “온건파”가 등장하지 않았다. 1989년 10월 12일 정치국원의 대다수가 에리히 호네커의 퇴진을 강요한후 에곤 크렌츠를 만장일치로 그 후임자로 결정하자 SED 수뇌부들간에는 사태파악과 그들의 정치적 생존전략이라는 관점하에 처음으로 의견상 차이점이 나타났다.

정에 “강경파”들이 점차적으로 정치국으로부터 제거되다가 그 후에 당으로부터 축출되었다. 11월 17일에 한스 모드로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모드로는 1989년 가을의 극적사태가 있기전까지 사실상 “온건파”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배집단 내의 분열이라는 관점으로서만 SED 정권의 붕괴를 설명할 수가 거의 없다. 크렌츠, 샤보스키, 로렌츠 같은 정치국원들은 1989년 12월 8일 정치국원 전원이 사퇴할 때까지 정권이외의 집단과는 전연 협력한 바 없다. 모드로 정부가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현상과 대규모 시위에 못이겨 “원탁 회의”(1989년 12월 7일)를 통해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자, 처음으로 제2선상의 정권엘리트와 정권 반대파간의 공조 체계가 성립이 되었다.

다. 정통성 상실

구 동독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 상실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실제적으로 정치·경제·법치국가·복지국가·도덕 및 문화·민족국가 등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증명되었다.

< 경제적 정통성 >

중앙집권적 경제의 기능을 시장경제의 거시경제적 판단기준으로 무조건 평가해 버릴 수 없다.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 독점, 외환관리 독점, 가격 결정독점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수지와 물가상승율이 결정되는 이면에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적 과정과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업율”이라든가 “경제성장율”과 같은 판단기준은 정통성 문제를 설명하는데 충분히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독의 통계치가 부정확하다고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동독의 실업율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경미했음을 대다수의 연구인들은 동의하고 있다(Cornelsen 1990 : 35면 참조). 또한 경제성장 면에서 역시 80년대에 들어 이렇다하게 부진하지는 않았다. 즉 1980-82에는 2.6% ; 1982-84에는 5.5% ; 1984-86에는 4.3% ; 1986-88에는 2.6%를 기록했다(DDR-Almanach 1989 : 66). 1300억 DM의 국가부채와 서방측 은행에 대한 1988년도의 200억 달러에 달하는 순수 대외 부채 역시 서방측 기준으로보나 동구권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여하간 이와 같은 판단기준으로는 80년대에 경제적 측면에서 정통성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동독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비효율성과 혁신능력 제한성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자급자족이라는 맹신(Autarkiewahn)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효율성을 증가시켜 주는 상대적인 가격의 장점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급자족이라는 맹신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생산방식으로 유도되어 동독 금속가공산업이 국제시장에 내어 놓은 50%의 생산품이 모두 높은 단가로 생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자급자족이라는 독트린에 따른 비용은 80년대에 다시한번 급증해 버렸다. 중앙통제 경제계획에 따라 70년대 말부터 마이크로 전자산업의 발전에 최우선 순위가 부여되었다. 자원은 소비재 분야로부터는 물론, 투자재 분야 대부분으로부터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전용되었다. 이러한 자원동원으로 인하여 여타 산업분야에 나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고 메가칩스가 연구개발되기는 하였지만 국제시장의 전자 제품과 벌인 경쟁에서는 허망하게 실패해 버리고 말았다. 코메콘 시장내에서 조차 동독제 컴퓨터는 제한된 상태의 수출품일 뿐이었다. 마이크로 전자산업 발전에 들어간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은 높은 판매가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기계공업과 같은 기간산업은 침체에 빠져 들었고 교통과 통신체제는 한심할 정도로 낙후했으며 도시의 주거환경은 황폐해가고 궤도에 접어들지 못한 생산시설의 합리화는 단지 월남과 아프리카대신 “초빙 노동자”에 의한 값싼 노동력에 의해 그 생산성 향상이 엄폐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볼때 동독의 현실사회주의는 “근 40여년 동안에 걸쳐 분단이전 독일 자본주의적 시민사회가 이루어 놓은 산업잠재력의 본질을 잡아먹으며” 연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Fichter 1990 : 56면).

동독 경제 내에서는 국내경제적 경쟁이 적었다는 점,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이 아니었다는 점, 가격제도가 부조리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주민의 욕구에 어긋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불이 컸기 때문에 기초적인 재화공급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서방측에 의해 새로운 소비에의 열망이 일깨워졌기 때문에 생산은 중단되지 않아야 했으면서도 생산품의 질, 상품의 다양성, 생산기술의 혁신, 모드, 하이텍과 같은 것은 결코 제공될 수 없었다(Cornelsen 1990 : 36면 참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80년대에 접어들어 정치적인 정통성 제고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투자재 산업으로부터 소비재 산업의 자원전용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투자재 분야와 같은 기간산업 분야에서 낙후된 자본축적만이 급속하게 일어났을 뿐, 서방측 수준에 상응하는 질 좋은 소비재 생산은 달성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언제나 코메콘 역내의 수준에 경제적 발전 수준을 맞추면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했던 SED 지도층과는 달리 주민들의 소비욕구는 서방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해 서방측 상품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문제를 자체능력으로 해결시킬 수 있다고 완고하게 믿었던 동독정권에 대하여 이와같은 진전상황은 주민들로부터 정통성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병행하여 동독주민들이 소련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이후 자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동독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불가분리의 동맹관계”에 있던 소련(Staritz 1990 : 28면)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우수하다고 입증된 노선을 부단히 유지해야 한다” 라고 SED 지도층은 상투적인 선전을 해댔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자세는 변화하는 세 계속에서 개혁의지가 없다고 주민들로 부터 판단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욕구와 현실, 자본주의 서방측과 사회주의 동구권간의 괴리는 정권붕괴의 추가적인 폭발력으로 작용되었다(Cornelsen 1990 : 36면).

< 정치적 정통성 >

1968년 동독에서 새로운 “ 사회주의 헌법 ” 이 제정되자 사회-민주주적 헌법과 후기스탈린주의 헌법의 실제성 간에 있던 커다란 간격은 제거되었다. 공식 집계에 따르자면 이 헌법은 94.49%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는 하였지만 가식적으로 민주주의 정통성이 인정되었을 뿐이었다(Lohmann 1989 : 468/9면). 이로써 “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 에게는 헌법에 입각한 정통성이 부여되었다. 그렇지만 헌법에 대한 가식적인 동의만으로는 주민들이 체제를 진정으로 지지하거나 정통성을 신장시켜주는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던 바, 그 이유는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권위적인 상황하에서의 직접민주주의 행사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SED의 주도적 역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국가 독트린을 배경으로 하여 애당초부터 변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대다수였고, 생산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서구적인 노조(trade union) 의식이 물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당의 역할 등을 통해 역사발전의 관점이 “ 과학적 세계관 ” 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4대 “ 친선정당 ” (Honnecker 지칭)이었던 동독기민당(CDU), 동독자민당(LDPD), 독일민족민주당(NDPD), 독일민주농민당(DBD)을 위시하여 동독노총(FDGB)와 같은 대중단체는 민주주의 불력으로 규합된 후 국가정당인 SED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던 민족전선(National Front)의 예하에 놓였다. 계휴정당들에게는 오로지 “ 자문역할 ” (Lohmann 1989 : 471면)만이 인정되었으며, 동독노총은 당을 위한

동력전달용 축이라는 종속적인 역할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다(Staritz 1989 : 301 ff 참조). 이미 사전에 확정된 기능분담과 권력분담이라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선거라는 것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정통성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정확하게 배정된 비율 범위 내에서의 후보자 선정만이 작으나마 시민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결정의 기회였다. 사회가 이처럼 국가화된 상태에서 비록 통제된 참여에의 길이 열려있기는 하였지만 정치적인 다른대안의 선택 가능성과 같은 것은 전연 없었다. 독재적이고 배타적으로 사회의 모든 권익이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정의되면서 감독되고 보상을 받는 한, 한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적 정통성은 생성될 수 없었다. 중앙에 의한 무책임한 결정, 의례적인 참여 형태는 이와 같은 정통성의 결핍을 보완시킬 수 없었다.

동독의 사회구조 역시 거의 전적으로 당국의 지시명령에 의한 정치적 권력 행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즉 시장의 폐기를 통해 경제는 사회구조 형성능력을 거의 상실해 버렸다. 정치권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동독사회는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론에 의한 판단기준(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또는 비소유)으로나 사회학에서 흔히 쓰이는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소득, 재산, 교육, 직업)으로도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동독출신 사회학자 Artur Meier는 동독사회 구성원리(Meier 1990 : 10)에 관하여 “신분에 의해 결정된 통치형태에 상응하는 권력의 분배와 이에 근거하는 특수한 형태의 재화의 취득과 재화의 소비가 있으므로... 사회주의내 사회의 계층구조를 사회학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격하게 계급적으로 분류된 신분 피라미드에는 정상부분에 전지전능한 “노멘클라투라 계층”이 있고, 그 예하에 각종 기구(당 기구, 국가 기구, 경제기구, 학술기구, 이데올로기기구)에서 일하는 중간 및 하급지도자로 구성된 “관료계층”이 있다. 전문직 중산층 또는 소시민적 중류층으로 전락한 “제3의 계층”이 있었다.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은 명목상의 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 말단 사무원으로 구성되었던 바, 이를 Meier는 신분에 알맞는 용어로써 “서민(das “gemeine”

Volk)”이라고 비꼬았다. 각 “신분계층” 내에서 후진양성과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보궐선거와 같은 것이 통례였지만 수직적인 상하이동은 예외일 뿐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미 사전에 규정된 통치형태를 반복할 뿐인 폐쇄된 사회는 내적으로 제한된 혁신 능력만을 갖게 된다. 이와같은 형태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외적인 원인으로 유발된 변화에의 강요가 있더라도 쉽게 이를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국가가 이와 같은 변화에의 외적인 강요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이상 버텨 나갈 수 없을 경우 신분에 따라 구분된 사회로서 다원화가 되지 않은 사회 그 자체는 결국 정치적 권력의 현상유지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한다. Artur Meier는 “그 순간이 곧 사회 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법치국가적 정통성>

동독이라는 국가에서는 중요한 부분에서 법치국가적 정통성의 근거가 매우 희박했다. 한 국가의 법치국가로서의 특징은 그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 질 수 있다. 동독의 경우 법률규정 중 대다수는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료회의의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Wolf 1990 : 252면 참조). 헌법상 명기되어 있는 인민회의의 입법권은 있으나마나 였으며, 공포된 법률의 합헌성 따위는 전연 문제시 되지 않았다. 법치국가로서의 중요한 기본 원칙을 감시하는 헌법재판소도 없었다.

법치국가라 함은 법률규범이 충분히 제정되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국가 활동에 대한 감독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법률 규정의 규범에 병행하여 불편부당한 법원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과 국가를 연결시켜주는 중대한 고리는 행정법과 행정법원 제도이다. 시민에 대한 동독의 행정은 거의 무제한적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 일개 시민에게는 국가의 행정 행위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주의적 행정법을 둘러 싸고 자주 벌어졌던 토론은 SED 지도층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와 그시민의 권익은 동일하다는 주장하에 끊임없이 중단되었다.

동독의 모든 형사사건 중 “ 대다수 ” (Wolf 1990 : 257)를 비롯하여 민법, 가정법, 노동법의 각종 사건이 비록 법률에 따라 판결되었지만, 형법은 정치적으로 압제수단에 불과했고 행정법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정통성은 취약했다. 또한 동독의 법치국가로서의 성격에 관한 문제가 비록 사법분야에 걸쳐 전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위에 열거한 약점 (입법절차, 정치적 압제수단으로서의 형법, 행정법원제도의 부재) 때문에 기능 수행상의 법치국가적 제요소는 단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었다.

< 복지국가적 정통성 >

Klaus von Beyme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복지국가적 정통성이 동독 내에서는 “ 가장 확실한(정통성의) 일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생존상의 위협과 같은 것은 동독이라는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사회주의적인 체제에서도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은 한편으로는 양독 국가가 체제간의 경쟁을 해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평등원칙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동독은 코메콘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복지사회국가로서 안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에 무관하게 동독주민들은 동·서독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보건제도, 유치원, 노동할 권리 분야에서는 동독의 사회복지정책적 업적으로 여기며, 서독보다 훨씬 발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SED는 베를린장벽 구축 이후 일종의 “ 사회복지 협약 ” 을 실행 하었는데 사회복지협약과 더불어 사회복지적 안정, 직업상 승진 가능성, 참고 견딜만한 정도의 소비수준과 같은 것이 제공되어 있었다(Staritz 1990 : 23/4). 독일적인 공권력 만능국가의 여러가지 변형중 나치스와 스탈린주의식 체제를 체험한 후 사회에 적응하면서 전후의 결핍상태와 전후재건의 고난을 겪었던 노년층에게는 이와 같은 “ 협약 ” 이 곧 어느 정도 용인되었으나, 풍요스럽게 성장한 젊은세대는 프로이센식, 나치스식 그리고 스탈린식 공권 만능국가를

스스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 사회복지국가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려는 경향” 과 같은 것은 퇴색해 버렸다(위의 책 : 19면).

“ 사회복지협약” 은 젊은세대 대다수에 대해 그 구속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 결과 동기 유발면에서 위험이 초래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수동적인 충성심이라는 거부현상과 같은 것이 나타났다.

< 이데올로기 및 도덕적 정통성 >

마르크스·레닌주의는 - 언제나 그랬듯이 - 공개토론 범위내에 한계를 설정하여 놓았는데 현존 사회주의 정권엘리트들은 이 범위내에서 “ 그들의 신민” (Lukes 1990 : 440)에 대한 정책의 정통성을 강요하였다. 정치적 도덕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내지 레닌주의)는 미래지향적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지배로부터의 해방, 사유재산제도로부터의 해방, 시장이라는 비합리성으로부터의 해방, 인간이 인간을 소외하거나 약탈하는 상태로부터의 해방 등을 약속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결핍이 없고 비합리성이 없는 사회를 약속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속박 받지않는 생산자들이 결합하여 수요에 알맞게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도록 약속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의 역사를 인식한 후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그 종국에는 자유의 왕국이 오게된다. Steven Lukes는 이와 같은 객관적 전망이 개체로 하여금 일원본적인 도덕을 가질 것을 강요하게 되고, 개체의 다양한 권익과 동기는 묵살되고 객관적이고 집단적인 관점을 받아 들이도록 한다(위의 책 : 437면)고 주장한다. 자유의 왕국으로 향하는 도중, “ 비합리적인”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할때 눈에 띄만한 물질적 성과가 없으면 마르크스·레닌주의 윤리는 철두철미하게 남만을 위하는 이타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고귀한 도덕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의식 내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의무로 삼는 사회나 특히 정치 엘리트는 자유의 왕국으로 향하는 “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체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도덕적 차원에서도 보여줄 수 없었다.

특히 동독에서는 초기 국가제건의 과정이 지난 다음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도덕의 이중성이 점점 더 드러났다. SED가 의례적으로 주장하던 발전, 평화, 사회정의, 생활수준의 평준화 달성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권의 특권층만이 서방측이란 계급의 적이 만든 각종 생산품을 구입하는 별개의 소비시장(Wandlitz에 있던 특권층을 위한 상점, Intershop, 특정상품 판매소)을 이용했으며, 근로자라는 “지도적” 계급은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한 저질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SED 정권이 법조계와 국가보위부를 동원하여 행하던 감독과 억압을 통해 Ancien Regime에 의한 정통성 손실은 억지로 보상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최소한 주민의 수동적 충성심이 강제로 확보되었다. 따라서 동독에서는 억압으로 인해 상충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체제 반대자에 대해 지속적인 억압조치가 불가피해졌으며, 또한 예방조치로써 국외추방이 늘어갔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에 대한 도덕적 정통성이 계속 약화되어 갔다.

비록 이타주의적 윤리라는 고귀한 도덕이 시장사회적인 공리주의 유혹으로부터 잘 버텨왔다는 사실 역시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도덕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정권이 민주화 과정에서 봉기하는 시민들에게 대처하여 제시할만한 “협상의 재료” 로써 정통성의 근원은 거의 소진되어 있었다. 정권붕괴의 신속성, 그리고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다음 주민 대다수가 사회주의적 사상일체를 전적으로 거부했던 점을 감안할때 사회주의적 이념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유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민족국가적 정통성 >

민족국가적 정통성에는 그 초기부터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다. 동독의 국가 지도층은 민족국가(Volksnation), 문화국가(Kulturnation), 국가 시민국가(Staatsbuergernation)과 같은 고전적인 국가개념에 의해서는 납득할만한 국가설립의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Lepsius 1982 : 21/2 참조). 이와 같은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50년대에 한민족내에 제2의 국가라는 독트린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수행 추진을 통해 “ 2개의 독일이라는 국가간의 정치관계가 동독체제 유지에 위협적으로 강화 발전되자” (Meuschel 1988 : 79면) SED 정권은 서독과 구분지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울브리히트는 집권 말기에 동독을 사회주의적 독일 민족국가(Sozialistischer deutscher Nationalstaat)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SED 지도층은 민족국가, 문화국가, 국가시민국가라는 기존의 국가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 계급상 평등이라는 판단기준” 을 통해 계급적 관점에서 집단적인 국가관이 형성되도록 시도하였다. 사회주의적 정통성이 민족국가, 문화국가라는 정통성을 훨씬 능가하는 “ 계급국가(Klassennation)” 가 곧 동독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위한 판단기준일 것임은 물론, 동독의 내적질서 유지의 판단기준으로서 구속력이 있도록 하였다 (Lepsius 1982 : 22). 비록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이 “ 민족자체 (Nation an sich)” 가 곧 “ 민족을 위하는 것(Nation fuer sich)” 이라고 공산화 과정을 정열적으로 옹호하였지만 이와 같은 SED의 국가관은 상기한 것과 같은 취약한 정통성을 인식하고 있는 동독주민들로부터 충분한 행동 지침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외교정책적 압력

자유민주적 사고방식으로 볼때 그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할 원천을 전연 갖고 있지 않은 권위주의 정권은 일단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갖고 있던 우방국가가 가시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게될 경우, 전술한 취약한 정통성 때문에 특히 불안정해 진다. 즉 헝가리, 폴란드, 소련의 개혁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적인 동질적 발전이라는 환상은 일단 끝나 버렸다. 이와 같은 특이한 발전 상태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라는 원칙의 포기과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궁극적 포기과 더불어 가능하게 되었다(Hacker 1990a : 35/6면 참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개입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동구권과 동독의 개혁과 정권교체가 가능할 수 있었다. 동독주민들은 늦어도 1989년 10월 6일 고르바초프가 동독건국 4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행한 이후부터 38만명의 동독주민 소련군이 만일 동독주민들이 정권에 반대하고 봉기할 경우 개입하지 않을 것을 SED 지도층이 감안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Hacker 1990b : 8면 참조).

이와 동시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폴란드의 자유노조의 성공, 헝가리의 시장경제적 개혁과 같은것은 동독주민들에게는 마치 일종의 전염병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주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SED 지도층은 여전히 개혁을 추진할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 호네커의 말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공적 노선을 견지할 것임” - 잠재적인 정통성 부족 상태는 급성적으로 악화되었다. 동독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바로 지도층의 정치적응의 위기라는 고전적 사례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곧 권위주의 정권위기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Schmitter 등이 계산했던 사례이기도 하다.

Ⅲ. 정통성 상실과 대중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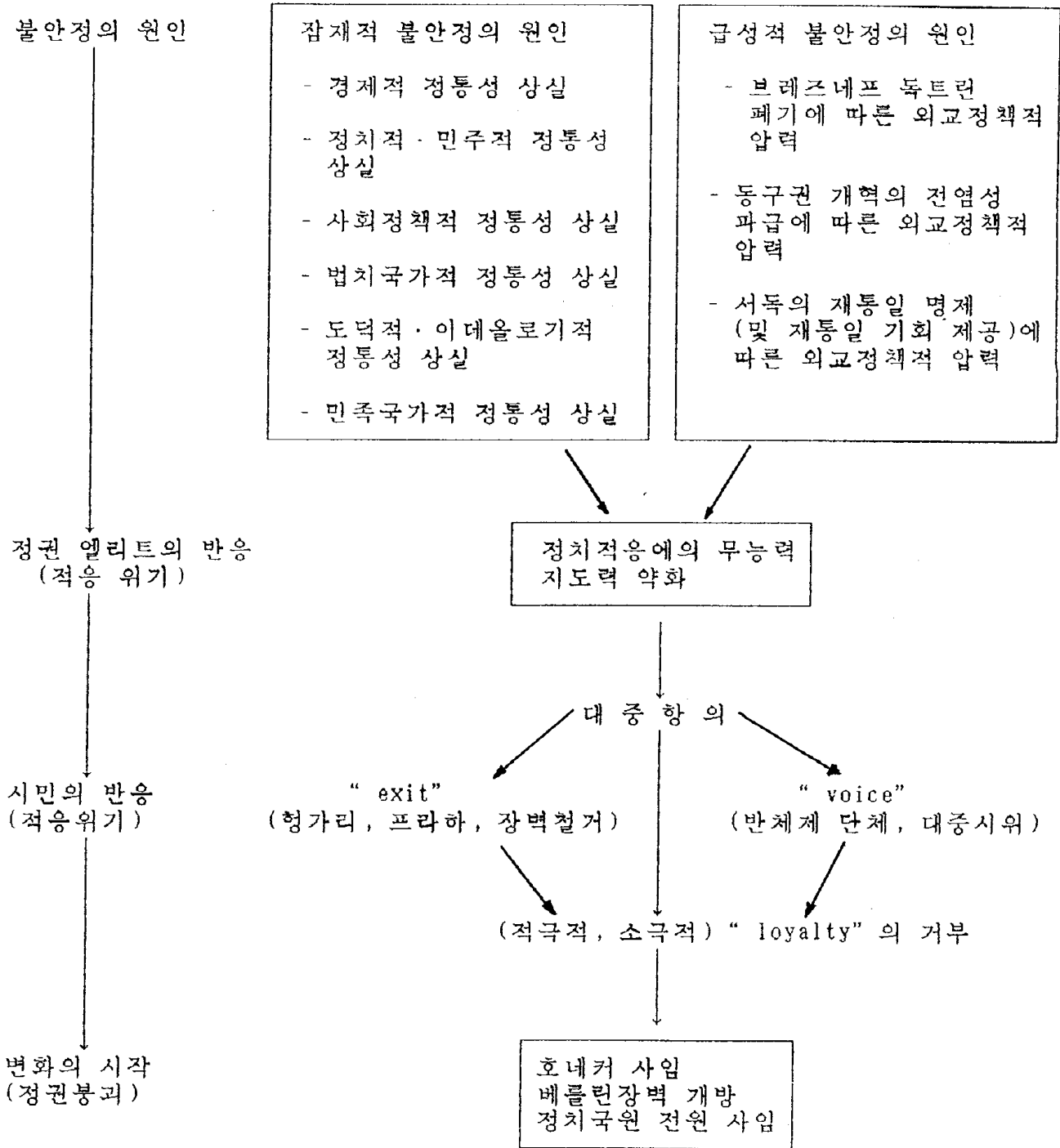
-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의 결핍과 그 부식상태로 인하여 정권이 자동적으로 붕괴되어버린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독이 40년간이나 존속할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정통성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으로서 특히나 베를린장벽이 구축된 다음, 건국초기의 반파쇼주의라는 전통과 신화가 퇴색되어버린 다음부터 더욱 심각했다. 체제의 정통성 결핍, 이주민 사태 논리적 해명 그리고 모순성을 모두 종합하여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체제의 정통성 위기는 집단행동에 대한 근본적 동기와 함께 설명해 볼 수는 있지만 집단행동 자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체제이론적 설명을 행동주체적 행동논리와 함께 상황에 적합하게 결합시킨 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정치체제의 존속능력이나 존속위협에 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적극적 충성심이나 소극적 충성심을 철회하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예상 가능하며, 적극 선호하는 신뢰할만한 다른 대안(Alternativ)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Przeworski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What matters for the stability of any regime is not the legitimacy of this particular system of domination but the precedence or absence of preferable alternatives" (Przeworski 1986 : 52면)
- o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대안의 선택 가능성은 1989년 가을에 접어들자 활짝 열리게 되었다. 동년 9월 헝가리가 동독과 함께 보조를 함께 하던 "국경보호 공동체"를 폐기하자 1961년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탈출가능성이 부여 되었으며, 시민들은 이 기회를 대대적으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호네커를 중심으로하는 지도층이 갖고 있던 개혁의지 부재상태로 인하여 증가해버린 동독주민들의 불만과 서독측에 의해 은연중에 제시된 재통일이라는 명제로 인하여 일기 시작한 통일열기는 젊은 동독 시민들의 대대적인 탈출을 야기시켰다. 호네커의 질병, 그리고 그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자 일어난 통치위기로 점철된 SED의 지도부들은 헝가리, 바르샤바, 프라하, 베를린장벽 철거와 같은 대규모 이주상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드러냈다.

0 대규모 “이주(Exit)” 상태에 대한 정권의 대처불능 상태는 동독내 내제적 체제 반대자로 하여금 그들의 “발언권(Voice)”이 커지도록 했다(Hirschmann 1970). 이와 동시에 지난 수십년간 정치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던 주민들에 의한 대규모 항의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단적 정치행동에 관하여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신교라는 한 지방아래 결집된 소규모 반체제 단체(평화그룹, 환경보호그룹, 교회그룹)가 비록 조직적인 지도자는 없었지만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촉매와 같은 중대한 역할을 했다. 한때 전지전능했던 국가가 대규모 이주사태를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기 시작하는 항의를 폭압적으로 저지할 수도 없게 되었음이 분명해지자 대규모 항의시위가 점점 커져만 갔다. 항의시위의 증가와 더불어 지금까지 있었던 항의 군중의 개인적 행동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대중심리적으로 볼때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시위군중 일개인적 입장에서 볼때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기도 한다. 이로써 집단적 항의활동의 증가현상에 대한 합리적 행동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처벌대상이었던 공화국도주자에 대한 위협성과 대대적인 내적항의가 집단화하기에 이르자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었던 정치체제를 비롯하여 이에 행정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중요한 사회의 하부체제(경제, 법률, 학술 등등)의 불안정성과 급소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하부체제가 서로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 이는 과거 대다수 공산주의 연구가들에게는 안정성의 보장장치로써 보였음 - 위기가 급격화하자 통치체제 전체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났다.

0 그렇지만 혁명의 역사적 주체가 추상적인 체제 이론적 논의의 이면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 보자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가 버리는 이주민들과 동독내에서 항의하는 군중들에 의해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다. “Exit”와 “Voice”가 합해 정권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충성심(loyalty)”을 단숨에 사라지게 해 버렸다. 구 정권을 떠받들고 있던 기둥들이 마치 슬로우 비데오에서 보는 것처럼 무너져 버렸다. 즉 호네커가 강요에 의해 사임하자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으며, 1989년 12월 3일에는 SED 정치국 전원이 퇴진하였고, 그 국가정책 수행상의 공권력이 무력해졌다. 늦어도 이 시점부터 대대적인 변화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표 2 : 동독의 권위주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권위주의 동독정권



IV. 이행 : 정권변화로부터 한 국가의 자체해산

- o “ 권위주의 통치의 정권교체가 예상치 않은 가운데 급속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대중봉기의 가능성과 변화과정에 미치는 그 잔재적 영향은 훨씬 크다” 는 O'Donnel과 Schmitter의 가설(1986 : 54/5)은 동독의 민주화과정의 경우, 단지 1990년 3월 인민의회 선거가 있기까지의 짧은기간 동안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 이후부터 다른 행동주체자들이 야당의 전위대로서, 그리고 동원된 대중으로서 전면으로 부상하였으며, 새로운 규정과 여타의 근원이 사태의 진전과정을 좌우했다.
- o 이와 같은 짧은 기간동안 6대 행동주체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상이한 이익을 대표하고, 상이한 “ 전략” 을 추구하면서,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필자는 이에 관한한 매우 광의의 행동주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 행동주체” (Akteure) 모두가 그 구성상 충분히 동질적인 것도 아니고 명확히 정의되고 수긍할만한 결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동목표를 집단적 전략(예컨대 이주자, 제휴정당)으로서 실현시킬 역량이 있는 지도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행동주체 개념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상호간에 구별되는 집단적 영향력 행사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집단과 개체들이 사태 진전과정에 - 사후적으로 관측해 볼때 - 보였던 행동과 같은 것들이다.
- o 6대 행동주체는 다음과 같다.
 - 신임을 잃지 않았던 불과 몇명정도의 구정권의 엘리트 : 모드로 정부와 그레고 기지를 중심으로 한 SED의 신지도자
 -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SED의 과거 파트너들과 거리감을 유지했던 구 제휴정당
 - 원탁회의 초기에 협력했던 반체제(신광장, 연합좌파, 민주주의 당장), 녹색당, 민주돌진당, 동독사민당
 - 항의. 군중(데모대)

- 동독탈출 군중(이주민)
- 서독 : 정부와 제정당

항의군중과 이주민, 그리고 사회정책적으로 볼때 이주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고 재통일 명제와 함께 재통일 기회제공을 했던 연방정부와 같은 3가지 행동주체는 현실적으로 문제성과 시간과 같은 촉박감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와 같은 촉박감과 함께 행동주체는 동독정부, 제휴정당, 야당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 단기간에 걸쳐 조건부적 협력이 일어났던 바, 이로부터 "타협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때에 모드로 정부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을 각계의 참여하에 다원적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로부터 차용하고자 하였는데 원탁회의는 그 대가로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확보했다. SED가 계속 참여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헛된 시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SED의 잠정적 파트너들에게는 단지 선거시점까지만 협력상태가 가능하고, 그후 (후일 PDS)는 일단 장외로 사라지게 될 것임에 분명해졌다.

도표 3 : "원탁회의" 참여단체

<신설정당 및 기구>

- 이니셔티브 "연합좌파"
- SDP (90.1.14 이후 SPD)
- 시민운동단체 "민주주의 당장"
- 시민운동단체 "신광장"
- 녹색당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 농촌여성협회
- "민주돌진" 당

<기성정당 및 기구>

- 사회주의 독일통일당(즉 동독공산당)
- SED (89.12.16 이후 SED/PDS
90.2.4 이후 PDS)
- 자민당 LDPD (90.2.1 LDP)
- 독일민족민주당 (NDPD)
- 독일민주농민당 (DBD)
- 농민상호협력회
- 농민연합회
- 자유독일노총

"원탁회의" 본회의에는 Sorben 소수민족 대표 1명도 참여.

옵서버 참여 : 독일민주여성연맹, 소비조합 및 환경보호당 연합회

0 동독정부와 원탁회의의 정치적 결정사항은 단지 한시적으로만 중요한 것으로서 판명되었다. 원탁회의와 모드로 정부에 의한 “ 이중통치 ” 상태는 정권이 남겨 놓은 잔재에 대한 유산관리 및 구약의 부분적 제거에 지나지 않아 동 · 서독 통합에 대한 초안준비, 헌법초안 결의, 인민의회 선거준비 같은 사항을 다루었다. 사태가 점점 조기선거 실시 쪽으로 치달자 정부와 원탁회의는 영향력과 권력을 점점 잃게 되었다. “ 우리는 국민이다 ” 라는 민주적 참여에의 요구가 “ 우리는 한 국민이다 ” 라는 재통일 여망으로 중첩되자 이때부터 반체제 운동단체 및 군소정당에 의한 영향력은 사라졌는데, 그 정도는 서독의 행동주체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태진전을 유발했던 바와 동일한 것이었다. 동독주민 대다수가 결합하여 요구함으로써 단지 조건부적으로 민주주의 이론상 정통성이 있을 뿐이었던 정치 정당들(예외 : 녹색당)과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원탁회의와 모드로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 제휴정당과 야당단체간의 협조는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동독 기민당과 자민당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상태는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배신자 같은 방향전환을 하여 체제야당으로 전변하는 것이 절대적인 전략상의 이점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동 · 서독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정당간 연립상태가 구성되었는데 이로써 정치부대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0 개별 행동주체의 권력배분상태는 특히 정치근원의 전이를 통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정당재산을 동원하고 당 기구를 확대적용한다 할지라도 SED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SED는 축소일로의 현존사회주의에 대한 주책임자로서 동독주민들의 지지가 이토록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연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부정부패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서독 미디어와 동 · 서독 정치세력의 단호한 자세가 이미 인민의회 선거 실시 이전에 권력상실을 가속화 시켰기 때문이다. 초기까지만 해도 구 제휴정당이 비록 구정권의 적극적 지원을 대대적인 권력상실로 대처하던지 심지어 그 패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듯이 보였다. 구 제휴정당들은 그들의 과거를 정치적으로 청산하지도 않고 단지 극소수의 정상급만 교체한후, 민주정당임을 표방하면서

예상치 않은 기민당의 압승이 일어나도록 하였는데, 이는 1990년 3월 최초의 자유스런 의회선거에서 잘 반영된 바와 같다. 제휴정당의 숙명은 3월 선거 실시 2개월 전에 서독정당에 의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다시한번 좌우되었다. 서독정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선거실시 전에 민주적 정통성을 획득, 수용한 후 대대적인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던 동독의 구 정권 야당만이 “생존” 할 수 있었다. 동독자민당(LDPD, 90.2.1부터 LDP. 그후 FDP가 됨)과 특히 동독기민당은(인민의회 선거 이전에) 서독의 자매정당과 서독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더불어 동독내 지배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독일민족민주당(NDPD)과 독일민주농민당(DBD)은 서독의 정당제도 내에서 이렇다할 자매정당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의미를 상실했다.

- o SDP(후일 SPD)와 독일사회동맹(DSU) 이라는 2개의 신당 구성은 정권의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타협된 결과는 아니다. 이들 두 정당이 각각 서독의 자매정당인 사민당(SPD)과 기사당(CSU)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극우보수정당인 DSU가 동독의 민주화과정 초기에 별의미 없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음에 비해 SDP/SPD는 원탁회의에서 막강한 정치세력 중의 일익을 수행했다. SDP/SPD가 동독 CDU에 비교하여 갖고 있던 전략적 단점은 서독의 자매정당인 SPD가 야당이였다는 점이었는데 서독 SPD는 동·서독간의 급속한 국가통일에 반대하였다. 동·서독 사민당은 서독 마르크와 통일을 열망하는 동독주민들의 욕구를 외면하여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 o SED 정권에 반기를 들고 야당으로 구성된후 평화혁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커다란 기여를 했던 여러단체와 정당들의 급속한 세력약화는 비록 사전에 계획된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신광장”(Neues Forum), “민주주의 당장”(Demokratie Jetzt),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등이 통합하여 구성된 90 동맹(Buendnis 90)은 최초의 대규모 대중시위가 동원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훗날 원탁회의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90 동맹은 사양일로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더러운 거래를 하지 않아

신뢰를 확보하면서 SED 정권에 반기를 든 용기있는 반체제단체로서 동독사회 내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90 동맹의 권력정치적 단점이란 서독내에 막강한 파트너를 모색하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그 전략적 “오류”는 시장경제의 극복이란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초월하는 “제3의 길”을 계속 밟았던 “고집”이었다. 동독이라는 국가의 독자성을 그나마 장기간에 걸친 과도기간 만이라도 유지시켜 보려던 90 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동독주민 대다수로부터 외면당했다. 대중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거리에서 “통일된 조국 독일”(Deutschland einig Vaterland)을 구가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평화혁명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원문에서는 “평화혁명이 그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표현되고 있음). 90 동맹은 최초의 자유선거로부터 출범하여 자유선거 실시가 가능하도록 그 어느단체보다 훨씬 기여했지만 선거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다.

- 0 동독에서 최초 민주선거는 민주체제로의 변화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민주선거와 더불어 민주적 과도기는 점점더 민주적 안정상태로 이행되었다. 최초의 민주선거는 출속적으로 형성된 민주주의 행동규범이 안정된 구조로 정착되어 갈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성한다. 최초의 자유선거는 이와 같은 선도적인 기능(Initiativfunktion) 때문에 “founding elections”라고 표현된다(O'Donnell/Schmitter 1986 : 57 ff 참조).
- 그렇지만 동독의 3월 선거는 그 결과로 볼때 “founding and dissolving elections”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다. “founding elections”로서의 3월 선거는 민주주의 제기구와 제절차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했으며, “dissolving elections”로서의 3월 선거는 동독이라는 국가자체가 해산되도록 하는 출발점이었다. 이로써 마침내 서독정부는 동독에서 민주적인 “변화”와 민주적 안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양독간 통일과정에서도 주도적인 행동주체가 되었다.

0 이로서 “우리는 국민이다” 라는 슬로건이 “우리는 한 국민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상징화되면서 시작된 변화로 접철된 (동독의 변화) 라는 한 과정은 잠정적이거나 결론에 이르렀다. 단 몇주일만에 동독주민의 다수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선호하는 쪽으로 관심의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사회주의에 의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민주혁명으로 생성된 문명사회는 아무런 결실을 못맺는 것처럼 보였다. “인민민주주의” 라는 획일화로부터 결별하는 “civil society” 는 그러나 Rudolf Bahro가 주장하듯 억압적 현존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 놓은 종속적인 산물들을 (Bahro 1977)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이에 관해 Dubiel/Frankenberg/Roedel은 “이제 막 공백이 되어버린 권력이라는 자리를 메꾸어준 “민족” 이라는 동질적 상징화를 통해 형성된 문명사회는 그 일부 구성원 때문에 새로운 심한 마찰이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Frankfurter Rundschau 1990.1.2 11면)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심한 마찰이 비록 민족국가적 동기보다 경제적 동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치더라도(Habermas : “독일 마르크 민족주의” : D-Mark-Nationalismus) 사회 자체의 문제점을 대변하는 대다수는 다른 국가라는 권력의 수중, 즉 서독의 수중에 있게됨은 확실하다. 비록 서독이라는 국가의 권력이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서독의 동독지역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은 단지 가속화된 정권교체를 온통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동독주민의 대다수는 자기 책임하에 자기체제의 사회변혁을 추구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 하나의 사회모델을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회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이고 자유스럽게 문제점이 즉각 해결된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장래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全獨 總選에 관한 參考資料

(’90. 12)

第 12 代 獨逸聯邦議會 選舉에 관한 原則 및 參考資料 (90.12.2.)

0 90.12.2 統獨후 최초의 全獨總選을 위한 選舉法 改定에 따른 新規定

- 87.1.25 제 11 대 선거로 형성된 선거법의 두번째 실시임과 동시에 통독이후 동법의 최초 실시임.
- 통독이전까지 구서독에는 248 개 選舉區(Wahlkreis)가 있었음.
- 90.6.11 서베를린 의원 22 명의 의원자격 완전부여에 따라 서베를린이 8 개 선거구로 분리되어 256 개 선거구로 증가 (248+8=)
- 90.10.3 통독으로 구동독이 72 개 선거구로 분리됨에 따라 총 328 개 선거구가 됨 (256+72=)
(72 개 선거구는 구서독의 매선거구 평균주민수가 225390 명임을 고려, +- 25 %의 편차를 감안하였으며 이로써 매 선거구 평균주민수는 225529 명이 됨)

0 구동·서독 지역별 議會進出遮斷條項의 적용 (5 % Klausel)

- 90.9.29 연방헌법재판소는 5 % 제한조항의 전독에 대한 적용이 기본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구동독의 사정을 고려할때 형평상 불합리함을 감안하여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고 각정당간의 논란이 분분하자
- 90.10.8 연방의회는 5 % 제한조항을 구동서독지역에 분리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구 SED 정권에 반기를 들어 독일혁명을 통해 독일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바있는 구동독지역의 군소정당에게도 연방의회 진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연합공천도 할수 있게 됨.
- 따라서 일 정당의 연방의회 진출은 구동서독지역에서 유권자의 유효투표중 5 % 이상의 지지를 받던가 선거구 투표를 통해 3 명의 의원을 선출시키면 되고 구동독지역에게는 연합공천으로 추가적인 의회진출가능성이 부여됨.
- 5 % 제한조항은 독일연방건국시 제헌의회부터 도입되어 57 에 단계적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로써 수많은 군소정당에게는 의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정당의 수명을 단축시켜 선거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볼때 헌법상 논란의 여지가 많음.
- 獨逸聯邦憲法裁判所는 "비례대표선거방식은 군소정당이나 유권자단체의 등장에 유리하다. 이로써 피선될 국민의 대표의 행동의 자유가 진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거란 단순히 유권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능이 가능한 기관도 생성해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BVerfGE 51, 222/236f) 라고 정당분열 방지의 근거하에 법률해석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0 選舉參與 政黨 및 團體

- 통독이전까지 州公薦名單(Landeslistenvorschläge)을 설정한 정당만이 선거에 참

여할 수 있었으며, 피선거권이 있는 일개인이나 정당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타 정치단체는 選舉區公薦(Kreiswahlvorschläge)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선거구를 통한 직선만이 가능했음.

- 90.10.8 동·서독간 전독총선 준비 및 시행에 관한 협약 및 선거법 개정으로 90.3.18 구동독 인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90.2.20 제정)이 의미하는 정치단체도 독일연방 정당법 제 2 조 제 1 항이 의미하는 정당으로 동등자격을 획득하게 됨.
- 이로써 정당이 아니면서 구동독의 정치변천에 기여한 시민운동단체가 배려됨으로써 구동독의 사정이 고려됨.
- 전독총선에는 총 40 개 정당 및 정치단체 (그중 21 개는 연방의회, 주의회, 구동독 인민의회에 진출한바 있어 연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적으로 인정되었으며 19 개는 새로 인정됨)가 후보자를 세우고 있으며 구동독에는 3 개 연합공천이 있음.

0 구동독 제정당의 聯合公薦(Listenvereinigungen)

- 통독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공천은 선거법상 정당공천과 동일한 의미가 있음.
- 90.10.3 이전 구동독에 소재지를 둔 정당 및 정치단체가 공동으로 선거공천을 제출하면 되며 각 정당은 한주에만 연합공천을 할수 있으며 한주에서 독자적인 명단 또는 참여정당과 기타 정치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선거구공천을 할수 없음.
- 연합공천은 최소한 참여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절반이 인민의회나 주의회에 의원을 피선시켰을 경우 선거법 제 20 조 제 2 항 및 제 27 조 제 1 항에 준한 추천인 명단제출의 의무로부터 면제됨.

0 期間短縮 및 공식적 前提條件의 變更

- 통독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전독총선에 구동독의 정당과 정치단체들에게 독자적인 선거공천에 의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선거법상에 명기된 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하였음.
- 개정이전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선거구공천이나 주공천명단으로 최종 연방의회나 일개 주의회 선거시 자체 선거공천을 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5 명의 의원을 선출시켰거나 선거구내에서 200 명 또는 최종 연방의회선거시 주내 유권자의 1/1000 % (최대 2000 명)로부터 직접 지지를 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됨.
- 이번 전독총선에는 연방의회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구동독의 인민의회 및 주의회에 계속적으로 의원을 선출시켰으면 족하며 이로써 구 선거법이 열거한 지지자 서명은 면제되고 단지 1 명의 의원만 선출시켰으면 충분함.

0 87 聯邦議會선거시부터 적용된 선거법상의 개정사항

- 외국체류 독일인의 선거권 부여

0 Niemeyer 식 議席 配分方法 (85.3.8 연방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방법)

- 마아부역 대학의 니마이어 교수가 개발한 정당별 의석총수와 각 주공천명단에서의 배분방법.
- 우선 각정당의 주공천명단에 투표된 지지표를 합산. 단
 - 1) 제 1 선거구로부터 제 256 선거구(구서독 및 서베를린), 제 257 선거구로부터 제 328 선거구(구동독 및 동베를린)에서 유효투표중 최소 5%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거나
 - 2) 최소 3 개 선거구에서 직선의원을 선출시킨 정당이여야 함.
- 656 명의 의원은 각정당이 획득한 제 2 투표권의 지지자수를 제 2 투표권 유권자 총수로 곱한 다음 배분권이 생긴 정당총수로 나눔.
- 이 때 각정당은 정수에 도달하는 수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음. 아직 남아있는 배분 가능 의석수는 계산상의 최대 잔여치(소수점 이하)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치가 동수일 때에는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결정함.
- 83.3 에 실시된 제 10 대 연방의회 선거시까지 적용되던 d'Hondt 의 최고치 배분 방법보다 Niemeyer 방법은 의석수 배분에 있어 유효투표율의 정확한 배분이 달성될 수 있으며 d'Hondt 방법은 유효투표수의 비율에 중점을 두어 대규모정당에게 유리하며 일개정당의 상대적 다수획득으로도 의원수의 절대다수가 가능했었던 점에 비할때 Niemeyer 방법은 군소정당에게 던져진 투표가 훨씬 유리하게 계산되어 공정성이 있음.

0 人物中心 比例代表制 (Das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ssystem)

- 유권자가 행사하는 제 1 투표권과 제 2 투표권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아 유권자의 1/3 이상이 이 제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거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4%는 제 1 투표권으로 일개정당의 의석배분이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잘못 알고 있음이 조사됨.)

0 投票方法

- 선거일시: 1990.12.2 (일요일) 08시부터 18시까지
- 유권자는 제 1 투표권으로 투표용지의 좌측에 있는 선거구 후보자중 자신이 지지하는 선거구 한 직선후보를 투표하며 이로써 후보자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제 2 투표권으로 우측에 있는 5 명의 대표출마자가 기재되어있는 주공천명단에 자신이 지지하는 한 정당을 투표하는데 제 1 투표권과 제 2 투표권이 꼭 동일정당일 필요는 없음.
- 투표중 및 18 시 이후, 개표나 집계에 방해가 되지 않는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함. 투표장의 질서는 투표위원장이 책임짐.
- 투표자는 투표장 입장과 함께 투표용지와 봉투를 교부받는데 투표용지배부자는 선거통보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투표용지의 기표와 봉함은 기표실내에서만 행한다음 투표위원장에게 선거통보서를 제출하는데 신분증명서나 여행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선거기록계원이 선거인명부에서 유권자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면 투표위원장은 투표함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투표용지나 봉투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경우 대체될 수 있음.
- 각 유권자는 제 1 투표권과 제 2 투표권의 두가지 투표권을 갖고 있으나 그중 한가지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이로써 그의 선거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선거권의 절반밖에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됨.

* 統計的 實例로 본 舊西獨의 選舉 照明

0 有權者 및 投票率

- 87 총선: 투표구 약 60000 개소 / 유권자 4533 만명 / 투표율 84,3 %
- 83 총선: 유권자 4409 만명 / 투표율 89,1 %
- 49 총선: 투표율 78,5 % (최저)

0 第 1 投票權

- 제 1 투표권의 최대득표자가 선거구 의원(직선의원)으로 피선됨.
- (표 1) 정당별 직선의원 달성통계

연도	直選區數	SPD	CDU	CSU	FDP	Grüne	기타	참고
49(제 1 대)	242	96	91	24	12	-	19	制憲議會
53(제 2 대)	242	45	130	42	14	-	11	아데나우어총리 재임시
57(제 3 대)	247	46	147	47	1	-	6	"
61(제 4 대)	247	91	114	42	-	-	-	"
65(제 5 대)	248	94	118	36	-	-	-	"
69(제 6 대)	248	127	87	34	-	-	-	大聯政 시작
72(제 7 대)	248	152	65	31	-	-	-	슈미트총리 취임후
76(제 8 대)	248	114	94	40	-	-	-	
80(제 9 대)	248	127	81	40	-	-	-	
83(제 10대)	248	68	136	44	-	-	-	콜총리 취임후
87(제 11대)	248	79	124	45	-	-	-	
90(제 12대)	328							제 1 차 全獨總選
	구서독	248						
	구동독	72						
	(구동벨린 5)							
	구서벨린	8						

- 87 총선: SPD 의 79 직선의원중 30 석이 절대다수 획득
최고득표 Essen II 63.9 %

최저득표 Hamburg-Eimsbüttel 41,5 %
 Baden-Württemberg 에서는 단 1 석만 승리 / Bayern 에서는 전무
 CDU 는 직선거중 절반인 124 석 승리 / 그중 51 직선거에서 절대다수
 최고득표 Cloppenburg-Vechta 70,0 %
 최저득표 Stuttgart II 40,9 %
 CSU 는 45 직선의원중 36 석이 절대다수 획득
 20 개 선거구에서는 60 % 이상 성공

- 61 년 총선 이래 FDP 는 직선의원을 선출치 못하고 있음.
- 87 제 11 대 총선부터 출마한 Grüne 는 아직까지 직선의원을 선출치 못함.
- 일부 선거구에서는 CDU, SPD, CSU 의 득표율이 매우 안정되어 있어 경미한 득표차로 당선될 경우가 있음:
 - . 87 총선시 7 개 선거구에서 SPD 는 CDU 나 CSU 보다 득표율 2 % 차로 승리함.
 - . 87 총선시 12 개 선거구에서 CDU 와 CSU 는 SPD 보다 2 % 미만의 차로 승리함.

0 第 2 投票權과 議席配分

- 유권자는 제 1 투표권으로 직선의원을 선출하나 의원총수와 의회내 한 정당의 규모는 제 2 투표권으로 결정됨.
- 87, 83 년도의 각 정당별 제 2 투표권 득표율은 다음과 같음.

정당	87 득표수	득표율	83 득표수	득표율
SPD	14 025 763	37.0 %	14 856 807	38.2 %
CDU	13 045 745	34.5 %	14 857 680	38.2 %
CSU	3 715 827	9.8 %	4 140 865	10.6 %
FDP	3 440 911	9.1 %	2 706 942	7.0 %
Grüne	3 126 256	8.3 %	2 167 431	5.6 %
기타	512 817	1.4 %	201 962	0.5 %

0 第 1 投票權과 第 2 投票權의 結合 (投票權 分割)

- 일개 정당의 한 지지자가 제 2 투표권으로 자신의 지지정당을 투표함과 동시에 제 1 투표권으로 선거구의 타정당 직선후보에게 투표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연방의회내 자신의 지지정당 의석배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제 2 투표권으로 A 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인물과 당선기회가 큰 B 당의 직선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A 당의 직선의원수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A 당의 전체 의원수에는 영향이 없는데 그 이유는 A 당은 주공천명단에 지지율이 더 많기 때문에 의석수는 늘수도 있음.
- 그러나 이와같은 투표권 분할을 시도하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음.
 - . 87 총선시 제 2 투표권의 유효투표중 85.7 % 가 제 1 투표권과 제 2 투표권을 동일정당에게 투표하였으며 다만 13.7 % 만이 제 1 투표권으로 선거구의 타정당 입후보에게 표를 던짐.
 - . 연도별 투표권 분할: 61(4.3 %), 65(6.5 %), 69(7.8 %), 72(8.8 %), 76(6.0 %)

80(10.1%), 83(10.9%), 87(13.7%)

- 제 1 투표권과 제 2 투표권의 강력한 결합은 선거구에서 직선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게만 그 여건이 주어져 있음.
 - . CDU(95.4%), CSU(94.9%), SPD(92.7%)
 - . 83 총선과 87 총선에 대비한 투표권 분할로 인한 감소율
CDU: 0.5%, CSU: 1.4%, SPD: 2.5%,
- 87 총선시 FDP 가 가장 투표권 분할에 직면했음: 즉 FDP 를 지지한 제 2 투표권의 행사자중 38.7% (83 총선시는 29.1%) 만이 그들의 제 1 투표권을 선거구 직선후보자에게 던지고 43% 이상이 CDU 나 CSU 의 직선후보에게 투표했으며 13.1% 는 SPD 출신 직선후보에게 표를 던짐.

0 政黨別·州別 議席配分

- 일개 정당의 연방의회내 의석수는 제 2 투표권의 획득수에 따라 결정되며 일개 정당의 주공천명단은 연방선거법 제 7 조에 근거함.
- 87 총선시까지 다음의 두개조건 (의회진출차단조항)을 만족시켜야만 일개 정당의 연방의회진출이 가능했음.
 - 1) 선거구 전체에 걸쳐 유효 제 2 투표권의 최소 5% 를 획득했거나
 - 2) 최소한 3 명의 직선의원을 선출시켰을것.
 - . 따라서 87 총선결과 CDU, CSU, SPD 는 조건 1) 2) 를 모두,
FDP 와 Grüne 는 조건 1) 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연방의회 진출이 가능했음.
- 87 총선결과 주공천명단에 따른 각 정당별 의석배분 (서벨린 제외)

정당	총의석수	제2투표권 획득수	총 제2투표권수	整数	剩餘	잉여에 의한 의석수	의석수
SPD		14 025 763		186.236			186
CDU		13 045 745		173.223			173
CSU	496 x	3 715 827	37 354 502 =	49.339			49
FDP		3 440 911		45.689		+ 1	46
Grüne		3 126 256		41.511		+ 1	42
		<u>37 354 502</u>		<u>494</u>		<u>+ 2</u>	<u>496</u>

- 각정당이 일개 주에서 획득한 선거구의석(직선의원)을 주할당 의석수에서 제한다음 남은 의석은 직선으로 피선된 복수후보를 제외하고 주공천명단순으로 채움.
- 이와같은 방법으로 일개주의 할당의석수보다 더많은 직선의원이 당선될 경우 모두 의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의원수는 예정수보다 증가하게 됨(초과당선자).
 - . 87 총선시 CDU 는 Baden-Württemberg 주에서 주할당 의석수는 35 석이었으나 36 명의 직선의원이 당선되어 계산상의 당선자 173 명 + 1 명의 초과당선자와 더불어 총 174 명이 되었으며 연방의회 의석수는 496 명에서 497 명으로 증가됨.
 - . 서 베를린 출신 의원 22 명을 합치면 연방의회는 재적의원 총 519 명임.

※ 90 年 獨逸 選舉 參政 政黨 및 政治 團體 目錄

0 독일연방의 16 개 주에 참여하거나 일부 주에 참여하는 정당과 정치단체

		政黨名	(通稱 및 참고사항)
CDU	= Christliche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獨逸 基督教 民主聯盟	(基民黨)
SPD	=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獨逸 社會民主黨	(社民黨)
FDP	= Freie Demokratische Partei	自由 民主黨	(自民黨)
CSU	=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e. V.	登錄團體 바이언 基督教 社會聯盟	(基社黨)
Grüne	= Die Grünen	綠色主義者들	(綠色黨)
PDS	=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民主 社會主義黨	(民社黨)
DSU	= Deutsche Soziale Union	獨逸 社會聯盟	(기사당 구등등 자대정당)
Bündnis 90	= B 90 Grüne-Bürgerinnenbewegungen mit den beteiligten Parteien, Demokratie Jetzt (DJ),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IFM), Neues Forum (NF), Unabhängiger Frauenverband (UFV) und die Grünen (Grüne)	90 同盟	(민주주의 당장, 평화인권 이니셔티브, 신광장, 여성해방회, 녹색주의자들이 참여)
BP	= Bayernpartei	바이언 黨	
BSA	= Bund Sozialistischer Arbeiter, deutsche Sektion der Vierten Internationale	社會主義 勞動者 同盟	(제 4 인터내셔널의 독일지부)
CM	= Christliche Mitte	基督 中央黨	
DDD	= Bund der Deutschen Demokraten	獨逸 民主 同盟	
DFD	= Demokratischer Frauenbund Deutschlands	獨逸 民主 女性同盟	
DIE GRAUEN	= Initiiert vom Seniorenschutzbund „Graue Panther“ e. V. („SSB-GP“)	老益壯들	(노인보호단체인 "표범같은 노인장"의 이니셔티브)
Die Nelken		카네이션 團	
DVU	= Deutsche Volksunion - Liste D	獨逸 民族 聯盟	
EFP	= Europäische Föderalistische Partei - Europa Partei	유럽 聯邦黨	(유럽당)
EINHEIT jetzt		지금 統一	
FBU	= Freie Bürger Union	自由 市民 聯盟	
FDJ	= Freie Deutsche Jugend	自由 獨逸 青少年團	
FRAUEN	= Frauenpartei	女性들	(여성당)
Junge Linke	= Marxistische Jugendvereinigung	青少年 左派	(막스주의적 청소년 연합)
KPD	=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獨逸 共產黨	
LIGA	= Christliche Liga, Die Partei für das Leben	리가	(기독교 리그, 생을 위한 당)
Mündige Bürger	= Die Mündigen Bürger	成年 市民主義派	
NPD	=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獨逸 民族 民主黨	
ÖDP	= Ökologisch-Demokratische Partei	生態 民主黨	
ÖKO-UNION	= Deutsche Solidarität, Union für Umwelt- und Lebensschutz	외코 聯盟	(독일 솔리대리티, 환경보호 및 생명보호 연맹)
Patrioten	= Patrioten für Deutschland	愛國主義者	(독일을 위한 애국주의자들)
REP	= Die Republikaner	共和派	
SHB	= Sächsische Humanistische Bewegung	작센 人本主義 運動	
SpAD	= Sozialist-Arbeiterpartei Deutschlands, Sektion der Internationalen Kommunistischen Liga (Vierte Internationalisten)	獨逸 스파르타키스트 勞動者黨	(국제공산주의 리그 지부, 제 4 인터내셔널)
SSW	= Südschleswigscher Wählerverband	南部 쉐레스빅 有權者 聯合	
VAA	= Vereinigung der Arbeitskreise für Arbeitnehmerpolitik und Demokratie	勞動政策과 民主主義를 위한 研究팀 聯合	
VfL	= Volkspartei	聯合 左派	
		中央派	(獨逸 中央黨)

게 1992년 말까지 건축방법을 대대적으로 단순화하였다. 1990년 하반기중 이미 착수된 건설조치 및 즉각조치의 계속 추진위해 1억 4,370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금년중 지출액은 4억 2,000 만 마르크에 달할 것이다. 인프라 스트럭처의 정비를 위해 총 160억 마르크라는 거액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에 문제점이 있었다. 구 동독인민군의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은 거의 대부분 공해를 유발하는 유황합유 갈탄으로 운용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예외없이 불량한 상태였으며 경제성이 없으므로 환경보호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연방군은 구 동독인민군 보유 난방시설 1,400 개 중 약 240 개를 인수하였다. 그 중 이미 172 개가 정비계획에 들어 갔다. 1991년 말까지 50개의 새로운 보일러 시설이 운용될 것이며 1993년 말에는 새로운 보일러 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것이다. 난방용 배관과 건물내 시설은 1999 년 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난방시설의 정비에 대한 필요한 금액만 10억 마르크가 소요된다.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몇 가지 현황과 자료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250 개의 부동산 중 이미 53,000 ha 에 달하는 대지 1,400 개가 매각할 수 있도록 되었다. 독일연방군 재산청은 현재 552 개의 부동산을 일반 부동산으로 인수한 후 기타 공공행정기구나 기업체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단체가 원하는 부동산 구입은 부분적으로는 잠정 사용계약을 통하는 등 수 많은 사례에 걸친 급부 역시 매우 다양하다.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구 동독인민군의 모든 위생시설을 우선 잠정적으로 인수한 후 계속 운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17개의 중앙위생시설 (예: 군인병원, 요양원, 종합병원)이 있다. 현재 그 중 대부분은 해체되었으며 부동산은 독일연방군 재산청으로 이관되었다. 도처에 걸쳐 지자체와 같은 민간기구에 의한 부동산인수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약 2,100 만 마르크에 달하는 위생장비가 인계되었다.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있는 군인병원은 독일연방군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으며 고타, 위커룬데, 노이스타트 글레베에 있는 군인병원은 독일연방군 전문의료센터로 계속 운용되고 있다.

1. 서 문

- o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 (이하 편의상 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 (이하 편의상 동독)이 통일된 이래, 장장 40년간이나 지속되던 두개 독일국가의 병존상태가 끝나고 서독이 다시금 통일독일의 주체자로서 국제정치에서는 물론, 처음으로 국제연합(이하 편의상 UN)에서 단독으로 대표하고 있다.

- o 그때까지 UN에서 독일은 - 서독과 동독이라는 이중주체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 국제정치의 주체로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양독국가의 UN에서 특수성은 1973년 9월 18일 동. 서독의 UN 동시가입과 함께 일단 끝나버린 것처럼 보인다. 국제정치의 객체로서의 독일은 이미 UN의 창립 당시부터 매우 불명예스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양독의 UN가입의 의미는 크다. 왜냐하면 Woodrow Wilson 미국대통령의 국제연맹구성의 착상이 독일제국의 헤게모니 쟁취에 반대함과 동시에 제1차 세계대전의 추축국들에게 대항함에 그 배경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시스트에게 대항하던 연합국이 1943년 이래 전세계를 망라하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Franklin D. Roosevelt 미국대통령의 제안으로 "United Nations"를 추진할 것을 강대국들이 전후 목표로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1943년 2월 Jalta 회담에서 Rosevelt, Churchill, Stalin이 UN헌장의 기본원칙에 합의한 후 드디어 1945년 6월 26일 San Francisco에서 개최된 UN 창립총회에서 이 헌장이 수용되었던 것이다.

- o 1945년으로부터 1990년에 이르는 45년간, UN내 독일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UN의 정치적 대상으로서의 독일에 대한 논의
 - (2) 1949 - 73년간 UN 관계에 있어서의 동. 서독이라는 2개의 독일의 병존에 의한 파급효과

(3) 중대한 정책분야에 있어서 동.서독 UN정책의 비교 분석

(4) UN내 동.서독 양국가 참여활동에 관한 종합적 평가. 이로부터 지금까지 서독에 의해 주도되던 행동규범의 문제점 내지 미래의 통일독일의 UN정책을 위한 동.서독 정책의 통합가능성에 대한 해답 모색

2. UN내 논의대상으로서의 독일

- 1945년 5월 8일 "제3제국"의 무조건 항복과 연합국에 의한 주권의 인수와 더불어 독일은 우선 국제정치에 있어서 행위불능상태에 빠졌다. 또한 UN헌장의 소위 "적국조항" (Feindstaatenklauseln : 제53조,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독일은 격리취급될 것이 확정되었다. "적국조항"은 전승국에게 UN헌장 제107조에 따라 과거의 적대국에 대한 조치시 UN헌장상의 의무수행에 구속될 필요가 없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독일문제, 특히 독일통일이라는 과제가 도대체 UN의 권한에 속한 것인가 라는 쟁점은 곧 이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UN이 창립된 후 수년간에 걸쳐 나치스 독재의 범죄에 대한 단죄가 끊임없이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독일에 대해 이와 관련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후 인도적인 분야에서 기아, 강제노역, 피난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독일에서도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 그러나 UN은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한 영향력만을 행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후에 곧이어 나타난 냉전의 결과 유럽의 질서유지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정책적 고려 때문이었다. 미.소간의 갈등, 곧 "동서간의 분쟁"을 UN내에서가 아니라 UN의 장외에서 해결하려는 강대국의 의도 때문에 동.서 냉전의 주전장이었던 독일은 UN에서 단지 논의의 대상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 독일과 유럽의 분단결과 파생된 문제점으로서서는 두개의 독일이라는 국가의 생성, Berlin문제, Berlin과 독일전체에 관한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의 존속과 같은 것이었다. 독일문제의 일부가 UN의 권능으로 처리되도록 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연계되어 단 두번밖에 없었다.

- (1) 1948/49년 소련의 Berlin 봉쇄
- (2) 1951/52년 전독 자유선거의 준비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찰해 볼때 UN총회에서 독일문제 해결을 둘러싼 시도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2.1 '48 - '49 Berlin 위기

- o '48. 6. 24일 소련점령군은 연합국 공동위원회로부터 탈퇴한 후 서Berlin 왕복 육로 및 수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련은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48. 6. 23일 서방점령국에 의해 실시된 화폐개혁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48년 6월 29일 대Berlin 시의회는 UN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아울러 서방측 3대 점령국은 '48. 9. 29일 3개의 동일한 내용의 통첩을 UN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소련의 봉쇄조치는 UN헌장 제2조에 위배하며 UN헌장 제VII장에 따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상태가 유발된다는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주지시켰다. 소련은 그와 같은 서방 3대국의 행동에 대하여 안보이사회에 제소하여 맞섰는데, 미국의 목표는 Berlin 위기를 국제여론의 광장으로 끌어들이고 소련이 침략세력임을 단죄하려함에 있었다. '48. 10. 4일에 개최된 UN 안보이사회에서 Berlin문제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으로서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직 절차상의 문제에 국한되었다.
- o 소련은 이분제를 UN헌장 제107조에 입각, UN의 관할권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그와 반대로 서방 3대국은 Berlin 봉쇄가 독일국민이나 독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서방 3대국을 향한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48. 10. 4 - 25일까지 안보이사회는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8회에 걸쳐 Berlin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원칙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었다. 봉쇄의 즉각 중지, 독일에 관한 4대 전승국 회담 개최, 대Berlin에 동독마르크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중립국화에 대한 결의안 채택은 '48. 10. 25일 안보이사회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고 말았다.

UN의 권능에 입각한 기타 중재시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Berlin 봉쇄는 '49. 5. 4일 UN의 장외에서 성사된 4대전승국의 합의와 함께 종결되었는 바, UN은 이와 같은 분쟁해결에 있어 단한번의 진정한 회담의 광장조차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2.2 '51 - '52 전독 총선문제

- o '51년 UN은 두번째 독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서독정부는 '51. 9. 27일 헌법 제정을 위한 독일의 국민의회 구성을 전제로 하는 전체독일 자유선거 실시 건의안을 공표하였다. 서독의 하원인 Bundestag 역시 지지했던 이 건의안은 '51. 11. 5일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각각 동일한 내용의 통첩으로 UN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선거의 준비와 시행은 국제적 보호와 감시하에 실시 되도록 하며, "UN 감시하의 중립적인 국제위원회"로 하여금 양독간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느정도 자유선거가 가능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서방측 공세의 배경은 '51. 9. 15일 동독 인민회의의 전독총선실시 제의에 있었는데, 동독은 전독 총선제안과 함께 서독의 친서방 결속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었다.
- o 서방 3대국은 독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서독의 서방결속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UN위원회의 파견과 같은 전술적 대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서방측안은 이의 실현을 진정으로 의도하지 않은, 서방측의 절대적인 동의가 없었으므로 애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 o UN헌장 제107조에 근거한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의 요구는 총회의 의사 일정에 수용된후 Special Political Committee에서 처리될 것이 결정되었다. 이 위원회는 전체독일의 자유선거 및 비밀선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조사하는 임무를 띤 UN 조사위원회가 구성, 파견될 것을 권고하였다. '51. 12. 20일 UN총회에서 동 위원회의 권고는 찬성 45, 반대 6, 기권 8로 가결되었다. 서독측은 '52. 2. 11일 동 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할 것에 동의하였지만 동 위원회의 동독 및

동Berlin 입국은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절되고 말았다. 동독측과
긴요한 합의점 모색에 실패하자 동 위원회는 그 전권을 수행할수 없음을 판단,
'52. 7.31일에 다시 회동하기로 하였다.

- o 결국 UN조사위원회는 문제점 해결에 아무런 기여를 할수 없었다. 독일분단 내지
재통일과 관련된 제문제점은 동.서간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자국의
이해관철을 위해 - 물론 서로 상반됨 - UN을 도구화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UN의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기는
하다. 그중 일례로서 소련측은 '58. 11. 27일 서Berlin을 "국제도시"로 만들자고
건의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UN의 참여하에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64. 12. 1일, 제19차 UN총회의장 Alexander Quaison-Sackey는 독일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UN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 o 독일통일문제는 5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UN총회시 원칙문제 토론때
마다 대두되었던 중요한 테마였다. '61년 Berlin장벽 구축과 더불어 UN대표단의
주의가 환기되면서 독일문제는 UN의 구두논쟁의 쟁점으로서 다시금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이후 독일문제는 UN에서 점점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UN총회시
독일문제의 주장점은 '66년이후, 통독문제로부터 서독의 단독대표권 행사의 문제점
및 동독의 국가적 인정에 관한 요구로 전이되었다.
- o 이상과 같은 UN은 단지 두번에 걸쳐 독일문제의 일부분을 공식적으로 다분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UN을 통한 해결방안은 모색
되지 못하였다. 즉, 독일문제는 동.서관계의 기타문제와 같이 별다른 구별없이
취급됨으로써 UN은 분쟁해결의 기구로서 권능이 실증될 수 없었다. UN이라는
대화의 광장에서 Berlin 위기발생 초기, 위기상태 관리에 효과가 있기는 하였다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보아 UN은 단지 동.서간 갈등의 당사국이 그들의 상반된
입장과 이권을 UN이라는 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효과적인 장으로서
역할밖에 못했다.

3. 서독의 UN내 단독대표권 행사 ('49 - '73)

- o '73년까지 동.서독의 UN정책은 양국간에 상존하던 상호인정에 관한 갈등 (Anerkennungskonflikt)을 반영하고 있다. 서독은 스스로 "제3제국"의 유일한 민족적, 법적승계자임을 표방하였으므로 동.서독이 함께 UN 회원국이 된다는 사실을 동독에 대한 자동적인 국가 인정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련은 안보이사회에서 서독의 단독가입을 거부권을 통해 방해하였다. 그러나 UN산하 특별기구에서는 총회와는 달리 회원국의 다수결에 의해 서독의 단독대표권 행사가 인정되었다. - 동독과 비교할때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음. - 탈식민지화 과정에 있던 많은 신생국들에게 미해결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약속과 함께 UN회원국의 대다수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다. 과거의 적국이었던 서방측으로서도 이제 서독은 동.서 갈등의 와중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주요한 동맹국이었으며, '50년 한국전쟁의 반발이후 UN산하 기구내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 o 서독은 '50년, 건국된지 1년만에 FAO의 회원국이 되었다. '51년에는 ILO와 WHO와 UNESCO에 가입하였다. '52년 서독은 New York의 UN본부 상임 옵저버국이 되었으며 ECE, UNCTAD, UNDP, UNHCR과 같은 UN 기구에도 가입하였다. '55년까지 서독은 모든 UN산하 특별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그 이후 신설된 IFC, IAEO, IMCO, UNIDO에는 자동적으로 회원국이 되었다. 따라서 '50 - '73년까지 서독을 UN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비회원국"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물뿌리는 조루처럼 작지만 굴고루 분배되었던 서독의 제3세계 지원과 비슷하게 이와같은 광범한 UN활동은 주로 독일(통일)정책적 동기에 근거하였던 바, 서독은 UN에 의무적인 기여 이외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특히 동독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저지하고자 진력하였다.

4. UN국외자로서의 동독 ('49 - '73)

- o 동독은 국제적 인정획득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함에 있어 UN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72년까지 단 한번도 공식업서버국 지위조차 획득하지 못했다. 50년대에 소련에 의해 동독의 UN가입 발의가 있었으며, 드디어 '66. 2. 28일 동독은 스스로 UN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은 UN 회원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적 기준인 동독이라는 국가성이 부인됨으로써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독의 UN정책은 동맹국을 통한 동독의 입장 표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성공적이던 서독의 차단정책으로 말미암아 동독은 UN에서 "견해표명 정도의 협력"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동독에 대한 UN 가입저지는 '72년 동.서독간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독이 UNESCO 가입이 가능하게 된 다음 비로서 철폐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국제적 관심은 동.서화해 분위기 속에 현상유지를 기초로하는 독일문제의 정체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UN으로부터의 계속적 차단은 기본조약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끝났을 것이다.

5. 동.서독 UN정책의 조명 ('73 - '90)

- o UN정책의 범주화 및 국제기구의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론적 고찰방법을 도입해 보자.
 - (1) 우선 "안보", "경제", "통치"와 같은 정책분야로 나누어 동.서독 UN정책을 검토해 본다.
 - a) 저술한 3대 정책분야에 있어서 자료상에 나타나 동.서독의 UN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b) UN의 "mainstream" (늘어난 제3세계국가가 주도)과 관련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파트너와 관련하여 동.서독의 부표행태는 어떠했나 ?
 - c) 동.서독 UN정책은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수 있나 ?

(2) 국제기구의 기능을 분류하기 위한 도식으로서 Clive Archer의 국제기구의 기능형태에 관한 유형학 (Archer, Clive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Boston 1983 참조)이 참조되었다. 국제기구는 곧 정치단위의 활동무대라는 착상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정치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다.

- a) 국제기구의 도구화 : 전체적 합의도달이 불가능하면서도 단일국가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것이던, "다수결의"로서 인식되는 결의안이나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적인 것이던, 국제기구내에서는 형식상 내지 사실상의 강대국에 의한 (Vetomacht) 거부권 행사가 고려된다.
- b) 대화의 장 : 국제기구는 문제처리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으로 유도하는 목적이던, 특정사건이나 과정을 - 논쟁적일지라도 - 평가하기 위한 것이던 세계적인 문제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이용된다.
- c) 상호의존 :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상대적 자치권의 증가를 통해 국제관계에 있어서 주체자로서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떠맡아 집단적 결정과 대책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한다.

5.1 동. 서독 UN정책의 전개

o 동. 서독의 UN가입은 4대 전승국의 선언과 함께 가능하게 되었던 바, 4대 전승국은 동. 서독의 UN가입을 통해 동. 서독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Berlin 및 전체로서의 독일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으며, '73년 결의안 ('73. 6.22일 UN안보리 결의안 335 (1973) 및 '73. 9.18일 UN총리 결의안 3050 (XXVIII)의 내용에 일치하는 선언을 하였는 바, 이로써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독일의 특수한 지위는 다시한번 명확하게 되었다.

o 서독은 UN 정회원국이 되면서 UN체제내 광범한 참여에의 길이 열렸다.

- a) 서독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총회의 회원국 및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기구의 모든 정회원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일련의 기구의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군축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정규적으로 선출되었다.
 - b) 서독은 모든 특별기구의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서독은 원칙적으로 임의에 따른 각종 기여를 하며 UN 산하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예 : UNEP, WFP, UNHCR 등에 정규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투표권을 행사했다.
 - c) 서독은 UN체제내에 있는 개도국을 위한 모든 다국적 원조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자본공여국중의 하나이다. 서독은 UN 정규예산 기여국중 4번째 회비지출국이며, 이에 임의기여금을 가산하면 세번째 국가가 된다. 이와 같은 지위는 미국과 일본에 다음가는 서방측의 세번째 경제세력인 서독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 o 그 반대로 동독은 외교적 장애가 제거된 이후에도 UN체제에서 선택적 참여에만 국한하고 있었던 바,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재정적 한계성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체제의 속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었다.
- a) 동독역시 서독처럼 다수의 UN 대표기구에서 정규적으로 제한적 회원국의 위치를 누렸다. 그러나 서독과는 달리 동독은 다른 국가군, 즉 동구권을 위한 교체원칙 (Rotationsprinzip)에 따라 의석을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 b) 동독은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동독지도층의 세계관에 따라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제"를 대변한다는 Bretton-Woods 기구 (IMF와 World Bank) 및 GATT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기여능력으로 참여하는 각종 산하기구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활동만을 벌여왔다. 그래서 동독은 FAO, ICAO, IFAD의 회원국이 되지 않았었다.

C) UN 체제내에 있는 개도국을 위한 주요 다국적 원조그림에 대하여도 동독측은 미미한 기여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5.2 "안보" (군축, 군비통제, UN 평화운동) 정책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 UN의 군축활동 및 군비통제활동은 일차적으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협약이므로 가능한 많은 국가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UN은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의 군사화의 절대제한 및 특수한 핵지대화의 제한 (예 : 남극조약, 우주조약, 라틴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비핵지대화)를 비롯하여 다른 한편으로 특정 무기종류 (예 : 생물학 무기금지 협정, 화학무기회담)의 금지에 있어서 직. 간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서독은 UN 군축외교에의 참여를 통해 무력사용금지정책 (Gewaltverzichtspolitik)을 공고화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서독이 체결한 모든 조약 (예 : 동방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서독이 제안한 모든 국제적 신뢰구축대책과 분쟁예방책 역시 이로부터 연유한다. 서독은 또한 재래식 무기통제 및 전쟁방지문제를 거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원래 UN내에서 논의대상은 아니었다. 대체적으로 서독의 활동은 다만 서독과 NATO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그 한계성이 있었다. 따라서 서독은 NATO의 군사적 독트린과 대치되는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핵무기의 선제사용 금지문제와 관련하여서도 NATO와 공동보조를 취했다.
- "안보"정책분야에 있어서 서독의 UN정책중 최근의 관심분야는 UN의 평화유지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s : PKOs)의 일환인 지역분쟁해결에의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PKOs가 UN헌장속에 합법적 기본원칙으로서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개별사례마다 UN임무의 조건이 모든 당사국의 동의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합헌여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독일연방군의 여하한 부대도 NATO의 작전지역 이외에 투입될 수 없다. (Irak와 Kuwait분쟁과 연계된 국내정치적 토론과정은 UN헌장 제VII장에 의한 독일부대의 참여라 할지라도

헌법을 통한 허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PKOS의 일반적인 재정적 지원 및 수송적 지원을 넘어서는 독일의 최초의 참여가 '89년 Namibia 선거 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된 독일연방국경수비대였다. 그리고 서독은 외교적 차원에서 EC와 공동입장을 표방하면서 기타지역의 분쟁(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근동, 중앙아메리카)에 대하여도 참여하였다.

- 동독은 UN내 그들의 군축활동을 평화공존 원칙의 실현으로서 이해하였다. 그래서 동독은 이와 같은 문제분야에 있어서 특히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와같은 활동으로서 동독은 매년마다 UN총회 제1분과위원회에 핵무기 감축과 핵전쟁 방지("no first use"선언 등)를 겨냥한 다수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군비경쟁 감축선언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핵무기 군비경쟁에 대한 책임을 서방측에게 전가하는데 있었다.
- 특히 "안보"정책분야에 있어서 근년에 동.서독의 활동에는 일련의 일치점이 있었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는 '80/81년의 동.서독의 UN안보이사회 동시 회원국, '89년 Namibia 선거감시단 (UNTAG) 및 '89/'90년 Nicaragua 선거감시단 (ONUVEN)에의 회원국 피선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이외에 Palme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전개된 동.서간의 "공동안보" (Gemeinsame Sicherheit, Common Security)에 관한 개념은 동.서독에서 공히 크나큰 공명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5.3 "경제" (개도국 지원과 경제질서)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 UN 개도국 지원활동 및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관한 국제적 회담에 대한 동.서독의 기본적 입장은 각각 동.서독의 개발원조정책(Entwicklungshilfepolitik)의 일반적 목표설정에 일치하였다.
- 서독은 EC 파트너와 연합한후 UN체제내 다국적 개발기금의 막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제3세계의 국제시장 적응이라는 목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시장 적응에 부적합하거나, 직접 시장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의 법적인 여건 마련에 대하여서든 한사코 반대하였다. 이로써 서독은 - 농산물에 대한 국가보조의 축소에 관한 현재의 GATT회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한편으론 국제시장의 원칙에 다른나라 국민경제가 적응할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서독이나 EC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불신상태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 UN의 경제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독의 의미는 서독이 '74년 UN총회이래 계속 UN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가장 분명해진다. 서독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과 비교할때 풍요스런 산업국이라는 책임을 떠맡아 정기적으로 후진국의 채무차환 및 채무탕감대책에 참여해 왔다. 현재 서독은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기금을 통해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국가군중의 한 국가이다. 기금해결방안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현대적 기술에의 접근을 가능토록 해주며, 환경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생산방식으로 기술개발과정을 단축시켜준다. 그렇지만 이역시 지금까지 수행된 재정적 기여면에서는 물론 자국내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과 관련된 태세면에서 볼때 선언적 정책과 실제정책 수행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실례로 고도의 에너지소비 및 그와 연계된 유해물질 방출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960만 DM이라는 보잘것 없는 기여금을 내고 있지만 UN환경 프로그램 UNEP의 가장 괄목할만한 선도국중의 하나이다.
- 이와같은 정책분야에 있어서의 동독의 정책은 서방측에 대한 (신)식민지주의 비판으로 점철되었던 바, "신국제경제질서"(NWWO)에 의한 제3세계의요구에 대해 선언적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동독의 정책은 근본적인 다국적 개발국지원에 대한 반대로서 특징지워진다. 이 분야에서 활동을 기피한 원인은 (이데올로기 및 의환결핍으로 인한) 동독경제의 세계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이탈에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 때문에 동독은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서방산업국에 대항하는 후진국들과 투표의 보조를 맞추는 한편, 제3세계 발전문제에 대해 UN업무내에서의 공동책임을 지는 것을 거절하였다. 동독의 개도국 지원은 주로 Angola,

Ethiopia, Mosambik같은 사회주의 개도국 내지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개도국에게 집중되었다.

환경정책이라는 명칭 역시 겨우 의미부여적인 방법으로 있기는 했지만, 동독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었음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능력한계 때문에 환경정책은 수행되지도 않았다.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분야가 동독의 UN활동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5.4 "통치" (인권문제)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 o UN은 나치스 통치의 참상의 경험에 의거 일찌기 인권의 법전화에 착수하여 한편으론 인권목록을 확장한 후,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통제 및 제재체계를 강화함에 진력하였다. 국제법적으로 가장 광범하게 구속력이 있는 인권법wjs '66년에 제정된 두가지 인권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민족살해 금지 협정을 비롯하여 최근의 고문금지협정 및 어린이 보호협정에 이르는) 각종 단일협정과 UN 특별기구 (예 : ILO)의 인권목록도 있다.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적 현실에 관한 검토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명국의 보고 의무, (때때로 자의적이고 중대사례에 대한) 이의제기, 일부사례에 있어서의 특별보고서 작성자에 의한 현지확인으로 되어있다.
- o UN내 서독의 인권정책은 대체적으로 기본법에 의한 인권보장과 일치하고 있다. 서독은 개인의 인권보호 영역이 확장될 것과 함께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국제적 감독이 강화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서독은 고문금지협정의 촉진 및 전세계적인 사형폐지운동에 있어서 자발적인 건의안을 제출했다. 서독으로부터 UNHCR은 특수 재정지원 혜택을 누렸는데, 이는 유럽으로 몰리는 피난민 물결을 방지하기 위한 Bonn의 외교정책중의 일환이기도 했다. 서독은 한편 반대로 사회주의국가들의 발의에 힘입어 제3세계가 펼치고 있는 (평화에의 권리, 발전에의 권리와 같은)

집단권리인 "제3세대의 인권" (Menschenrechte der Dritten Generation)의 법전화에 반대하였다. 서독은 UNESCO에서 자유스런 정보유통을 규정하기 위한 "신세계 정보 및 의견교환체계" (NWIKO)의 구축과 같은 시도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서독은 NWWO의 경우와 비슷하게 시장의 법칙성이 유지되는 한 제3세계에 대한 재정지원 (실례 : 자체 통신사 구축)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 서독은 - 독일정책이라는 관점에서 - 각 민족의 자결권을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상기한 무력사용금지정책에 부응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각 민족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또한 서독은 남아프리카와 같은 경제재제를 통한 한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파문과 같은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부단한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개혁가능성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것은 관용하는 이러한 서독의 태도는 결국 불법정권에게 사실상 유리한 파급효과로 나타나버려 서독은 UN에서 정기적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비난은 동맹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Chile와 Israel의 경우에 있어서 대두되었다.
- 동독은 국제적 인권협력 분야를 주로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의 장 (최근에야 "인도적 협력"이 커다란 인정을 받고 있음)으로서 판단, 시민사회의 "형식적인" 기본권을 비판하고 동독의 집단적,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하며 인권옹호국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동독은 그러나 (특히 동독의 국경안전을 위한 총격 사용문제 등) 자체의 인권현황에 대한 비난과 사회주의 제국가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존감시체계의 강화를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처음부터 거부하였다. 오히려 동독은 제3세계와 함께 빈번하게 ILO와 같은 비교적 강력한 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키려 기도하였다. 동독은 각 민족의 자결권과 해방운동을 위한 결의안을 지지하고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는 근 25년간에 걸친 동독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쟁취하려는 투쟁과 함께 성숙되었다. NWWO에 따른 제3세계의 요구처럼 NWIKO를 통한 자유스런 정보교류에 관한 규정화 역시 동독은 선언적인 지원만을 하였다.

5.5 동.서독의 UN내 투표행태

- UN총회시 동.서독 투표행태의 상이성은 논란에 가득찬 투표의 통계적 분석에 잘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89년 가을 통독직전 마지막 제44차 UN총회시에서 조차 관찰되었다. 동독은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시 거의 대부분 찬성하였으며, 결의안중 1/4이상에 결코 반대한적이 없었다. ('87년도에는 단 한건도 반대하지 않음.) 한편 서독의 결의안 가결에 대한 반대율은 거의 2/3나 되었는데, 그중 절반정도는 기권의 방법이거나 단호한 "no"의 표현양식을 취했다.

- 서독의 잦은 기권은 UN에서 "German vote"라고 야유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서독이 모든 측의 이해를 배려했음과 동시에 대화와 타협에의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서독은 서방산업국으로서 국제적인 지배 및 경제질서에 속해있었고 또 NATO 회원국으로서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소수 집단"의 위치에 처해있었으므로 부득불 기권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엄폐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서독의 대서방결속으로 인한 투표의 갈등현상이 유발되기도 했다. 서독은 전반적으로 안보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했고, 이는 서독이 다른 어느 서방국가보다 동맹국에 대한 충성이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주에서 군비경쟁"에 관한 표결에서처럼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서독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로 기권이라는 방법을 취했다. 또한 미국과 친근한 Chile나 Israel이 미국을 비난할때에도 서독은 유사한 방법으로 자제하였다. 대외 무역정책문제에 대하여서는 주로 EC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투표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서독은 자유스런 세계시장의 침해(신세계 경제질서에 관한 회담, UN 제3차 해상법 회담)에 반대하여 타협적 태세를 취하는 EC회원국보다는 오히려 "hardliner"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게 동의하였다.

- 동독은 서독과는 반대로 투표시 구조적으로 UN에서 "mainstream"을 타고 있었다. 동독의 선언적 반핵주의, 반식민지주의, 반자본주의는 제3세계 다수국가군의 안보, 경제정책적 이해와 통제된 개별인권보장에 대한 거부경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동독의 투표자세는 전적으로 그 동맹국과 일치하였다. 소련을 반대하는 표결은 거의 미미한 예외일 뿐이었으며, 동독의 발의조차 특별한 동독의 이해관계에서 연유하기 보다는 동유럽 동맹체제의 업무분담에 지나지 않았다.

5.6 동.서독의 UN정책 : 결론적 분석

- 구서독의 UN정책은 단일하게 특정지을 수는 없고, 그대신 3가지 정책분야전체에 걸쳐서 증명되듯이 부정적인 도구화의 요소뿐만 아니라 상존의존화와 같은 요소 역시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50년대까지 유지되던 UN에서 절대 다수 (예 : 한국동란)를 근거로 UN에서 긍정적인 도구화의 능력이 있게 되었으며, 탈식민지화 과정의 종결에 따른 남.북문제에 관한 표결은 정기적으로 서방측 다수파의 승리로 귀결되었었다.
- UN에서 제3국세계 국가군이 늘어난 이후에도 안보이사회의 veto 사용국이자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주도적 지위를 갖고 재정적 지원능력이 강한 미국을 의식하여 서방측은 선언적 차원을 초월하는, 미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방향수정에 반대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서독은 미국처럼 국제조직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원금 지불중지 또는 기구탈퇴(ILO, UNESCO)마저 서슴치 않았던 부정적인 UN의 도구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 한편 서독은 안보정책적 내지 체제정책적 원칙문제에 있어서, 자체의 이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한 UN기구의 권능강화 및 재정적 자립을 위한 모든 정책에 대해 찬성의 준비태세를 선언했다. 특히 "안보" 정책분야에 있어서의 서독의 이니셔티브는 확고했으며, 확실한 대책으로 UN 군축외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분쟁 해결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경제"정책분야에 있어서는 다수의 기금에 대하여 고액을 지불하였으며, "통치" 정책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인권규제의 강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개도국에 대한 확정된 프로젝트의 지원과 재정조달 방식은 남.북 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거부하는 한국가의 변명을 위한 알리바이 정책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 동독의 UN정책은 일반적으로 선전을 위한 광장지향적이었다. 동독은 UN기구를 "반제국주의 프로파간다"매체로서 이용, 그 동맹 파트너국가들과 제3세계와 협력하면서 선언문의 통과에 주력하였는 바, 이와같은 선언문과 함께 서방세계의 군사적인 핵전략, 세계경제질서의 고수, Pariah 국가들 (Israel, Suedafrika, Chile 등)에 대한 지원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UN이라는 대화의 광장은 동독으로 하여금 전세계에 걸쳐 서독과는 판이한 동독이라는 국가 독자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 아무튼 동독은 "인류"의 고귀한 관심을 "안보" 정책분야에서 표방하기는 하였지만, 이 분야의 활동역시 물질적 수단의 동원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 동독은 다른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수국가 진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국가 목적이나 서방국가들에게 반대하기 위해 UN을 도구화하는데는 대체적으로 무력하였다. 동독은 또한 정확한 프로그램과 대책의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국제기구의 권한강화 등에 관한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지불능력 결핍으로 인하여 UN의 결의로 결정된 "대금청구가 따르는" 의무 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민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국가자신이 피고인 입장 (예 : UN총회에 있어서의 Afganistan, ILO에서의 Poland)으로 전략하게 되면, UN의 결정사항에 승복하려는 준비자세가 서방측 국가들보다 덜 되어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결정사항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또한 매우 약했다.

6. 향후 독일 UN정책의 기본원칙

- 미래의 공통된 독일의 UN정책에 관한 분석에는 하나의 척도가 필요한 바, 그와같은 척도는 오로지 UN회원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향이라고 하겠다. 전세계를 망라하는 인정된 대화의 광장이라할 UN은 전세계적인 개도국문제, 환경문제, 안보문제에 관한 점점 긴급해지기만 하는 문제제기를 위하여 민족국가적, 분파주의적 편협한 이해에 대항하는 전 인류의 관심사항이 해결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일독일의 UN정책에 있어서도 비록 충분한 이타주의는 기대

할 수 없다 할지언정, 최소한 가장 진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자세에 "Shadow of the future"을 내포한 집단적인 생존문제에 대한 고려를 가미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의 차원으로 볼때 집단적인 대책이 긴급히 요망되며, UN의 재정위기 극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재정위기의 극복은 통일독일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국이 오늘날 UN의 관할권을 그 임무설정과 함께 새로이 규정하여 일종의 "훌륭한 모범적인 정치" (1990. 9.26일 제45차 UN총회에서 행한 독일연방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의 연설)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적 달성방법일 것이다.

o UN에 관한 과거 동독정책을 요약하여 관찰해볼때 전체 독일의 UN정책으로서 고려될 수 있거나, 고려하여야만 할 요소가 도출되는가? 아니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실든간에 일종의 동독의 서독에의 "병합" (Auschluss)현상이 일어나야 하는가? 아무튼 위에서 인용한 Genscher의 연설문에서도 동독의 경험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한다는 문구는 전연 찾아볼 수 없다. 독일 UN협회의 기관지 Vereinte Nationen 90.8월호에서 동독출신 2명의 저자가 동독의 후속조치로서 "독일 UN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위한 반론은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향방을 위한 조건요인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 (구)서독은 이미 새로운 요구(환경정책, 지역간 갈등, 국제적인 마약문제)에 대하여 반응을 취하고 있는가?
- (2) 통일을 가능케 했던 소련의 외교정책의 변천을 통해 가능하게 된, 서방측이 절호의 기회로서 포착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과연 UN정책을 위한 새로운 전망으로서 UN내에서는 물론 독일의 UN정책에 있어서도 반영되었는가?
- (3) 구동독과 비교할때 (구)서독은 UN내에서 문제해결시 훨씬 상호의존 지향성이 강했는데, 이제부터 유럽정치협력기구(EPZ)의 범위내에서 점증일로에 있는 EC 회원국의 UN정책협력이라는 새로운 조건하에서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 0 구서독정책의 핵심적인 결정변수는 곧 서독의 (NATO와 EC에 대한) 2중적 서방결속 및 세계경제 시스템에 대한 서독의 막강한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독과정에도 불구하고, 전연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구동독의 UN정책이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다만 한시적으로 구동독의 제3세계에 대한 의무수행사항으로서 연방정부가 인수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수십년간에 걸쳐 UN이 떠질어진 동.서 갈등이라는 전세계적 문제의 해결과제는 독일의 관점으로 볼때 동.서독의 경험을 통일시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 더구나 동독의 과거는 80년대의 안보정책적 사고에 있어서의 체제간 수렴현상에 관계없이 특별한 혁신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 0 서독의 교만성을 경고하고, 서독의 UN정책에 있어서의 미온성과 이기심을 다시금 환기시켜볼 계기가 전연 없는바도 아니다. 그렇지만 과거 서독의 UN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마어마한 이데올로기로 일관되었던 구동독 UN정책이 망각의 외투를 벗고 다시 살아나서는 안된다. 전독 UN정책은 한편으로 과거 동.서독의 UN정책에 대한 2중적 자아비판이 과연 어느정도 허용되고, 다른 한편으로 UN의 역할에 관한 상호의존지향적 이해도가 전세계적인 도전이라는 맥락속에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으로 볼때 새로운 출발로서 평가되어질 것이다. 통례적으로 UN에 친숙한 독일외교정책의 현실을 유럽정책이라는 맥락을 초월하는 문제성과 연계시켜 볼때 "out of area"에 대한 관심과 의무라는 평화적인 인식에 UN정책의 미래가 있다고 하겠다. UN내지 UN산하기구의 국가연합적 계속발전의 가능성이 깊숙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독일의 지원태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東·西獨 協商과 2+4會談

(’92. 5)

1. 서독의 통일정책

- 독일의 재통일은 서독(독일연방공화국) 정부 출범시부터 공식적 목표였음.
 - 기본법 전문과 제23조, 146조에 명시
 - 구주공동체(EC) 회원국 등 서독의 우방국들도 이것을 인정함.
 - 로마협정 4개 부속문서(독일 내부교역 및 관련문제에 관한 의정서, 베를린 문제에 관한 공동선언, “독일민족”의 정의에 관한 서독정부 선언, 베를린에 대한 협정 적용에 관한 서독정부 선언)는 독일본단은 잠정적이며 독일은 하나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인
- 1960년대 말까지 서독의 외교정책 기조는 동독에 대한 불인정, 즉 “할슈타인 원칙”이었음.
 - 1950년대 초부터 통일이 단시일 내에는 실현이 어렵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 서독의 주요 정당들은 장기적 목표로서의 통일을 수사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통일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선 서방과의 유대 강화에 주력
- 1960년대 후반, 사민당(SPD) 정부가 동방정책의 핵심으로서 두개의 독일이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 「스트라우스」에서 「브란트」까지 서독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호네커 정권이 유럽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파트너임을 거듭 확인
- 따라서 동독정권의 붕괴는 누구보다도 서독지도자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었음.
 - 89년 중반 동독인들의 대탈출이 시작된후 수개월동안 이들은 거시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임기응변으로만 대처함.

2. 동독의 붕괴

- 내부소요와 대탈출, 두개의 난제에 굴복, 동독정권은 무너짐.
 - 89년 9월 헝가리 정부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으로 50,000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 동독정부의 탈출허용으로 60,000명이 체코를 통해 동독 탈출
 - 9월부터 동독 주요도시에서 거의 매일밤 시위가 계속되고, 종교인 및 "비정치적" 인물들이 지도자로 부상
 - 텔레비전이 시위확산을 가속화
- 10월 18일 호네커의 당 서기장 및 국가원수직 사임에 이어, 11월 7일 전 내각이 사임.
 - 공산당원이 국정요직에 남아있었으나, 당은 이미 붕괴능력과 의욕을 잃음.
 - 이는 11월 9일 30여년간 위용과 단절의 상징이자 수단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기정사실화됨.

3. 서독의 대응 및 동.서독 협상

- 서독과 서방진영은 동독의 붕괴가 진행되는 동안 주역이 아닌 관객으로 머물러 있었음.
 - 통일이 다시 서독정치무대의 중심에 복귀했으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함.
 - 11월 중순까지도 내독정책에 관한한 분열되어 있었고, 사민당도 예외는 아니었음.
- 11월 28일 콜 수상은 10대 동독 프로그램 발표로 초기의 우유부단한 상태가 끝남.
 - 동독주민의 대이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해결책 및 동.서독간 봉행 정상화

- 양독간 경제, 과학, 문화협력 가속화
 - 동독 정치.경제 체제 변혁을 위한 서독의 지원
 - 「모드로」 동독수상이 제안한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 발전을 위한 동독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 동독지역에서의 민주적 선거 이후 동.서독간 "국가연합구조" 형성
 - 유럽 전체로서의 안정된 정치구조 설립과 독일통일간의 연계
 - . EC와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강화로 CSCE 제도화 및 새로운 근축조치
- o 콜 수상의 구체적 중.장기 정책목표들도 동독의 경제.정치 체제의 완전한 해체와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동독인들의 압도적인 붕독지지 등 2대 사건에 의해 압도됨.
- 3월 동독선거 전부터 콜 수상은 모드로 수상에게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화폐 통합을 제의한 바 있음.
 - 모드로 정부는 두개 주권국간의 연방제를 고수하면서도 콜 수상의 제의를 검토키로 동의, 전문가 공동위원회가 즉시 협상을 시작함.
 - 그러나 3.18 선거로 연방제도 경제.화폐 통합도 충분치 못하게 됨 : 동독 주민들은 서독 기본법이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즉 서독에로의 편입을 결정
- o 그후 3개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됨.
- ① 5.18, 국가조약 체결로 90년 7월 1일을 기해 붕독 경제.화폐.사회 통합 합의
 - ② 8. 2, 90년 12월 독일 전역 총선 개최 합의
 - ③ 8.31, 통일조약 서명으로 10.3 통일의 길을 열게 됨.
- o 경제.화폐 통합은 원래 중기적 목표로 설정되어 시대적 의미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인 정치적 통합과는 구별되었음.
- 연방은행(Bundesbank)은 경제.화폐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지적함.

- 이와 달리 서독정부는 성급하고 관대한 경제.화폐 통합으로 어떠한 경제적 불안이 야기되더라도, 이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음.
 - 결국 연방은행이 원칙과 세부사항에서 양보할 수 밖에 없었음.
- o 국가조약으로 구동독이 정식으로 소멸되고 정치통합을 제외한 모든 의미에서 완전한 통합이 달성됨.
- 따라서 정치통합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고, 국가조약의 체결로 통합조약 초안이 앞당겨짐.
 - 대외적 제약요인이 이러한 과정을 방해할 수 없었음. 오히려 이런 과정이 대외적 장애 해소를 촉진시킴.
- o '90.7.6 통합조약 협상이 시작되었고, 7.22 동베를린 의회는 10월 14일자로 5개 동독주를 재구성하는 법률을 채택함. 2주일후 양독 정부는 원래 서독 총선 일정에 맞추어 12월 2일에 전독일 총선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 이 당시 12월 총선일정은 협상중인 통합조약의 발효시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음.
 - 그러나 8월 23일 동독의회가 10월 3일자로 동독의 서독편입을 의결함으로써 이러한 계산은 빗나감. 따라서 통합조약 체결이 급박하게 되고, 외국과의 협상일정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됨.
 - 결국 8월 31일 통일조약이 공식적으로 서명되어 10월 3일 발효하게 됨.

4. "2+4" 회담

가. 의 의

- o 2+4 회담은 동.서독에 관한 전승국의 잔여권리 포기라는 공식적 의미를 지님. 또한 이는 동.서독이 그들 자신의 야망과 내부적 필요성을 유럽 전체의 이해와 조화시킬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과 우방국들의 우려 때문에 이 회담은 통독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통일은 새로운 평화적인 유럽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 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음.
- o 서방 민주국가들과 동구에서는 통일독일이 가져올 위험과 기회에 관한 논쟁이 벌어짐.

나. 4대국의 입장

- o 4대국중 소련, 영국, 프랑스는 독일통일에로의 신속한 진전에 대해 반대는 아니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했음.
 - 소련은 통독이 전략적 우방이자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임을 중시하면서, 전후질서를 토대로 두개의 주권국이자 UN 회원국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유럽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영국과 프랑스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으나 대저 수상은 통독에 대한 우려를 공공연히 표명했으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도 독일통일의 진전을 위협으로 간주함.
- o 그러나 서독정부로서는 부시 행정부와 EC가 처음부터 중요한 통독 후원자였음.
 - 부시 대통령과 워싱턴.본의 보좌관들의 강력한 지지표명은 미국의 국가이익 계산에서 나온 최종 결단이었음.
 - 1989년 11월경 콜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밀월관계는 확고했으며, 양 정부간의 수많은 회담과 더많은 전화대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음.
 - 미국으로서는 탈냉전 신세계질서 구축에 있어서 세계 지도자적 역할 담당을 위한 주요 동반자로 EC 최강국인 독일을 필요
 - 콜 수장과 쟈셔 외무장관의 활발한 외교는 이러한 미국의 인식을 더욱 강화시킴.

- o 89년 10월~12월 Delors EC 집행위원장 및 위원들, 구주이사회(European Council)의 봉독지지는 그후에 개최된 2+4 고위정치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침.
 - 집행위원회는 Delors 위원장과 서독지도자간의 긴밀한 관계에 힘입어 중부유럽의 사태진전을 우호적이고 건설적으로 평가. 지지
 - 그러나 89년 말의 진정한 승리자는 구주이사회(EC 회원국 정상회담)였음.
 - . 이사회는 11~12월 4주만에 2차례 회동하여 종전 영.프의 입장을 감안할때 놀랄만한 결론에 도달
 - ※ 프랑스 Strasbourg 정상회담은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결론
 - 프랑스가 그당시 EC 의장국이었던 사실 2+4 회담에서 EC의 중요성을 증대시킴.
 - ※ 프랑스 지도층은 좋은 싫든 봉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떠밀려감.
 - 대저 영국 수상은 유럽통합을 독일통일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은 애매했음. 그러나 4대 강국과의 협상 전야에 미국과 프랑스를 등에 업은 콜 수상으로서는 11월말 10개 조항 통일방안 발표 직후보다 훨씬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됨.
- o 1990년초 서독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협상을 제도화하여 소련을 서독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었음.
 - 90년 2월, 미국이 독일의 협상 참여여부와 방법에 관한 견해차를 일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 동시에 콜 수장과 겐서 외상은 소련이 독일통일을 반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협상에 동의하겠다는 고르바초프의 확신을 받아내는데 성공
 - 이로써 「2+4」 모델을 토대로 독일통일의 외적문제를 협상한다는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외상회담(2.13, 오타와) 합의의 돌파구가 마련됨.

다. 2+4 회담 경과

- o 공식회담 개시 : 90년 5월, 본
- o 의 제 : 국경문제, 베를린의 지위, 독일주권의 최종적·법적 해결, 새로운 유럽질서 구축과 관련된 정치·군사적 문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의 장래, 통일독일과 동맹 체제
- o 협상경과
 - 폴란드-독일 국경문제는 양국의회의 6.21 결의로 순탄하게 해결됨.
 - 가장 큰 쟁점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문제 었음. 입장을 여러번 바뀐 소련은 7월초까지 통일독일의 양 동맹체제(나토, 바르샤바) 잠정잔류와 25만명으로의 독일병력 감소를 고수했으며, 서방측은 이를 거부
 - 구주안보를 위한 동맹체제의 역할과 바르샤바조약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의제로한 런던 나토정상회담(7월 5일~6일)과 콜-고르비 정상회담(소련, 7월 중순)이 최종합의를 촉진시킴.
 - * 고르비는 통일독일의 나토잔류와 94년 말까지 소련군 철수를, 콜은 동 기간중 37만명으로 독일군 감군에 동의
- o 2+4 조약 서명
 -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4대국의 통독수락과 베를린과 독일전역에 대한 전승국 권리와 책임의 포기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독일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에 서명
 - 주요 5개조항 : ① 영토문제 ② 통일독일의 불가침 약속 ③ 통일독일의 핵·생·화학 무기의 제조·보유·봉제 금지 ④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를 위한 독·소 양자조약 ⑤ 구동독군 지위

東·西獨 常駐代表部 設置와 法的 問題

('91. 11)

본 자료는 구내독관계성 법률담당관이었던 Hans
Heinrich Mahnke 박사가 동·서독간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에 기초한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법적인 입장을 기술한 논문을 전문 번역한 것임.

(Hans Heinrich Mahnke, Die Staendige Vertretungen
der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in :
Jahresbuch fuer Internationales Recht, Band 17,
1975 Berlin 36 - 59 P)

서 본

- o 독일연방정부 (이하 편의상 "서독정부")는 항상 내독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동.서독 상호간의 대표부 설립 및 명칭부여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도 내독관계의 특수성을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 o W.Brandt수상은 '70. 5.21 Kassel에서 독일민주공화국 (이하 편의상 동독) 각료 이사회 의장 W. Stoph와 만났을 때 제시했던 "동.서독간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기본원칙 및 조약구성 내용" (Grundsätze und Vertragselemente fuer die Regelung gleichberechtigt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소위 카셀 20개 조항 Kasseler 20 Punkte)중 제19 조항에 이미 양국정부가 "장관급 특명전권위임자" (Bevollmaechtigte im Ministerrang)를 임명할 것과 함께 "전권위임자를 위한 상주 근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o '72.12.21 기본조약 협상시 동.서독 양측은 기본조약 제8조에서 양국정부 소재지에 각각 "상주대표부"(Staendige Vertretung)를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 이래 동.서독이라는 양국관계의 법적성격과 상주대표부의 법적성격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은 공개적으로 정치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 o 서독 헌법재판소는 '73. 7.31자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에서 기본조약 제8조의 "양국은 정부소재지에 각각 대사가 아니라 상주대표를 교환한다"라는 규정을 양독간에 "법적인 입장에서 특수한 성격을 인정하는 의견접근으로" 보았다. 서독 정부는 기본조약 제8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있어서 대표부 설치와 연계된 실질적 문제점 처리시 이와 같은 판결을 근거로 하려고 시도하였다.
- o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및 부속의정서는 '74. 3.14 서명되었는 바, 이는 '73.11.16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내독간 전제조건이 조성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74. 4.24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정으로 '73.11.16에

제정된 법률이 더욱 구체화 되어 동독 상주대표부 근무요원에 대한 특권 면제가능성의 범위가 확정되었다.

I. 양국간 교류의 특수형태

- o '61. 4.18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4조에 명시된 공관장의 대사, 공사, 대리공사와 같은 3가지 구분은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양국간 교류에 있어서는 공관장에 대한 또다른 명칭부여도 가능하며 외교대표부의 다른 형태도 있다. ("Special Missions" in :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II, 1970. 33 ff. 참조)
- o 서독은 "상주대표부" 내지 "상주대표"라는 명칭을 양국간 교류관계에 있어서도 사용하고 있다. 즉, "UN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UN 주재 서독상주대표", "UN 사무실 및 제네바 소재 기타 국제기구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제네바소재 유엔 구주사무소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서독상주대표부"와 같은 실례를 들 수 있다. 그 이외에 UNESCO (Paris), IAEA (Wien), European Council (Strasbourg), OECD (Paris), NATO (Brussels), EC (Brussels)에도 "상주대표부"가 있다.
- o 국가간의 관행에 있어서 양국간 교류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수형태는 영국의 영연방 (Commonwealth of Nations)에서 형성되었다. 국제법적으로 볼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이 주권 국가임에는 불림없으나 이와 같은 국가들은 서로 "외국" (auslaendische Staaten) 으로서 보지 않고 있다. '49년도 인도헌법 제II부와 연계하여 공포된 Indian Constitutional Order No.2, 1950에서는 "that every country within the Commonwealth is hereby declared not to be a foreign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Constitu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 o 또한 Commonwealth 회원국은 상호간에 대사를 교환하지 않고 "High Commissioner" 를 교환하고 있다.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인정하는 Commonwealth 국가들의 High Commissioner들은 통상 신입장을 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재국내 관계기관

접촉시 주재국의 외무부를 거치지 않고 총리 및 기타 장관과 직접 접촉한다. Commonwealth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영사교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재국내 자국민에 대한 보호는 주재국 관계기관의 소관사항이다.

- o Foreign Office와 Commonwealth Relations Office가 통합되기까지 High Commissioner와 그 대표부의 직원들은 Commonwealth Relations Office에 소속되었다. 원래 High Commissioner의 법적지위는 관습법의 저촉을 받았다. '52년도의 외교 특권법 (Diplomatic Immunities Act)과 함께 Commonwealth 국가들의 High Commissioner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대표에 관한 권한의 공식적 기본원칙이 조성되었는 바, 이에 따라 High Commissioner들은 다른 나라의 대사와 동일하게 "재판절차로부터의 면제, 공관, 개인주택 및 문서의 불가침성" (from the suit and legal process, and the like inviolability of Residence, official premises and official archives)와 같은 면책특권을 누린다.

이와 같은 것은 대표부의 직원, 직원의 가족, 직원의 가사종사자에게도 준용된다. 이들은 복수한 입법이나 행정합의에 따라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 o "외교특권법"은 '64년도에 그중 일부가 폐지되었다. 그 이래로 High Commissioner는 기타 외교관들과 마찬가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규정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London Diplomatic List"의 서열 목록에 따르면 공관장에는 대사(Ambassadors), High Commissioners, Charges d'Affairs (ad interim), Acting High Commissioner와 같은 4가지 범주가 있다.

- o 비록 United Kingdom내 아일랜드 공화국의 외교대표가 "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조약으로 규정된 양국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 '49. 4.18 아일랜드 공화국이 Commonwealth로부터 탈퇴하자 '49. 6. 2차 Irland Act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at, notwithstanding that the Republic of Ireland is not Part of His Majesty's dominions, the Republic of Ireland is not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s of any law in force in any part of the United Kingdom or in any colony, protectorate or United Kingdom trust territory, whether by

virtue of a rule of law or of an Act of Parliament or any other enactment of instrument whatsoever, whether passed or made before or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and references in any Act of Parliament, other enactment or instrument whatsoever, whether passed or made before or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to foreigners, aliens, foreign countries, and foreign or foreign-countries, and foreign or foreign-built ships or aircraf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 o "Diplomatic Immunities Act 1952"에 따라 United Kingdom내 아일랜드 공화국의 대사는 Commonwealth 회원국의 High Commissioner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었다.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민 (대사포함)이 Commonwealth가 아닌 제3의 주권 국가의 내국민인가 외국인인가 아니면 특정한 제3자 (tertium quid)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49. 5.11 Attlee 총리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I do not pretend that the solution at which we arrived is completely logical-very few thing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slands have been completely logical - but I believe they are practical and I believe that they are to our mutual benefit. I am aware, of course, that hitherto there has been this division in international law - it has come down from the past - in which one has recognized people as either belonging or foreign, but international law is made for men, not men for international law. We are moving into a time when various other relationships are being created. Therefore we thought this was the most practical solution."

Commonwealth 회원국의 대부분은 아일랜드 공화국이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 o 과거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프랑스 공동체" (Communaute Francaise, UAM/OCAM)로 묶어 점증하는 독립운동으로부터 막아보려던 '50년대 프랑스의 시도와 맥락을 함께 하면서 '61. 9.12 Tananarive에서 개최된 회의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연합" (UAM)이 성립되었던 바, 이 연합의 회원국들은 외교대표를 "상주대표" (Staendige

Vertreter)라는 특수한 명칭을 부여한 후 상호 교환하고 특수한 집단으로서 구분할 것에 합의하였다.

- o 19세기중, 그리고 20세기초까지 독일에는 내독간 공사파견권 (Innerdeutsches Gesandtschaftsrecht)제도가 있었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1648년)과 더불어 독일내 개별국가들은 사실상 완전한 독립을 획득하고 완전히 국제법적 행위능력이 인정됨으로써 독일 개별국가들 (약 1,300개의 영주국)이 상호간 내지 외국과 마치 그물처럼 조밀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독일전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단일대표제도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1815년 독일연방 (Deutscher Bund : 1815-66)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다. 1867년 북부 독일연방 (Norddeutscher Bund : 1866-70)의 헌법수용과 함께 연방(Bundesstaat)이 성립되기까지 그리고 1871년 독일통일이 달성되기까지 개별국가들의 공사권은 존속되면서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다.
- o 대다수의 주권이 새로 성립된 연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때까지 거의 신성불가침 상태였던 개별국가의 정치적 독립성에는 엄청난 제약이 뒤따랐으며 특히 이와 같은 제한은 외교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제국중앙정부에 외국에 대한 제국의 국제 단독 대표권 (1871년 제국헌법 제11조)을 비롯하여 영사제도 (제국헌법 제56조)에 관한 감독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독일의 개별국가들은 1871.4.16자 제국헌법과 더불어 제국으로 이양되지 않은 일체의 주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바, 그중에는 공사권도 포함되었었다.
- o 따라서 독일의 개별국가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상호간, 그리고 제국령 외국 (Reichsausland)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공사권은 제국 헌법에 규정된 범위 및 한계내에서 상대국과 더불어 파견국의 특수사항을 협상할 수 있었다. 반면 개별국가의 해외대표부의 대부분은 해체되었던 바, 1872년도에는 20개, 1910년도에는 단지 8개가 있었을 뿐이다.

- o 독일연방국가의 대표부 역시 상호간 그 성격이 변천되었다. Deutscher Bund 당시 대표부는 외국의 대표부로서 통하면서도 국가군내에서 동등한 자격과 함께 독립적으로 존속하였다. 이와 같은 대표부는 주권국가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외교적 회담과 협상을 행하면서 일체의 외교관계 규정과 사안을 원용할 자격이 있었으나 Deutscher Bundesstaat의 성립과 동시에 더이상 그 구성원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로서만 존속하였다.

- o 그럼에도 불구하고 Deutscher Bund 시대의 공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20세기에 와서도 신임장 제정, 외교관 교환, 외교서신 왕래와 같은 형식의 외교적 관행이 정확하게 준수되면서 유지되었다. 주재국은 독일의 개별국가가 파견한 공인된 공사에게 일체의 외교적 특권을 보장하였다. 그렇지만 내독공사관은 제국의 재판권과 제국법으로 확정된 조세권으로부터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1871년도 제국헌법 제4조에 따라 과거에 독일의 개별국가들이 수행하던 중대한 외교협안과 외교협상 및 국가간 조약문제를 제국이 장악한 후, 그 감독하에 입법을 허용하게 되자 Norddeutscher Bund와 독일제국 초창기에 내독공사관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1887년까지 모두 11개의 공사관과 7개의 독립대표부가 폐지되었는데 그중 8개는 1867/68년도에 폐지되었으며 1873년까지 7개의 공사관이 추가적으로 폐지되었다.

- o 개별국가들의 공사관에게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활동분야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중 첫째는 1871년 독일통일이후 개별국가에게 허용된 분야로서 개별국가의 외교대표의 활동영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일체의 문화정책과 교회 정책, 개별국가의 국내질서, 세금과 관세, 복권제도, 군사제도, 우편제도, 일정한 권한, 경제분야, 국경문제와 국경설정, 철도와 도로 및 교량의 건설과 유지 등이 추가되었다. 공사관 활동의 중요한 두번째 분야는 독일내 개별국가간의 선린관계 유지였다. 세번째로는 제국전체 문제와 관련된 활동이 주요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전체국가적 의사결정시 개별국가의 참여가 연방국가제도의 원칙이었기 때문이었다.

- o 그러나 독일내의 개별국가간 교류라는 내독공사제도를 통한 외교형태를 국제법적 교류 (Voelkerrechtlicher Verkehr)로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제법적 교류로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국제법적 범주에 속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그 실례로서 비록 독일제국의 개별국가들이 공사를 교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국제법적 사안이 아닌 일종의 순수한 연방간의 교류 (foederale Kommunikation)에 불과한 것이다." (Krueger, in : Gesamtverfassung Deutschlands, 1962.21)라는 견해도 있다.
- o 공사제도는 1919. 8.11자 제국헌법 (Reichsverfassung)하에서도 계속 존속되었다. 공사제도가 존속하게된 이유는 각 개별국가 (Laender)가 그들의 이익을 제국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제국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존립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 또다른 이유중에는 일부 Laender - 그중 특히 Bayern국 - 가 명멸해가는 국가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이의 계속적인 존속을 주장했는데, 이에 바로 공사제도가 곧 국가적 주권의 표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 o 이와 같은 외교적 활동은 외국에 대해, 다른 독일 Laender에 대해 중앙정부인 제국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그 존재 의의를 갖고 있었다. Laender는 Land내 입법 (Landesgesetzgebung)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제78조 제2항), 또한 교황청에 대한 외교관계도 유지했다. 그래서 Bayern은 '34. 1.30까지 교황청에 자치적으로 공사관을 유지하였는가 하면 Preussen은 '34. 5.31까지 교황청에 독일제국의 대사를 파견하였었다. 그리고 교황청 대사는 뮌헨과 베를린에도 상주하였다. '20. 7.16부터 '34. 6.30까지 Bayern과 프랑스간에 외교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뮌헨에는 프랑스 공사관이 있었다. Laender는 1918년 이후에도 공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상호간 빈번한 교류를 벌여왔었다.
- o 내독간 공사는 국제외교무대에서와 동일한 임무를 띠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재국에 신임장 제정, 칭호부여, 제한적이거나마 지외법권 (Exterritorialitaet)에 속하는 외교업무도 수행하였다. 20년말 악화일로의 경제상태와 더불어 일련의

공사관은 폐쇄되고 말았다. '31. 5.21 Preussen은 Muenchen 주재 최후의 공사관을 폐쇄하였으며 Bayern은 31. 6.27 Preussen 주재 공사관을 폐쇄하였다. 독일의 다른 Laneder도 '32. 3.31이후 공사관 폐쇄조치를 단행하였는 바, Bayern, Baden, Hessen, Sachsen, Wuerttemberg에 신임장을 제정하고 있던 내독공사관은 '32말 내지 '33년중에 폐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개별국가의 제국주재 대표부는 존속하였다.

- o '45이후 당시 미군점령지하의 Laender는 내독공사제도를 부활시켜보려고 시도하였다. 즉, 독일제국 주재 Bayern 대표부는 항복이후에도 Berlin에 계속 존속하였다. '45.12 Bayern 경제성 Berlin 대표부가 개설되었는 바, Berlin과 소련군 점령지하의 Laender와 교류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대표부는 '47년도에 "주Berlin Bayern 연락사무소"로 개편된 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 Bayern 정부와 독일중앙행정기관 및 당시 소련군 점령지하의 Laender, 정부, 그리고 Berlin시간의 교류 ; Bayern 관련 사법공조 소청에 대한 행정안내 및 처리 ; Berlin 주재 구 Bayern 대표부의 폐쇄문제. Bayern 연락사무소는 '50.12.31 폐쇄되었다.
- o '45부터 '49간에 존속했던 Hessen 대표부는 주로 Berlin과의 경제교류에 기여하였다. 이에 반하여 Wuerttemberg 대표부는 '45년 이전의 대표부의 외형에 주력하였다. Wuerttemberg-Baden의 국무성은 '46년도에 Berlin의 "중앙정부"(Zentralregierung)로 1명의 경제대표를 파견하였는데, '46.4 점령군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수출문제 전문직과 함께 보좌토록 하였다. '47.8 Wuerttemberg 주수상은 Berlin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즉 Wuerttemberg주 (Land)는 "북부독일에 대한 Wuerttemberg주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45년도에 폐쇄했던 대표부를 재개하는 바, Berlin에 상존하고 있는 Wuerttemberg주의 이익을 증진처럼 Berlin주재 전권위임자의 활동을 통해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부는 영사업무나 정치적 임무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48.8에 폐쇄되었다. 미군점령지역 각주의 "북부독일에 대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내독간 각주의 교류재개는 국제법적인 사안이 아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은 단순한 국내간 교류 (innerstaatliche Beziehungen)가 아니라 국가간 교류 (zwischenstaatlicher Verkehr)의 특수형태이기도 하였다.

II.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 보장에 관한 법률

o '73. 6.14 연방하원 (Bundestag : 이하 편의상 서독하원)는 동독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의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ueber die Gewaehrung von Erleichterung, Vorrechten und Befreiungen an die staendige Vertret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결의하였다. 이에 연방평의회 (Bundesrat : 이하 서독상원)는 '73. 7. 6 동법을 비준하였다. '73. 9.28 Berlin주제 연합국 점령군 사령부가 동법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 (BK/O (73))하였으며 드디어 '73.11.16 공포 되기에 이르렀다.

o 외교사절단과 그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부여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적용한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동독과 진정한 의미의 외교관계 수립을 원치않았다. 따라서 비엔나 협약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었으므로 동독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을 통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가 조성되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의미상 법안 상정에 대한 근거는 바로 동법이 서독에 있는 외교사절단의 모든 외국인에게 주어져 있는 면제 사안이 동독상주대표부의 직원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동독측과 관련하여 볼때 독일내에 있는 동.서독이라는 2개의 국가가 '61. 4.18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체결국이라는 사실자체만으로 양국간에 비엔나 협약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동독의 요구는 근거가 미약하다.

o 이와 같은 것은 시간적으로 볼때 유엔에 가입문서 제출이전에 양국은 외교 사절단이 아니라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는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동.서독 기본조약이 동독의 비엔나 협약 가입문서의 제출이후에 비로소 동.서독간에 그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독이 기본조약 협상 당시의 태도와 모순되게 비엔나 협약의 직접적용의 정당성 주장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이였다. 기본조약 제10조에 따른 Note의 교환 및 그에 따른 이 기본조약의 양국간 효력발생은 동.서독이 외교사절단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는 상호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o 상주대표부 설치에 비엔나 협약이 의미하는 정상적 외교관계 수립이 아니기 때문에 동 법률제1조 비엔나 협약의 간접적용만을 용인하고 있을 뿐이다. 편의, 특권, 면제보장과 같은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그 직원에게 허용되는 정도로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일반적으로 참조하는 대신, 동 협약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규정만을 법안으로 수용해보려던 안은 '73. 3.23 서독상원을 통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서독상원은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전언 거론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서독에 있는 외교사절단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특권, 면제가 동독 상주대표부의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상주 대표부의 법적지위는 외교관계 또는 외국대표부라는 인상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 o 이와 같은 논쟁에 관하여 서독정부는 동 법률 제1조가 단지 비엔나 협약의 규정중 편의, 특권, 면제의 보장에만 관련된다는 견해를 표방했다. 따라서 동법에 내포되어 있는 권한부여는 그 내용, 목적, 정도에 따라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정도로 동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예견할 수 있도록 성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독하원으로 하여금 서독정부가 동법 제1조에 규정된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용이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동법 제1조의 시행령은 오로지 서독상원이 동의할때에만 입안될 수 있도록 하였다.
- o 서독상원에 의한 동의의 필요성은 주정부나 지자체로 유입될 조세에 대해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면세조치를 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규정제정의 필요성은 기본법 제105조 제3항에 근거한다.

- o 동법 제3조에는 Berlin규정이 내포되어 있다. '73. 9.28자 BK/0 (73)를 통해 연합군 사령부는 동법이 "서독내에서, 그리고 Berlin에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건부로 공표하였다. '73.12.12자 법률을 통해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법률은 서Berlin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III. 동독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시행령 ('74. 4.24)

- o 동.서독 회담대표들이 '74. 3.14 양국 정부소재지에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현안 문제가 내포된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74. 4. 5 서독상원은 동독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특권, 면제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동의하였다. 동 시행령은 '73.11.16자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동 법률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위한 시행령의 제정이 위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행령은 동.서독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직접 적용이 아니라 단지 준용(entsprechende)에만 합의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그 내용상 실제적으로 비엔나 협약의 제규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양국간 교류에 통례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외조치 (Exemption)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초안에는 동독상주대표부와 그 직원이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조치의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놓았다.
- o 동 시행령에는 비엔나 협약을 벗어나는 일부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비엔나 협약 제47조 제26항과 연계된 '73.11.16자 법률 제 1조이다.
- o 이와 같은 예외는 양국간 관계에 있어서 상례적이었으며, 동독과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제1항 : 상주대표부 대표 및 그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기타 공과금의 면제
 - 제3조 제3항 : 동독에 대한 대지구입세의 면제. 동.서독은 부속 의정서서 제5에서 이와 같은 면세조치를 명확하게 표현해 놓았음.

- 제3조 제4항 및 제5항 : 차량세 및 보험세 면제. 이와 같은 사항은 양국간 교류에 있어서 상례적이며 동독 역시 서독상주대표부에게 이와 같은 면세조치를 보장하였음.
- 제15조 : 비엔나 협약 제35조 규정이외의 가사종사자에 대한 규정임. 이 규정을 통해 동독 상주대표부의 직원으로서 서독에 상용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수행을 해야 함. 그와 반대로 서독상주대표부의 직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규정이 불필요했던 바, 독일인으로서 서독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는 동독으로부터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임.
- 제16조 제1항 : "상주대표부 건물의 건설 또는 개축에 사용되거나 건물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설물과 관련된" 지출공과금 면제(Eingangsabgaben-freiheit)의 대상일 경우에 한하여 비엔나 협약 제36조 제1a)항의 규정은 예외가 인정됨. 동독 역시 호혜성을 보장하였음.
- o '74. 4. 5 서독상원은 시행령 의결에 즈음하여 "동.서독은 외교관계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가 성립될 수 없도록 특수한 형태의 상주대표부를 교환한다"라는 사실을 제차 확인하였음.

IV. 동독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근무요원의 복수복무에 따르는 제문제에 관한 법률

- o '74. 3.22 서독하원은 동독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근무요원의 복수복무에 따르는 제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74. 4. 1부로 효력이 발효되었다. 동 법은 동.서독이 외국이 아니었으므로 외교대표부 근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였다. 동법에는 공무원의 잠정퇴직 조치, 공무원 봉급 (퇴직금 가산과는 무관한 보조금), 인사대리권, 이사비용 등과 같은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v.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및 부속의정서

- o 의정서는 어려운 협상을 거쳐 '74. 3.14 Bonn에서 서명되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제8조에 근거하여 양측은 부속 의정서의 효력발효와 더불어 상주 대표부를 개설할 것에 합의하였다. 의정서는 '74. 5. 2에 효력을 발생했다.
대표부의 명칭은 각각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 및 "독일민주공화국 상주 대표부"였다. 대표부 대표의 (Leiter der Staendige Vertretung) 직함은 각각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 및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이었다.
상주대표부 부장의 신임장 제정은 각각 양국 국가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 o '61. 4.18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상주대표부, 그 직원, 가족, 가사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의정서 제5에 규정된 상주대표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파견국의 이익을 접수국에서 대변하며 인적인 지원과 보조를 함.
 - 동.서독간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에 걸친 정상적인 선린관계의 촉진 및 확장

- o 서독상주대표부에 대한 동독의 주무관청은 동독 외무성이었으며,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서독의 주무관청은 서독 수상실이었다. 상주대표부의 직원수는 상호간 동의 하에 확정되었다.

- o 6개에 달하는 부속 의정서 (Protokollvermerk)와 더불어 추가규정이 결정되었다. 제1의정서 각서는 상주대표부 대표의 note 교환을 통한 동의, 기타 직원의 서면을 통한 임명, 접수국 정부의 대표 및 기타 직원의 소환권이 규정되어 있다. 제2 의정서 각서에는 하시를 막본한 출입국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제3 의정서각서에는 상주대표부의 통신시설 설치 및 작동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제4 의정서 각서와 더불어 서독정부는 Duesseldorf 주재 동독 대외무역부 사무소가

동독상주대표부 무역정책실 지소로서 변경됨에 합의하였다. 이에 동독은 만일 서독정부가 이에 부응하는 규정과 더불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제5 의정서각서는 파견국의 대표부용 대지구입 및 기타 공용 대지구입시 세금과 기타공과금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o 제6 의정서 각서는 서Berlin 포함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독상주대표부는 "'71. 9.3자 4대 전승국 협정에 따라 서Belrin의 이권을 대변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동독정부와 서Belrin 시정부와 합의사항은 이에 무관하였다. 이 의정서 각서는 그 내용상 '72.12.21자 기본조약 서명을 기해 있었던 서Berlin에 관한 양측의 선언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o 서독정부는 의정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의정서가 기본조약 제8조에 대한 후속 협정 (Folgeabkommen)이 아니라 시행합의 (Durchfuehrungsvereinbarung)라고 확정 하면서 "시행합의는 동.서독간의 정치적 관계가 이미 기본조약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o 이에 반해 참고문헌상에는 부속 의정서가 기본조약 제8조에 의한 후속 합의 (Folgevereinbarung)라는 견해가 있다. 부속의정서는 서독헌법재판소의 기본 조약에 관한 확정판결에 구속되므로 당시까지 기본조약 해석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의미상 제7조에 따른 추가의정서의 체결에도 의미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정서는 기본조약의 수행에 고려될 수 있는 동독과의 후속조약 (Folgevertrag) 및 후속합의 (Folgevereinbarung)로 봉용된다. 또한 의정서가 일종의 불완전한 행정 협정 (Verwaltungsabkommen)으로서 기본법 제84조 제2항 및 제85조 제2항과 연계 하여 볼때 제59조 제2항 제2면의 제규정으로 인하여 입법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바, 당시 야당이 다수였던 서독상원이 의정서의 시행을 차단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점은 의정서에 관한 의회처리과정중 실제적으로 대두된 바 없었다.

VI. 특수관계

- o 일부 참고 문헌상에는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동.서독 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서독정부는 잘알려진바대로 이에 반대되는 관점을 표방했다. 서독정부의 관점에 따르면 동.서독 관계의 특수한 성격은 이미 기본조약중 다음과 같은 규정과 함께 그 근거가 제시되었다.
 -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이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일치된 견해
 - 외교사절단 대신 상주대표부를 교환한다는 합의
 - 동.서독간의 기존무역이 대외무역(Aussenhandel)이 아닌 내독무역(inner-deutscher Handel)이라는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
 - 국적 문제를 기본조약상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양측의 합의도출. 이는 서독측의 단일독일국적 존속이라는 주장을 의미하는 것임.
 - 상이한 법적입장 (Rechtsposition)으로 인하여 재산권 문제가 기본조약에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
- o 민족문제 (Nationale Frage)에 관한 변함없이 지속되는 견해차이가 있음이 기본 조약의 전문에 명시되었음. "민족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양독국가 국민의 복지증진과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이 조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음.
- o '73. 7.31자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과 함께 기본조약은 특수 관계를 규정짓는 조약임이 확인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이 일반적인 국제법의 질서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특히 기본조약과 함께 조성된 대상별로 제한적인 특별법질서 (Sonderrechtsordnung)에 속함을 강조하였다.
"즉 기본조약은 일종의 이중성격을 띠고 있는 바, 그 종류로 볼때 일종의 국제법적

조약이지만 그 특수한 내용으로 볼때는 무엇보다도 양자관계 (Inter-se-Beziehungen) 를 규정짓는 조약이다” 동.서독 상호 맞물려 있는 특수한 법적접근은 제8조 (상주 대표부)로부터 도출되며 또한 비준절차의 특수성과 조약의 전반적 경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국경을 초월한 인적교류의 개선을 목표로 조약당사국간 최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고 내독부역이 대외부역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합의한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0 서독정부의 관점에 따르면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 공식명칭 "상주대표부" (Staendige Vertretungen)
- 공식직명 "상주대표부 대표" (Leiter der Staendigen Vertretungen)
- '61. 4.1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단지 "준용"됨에 관한 합의
- 서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관할권이 서독 수상실이라는 사실

0 이와 같은 것이 바로 - 기본조약의 특수한 외형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 사실상의 특수성으로서 기본조약이 그 내용상 여타한 경우를 막론하고 곧 동.서독간의 기존 특수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결론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본조약과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이와 같은 특수관계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와 같은 특수관계를 확정시키고 명확하게 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은 - 연방헌법재판소가 선택한 분장형식의 의미표현과 더불어 - 독일과 독일민족의 특수한 상태, 즉 패전과 무조건 항복 및 그로 인한 피점령상태 (occupatio bellica)를 비롯한 최종적으로 독일전체에 대한 4대 전승국의 최후의 책임이란 권한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독일전체에 대한 4대 전승국의 최고 책임은 '73.12.21자 서신교환과 함께 4대 전승국으로부터 확인된 바 있다.

- o 바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부터 기본조약과 의정서는 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반대하면서 서독과 동독이 국제법적 결속력이 없이 단지 특별법 질서하에 그와 같은 조약을 체결함에 합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러나 동독에 그와 같은 의지가 결여되었었다. 기본조약의 성격만 갖고 특수한 관계가 조약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관점을 극해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이와 같은 특수관계는 기본조약상에 내포되어 있고 바로 기본조약이 이와 같은 특수관계의 존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입법화 (Konstituierung)에 관한 합의 도출 (Konsens)은 필요치 않았다.

VII. 신임장 제정 (Akkreditierung)을 둘러싼 논란

- o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제 3항에 의하면 각 상주대표부 대표는 각 국가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어 있다. 신임장 제정이란 접수국의 국가원수로부터 외교사절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신임장 제정의 절차는 파견국에 의한 대표의 임명으로부터 접수국의 국가원수에게 신임장(Beglaubigungsschreiben, lettre de creance)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 o 정부여당 (SPD)과 야당 (CDU) 사이에 각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제정문제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측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와 기본법 제93조 1항 1절에 따른 기관 쟁송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합의에 반대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야당측 주장의 핵심은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의 신임장 제정은 결국 특수관계의 법적성격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즉, 신임장 제정을 통해 동.서독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외교관계 수립은 명백히 동독을 암암리에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되며 이것은 기본조약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하여 동독상주대표부 대표의 신임장 제정은 기본법 제 59조 1항 3절의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제법적 인정으로서 동독은 결코 외국이 아니므로 결코 국제법적인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까지의 연방정부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특수한

내독관계"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의무를 연방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이행해야 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은 기본법을 위반하고 기본법과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권위적인 해석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 o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동독상주대표부 대표에 의한 신임장 제정행위가 결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본법 59조 1항 3절에 따르면 연방대통령은 "파견된 자" (die Gesandten)를 영접하고 신임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파견된 자"란 문자 그대로는 의미상 보통 외국으로부터 외교사절 (dieplomatische Vertreter)로 이해한다. 그러나 동독상주대표부 대표는 이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정서 문안에 상주대표부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으므로 결코 동독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동독도 한 국가이며 기본조약의 이중적 성격상 양국가간의 관계상 각 상주대표부 대표가 상대방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신임장 제정이 꼭 외교관계 수립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국제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양 국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었다. 기본법 59조 1항 3절은 단지 "파견된 자"들이 연방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의 서명시 정부성명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기본조약을 통해서 정부간, 국가간의 관계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장 제정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신임장 제정의 형식은 대표부의 성격을 넘어서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o '74. 4. 5 동독대표부에 관한 편의, 특권, 면제 보장에 관한 시행령 의결시 연방 상원은 상주대표부 대표의 연방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결코 동독에 대한 외교적인 승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야당은 최종적으로 연방헌법 재판소에의 제소를 철회했다.

VIII.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규정을 근거로 외교관계 수립이라 주장할수 있는가 ?

- 0 신임장 제정문제 뿐만 아니라 의정서 규정 전제가 외교관계 수립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다. 정부의 계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에 의해 국제법 본헌을 통해 이러한 외교관계 수립문제에 대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상주대표부 대표"란 직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주대표부와 그 부장의 활동 내용과 그 기능 때문에 학자들은 그것을 외교관계 수립어부로 논쟁을 벌였다. 즉,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파견원의 장 (Missionschef)의 임무를 꼭 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주요기능상 외교사절의 대표로서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이익을 대표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때 외교사절의 대표는 항상 "대사" (Botschafter)라고 불리우지 않는다. 만약 상주대표부 대표의 명칭이 "대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견원의 장" (Missionschef)으로서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한 그 기능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비엔나협약 제14조 1항 1절에는 "그밖에 동일한 지위에 상응하는 파견원 자의 장"의 직명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 더구나 동독이 "대사"라는 직명을 고수하며 외교관계 수립을 강조하는 마당에 "상주대표부 대표" (Leiter der Staendigen Vertretung)란 직명만으로 내독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정서 4항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들이 "준용되어" 적용된다는 규정도 비록 양 당사자가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명확한 증거가 되긴 되지만, 이 조항만으로 양국간 사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정서의 내용과 협약 체결의 목적을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하는 바, 외교적 특권.면제에 관한 양국가들은 "상주대표부"에 외교사절적 지위를 허용하였으므로, "사실상" (de facto) 외교 사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느 정도로 국제법이 양국간의 특별 협약에 의거하여 "준용"될 수 있으며 또한 국제법적인 주요 명제들이 유사한 적용에 의해 기속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 o 의정서 5항에 규정된 상주대표부의 임무가 비엔나 협약 제3조에 규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다. 의정서상의 표현이 "정상적인 선린관계" (normale gutnachbarlich Beziehungen)로서 비엔나 협약상의 "우호관계" (Freundschaftliche Beziehungen)와는 다르다. 협상시 양국간 관계의 성격분제와 관련한 논쟁에서 동독측은 "정상적인" (normale)인 성격을 강조했고, 서독측도 "우호" (gutnachbarliche) 관계를 강조했다. 협정서상에 두 단어를 똑같이 병기했다는 사실이 결코 양국간 관계의 특수성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협정서 문안상의 표현으로서 양국관계의 특수성에 관한 어떤 근거를 도출해 낼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다.
- o 각 상주대표부의 접촉 상대와 관련한 문제가 이러한 외교관계 수립 여부와 관련, 거론이 되었다. 동독 상주대표부는 예외적으로 연방수상실과 접촉을 하게 하도록 하였으나 양국가간의 접촉에서 완전히 외교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비엔나 협약 제41조 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교적 업무접촉은 의무성이나 "상호 동의하에 그밖의 접수국의 북정부처"와 허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정서 상의 이러한 규정때문에 따라서 양국간 관계의 특수성격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Weber, Diplomatische Beziehungen zwisch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in : Politische Studien 26 (1974) P. 346)
- o 의정서 주식 1항의 상주대표부 대표 임명 동의에 관한 규정 또한 일반외교사절 대표의 아그레망 (Agrement) 절차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간 Note 교환으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다. 비엔나협약 제4조에 의하면 파견국은 접수국으로부터 외교사절 대표의 아그레망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밖의 외교관들도 문서로서 임명이 되고 접수국으로부터 소환이 요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합의는 국제법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법적규정 제정을 통해 입법화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국간 관계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 o 연방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인 제규정과 관행을 열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러한 견해를 통해 양국간 합의서의 전체적인 성격이 보다 분명히 설명될

수 있게 되었다. 의정서와 의정서 주석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관계 수립을 허용하지 않는 일련의 특수성이 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상세한 설명이 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이미 명확히 해주고 있다. 재삼 언급하건데 이미 기본조약에 특수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기본조약이 특수관계의 지속이란 기본적인 입장하에 제결되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입법화를 위한 별다른 콘센서스 형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 o 결론적으로 국가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외교관계 수립을 맺고자 원하는 양국가간의 상호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외교관행의 기본명제로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상호 동의가 동.서독간에는 결코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 서독정부는 늘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본입장하에 기본조약 제8조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합의된 것이다.

行政 · 司法分野

統獨以後 提起된 問題點 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91. 7)

- 통독이후 동독지역 (신설 5개주와 베를린지역) 에서 발생한 문제와 동서독 지역간 실질적 격차해소 문제는 더 이상 내독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문제로서 각 기존부처에서 헌법이 명시한 소관 관할업무의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음.
- 통독직전 동독지역의 재건과 同化문제를 총괄하는 “ 재건상 ” 과 같은 특별부처설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각부처 업무와 중복문제가 있고 발생문제들이 과도기적 사안들임을
 - 감안하여 해당 각 부처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현재 각 부처가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수상실 (BK)
 - 동독지역 신설주문제 관련 내각소위원회 운영
 - 각 주정부 주지사실과 수상실간의 업무 협조·조정
- 외무성 (AA)
 - 소련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실무협상
 - 동독이 제3국과 맺은 외교, 영사관계, 협약처리
- 내무성 (BMI)
 - 신설 동독지역주들의 행정체계 설립 지원
 -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
 - 양독 지역 문화·체육분야 통합관련문제 지원

- 법무성 (BMJ)
 - 신설 동독지역 주들의 사법체계 설립지원
 - 구동독 공산당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보상
 - 반법치국가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 동·서독 법률체계 동화
- 재무성 (BMF)
 - 구동독지역 몰수재산권의 반환·보상
 -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재편 (신탁청활동)
 - 신설 5개주 재정지원과 통독비용 조달
- 경제성 (BMW I)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및 경기부양책 실시
 - 신설 5개주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 및 기업신설 장려
- 농림수산성 (BML)
 -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 개편, 자영농 육성
 - 농업 생산수단의 사유화
- 노동·사회성 (BMA)
 - 구동독지역 실업대책
 - 각종 사회보장제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보건성 (BMG)
 - 구동독지역 의료체계 전환
 - 의료보험체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교통성 (BMV)
 - 구동독지역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환경성 (BMU)
 - 동·서독간 환경보호체계 통합
 - 구동독지역 특수오염지대에 대한 특별대책

- 국방성 (BMVT)
 -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
 - 부녀·청소년성 (BMFJ)
 - 구동독 청소년들의 동화문제
 - 동·서독간 낙태제도 통합문제
 - 가족·노인문제 담당성 (BMFS)
 - 구동독지역 연금생활자 복지체계 확립
 - 체신성 (BMPT)
 - 구동독지역 우편·통신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건설성 (BMBAU)
 - 구동독지역 주거현대화 및 주택경기 활성화 추진
 - 교육성 (BMBW)
 - 신설 5개주의 교육개혁
 - 공산체제 관련학과·연구기관 철폐 및 종사자 해고
 - 과학기술성 (BYFT)
 - 구동독지역 핵발전소 기술안전 및 방사선 보호
 - 경제협력성 (BMZ)
 - 과거 동독의 제3세계 지원사업 인수문제
 - 공보처 (BPA)
 - 통독후 방송·언론 재편
- 또한, 각부처는 베를린에 지소 (Au enstelle) 를 설치하고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구동독 중앙부처의 청산 (Abwicklung) 작업을 진행시킴.
- 구동독 중앙행정 해당기관의 인력 인수여부 결정, 건물 접수·이전 등

- 통독과정과 통일이후에 통합관련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상실, 내무성, 법무성의 세부기구개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수상실 : 통독관련 기구 축소>

○ 통독이전

- Abt. 2 (외교·안보·통일정책담당실) 밑에 Arbeitsstab Deutschlandpolitik (통일정책담당관실) 이 있었음.
- 국장급 (Min, Dirig) 이 담당관이며, 3 개과로 구성됨.
 - Ref. 221 : 상주대표부 관할, 내독관계중 환경, 연구·언론분야, 베를린문제 담당
 - Ref. 222 : 내독관계중 사법·교통·가족상봉분야 담당
 - Ref. 223 : 내독관계중 경제·문화분야 담당

○ 통독이후

- Abt. 1 (국내·법률문제 담당실) 로 이관되고, 그 밑에 신설 5개주문제 담당관실 (Gruppe 4) 설치
- 국장급 담당관 밑에 2개과로 구성됨.
 - 국장 (Min, Dirig) : Herr Sterm
 - Ref. 141 : 통합조약 및 신설 5개주 문제 담당 (담당자 : Germelmann과장)
 - Ref. 142 : 베를린에 소재하며 본과의 연락기능, 구동독 수상실의 기구청산작업 담당 (담당자 : Permantier과장)

- 동독지역 신설 5개주문제 관련 내각 소위원회
(Kabinettausschu Neue Bundeslander) 구성·운영
 - 참여부처
 - 내무, 법무, 재무, 경제, 농수산, 노동, 가족, 청소년, 보건, 교통, 환경, 체신, 건설, 과기, 교육
 - 수상실 장관 주재로 사안발생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각 주정부 주지사실 장관들과 공동회의 개최

<내무성 : 통독이후 내독관계성 인력흡수·기구확대>

- 통독이전
 - Abt. G (국내기본정책담당실) 밑에 Arbeitsgruppe innerdeutsche Beziehungen (내독관계담당관실) 을 두고, 동독과의 통합조약 (Einigungsvertrag) 협상을 주도함.
 - Abt. SM (스포츠·언론관계담당실) 의 2 개과가 내독간의 문제를 다룸.
 - Ref. SM2 : 내독간 체육교류
 - Ref. SM1 : 내독간 언론분야교류
- 통독이후
 - 구동독지역의 재건문제와 관련,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과거 내독관계성 인력을 흡수하여 Arbeitsstab Neue Lander (동독지역 신설 주 재건 자문단) 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

- 이 자문단은 전내독관계성 차관이었던 Dr. Prinsnitz가 내무성 차관으로서 단장이 되고, 그 밑에 1명의 차관보 (Dr. Schmid : 전내독관계성 베를린문제 담당차관보) 와 5개 본과로 구성됨.

- 각 본과에는 과거 내독관계성 관료직원이 나뉘어 배속되며, 각 본과는 동독지역 1개주 및 특정 행정분야에 대해 자문역할 수행 (괄호안은 담당국장)
 - 1본과 : 작센안할트주 및 재정·투자문제 (Rosen)
 - 2본과 : 튀링겐주 및 공보·홍보문제 (Bitz)
 - 3본과 : 작센주 및 고용창출조치문제 (Poehle)
 - 4본과 : 브란덴부르크주 및 인사행정문제 (Stuberrauch)
 - 5본과 : 메클렌부르크포어퍼머른주 및 소유권 문제 (Plewa)

- 아울러 기존 조직중 Abt. G의 기능을 보강, 내무행정과 정치교육담당을 담당토록 Unt. Abt. G II (정치교육·동구문제연구담당국) 을 신설
 - Ref. GII 1 : 일반내무행정, 정치교육문제 기본정책담당 (담당자 : Witzlau 과장)
 - Ref. GII 4 : 정치교육, 동구연구담당 (담당자 : Leonhardt 과장)
 - Ref. GII 5 : 통독과 관련한 정치교육담당 (담당자 : Finn과장)
 - Ref. GII 6 : 통독과 관련한 연구담당 (담당자 : Stute 과장)

- Abt. K (문화담당실) 을 기존의 Abt. VT (실향민문제담당실) 로 부터 분리하고, 동서독 지역간 문화분야에 있어서 이질성 해소 문제를 전담하는 2 개과를 신설
 - Ref. KII 4 : 문화분야의 분단 후유증 해소 문제 (담당자 : Dr. Ackermann 과장)
 - Ref. KII 5 : 신설 5개주의 문화시설확충 문제담당 (담당자 : Stiemke 과장)

- Abt. VT (실향민문제담당실) 은 계속 존속하면서 동구지역 으로부터 이주하는 독일민족에 대한 문제를 담당함.

<법무성 : 구체제청산관련 기구확대>

○ 통독이전

- 통독 1년전부처 사법·법률체계 통합 준비를 위해 Abt. Öffentliches Recht (공법담당실) 산하에 Arbeitsgruppe Innerdeutsche Beziehungen (내독관계담당 taskforce) 을 설치함.
 - 이 기구는 과장급 (MR) 이 팀장이 되고 그 밑에 9 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됨. (담당자 : Dr. Viehmann과장)

○ 통독이후

- 기존의 Abt. 2 (형법담당실), Abt. 3 (민법담당실), Abt. 4 (공법담당실) 에서 각각 동·서독간의 법률체계 통합의 문제를 담당하면서

- 구동독체제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를 다루는
Abt. 5 Rehabilitierung (복권·보상문제담당실) 을 신설함.
- 이 신설실은 8 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개과가 베를린
에 소재함.
 - Ref. 5.1 : 기본정책 및 구속자 지원·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Dr. Eberbach과장)
 - Ref. 5.2 : 직업상 받은 피해 복권·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Lehmann 과장)
 - Ref. 5.3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
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Sturmhofel과장)
 - Ref. 5.4 : 형사처벌에 의한 피해 복권·보상문제담당
(담당자 : Bruns 과장)
 - Ref. 5.5 : 미해결 재산권문제 담당 (I)
(담당자 : Fieberg 과장)
 - Ref. 5.6 : 미해결 재산권문제 담당 (II)
 - Ref. 5.7-8 : 베를린 지소

統獨以後의 問題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要約)

- 統一獨逸 政府는 統獨以後에 發生하는 問題에 대해 해당 各部處內에 專擔機構를 新設하거나 既存 組織을 活用하여 處理하고 있음.
 - 一 統獨直前 東獨地域의 再建과 同化問題를 總括하는 特別部處 新設 必要性이 論議되었으나, 各 部處 業務와의 重複問題와 發生問題들이 過渡期的 事案들임을 감안하여 設置하지 않았음.
- 이와함께 各 部處는 베를린에 支所를 設置하고 人力引受, 建物 接受·移轉 등 舊東獨 中央部處의 청산작업을 進行시키고 있음.
- 統獨過程과 統一以後에 統合關聯 主要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首相室, 內務省, 法務省의 細部機構改編 內譯은 다음과 같음.

<首相室 : 統獨關聯機構 縮小>

- 統獨以前 : 外交·安保·統一政策 擔當室 傘下 3 개과로 構成되는 統一政策擔當官室에서 處理
- 統獨以後 : 國內·法律問題擔當室 밑에 2 개과로 構成되는 新設 5 개주 問題 擔當官室 設置
- 內務省등 15개 部處가 參與하는 東獨地域 新設 5 개주 問題 관련 內閣小委員會 構成·運營

<內務省 : 統獨以後 內獨關係性 人力吸收·機構 擴大>

- 舊東獨地域의 再建問題와 關聯, 州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行政支援과 諮問을 위해 5 개분과로 構成되는 “東獨地域 新設州 再建諮問團” 設置
 - 一 全內獨關係省 次官 Dr. Prinsnitz가 內務省 次官으로서 諮問團長에 任命됨.
- 아울러 內務行政 統合과 政治教育을 擔當하는 政治教育·東歐問題研究擔當局 (4 개과) 과 東西獨 地域間 文化分野에 있어서 異質性解消 問題를 擔當하는 文化擔當室 (2개과) 新設

<法務省 : 舊體制 靑酸關聯 機構 擴大>

- 統獨 1 年전부터 東·西獨間의 法律體系 統合을 위한 刑法·民法·公法 등 3 개 擔當室을 設置
- 統獨以後에는 기존 3개 擔當官室과 함께 舊東獨體制下의 被害者에 대한 復權·報償問題를 다루는 8 개과로 構成된 復權·報償問題擔當官室을 新設하여 統一以後 問題를 處理

新聯邦州의 行政體系 改編

('92. 7)

새로 편입된 연방 주 (=구 동독 지역 주)들에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동시에 연방과 주들의 프로그램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새로운 연방 주들의 행정체제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는 세가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방 정부의 차원에서(A.), 주 정부의 차원에서(B.), 그리고 시군 행정부의 차원에서(C.)

A. 연방 정부

I. 연방의 부서들

- 동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에는 총 4,183개의 연방관직이 있다. BMVg에 1,240개, DR에 1,353개, 우체국에 1,300개, BGS에 91개, 그밖에 199개의 연방관직(예를 들면 세무직, 수자원직, 항해관련직, 일기관련직) 등이다.

II. 직원

- 1992년 4월 24일 현재: 13,679명의 서독지역 출신 연방공무원이 가입지역의 연방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중에는 군인이

4,805명이다.

- 그중에 4,637명의 공무원/군인은 전입자이고, 9,042명은 파견근부이다.

(도표 1)

III. 교육 및 계속교육

1. 교육

연방은 1991년에 청소년 실업을 막기 위해 구동독 지역 출신 청소년 10,000여명을 연방 행정부에 채용하였다.

2. 계속교육

- 연방 행정부에 채용된 대략 15,000명의 구동독 지역 출신 공무원이 1990년에 계속교육 과정에 참여하였다.
- 1991년 말 전체 수자는 대략 30,000명에 달했다.
- 연방 우체국 관할의 대략 35,000명이 여기 덧붙여진다.
- 일반 내부 행정부서에서:
 - * 고위직의 교육은 공공 행정을 위한 연방 아카데미 (BAKöV)에서 실시
 - * 고급직의 교육은 브란덴부르크 주의 비젠탈 소재 연방 전문대학에서 실시
 - * 중간급의 교육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 드란제 소재 연방 행정국에서 실시
- 전문 행정부서에서:

연방은 새로운 직원을 해당 전문 분야에서 교육시킴 (예를 들면 세무행정의 분야를 위해서는 BMF가, 연금행정 분야를

위해서는 BMA가).

- 실습 :

연방정부는 새로 채용한 연방공무원들이 서독 지역의 관공
서에서 실습과 청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B. 주 정부

I. 행정부의 건설

1. 연방의 인적 지원

- 1992년 4월 30일 현재: 1,322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주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 그중 299명은 전임이고 1,023명은 파견근무이다.

(도표 2)

- 예를 들면 1991년 4월 17일자 BMI 원칙에 따라 경비
보상을 승인한다거나 하는 일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
를 돋운다. 연방 하원의 예산위원회는 1991년 11월
14일에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즉 199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현저하게 삭감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고 2,500마르크에서 최고
1,750마르크로). 이러한 결정은 1992년 3월 4일자 BMI
의 지시로 대체되었다.

2. 주의 인적 지원

- 1992년 4월 30일 현재: 8,375명의 서독 지역 출신 주 공무원이 구 동독 지역 주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 그중에서 1,159명은 전입이고 5,380명은 파견근부이다.

(도표 3)

- 구 서독 지역의 주에서는 장차 더 많은 공무원을 파견근부 보다는 전입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재정적 이유와 인사관리상의 이유들이다 (주 傘下 인적 상황이 훨씬 분명해 진다).

3. 인원 확보

a) 연방의 활동

- 연방관할 부서들 특히 BMI는 관대한 방식으로 연방 관리들을 새로운 주들에 파견함으로써 인적 지원을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 즉 파견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경비로 1992년에는 8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1991년에는 1억 3천만 마르크).
- 나아가 연방은 연방 공무원이 새로 편입된 주들에 전입되거나 거기서 새로 채용될 경우, 새 주의 인적 경비의 일부를 보전(補填)해 준다. (1991년 6월 4일자 BMI의 인적 경비 보조원칙); 이를 위해서 1992년에는 2천만 마르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1991:2천만 마르크).

b) 주의 활동

- 각 주들은 주로 현재의 파트너 관계의 틀 안에서 적절한 직원을 중개하거나 혹은 직원을 구하는 일을 맡고 있다.
- 파견 공무원들의 재정적 보호는 각 주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정된다.

c) 인적 행정보조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동(정산직= Clearingsstelle)

- 1990년 8월 29일자 연방과 주의 행정수반들의 결정에 따라 협동기구로서 행정보조를 위한 정산직이 BMI에 신설되었다.
- 1991년 5월 17일자 정산직 회의의 결과:
 - * 구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 구서독 지역의 옛 주들, 연방간에 하나의 인적 자원 플랜의 합의를 보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동독의 주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 시군들의 인적 수요와 그 충족은 옛 주들과 연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직 작센 주만이 장래 작센의 파트너 주들과 연방과의 전체적인 협동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 1991년 10월 18일자 정산직 회의 결과 :
 - * 구동독 지역 주들은 지속적인 인적 자원 행정보조가 1992년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 지속적인 인적 자원 행정보조는 정산직을 통한 중앙 집중식의 협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대신 주 관할 부서 對 주 관할 부서 혹은 연방 관할 부서간의

상방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구서독 지역 주들은 1993년 1월 1일 이후의 인적 자원 행정정보조를 위한 후속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91년 2월 28일자 MP 회의의 각(角) 결정은 1992년 말까지의 보조 조치들만을 다루고 있다). 1991년 12월 30일자로 구서독 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BMI는,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행정정보조를 연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주 차원에서 만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들의 이러한 결정을 이용하여 BMI는, 지금까지는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치들의 연장에 관한 연방내각의 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 구서독 지역 주들은, 새로운 주들이 인적 자원 보조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참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렸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 편입된 주들은, 구서독 지역 주들과 연방이 전입된 공무원의 연금부담을 나누어 감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1 10월 25일자 FMK의 결정에 따르면 연방, 구 연방주, 시군구 자치 단체들은 공무원, 판사, 교수들의 경우에 50년 뒤부터 그것을 적용할 예정이다.

- 1992년 3월 12일 정산직 회의 결과:

*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인적 자원 행정정보조를 근본적으로 지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세부사항은 1992년 중간의 정산직 회의에서, 현재 눈앞에 다가와 있는 내무 및 재무 장관들의 회

의 결과를 참고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내무 및 재무 장관들의 회의는 1992년 3월 12일자 주지사 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행정보조의 전체범위조건들을 확정지를 예정이다. 또한 구서독 지역 주들과 연방의 보조는 가능한 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주들은 시군자치구들이 1992년 1월 1일 이후로는 동쪽 직원들 (=구동독 출신 직원)에 대해서도 연방의 인적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C V. 항 참조).

4. 장비(裝備) 보조

- 사무실 장비, 특수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물품들 (도로건설 행정을 위한 건설장비, 토지등기소를 위한 EDV 장비 등), 법전들, 행정지침들, 서식 용지와 전문 서적들의 인계(引繼). BMI는 특히 구 동독 지역 주에 속한 모든 군과 시 및 읍 면 들에 연방법전집을 배포하였다. 그를 위해 대략 4백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새로운 주들의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1990년 가을의 긴급조치로 약 80만 마르크 상당의 업무규정집과 法註解集들을 배포하였다. 새로운 주들의 기동경찰대가 현대적인 휴대용 및 출동시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BMI 1992년 예산에 2,100만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1993년에서 1995년까지의 예산안에는 8천만 마르크 이상이 책정되어 있다.

5. 기타 조직상의 보조

- 주들의 최고위 및 차위 관공서들의 인적 수요에 대해서 정산직이 추천.
- 군과 읍면 자치구들을 위한 조직모델들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KGSt 의 전문가들).
- 상급 재무감독국 및 재무부서들의 건설에 대해서는 BMF가 조직의 추천.
- 주 환경 행정의 건설과 조직편성을 위해서는 BMU의 추천
- 면허증, 화물자동차 허가, 벌금관리 직급의 정비에 있어서는 BMV의 보조.
- 도량형 관리 행정, 물질시험관리 부서, 주의 카르텔 감독부서, 광고 감독부서의 건설에서는 BMWi와 그 산하 관청들 (예를 들면 연방 물리학 기술 연구소) 의 추천.
- 주와 자치구들에게 행정업무를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특정한 전문분야를 위해서는 연방 관할 부서들의 업무지도 (예를 들면 자치구의 재산 이양을 위해서는 BMI의 지도, 시군 자치구들을 위한 재산법 3조 a 항의 적용과 투자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BMJ 의 지도)

II. 특수 행정영역에서의 보조

1. 사법부의 건설

- 연방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1억3천60만 마르크로 가입지역의 사법부 건설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BMA는 노동재판소와 사회복지재판소의 건설을, BMJ는 기타 재판소의 건설을 지도한다.

구 서독 지역 주들의 판사 파견에 의한 재정적인 보조, 새 주들을 통한 신규채용과 퇴직자 재활용.

1991년 11월에 새로운 주들의 재판소를 위하여 구서독 지역에서 파견한 공무원 수자는 1,500명 이상에 이르렀다. 그중 715명이 판사와 검사였고, 574명은 법률가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아직 새로운 주에서는 광범위한 신규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서쪽의 “판사층”에 따르면 새로운 주들에는 대략 4,500개의 추가 판사자리가 남아있다.

- 추가: 연방과 구 서독지역 주들은 새로운 주의 사법부 직원 양성을 보조한다.

2. 측량 및 토지대장 제도의 건설

- 측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구조적응과 필요한 직원 증원 (공적으로 위탁받은 측량기사의 투입)의 측면에서 조직화를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BMI의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다. 1990년 12월 10일자의 토지대장과 토지 측량 지도 분야에서, 새로운 주들의 측량공무원

및 토지대장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 1991년 10월 28/29일 양일간에 트리어에서 열린 각주의 측량행정 실무 협동체 회의(Adv)에서 새로 편입된 주들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측량 및 토지대장 제도의 영역에서 악화되고 있는 난제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투자의욕에 있어서의 불리한 성과로 인하여 Adv의 회원인 BMI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구두로 이루어진 보고를 서면으로 요약해 줄 것과 이 보고를 토대로 실무단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제안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었다. 실무단은 1992년 3월 13일에 회합을 가졌다. 여기서 실무서류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내무장관 회의에 제출되었다. 그것은 현재 협의중에 있다.
- 현재는 특히 파트너 주들이 장비면에서 (예를 들면 경작지 측량기, 측량차량 등) 측량 및 토지대장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BMVg는 장비면에서의 추가 보조를 약속하였다.

3. 토지대장 제도의 건설

a) 인원

- 구서독 지역 주들의 인원보조: 대략 200명 정도의 파견 법률가 (서부지역의 총 수자는 대략 2,000명)
- 그중에는 바스도르프(Basdorf)에서 파트너 주 브란덴부르크의 토지대장 업무 작업을 하고 있는 NR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속의 법률가 38명이 포함된다.
- 기본적으로 제공된 인적 보조는 재판소 파트너 관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b) 새로운 주들의 토지대장 공무원들에게 EDV 절차를 도입

법무장관들과 판사들의 협의회의 위임을 받고 사법부의 정보처리 및 합리화를 위한 연방-주-위원회는 새로 편입된 주들에서 토지대장 공무원들에게 EDV 투입을 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요한 입안자료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주들 (독자적 계획을 세우려 하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를 제외하고)의 토지대장 공무원들의 평지용 장비공급은 1,460개의 일자리를 그 토대로 삼는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대략 4천9백 20만 마르크이다.
- 발전 및 시험경비 없이 즉시 인수받을 수 있는 SOLUM 내지는 MAGB 가 예견된다.
- 현실화는 단계개념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1995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 새로운 주들에 의해서 이미 상당한 교육 및 계속교육비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한 경비가 충당되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필요한 물자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III. 교육 및 계속교육

1. 교육

- 새로운 주들은 1991년 가을에 다음세대 교육을 시작했다. 전문대학들, 행정학교 등이 건설 중에 있다. 파트너 주와 연방의 보조는 특히 강사를 구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2. 계속교육

- 연방:
 - * 주들의 행정요원을 위한 BAKOV 의 연간 작업 프로그램 램 개시
 - * 주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들을 위한 BAKOV 의 특별 연수 (1991년: 대략 800석, 1992년: 대략 1,000석).
 - * 특수분야에서는 연방 관할 부서들에 의한 계속교육.
- 주:
 - * 새로운 주들은 독자적인 계속교육실시를 시작했다. 연방과 파트너 주들의 후원.
 - * 파트너 주들에 의한 주 공무원들을 위한 계속교육 실시.

C. 시군 행정

I. 인원

- 새로운 주에는 7,791개의 시군 자치구가 있다. 시군 자치단체장 연합의 정보에 따르면 연방분야 출신의 직원 2,000명 이상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
- 파견기간: 서부지역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장기간동안 파견되어 있다. 인

적 경비 보조 원칙 (아래 II. 번 참조)은 최소 6개월의 파견을 전제로 한다.

II. 연방의 인적경비보조

- 인원파견의 경비는 대부분 파견하는 주와 시군 자치구가 부담한다.
주들은 물품 및 인적경비의 총계 상환 조치를 이용한다.
파견하는 시군 자치구의 경비는 상환된다.
- 그러나 연방도 또한 BMI의 인적경비 보조 원칙에 근거하여 인원파견에서 중요한 부분을 재정지원한다. 원칙적으로 관련경비의 백분의 40 수준의 -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백분의 25 - 경비보전 및 부대비용을 감당한다 (1991년 3월 26일자, i.s.d.F. 1991년 12월 12일자, 읍면자치구와 기타 공적 법인 단체들에 대한 인적경비지원의 승인 원칙).
 - * 주의 법규들과는 달리 이 경우는 파견하는 시군 자치구가 아니라 인원을 받아들이는 시군 자치구에 지불된다.
 - * 이 원칙은 공무원의 파견, 전입, 신규채용 등에 적용된다.
 - * 지금까지 연방행정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혹은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건: 1,631건 1992년 5월 25일 현재).
 - * 1991년, 1992년에 각각 원칙의 한계는 1억 마르크; 적절한 제목으로 이 역시 지원해야 하는 교육 및 계속교육비를 공제함 (VI. 3 참조).
 - * 시군 자치구는 보조 가능성을 신중하게 이용한다. 그 이유

로는 : 시군 자치구에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주들의 경쟁적인 인적 행정지원 (시군 자치구의 별도의 인적경비 부담이 없다); 파견받은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시군 자치구는 60%까지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1990년 7월 1일 이후의 .봉급인상분) 이것은 많은 시군 자치구의 형편으로는 너무 높은 것이다.

III. 연방내무장관 및 시군 자치단체장 연방협의체의 협동에 의한 인원 증개소

-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 인원확보를 위한 특수 기구는 공동의 직원증개소이다. 지금까지의 연방영역의 구직자와, 직원을 구하고 있는 시군 자치구를 위한 중앙 증개소이다.
- 1992년 5월 말 이 증개소에는 2,946명의 구직자와 시군 자치구를 충원하게 될 536개의 자리가 있다. 증개소는 이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1,108건의 제안을 했다.
- BMI와 시군 자치단체장 연방협의체는, 인원 증개소의 보다 강력한 활동을 위해서 시군 자치구에 홍보를 강화하였다.

IV. 동북시대 인민의 재산을 새로운 주 산하 시군 자치구에 이양하는 분야에서의 특별한 인적 수요.

- 재산정리법 - VZOG - 은 통일협정 21,22 조항의 집행을 위한 법적 의문을 해명하였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점들이 VZOG 의 집행시에 드러나고 있다:

- 최근에 인지된 사실에 따르면 예측되는 신청건수가 350,000건이다 (원래는 180,000건이 예견됐었다).
- 특별조치 없이 작업소요시간은 5 내지 10년이다; 원래의 예상시간은 1 - 2년이였다.
- 신청건수의 3/4은 새로 편입된 주들의 상급 재무감독국(OFDen)들이 구성한 재산정리위원회에 의해서 처리된다.
- 상급재무 감독국 산하 재산정리위원회를 위해서 328개의 자리가 인가되었다.
- 작업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군 자치구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신청서들 때문이다. BMI가 지도하고 모범신청서를 발행하고 시군 자치구 정보 서비스에서 거듭 충고를 해 주어도 그렇다.
- 상급 재무감독국들은 시군 자치구들에 보충지시를 내려야 할 입장이다. 결과: 공무원들은 정리를 한다는 본래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 상급 재무감독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50,000명 이상의 주민을 가진 시군 자치구들은 추가의 전문요원을 (계수 100) 고용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그사이 시군 자치단체장 연합과 BMI 사이에 분명하게 되었다. 협동 기능을 위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의 적절한 처리 확보, 통일된 처리 및 작업 기준의 확정을 위한 작업회의의 조직화, 특별 계속교육 실시의 조직화 및 상급 재무감독국 대표들, 신탁관리청의 대표들,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실무진간의 자극과 협동) 새로운 주들은 실무대표부를 이용할 수 있다.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극: 연방은 인적경비보조원칙의 한계

안에서 인적 경비의 90% 를 떠맡고 있다. 이것은 1991년 10월 1 일자로 발효된, 읍면 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 법인에 대한 인적 경비보조 승인에 대한 개정된 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V. 새로운 주들이 있어 재산법에 따른 재산의 이양 및 반환의 과정에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들

- 주 산하 관청이 설립되기까지 재산법상의 업무들은 군청이나 시청이 맡고 있다 (재산법 28조).
- 이 자리에는 - 財産局(Vermögensämter) - 현재 2,35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들은 110만이 넘는 신청자들이 신청한, 대략 210만건의 독립적인 재산권 청구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인적 상황 하에서 소요시간은 6년 이상이 된다.
- 상당한 수준의 증원이 요청된다. 4,000명 까지로 인원을 두배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92년 1월 1일 이래로 인적경비보조에 있어서 연방의 실적이 개선되었다. 연방은, 재산법의 업무를 위해 군단위에 투입된 직원들에 대해서, 또한 예전의 인민의 재산을 시군 자치구에 이양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적경비의 90%를 담당한다. 1991년 3월 26일자 인적경비보조원칙은 1991년 12월 12일에 새로 작성되었다.
- 새로운 보조가능성에 근거하면, 지금까지 재산법 처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0명의 변호사 수를 300명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밖에 100명의 서쪽 전문가들을 이 분야에 유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시군 자치구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직

원들을 그들의 업무영역을 적절하게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보조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

- 추가로, 인력강화법에 따라 조기 제대한 연방방위군인이 임시로 재산국(財産局)에서 일할 수 있다. 이 인력층에서 연금수령자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90%의 인적경비보조가 인정된다.
- 나아가, 연방정부에서 최소 6개월 기간으로 중간급 및 고위급 공무원들, 파견하는 부서의 경비부담하에 각 재산국으로 파견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구서독 지역 주들에게 그쪽에서도 250명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1992년 4월 1일 이후로 연방은, 새로 '재산국에 채용된, 가입지역의 500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밀어주기 재정지원으로 6개월간 인적 경비 90%를 담당한다.
- BK는, 추가로 가입지역출신의 공무원을 재산국에 채용해 줄 것을 새로운 주들에 호소하였다. (*BK:연방수상?)
- 재산국의 능률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안들을 입안하기 위해서 BMI를 의장으로 하는 부처간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의 성과:

- * 인적경비의 백분의 90을 담당 (위의 항을 볼 것).
- * 재산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를 50에서 300으로 증원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재정적 전제를 확보. 특히 변호사들과의 계약을 내용적으로 갱신하고, 변호사비를 개산가(概算價) 월 7,500 마르크로 인상.
- * 재산국에 유리하도록 의도된 홍보활동.
- * 재산국과 균등분담국(Ausgleichsämter)간의 상호 인적교류 촉진

- 진. (*균등분담 = 동서간의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것)
- * 공적인 재산문제의 조정을 위한 연방부서, 연방재무 아카데미, 연방행정국 등을 통해 재산국 직원을 위한 계속교육 실시.
 - * 균등분담국이 자발적으로, 승인된 분담조정에 대해 해당 재산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사안 처리를 계속 후원해 주도할 목적으로 균등분담법을 개정.
 - *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새로운 주들에 권고.
 - * 재산국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들을 추천하고 있는 우선순위목록의 작성.
 - * 재산국들을 조직화 하기 위한 방책들을 입안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투입.
- 부처간 협력체에 있어 미래의 업무상 주안점들:
공적인 재산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법과 재산국들의 구조적인 문제들.

VI. 교육 및 계속교육

1. 교육

새로운 주들과 시군 자치구 연합체들과의 협동작업으로 성과를 얻는다.

2. 계속교육

- 1991년도 시군 자치단체장 연합들, 시군 자치구의 교육시설, 행정 및 경제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 대략 25,000 석
- 공공 행정을 위한 연방 아카데미를 통해서
- 전문영역들에 있어 연방의 전문관할부서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BMF를 통해서: 공적인 재산 문제의 조정
- 파트너 자치구들, 혹은 주 관청, 연방 관청들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3. 재정보조를 통한 교육 및 계속교육 제안의 보충

연방은 1991년 7월 1일자 BMI 원칙에 근거하여 - 읍면 자치구와 기타 공공 법인들에 대한 교육 및 계속교육비 보조 승인의 원칙 - 교육 및 계속교육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지금까지 연방영역에서의 연방행정 교육담당관들의 경우. 현지 행정 차세대의 교육 입안
- 계속교육 입안
- 현재의 연방영역에서 연방관청, 주, 읍면 자치구, 읍면자치단체 연합체들, 군, 시 행정공동체 등의 관청에서의 독자적인 실습
- 재원은 인적경비보조의 명목으로 된 1억 마르크에서 지급된다.

VII. 시군 자치 행정부의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기타 보조

- BMI 에 의해서 "Infodienst Kommunal = 자치단체를 위한 정보

서비스”라는 책자가 발간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주에 속한 모든 자치구들과, 자치구의 전권수탁자가 지방자치의 실제에서 당면하게 되는 의문들에 대해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 (격주간 37,500부).

- 행정부의 건설에서, 특히 시군 자치구 차원의 행정부 건설에 나타나는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 연방내무장관이 주관하는 자치구 협의회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연방과 새 주의 시군 자치구간의 정보교환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특히 연방의 촉진책들을 실현함에 있어 나타나는 촉구, 적자, 난점들의 필연성을 인식시키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연방은 직접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연방소유의 부동산을 75%까지의 할인가격으로 읍면 자치구가 사용하도록 한다.
(주와 군들을 위해서는 50%의 할인가)

D. 서독 공무원들의 홍보/중개와 통합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난점들

- 주 행정부들에서는 직원교류는 주로 파트너 주 단위로 이루어진다.
- 개별적으로는 “서쪽 공무원들”도 다른 새로운 주들에 파견된다. 그럴 경우, 파견하는 주의 경비보전이 개별적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난제이다.
- 연방과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비교적 높은 액수) 구서독 지역의 여러 주들 사이의 경비보전이 각기 다르다.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방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이의 인적경비보조의 영역).

- 나아가: 인적 행정보조에 관해서는 어느 주의 법도 (특히 인적경비보조 승인에 관한 법) 시군 자치구 출신의 공무원이 새로운 주로 전근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 파견 및 전입에서 발생하는 경비보전 승인은 “서쪽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부딪친다. 상당한 규모로 그리고 서쪽 행정부에 후임을 충원하지도 않은 채 공무원들이 새로운 주들의 행정부로 이동함으로써 그 사이에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 동쪽 행정관청의 업무에 “서쪽 공무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 * 급여의 현저한 차이
 - * 현지출신 공무원들의 냉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로서, 대부분이 관청의 상층부로 편입되는 것
 - * 서쪽 공무원들의 둔감한 처신
 - * 새로 편입된 주들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 새로운 주들의 심각한 주택난이, 필요한 서쪽 공무원의 유연한 투입을 어렵게 한다. 새로운 주에서는 주택문제가 서쪽 직원들의 “퇴각”을 유도한다는 인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E. 요약

행정보조의 영역에서는, 연방, 구서독 지역 주들, 구동독 지역 주들,

시군 자치구들 사이에 강력한 협동과정 및 보조과정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공동작업은 앞으로도 새로운 주들에 있어 행정력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舊東獨政權의 被害者 補償問題

— 복권법, 판결무효화법, 구속자 지원법 —

(Deutschland Archiv '91. 3)

통독후 독일에서는 동독이라는 불법정권이 막을 내리자 피해자 처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붕괴해 버린 동독의 잔재를 정리하는 정산인들은 근거가 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17조에 "정치적 동기에 기인하는 공소제거나 법치주의국가에 위배되고 위헌적인 법원판결 때문에 피해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복권될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본원칙이 즉각적으로 수립되도록 하는 의도"와 "이와같은 구동독 불법공산정권(SEO-Unrechts-Regime)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은 적절한 보상규정(Entschädigungsregelung)으로 처리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조약은 이를 위해 실제로 아무런 기여도 제공하지 못했다. 즉, 통일조약을 체결한 동.서독의 당사자들이 원용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Gesetzesfundus)로서는 단지 동독의 복권법(Rehabilitierungsrecht)과 판결무효화법(Kassationsrecht)의 편린이 서독의 사회법(Sozialrecht)과 원호(Versorgungsrecht)의 단편과 조합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피해자 보상의 길은 명명백백하게 뚫렸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불법 때문에 수난을 치루면서 자아의 손상을 감수해야 했던 사람들과 명예롭지 못하게 느껴지는 사회부조법(Sozialhilfegesetz)에 의한 미지근한 화해의 시도(Wiedergutmachungsversuch) 사이에 있는 상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다른 테마에 쏠리고 있는데 소유권 문제가 국민경제적 의의와 함께 백여만이 달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 때문에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반면에 생존을 파멸시키고 풍격을 떨어뜨려 버리는 구금형이라는 권행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자신을 통일시 해 보려는 노력은 대중의 큰 관심사가 되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들 집단이 갖고 있는 어질성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은 물론 대외적 영향력을 미칠만한

의견의 결집이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상의 테마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전국적인 일간지의 독자의 편지란에서 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더구나 법조계의 논의마저 명료하지 못하다. 독일연방정부 역시 법규하에서는(Notmenlage) 통일조약 17조의 의지인 "적정한 보상규정"으로 복권이 이룩되어야 할 약속이 현행 법규하에서는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으며 각 부별로 새로운 규정을 입안중에 있다. 본 기고와 더불어 현행 법률상태(Gesetzeslage)를 어느정도 천명해 보면서 그와 같은 법률상태의 명백한 불합리성과 왜곡된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함에 기여코저 하는 바이다.

I. 1898년도부터 1998년에 이르는 독일의 법률전통

첫째로 통일조약 체결시 두개의 독일이라는 국가(이하 편의상 동.서독)가 원용했던 입법과정상의 불법성의 전개과정에 관한 선례를 일별해 보는 것이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그와 같은 선례들은 독일의 국가적 법률문화(Rechtskultur)중 법률제정의 전통으로 정착되어 있는 해결가능 방안을 제시해 준다. 이와 같은 선례들 조율한다는 사실이 입법권자에게는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며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대로 이와 같은 가치관의 핸디캡(Wertvorgabe)이나 해결방안의 핸디캡(Loesungsvorgabe)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입법자로 하여금 특수한 법률적 비난이 아닌, 정치적·도덕적 비난으로부터 모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서독에서는 제헌이전의 독일제국법(Reichsrecht)이 우선 적용되었는바, 1898년의 "재심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ie Entschädigung der im Wiederaufnahmeverfahren freigesprochenen Personen) 및 1904년의 부당한 구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ie Entschädigung fuer unschuldig erliffene Untersuchungshaft)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은 민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금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대비하는 것인 바,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상실되어버린 이득이나 직업승진의 장애로 조래된 피해액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구금으로 인한 비물질손상, 즉 자유의 박탈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968년에 동독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상기 두가지 법률을 형사소송법(제269조 이하)에 수용하였는바, 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피해(제39조 1항)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것으로 - 자구상으로는 - 광범하고 문명국가다운 피해의 개념에 기준한 손해배상의 길은 열리게 되었으나 구금으로 인한 비물질적 손상은 - 구제국법에서나 마찬가지로 - 법률상 규정이 없다.

서독은 1971년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Gesetz ueber die Entschaedigung fuer Strafverfolgungsmassnahmen : Str EG)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목표설정으로 보아 선진법치 주의 국가에서도 실제법적 내지 절차법적인 공안기구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민사법상 이와같은 불법에 대해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는 것이었다. 민사법적 기본 원칙에 따라 물질적 손상이 액수에 있어서 광범하고 무제한으로 보상될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상의 이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배경하에서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행된 자유의 박탈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개인의 비물질적인 법적권리가 보상이 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보상액이 구금 일당 10 DM이었다가 1987년 이래 일당 20 DM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확정적이고 개별적인 조목이외에 불법으로 저질러진 자유의 박탈 및 그 보상을 주제로 하는 집합적 형태의 또다른 규정의 영역이 있는 바, 이는 민사법적인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독일연방피해보상법(Bundesentschaedigungsgesetz : BEG)인데 민족사회주의(나치스)의 불법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피해의 실상을 규정짓는 광범한 동법의 규정중에서 단지 직역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피해의 처리 및 자유의 박탈에 대한 피해의 처리와 같은 두가지만 취급해 보고자 한다. 본 법은 일벌할때, 원칙적으로 일시금 보상(Kapitalentschaedigung), 즉 특정 상태하에서 연금선택권(Rentenwahlrecht)과 필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계산방법은 매우 통괄적이다. 공무원의 원호금(Versorgungobezuege)과 결부시켜 지불율이 보장되어 당사자의 직업상 지위에 따라 비교가 된다. 이때 일시금 보상은 상한선으로 제한되는 바 동법의 원안에서는 25,000 DM이었으나 현재 40,000 DM으로 되어 있다. 그 반대로 구금피해보상(Haftentschaedigung)은 불변인 바, 구금월당 150 DM으로서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고 일당 5 DM이다.

필자들에게는 이자리에서 독일연방구속자지원법(Haftlingshilfegesetz : HHG)이 왜 논란되지 않나 의문스러울 것이나 왜 동법이 보상의 성격을 띠지 않고 있나를 피력해 보겠다.

II. 통일비용의 중립성 대 피해자 보상 ?

독일연방의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Str EG)에 따라 판결절차가 취해진다면 틀림 없이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은 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은 그와 같은 방법을 가로 막아 버렸다. 그 발단이 바로 통일조약 제18조 1항인데, 이 조항은 1990년 10월 3일 이전의 동독법원의 판결일체에 대한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치주의 국가에 위배되는 모든 결정은 복권(통일조약 제17조)이나 판결무효화(통일조약 제18조 2항)와 함께 될 수 있다. 구동독 재판의 독일연방에의 수용이라는 관점하에 당사자들이 판결취소를 위해 Str EG에 따라 어마어마한 신청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동법에 대해 입법권자는 통일과정의 비용의 중립성(막대한 비용 고려)때문에 우회하여 통일조약에 따라 Str EG에 제16조 a를 삽입시켰다. 동 조항에 따르면 동독재판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혜자의 권역에 속하지 않게 됨이 분명하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복권과 판결무효 및 해당 추가규정에 따라서만 판결되도록 되어 있다.

동독의 1990년 9월 18일자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 RHG)은 "사회복지적 조정급부"(soziale Ausgleichsleistungen)의 종류와 규모에 있어서 서독의 구속자 지원법(HHG)의 제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RHG 제7조). 판결무효화에 대해서는 미결수 구금 및 금고형에 대한 보상에 관한 동독의 구형사소송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동독 형사소송법(StPO/DDR) 제369조 이하가 관련조항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광범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데 Str EG와 필적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판결무효화가 "유리"한 뜻인데, 따라서 Str EG의 신조항인 제16조a는 국고부담을 줄이고자 구속자지원법(HHG)에 따른 제한적 급부와 연계된 지급한도제(Kappungsgrenze)를 도입하였다.

이로서 새로운 독일법은 1990년 10월 3일부터 SED정권의 피해자에 대하여 RHG/HHG와 StPO/DDR의 제31조 이하 및 제369조 이하에 따른 판결무효규정의 두가지의 방법으로 불법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외에 구서독의 HHG 역시 신실 5개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바 그 제한적 급부가 복권 절차 및 판결무효화 절차의 수행과 무관하게 신청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3가지 항목은 한가지 동일한 노력과 연계되어 있다. 즉 조정금 지불은 사례와 관계 없이 단일한 지급 상한선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는 당사들에 대한 지급액을 대등하게 하려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 개별경우에 있어서 판결무효화 규정 및 복권규정 또는 HHG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 문제는 우연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볼때 이와 같은 대등취급의 기본원칙은 상한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음을 일수 있다. 게다가 통일조약에는 신청권자에게 추가적으로 신청절차에 있어서의 애로라는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그 결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급부의 균등화, 즉 그 입법과정이나 규정내용에 있어 당면한 위 보상문제에 관한 해당조항이 없는 HHG를 적용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첫째로 대등취급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지급한도도 불가피하게 불균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 피해의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최고액으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보상액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불평등은 또한 지급한도의 이하 수준의 피해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등취급의 대상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자유박탈의 상태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인이 구금기간 동안의 임금이 수반되는 노동력의 손실을 주안점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에 덧붙여 수많은 경우에 걸쳐 국가가 유발시킨 소유권 손실 및 구금과 관련된 신체피해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 다음호에서나 마찬가지로 - 전술한 두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법률질서는 자유의 박탈을 비물질적 피해로 분류하고 있다. RHG는 그와 같은 손상을 HHG를 참고하여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나 후문하기로 한다. 판결무효화 규정에 있어서 비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HG가 보완적이면서, 더우기 자체적인 법률로서 적용될 수도 있다. 단순한 자유의 박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면 3가지 항목은 모두 당분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직업분야에 있어 구금으로 인한 피해(Haftfolgeschaeden)의 양상은 다르다. HHG는 - 자체적인 법률로서나 RHG의 범위내의 법률상의 효과로서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등하게 - "놓쳐버린 이익"에 대한 피해보상의 규정이 없다. 그와 반대로 Str EG의 새로운 제16조 a에는 판결무효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동독의 StoPO/DDR 제369조 이하에 따른 "피해구제의 구비요건, 종류, 액수"에 기존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더우기 이때에도 HHG에 의한 최고액의 급부한도 - 어느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 를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한선의 이하에서 두가지 절차에 대한 전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함이 사실로서 증명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사례를 들어보자. 공학사로서 필출시도의 실패로 2년간 구금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자로서 월 1,000 동독 Mark를 벌었던 자는 복권법에 의한 신청으로 자유의 박탈에 대해서 HHG의 적용으로 최고 1,920 서독 DM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만일 그가 판결무효화의 방법을 고수하면 소득결손을 고려한 보상을 받게되어 - 1:2의 비율에 의한 교환을 고려할때 12,000 DM이 되는데 이때 규정상 약간의 공제액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이외도 그는 HHG에 따라 전술한 1,920 DM에 해당하는 구금중의 비물질적 피해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로써 그는 HHG의 상한선인 최저수준의 보상을 받던가 아니면 그가 만일 자유의 박탈을 단순히 복권절차나 직접 HHG에 따랐을 때보다 무려 7배나 더 유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아주 희귀하지만 많은 이와 같은 사례로부터 입법권자가 기도하는 대등취급의 생각은 현실에 있어서는 기존하는 규범과 함께 달성될 수 없음이 증명된다.

통일조각의 형식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제한사항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동독에서는 판결무효화가 원래 검찰과 법원의 수뇌들이 재판을 위로부터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1990년 6월 26일자 형법 개정법에 따르면 판결무효화가 단지 최고법원의 검찰총장에 의하여,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자 개인을 위하여서만 신청될 수 있었다.

판결무효화에 대한 이유제출기간 - 판결무효화 신청은 사실에 입각,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은 3개월로부터 1개월로 단축되었다.

통일조약과 함께 이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도 판결무효화 신청권이 부여되었으나 1개월간에 걸친 판결무효화에 대한 이유제출기간의 압박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통일조약의 해당규정에 따르면 구동독 형사소송법(StPO/DDR)중 판결무효화 규정의 계속 적용이 구서독 행정소송법(StPO/West)의 제349조의 척도에 맞추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위험부담이 아닐 수 없다.

통일조약은 상고심에 있어 엄격한 상고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결정으로서 그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동독 법전에 숨겨져 있는 1개월간의 이유제출기간을 놓쳐버리면 이미 이로서 판결무효화 신청은 부적법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

판결무효화에 대한 지극히 엄격한 요구조건은 그 권한이 직업법관의 수중에 있었던 기구인 한 정당한 것이 었다. 그런데 유죄선고를 받은자에게 대하여는 그에 대한 판결이 법지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에 일치하는지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동일하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모순된 일일 뿐더러, 이는 판결 무효화의 장애적 기구임이 실증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왜 복권법의 우유부단한 조항이 직권조사주의(Amtsermittlungsgrundsatz)가 행정재판절차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판결무효화 절차에도 유용하게 되지 않는지, 비판적인 의문이 제기되도록 한다. 기술한 바와 같은 판결무효화의 어려움 때문에 취소절차의 대중은 RHG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통일조약의 체결시점인 1990년 8월 31일 현재, 1990년 9월 18일자의 복권법(RHG)은 아직도 제출된 상태가 아니었다. RHG의 원형태는 형사법적인 것 뿐만 아니라 행정법적이고 직업적인 의미의 광범한 복권이 내포되어 있었다.

1990년 9월 18일자 통일조약 추가합의사항 - RHG 발효와 동시 - 에는 구성요건의 2/3가 삭제되어 형사법적 복권만 남아 있게 되었다. 복권은 "법치주의국가적 관심사와 인도주의적 갈망에 따라 형사법상의 유죄선고의 오점으로 피해받은 자들... 해방하고...", 그리고 복권은 "적정한 보상규정으로 저리되어야 한다".

강제로 징발된 재산에 대하여서는 "미해결 재산문제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oegensfragen : 2 Abs. 3 RHG)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박탈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이나 물질적 및 기타 불이익" (통일조약 제17조)에 대해서는 단지 "사회복지적 조정급부" (RHG 제7조)만으로서 성공적 복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정급부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서는 RHG는 구속자 지원법(HHG)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신체상의 피해의 관점으로 볼때 이는 독일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 : BVG)의 지속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급부의 광역성을 실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부터 SED 불법정권의 피해자와 전쟁피해자에 대한 대등관계 설정이 따르게 되는 바, 물질적으로는 당사자들에게 이계급사회(Zwei-klassen-Gesellschaft)가 전개되는 것이다. 즉 1990년 5월 18일 (경제.통화.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 Vertrag ueber Wirtschafts-, Waehrungs- und Sozialunion) 이전에 동독지역을 떠나버린 자는 BVG에 의한 완전무결한 급부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와 반대로 상기 결정일에 동독에 살고 있던자는 통일조약에 명시된대로 동.서독의 평균연금보다 훨씬 절감된 액수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HHG의 적용과 함께 조정방안을 모색되어야 하며 별로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은 "물질적 및 기타 불이익"조건에 당사자 대다수의 생존에 종대한 2가지 복잡한 요소가 숨겨져 있다. 즉, 첫째로 당사자들은 구금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사용하고, 개인의 생존을 위해 결실을 이용할 노력이 저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구금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는 직업적 승진의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또다른 요소중에는 비물질적 피해, 즉 자유박탈에 대한 보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이와 같이 분별력이 있는 구분은 벌써 독일연방보상법(Bundesentschaedigungsgesetz : BEG)에서도 감지되고 있으나 구속자 지원법(HHG)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90년

1951년 3월 이후 결정된 절차에 대하여서는 그 규정으로부터 HHG의 제9조 a로부터 c절에 의한 적용 보조금만이 남게 되며, 그 액수는 구금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적용보조금은 기회를 놓쳐 버린 노동소득이나 직업상의 승진의 피해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적용보조금은 그 결과로 보아 비물질적 자유박탈에 대한 손실자체의 대체라는 시도라고 가장 근접적으로 비교할수 있다.

HHG 제9조 a로부터 c에 이르는 계산상의 결과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HHG 제9조 a의 근본적 규범에 따라 제2구금연도를 포함하여 일당 1 DM의 적용보조금이 보장된다. 이 액수는 제3 구금연도의 개시와 함께 일당 2 DM으로 증가되었다가 일단 최고액 15,420 DM에 이르러 제한된다. 이에 추가하여 개인적, 개별적인 정치동기로 인하여 구금되었던 자는 매 구금월간 50 DM씩, 제3 구금연도부터 매월 150 DM, 제5 구금연도부터 매월 210 DM을 더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추가적용 보조금은 20,250 DM의 자체적인 보상한계에 도달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용 보조금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고 다만 HHG 제9조 a에 적용되어야 할 사람은 HHG 제9조에 따라 장기구속자일 경우, 제5 구금연도의 개시와 함께 매월 20 DM의 또다른 적용보조금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 액수는 구금연도가 매 2, 4, 6년이 경과함에 따라 각각 20 DM의 또다른 적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액수는 구금연도가 매 2, 4, 6년이 경과함에 따라 각각 20 DM씩 증가된다. 이에도 보상한도 15,420 DM은 적용된다. 분명치 않은 등급기준을 가정해 법률규정에 의한 보상규정 원칙과 혼동해서는 안될 일이나, 전기간에 관련해 볼때 일부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매 구금일당 최고 7 DM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훨씬 그보다 하회하고 있다.

이미 HHG의 법률 공식명칭상 암시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곧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지역 이외에서 정치적 근거로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법률" (Gesetz ueber Hilfsmassnahmen fue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uenden in Gebieten auss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in Gewahrsam genommen wuere)이다. 1955년도의 동법 제 1원안은 단지 냉전중 신체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로서 신체적 피해에 기준한 독일연방원호법(BVG)의 보상에 못지 않은 급부가 개진될 수 있는 절단 고려하였다. 구속자 지원법(HHG)의 제9a로부터 c에 있는 적용보조금은

훗날에 결정된 것인데 이를 위해 벌어진 의회내 논쟁은 구금기간과 연계된 보조금의 채택여부 및 방법 때문에 입법권자의 동기 유발에 맡겨두고 있는 상태다.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인민봉기가 발생한 이후 1954년 여름, 정부측의 연립내각과 야당측은 공히 독일연방의회(통칭 : 하원)에 인민봉기 진압후의 제포선봉에 의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을 보장할 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독일연방정부에게 그에 부응하는 법률안을 작성하여 독일연방의회에 결의안으로서 제출할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무는 "담당전문부처의 곤경 때문"에 1년후에나 수행되었던 바 해당 연방기관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동법과 함께....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유의 폭신에 따라 자신을 희생했던 독일인에 대하여 전독일적 의무수행자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구권 소송제기 가능성은 사민당(SPD)측으로부터 구금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청구권에 의한 촉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았는데 독일연방정부는 사민당에 대하여 "법적 청구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재통일된 이후에나 비로서 최종규정이 결정될 수 있다"는 논점으로 맞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도 독일연방정부의 예산중에는 1,000만 DM이라는 기금이 있었는데 "이 기금으로 독일연방 실항민,피난민, 전쟁피해자부는 곤궁에 처해 있는 구정치구속자를 길맞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957년 3월 13일부 개정법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임의급부(Kann-Leistung)는 HVG 제9조 a에 따라 일회성 지불에 대한 법적 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도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미 그 2년이 지난후, 부족한 급부액은 제2차 법률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1959년 여름 SPD 원내교섭단체는 독일연방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였는 바, 이 의안은 "독일연방보상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소련점령지구 출신으로서 정치적 구속자로 인정된 자에 대한 청구권 규정"을 원용하자는 것이었다. SPD는 나치스 정권 피해자를 위한 규정의 적용을 통한 이와 같은 상환청구에 대하여 "독일에는 인간의 법적 권한을 손상시킴으로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복권시킬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야닌 이 법이다. 피박해자라는 점에서 보면 같은 문명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의안 제출의 근거를 개진하였다.

그러나 독일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SPD의 동일화(Gleichsetzung)에 대하여 재정상의 이유 및 법률상의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 결과 단지 구속자지원법(HHG)의 제9조 b만이 도입되었으며, 독일연방 피해보상법(BEG)에 대한 편입은 독일연방의회내 정부여당의 다수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다. 제3차(1957년) 독일연방의회 총선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CDU/CSU 원내교섭단체 및 이로 구성된 독일연방정부는 구속자 지원법과 독일연방보상법의 병행화를 거부하였다.

"독일제국의 승계국가인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사회주의(나치스) 독재지하에서 감행된 위법성과 범죄에 대한 죄책은 물론 없지만, 독일민족과 전세계 만방에게 그와 같은 죄가에 대해 대리책임을 질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특수한 법률로서 그 피해자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은 소련점령지역(동독)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대리책임을 질수 없으며, 이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명확성에 관한한 보상과 지원이라는 두가지 문제는 분리되어야 하며 법적 규정에 있어서도 이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통일의 날이 닥아올 막연한 미래로 미루어져 버렸다. 즉, 정치적 구속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곤궁극복지원(Ueberbrückungshilfe)과 생계개재지원(Starthilfe)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은 수난받은 모든 피해나 손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전독입법권자를 통한 최종적인 규정없이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에트 체제에 의해 판결된 정치적 구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전독 입법권자의 결정사항으로 유보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구속자 지원법은 의도적으로 잠정적이면서 보상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이고 경제적인 적응을 위한 생계개재지원에 이바지하는 임시 규정이다".

이와같은 두가지 유보사항은 최근 수개월 이래로 무효가 되었는데, 전독 입법권자도 생겼고 이제 독일연방공화국은 그속으로(흡수되어) 소멸된 동독의 권리승계자가 됨으로써 구동독 재판은 승인(Nostrifikation)을 통해 인정되었다. (통일조약 제18조 1항) 따라서 임시법인 HHG는 RHG에 수용되었거나 그속에 계속 유지가 허용되었어야 했다.

Ⅲ. 통일조약 대 인권협정

지금까지 구속자지원법(HHG)이 그 취지상 복권법(RHG)의 보상문제를 보충할 소명을 부여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HHG에게 판결무효화의 추가규정으로 액수를 제한해야 할 추가적인 과제가 부여될 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경탄해 마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법적 사고가 전연 다른 관점하에서 나타난다. 독일연방공화국 역시 서명국인 유럽인권협정(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 MRD)의 제5조 5항은 불법 자유박탈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서부독일의 법률학 및 법조계는 이와 같은 의무를 구금중의 물질적, 비물질적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보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동독이 인권협정의 서명국이 아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동독의 판결무효화법 추가규정중 구금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관련, 인권협정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권한이 잘 실현되지 않았음은 틀림없지만, 현재 도입된 지급한도제와 비추어 볼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설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협정당사국인 독일연방공화국 및 그 입법권자가 재통일 과정에서 - 긍정적인 법률로서 간주되며 인권협정과 일치하는 - 동독의 보상규정을 이제 결과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을 뿐더러 유럽인권협정 제5조 5항에 대한 독일의 이해와 전연 동떨어진 규범으로 대체함은 물론, 인권협정과 일치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Str EG)보다 훨씬 뒤지게 한다면, 이는 인권협정의 의의와 목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

Ⅳ.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까지 상술한 것은 기존규정이 미처 풀지 못한 숲속의 미로를 헤매는 듯한 지나친 취약성이 있음을 지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상술은 주로 피해보상규정을 비롯하여 개별사건에 있어서 그 결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소송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입법권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고려사항을 작성해본다.

원칙적인 문제, 즉 조정급부에 이르기 위한 3가지 해결방법(판결무효화, 복권, 구속자 지원법)이 꼭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대두되는데, 이와 같은 3중 달성방법은 결론적으로 비현실적임은 물론, 복권과 판결무효화간에 분명한 구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단일한 해결방안을 추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또한 법무분야 및 행정분야가 매우 열세한 신설 5개주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단일한 해결방안이 전술한 3가지 방법으로 이미 수없이 많은 사건처리와 진행중인 현실에 비추어 볼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게 보인다.

해결규정의 3원화가 계속 유지된다면 당사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대에의 길이 모색되어 짐으로써 진정한 균동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된다. 즉 다른 절차 선택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상이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피해보상을 물질적으로만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실직이나 승진피해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왔는 바, 이는 능률 본위사회(Leistungsgesellschaft)의 이상과 모순되며 현재제 내에서 노동생산력에 비해 소유권의 가치절상이라는 불균형 현상을 조래하게 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급한도는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Str EG) 및 판결무효화법의 피해보상규정이 개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므로 걸맞지 않은 것이며, 손해배상법적 관점으로 볼때 예도 이와 같은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규정을 국가의 재정적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비록 제2차 세계대전직후 독일연방 피해보상법의 제정시 관철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실상을 고려할때 피해보상의 상한선 제정의 정당화를 위한 이유(Rechtfertigungsgrund)는 찾을 수 없다.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유의 박탈에 대한 비물질적 피해보상은 구동독 고도소와의 관계 때문에 구속자지원법(HHG)의 수준에서 계속 수행될수 없는 것이라면, 그 결함이 바로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Str EG)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독일연방피해보상법(BEG)의

규정이하는 결코 고려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국가재정을 꼭 고려하려 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BEG와 Str EG 사이의 평균치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미 소송절차의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기존구조를 극복하려면 약식절차를 통한 수많은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로써 명백하게 정치적 특색을 띄는 유죄판결 및 자유의 박탈과 같은 사례는 다른 사건과 구분할수 있게 되며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법원의 업무부담은 눈에 띄게 줄게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개별사건을 개별적 절차 및 구제적 절차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송절차 자체는 그 원칙상 당사자로 하여금 불만족스럽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며 기존 복권법의 조항으로부터 강력하게 직권조사주의로 개방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것은 변호사를 통한 개별 사건의 지원이 바로 신설 5개주에서 장기간에 걸쳐 보장될 수 없다는 현실적 내지 물질적 근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구동독지역에서 사법체계 확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기간 및 이유 제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아직까지 신설 5개주의 단 한주에서도 관할 법원내에 계획된 복권판결부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결과 형법상의 복권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인식은 당분간 대중의 여론은 물론 사법기관을 지나쳐 버리고 있다.

단순한 국가재정적 동기로 인해 소송절차 구성이나 피해보상금 액수가 결정되는 현실은 기여코 저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날에 또다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

舊東獨地域 司法體系 確立과 法官 再任命問題

(’91. 7)

I. 基本法에 따른 判事의 地位

- 西獨은 1945年以後 나치스政權에 의해 폐지되었던 法官 獨立性의 復活을 통해 法治主義國家의 基本原則인 三權分立의 原則을 確立하였는 바, 基本法 제 9장에 이에 해당하는 廣範한 內容을 規定하고 있다.
 - 이와 같은 背景下에 法官職을 遂行하는 자는 專門知識은 물론 人格的인 面에서 特別要件을 갖추고 責任感이 있어야 한다는 結論이 導出된다.
 - 따라서 法官은 精通한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 엘리트로서 人格이 高邁해야 하며, 合法性을 쟁취하려는 市民의 마지막 保護者라는 使命感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며, 體制에 順應하는 機會主義者여서는 안된다.
- 이에 반해 東獨政權은 司法權의 獨立을 無視했는 바, 法官들은 體制에 예속된 指導層으로서 SED라는 國家政黨의 一般路線을 偏頗的으로 盲從하였고, 黨의 “階級認識 觀點”에 尤리하게 法律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西獨의 法律秩序 및 法律認識과는 正反對되는 것이었다.

II . SED의 統治機構로서의 社會主義的 法律行政

- Lenin은 市民社會的 法院機構를 破壞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法院으로 代替하는 것이 “ 프롤레타리아革命의 絕對的 義務” 라고 표현하였다 .
- 그에 부응하여 東獨에서는 法治主義國家에 대한 思想은 물론 自由民主主義國家의 相互 牽制 및 均衡을 維持시키는 裝置로서 獨自的이고 不偏不黨한 立法·行政·司法의 三權分立의 原則이 廢止되었다 .
- 結果的으로 東獨의 司法府는 마르크스 레닌主義 幹部政黨인 SED의 主導權下에 있었으며, 司法府가 行위를 하기 위해 絕對的으로 필요한 基本原則은 SED가 決定하며, 司法府內의 黨組織은, 法律行政機關이 黨의 決定事項을 法律行政에서도 實現할 수 있게 되도록 監督을 했다 .
- 그리하여 法治主義國家라는 本質에 根本的으로 門外漢인 指導層이 大法院은 물론 法務部에서조차 法律行政을 遂行했던 바, 이들 SED 追從者들에 의해 決定된 原則들이 모든 法院에게 “ 가장 效率的인 指針이요 法律規範의 올바른 政治的 適用” 으로서 公布되었다 .

Ⅲ. 東獨의 法律行政에 있어서의 SED의 幹部充員政策

- 國家機關을 비롯하여 法律行政에 있어서의 SED 政策의 核心은 幹部充員政策이었다.
“(黨)幹部가 모든 것을 決定한다” 라고 스탈린은 누누히 力說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리되었다.

Stalin에 따르면, 幹部는 우선 勞動者階級の 政策을 파악해야 하며, 이와 같은 政策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正確하게 實現할 能力과 態勢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結果 幹部業務는 組織的, 技術的 手段의 適用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黨의 主導權 確保를 위한 政策的·組織的 手段이었다.

- 法院分野 幹部政策의 組織은 東獨 法務部가 관할하였으며, 檢事는 東獨의 大檢察廳이 관할하였다. 判事나 檢事の 採用은 물론 法律學 專攻 大學生 選拔을 위한 엄격한 計劃이 確立되어 있었다.

法務部가 幹部業務 遂行上 充足해야 할 階級的 任務는 司法幹部의 65%가 勞動者階級 出身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法學志望 大學生으로 하여금 大學에 入學하려면 大學卒業前에 工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女性分布 역시 幹部政策의 特徵이었다. 地區法院 및 郡法院의 女性分布는 55%였으며, 幹部級의 女性分布는 약 30%나 되었다. 많은 女判事와 女檢事들이 妊産婦 保護施策으로 缺勤이 잦아지자 女性人力 增員을 위해 法科大學生 選拔時 男女比率이 3:1에서 後에 2:1로 변경되었다.

IV. 東獨에 있어서 法曹人의 教育

- 東獨의 判事와 檢事 教育과 관련하여 大學의 法律學은 소위 社會主義的 單一教育體制와 직접 關聯이 있었다. 1968年度 社會主義 教育改革과 함께 大學의 法律學 研究는 社會主義的 法曹人을 養成할 任務가 부여된 뒤 勞動者階級の 階級的 觀點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政權의 幹部政策의 對象이 되도록 하였다. 法曹人의 “階級的 教育의 目標”는 判事, 檢事, 國家公證人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特性이 教育을 통해 習得되도록 指示하고 있다. (當時 法務部長官 Kurt Wuensche)

- 獨逸民主主義共和國에 대한 忠誠과 勞動者·農民 權力의 완벽한 強化를 위해 모든 能力과 全力을 動員할 것.
-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확고한 社會主義 原則 遵守 및 政治的 信賴性 維持

- 社會主義 建設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現象에 대하여 非妥協的 姿勢 堅持
 - 勤勞者와 긴밀한 관계 維持, 그들의 經驗을 이용하여 社會主義的 集團主義의 促進 및 開發
 - 社會主義的 10大 道德律에 立脚하여 社會生活과 政治活動에 있어서 뚜렷한 個性과 模範的 行動
- 大學教育은 基礎專攻과 專門專攻으로 分類되었으며, 4年間의 專攻後 Diplom 學位가 수여되었다. 70년초 이래 東獨의 法律行政의 專攻內容은 다음과 같다.

- 基礎專攻

- 마르크스 레닌主義 哲學
-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政治經濟學, 東獨 社會主義의 經濟制度
- 獨逸 勞動運動史, 現代 勞動者階級의 歷史的 任務와 黨의 主導的 役割

專門專攻

- 刑法 및 刑事訴訟法
 - 民法 및 民事訴訟法
 - 家族法
 - 勞動法
 - 農業生産組合(LPG)法
 - 土地 및 公證人法
- 및 其他科目에 관한 基礎知識

- 이와 같은 大學教育의 內容과 水準은 西獨의 法律學 專攻教育과는 全然 比較할 수 없는 것이었다. 決定的인 差異點은 專攻內容에서 뿐만 아니라 法律學的인 研究水準이나, 學術書籍의 出版量, 그리고 시험의 수준에 있었다. 司法官 試補에 비교될 만한 實務訓練과 卒業試驗인 第2次 考試와 같은 것이 東獨에는 없었다. 단지 지난 數年間 判事나 檢事로서 거쳐야 할 1년간의 實習期間이 고작이었다.

V. 統合條約上의 判事와 檢事に 관한 審査節次

1. 統合條約上의 審査節次

- 東獨 法曹人들은 全然 다른 法律文化속에 있었으며, SED의 道具化를 면치 못했는 바, 黨派的인 判決을 통한 容疑者와 被告人에 대한 裁判節次上의 權利 剝奪 등으로 被害를 입은 東獨住民들은 쉽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民主主義的 法治主義國家에서는 基本法上의 法治國家的 基本價値를 守護할 수 있는 사람만이 判事나 檢事로서 계속 勤務할 수 있기 때문에 統合條約은 法官으로 계속 勤務할 수 있는 東獨法曹人에 대해 法官選拔委員會를 통한 審査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東獨判事 中 審査後 選拔된 者는 우선 新設 5個州에서 試補判事 또는 時限附判事로서 勤務하게 되며, 최소 3年, 最長 5年間의 勤務以後 終身判事로서 任命될 수 있다.

- 統合條約에 따르면 判事選拔委員會 活動 및 檢事再任用 審査를 1991년 4월 15일까지 完了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期限 遵守는 審査가 실제 進行되면서 實現不可能한 것으로 立證되었다. 왜냐하면 審査받아야 할 判·檢事들이 審査委員會 委員으로 選出되었었기 때문이다.

2. 各州의 法曹人 審査 實態

- 1990년 2월 Modrow 政府는 東獨政權의 判事와 檢事에게 政治的 부담이 될만한 經歷을 제거하고, 그들의 幹部書類를 좋게 고칠 수 있도록 措置하였는데, 이것이 또 다른 問題點으로 登場하였다. 判事와 檢事에게 송부된 幹部書類中 일부는 履歷書마저 없어져 버렸으며, 대다수의 書類는 1990年以後의 經歷만 記錄되어 있었다.
- 또한 聯邦 構造로 인하여 新設 5個 各州는 判事 選拔과 檢事任用을 위한 自體 檢討基準 設定時 相異한 基準을 設定하여 問題點이 發生하였다.

公開輿論에서 各 州間의 合意點 摸索이 强요되었지만, 오늘날까지 達成되지 못하고 있다.

“出身地域 恩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한 州에서 시험에 合格한 자가 다른 州에서는 엄격한 要求條件때문에 不合格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反對現象도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3. 작센州의 判事 選拔 및 檢事 任用基準

- 檢討가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Sachsen州의 判事 選拔 및 檢事任用委員會 委員長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項에 기준하고 있다.
 - 申請者가 과거의 經歷에 비추어 市民들로부터 法治主義國家的 司法府 代表로서 信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 申請者가 任用될 경우, 獨逸聯邦共和國의 價値體系와 法律秩序로부터 導出되는 精神과 法律條文에 忠誠할 것인지 여부
- 各 志望者들로부터 上記와 같은 주된 質問에 대한 答辯이 個別的으로 聽取되며, 特定 判斷基準에 의한 複合問項은 設定되지 않았다.

VI. 展 望

- 各 州 政府의 이와 같은 多樣性으로 인하여 審査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 事前豫測을 전연 할 수 없는 형편이다.

申請書가 600건이나 接受된 Sachsen州가 가장 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즉 Sachsen州에서는 檢討者의 1/3이 不適格者로 判明되어 있으며, 2/3는 계속 任用의 肯定的 判斷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월말 처음으로 完了된 追後 選拔結果는 50%에 이르고 있음) 東獨法官中 90%가 심사에서 不合格할 것이라는 90年末 91年初에 행한 聯邦 法務部의 國務次官의 發言을 고려한다면(舊東獨 出身法官으로 구성된) 選拔委員會가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 이와 같은 추세는 新設 5個州에 대하여 과거 SED 政權下에서 그 시녀와 다름없던 法曹人들에 의해 대부분의 判決이 또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곧 Sachsen州의 Heitmann 法務長官이 말한 것 처럼 “ 평화스럽게 進行된 革命의 裏面 ” 이라고 하겠다.

- 나치스體制가 崩壞된 以後와 比較해 보면 1945年 직후 나치스 黨員이었던 判事와 檢事는 모두 公職 으로부터 파면되었다가 일단 脫나치스化가 遂行된 이후 다시금 判事나 檢事로 採用되었다. 이에 대해 西獨의 各界 各層은 西獨司法府에 대해 맹렬 한 비난을 했으나, SED政權이 崩壞된 오늘날, 당시의 실정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批判을 했던 者들이 沈默을 固守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나치스가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이 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이와 같은 問題點을 “나치스法官의 컴백”에 반대했던 것과는 무엇인 가 다르다고 認識했기 때문인가?

이와 같은 나치스法官의 복귀는 基本法上의 司法 體系 確立을 위한 적지않은 擔保였으며, 이제 우리 는 그와 같은 擔保와 또 다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나치스와 비슷한 方法으로 SED시스템도 1989年에 敗亡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치스體制가 根本的으 로 否定되었기 때문에 脫나치化 以後 再任用된 判事 와 檢事中 비록 나치스黨員이었던 者들도 民主的 法 治主義國家의 改善에 忠誠을 다 했다. 그러나 SED는 비록 後繼政黨形式이지만 금지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살아있다.

○ PDS라 改名한 후 거대한 財産을 계속 維持하면서 聯邦政府가 政黨과 議員에게 보장하는 特惠를 누리고 있다. 再任用되는 判事나 檢事は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基本法이 提示하는 外觀上의 法官 職責에 맞는 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를 內的으로 確信化 해야 한다. 이와 같은 過去의 清算과 未來에 대한 方向設定에는 政治教育의 役割이 중요하다.

○ 또한 專門性의 提高에 있어서도 할일이 많이 있다. 舊東獨地域 出身 判事들이라 할지라도 3流 判事로 보아서는 안될 사람도 있기는 하나 統合條約 規定은 專門的인 職能이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幻想을 現實로 만드는 것이 將來의 任務이다.

東獨의 法律體系와 西獨의 法律文化間의 差異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考慮할 때, 新設 5個州에 있어서 法治國家的인 司法體系 確立은 아직도 많은 時間을 要하고 있다.

軍 事 分 野

獨逸의 軍事統合

— 韓國 國防大學院生の 訪問에 즈음하여 —

(’91. 10)

1. 일반사항

- o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은 독일 군병력에 한 전환점이 되었음.
1990.10.3일부로 전 동독의 인민군(NVA)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독일 연방군은 1955년 군창설 이후 군조직을 대규모로 재조직해야 하는 임무에 직면하게 되었음.
연방군은 1994년까지 군병력을 370,000명까지 감축시킴과 동시에 전 동독 인민군의 일부분을 인수받아 구동독지역에 배치해야 되는 과제가 있음.
군병력을 감축시켜야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동독 인민군중 인수될자들의 수도 매우 한정되어 있었음. 극적인 독일통일은 관계 군인들이나 군속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못했음.
- o 1990.10.3일자로 연방군은 새로 편입된 5개주에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했음.
 - 전동독 인민군으로부터 통수권을 인계 받은후, 짧은 시간내에 새로운 지휘조직을 설치하는 것
 - 새로운 연방군 조직을 위한 전 동독 인민군의 선발 및 확보
 - 대량의 무기 및 탄약의 인수
 - 전 동독 인민군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정리

2. 조 직

- 구동독지역에 지휘조직을 구성하는 준비기간이 아주 짧았음.
주재국 수상 콜이 1990.7에 소련 수상 고르바초프와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협의했을때 통일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음. 대부분이 그 당시에 통일이 1990년에 성취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음. 8월에서야 통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 예측되고 심지어는 9월이라는 얘기도 있었음. 10.3에 통일이 되었을때 연방군은 몇주내에 조직과 인사면에서 준비를 하여야 했음.
- 국방장관은 전 동독 국방부가 소재했던 베를린 근교 Strausberg에 세계의 근무소를 설립키로 함.
 - Schounbohm 중장 예하에 동부연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9개월간 동부 독일에 군병력의 재조직 작업에 착수했음. 7.1부로 동 사령부는 각 군으로 소속되어 해체되었고, 이에 대체하여 육, 공, 해군 사령부가 설치되었음.
 - 장기간의 과도기적인 행정처로 같은 위치에 국방부의 파견소로 설치 하였음.
 - 제7지역 병무청이 구동독지역에 지방 병무청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 상기 분야에서는 전혀 새롭게 시작해야 됨으로 난점이 많았음. 전 동독 인민군에서는 군인이 병무행정도 담당하였으나, 이제 이를 민간인으로 대체하여야 되었음.
- 통일후 12개월이 지난 현재, 연방군의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됨. 1990.10.3 이후에 2,500명의 "구" 연방군인이 구동독지역에 파견되었고, 이들은 지휘관 직책을 인계받거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음. 연대장급은 서독군인으로 대체된 반면에 대대나 중대장은 전 동독인민군 출신과 서독연방군 출신이 각각 거의 반수를 차지하였음.

놀라웠던 사실은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적과 적으로 대치되었던 군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협동을 잘 했다는 점임. 1990.12.31일부로 전역하는 전 동독 인민군들도 전역시까지 임무에 충실하였음.

- 동부연방군 사령부 예하에 있는 군대시설이나 군부대가 해체되는 과정은 신속히 이루어졌음. 몇군데 부대도 1990.10.3 이전에 폐지되었는데 이들은 군사재판소, 군법무관, 선전부대 등임. 현재까지 400 여개의 부대 및 군사기구가 해체되었음. 이와 병행하여 잔류하는 군부대는 조직을 변경하여 연방군과 일치하게 하였음. 간단히 말해서 한 사단이 여단으로, 연대가 대대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3. 군병력

- 동부연방군 사령부 예하에 있는 군병력 감축은 많은 진보가 있었고, 통일조약에서 취급한대로 실시되었음. 1990.12.31자로 전역한 장교나 하사관들은 근무년한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당시에 12,700명의 장교와 8,500명의 하사관이 전역하여 상기와 같은 혜택을 받았음. 군병력의 기능은 상기와 같은 전역으로 별로 손상이 없었으나, 당분간 구서독 연방군인들이 구동독지역에서 지휘를 맡아야 했음.
- 군병력 감축은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음.
 - 통일전 동독인민군 병력은 170,000명이었음.
 - 동독의 전환기 과정에서 군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었고, 통일전 모든 장성들과 50세 이상된 장교들은 퇴역하였음.
 - 1990.10.3부로 연방군은 89,000명의 군병력과 47,000명의 군속인을 인계받았음.
 - 1991년도 초에 동부연방군 사령부 예하에와 제7지역 병무청에 69,000명의 군병력과 41,000명의 민간인이 근무하였음. 5만명의 병역 의무자들은 1991.1.2자로 구서독에서 복무하게 되었음.

- 0 장기적으로 구동독지역에는 5만명의 현역과 19,500명의 군속인이 근무하게 됨. 군인의 절반인 25,000명이 장교 및 하사관으로 구성됨. 이는 현재 장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계속해서 연방군에 편입될 전망이 양호함. 장교들도 수요에 비하여 다수이나 하사관들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남.
 - 통일조약에 따르면 사병들은 우선 2년 기간으로 연방군에 편입됨. 동 2년중에 직업군인으로 인수할 것인가 결정이 됨. 한 장교가 직업군인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적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음. 2년간의 관찰기간중에 6,000명의 장교중에 4,000명만 연방군에 인수되었음.
 - 군병력내 조직변경은 구동독내에 증가하는 실업자와 상관하여 고려하여야 함. 그래서 연방군은 전역군인들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연방 고용청에서 상기 교육을 위임받아서 실시하고 있음.

0 전 동독인민군의 장교와 하사관들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란 모토로 실시한 구동독내 사회주의가 붕괴됨과 동시에 동독인민군의 지도자적인 위치도 사라지게 되었음. 과도기중에 당시 국방장관인 Eppelmann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었음.

이와는 반대로 사기와 질서가 흐트러졌음. 현역군인들(사병)은 상관에게 순종치 않고 장교들도 이들을 순종케할 명분이 분명치 않았음.

다른 한편으로는 전 동독인민군 장교들의 자제, 규율 및 군인들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음. 이와 같은 자세와 의지로 새로운 연방군에 편입될 준비가 되어있었음.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군대의 질서대로 '90.10.3.

통일시에는 마찰없이 연방군에 편입되었음.

당연히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상기와 같은 일을 내면적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었음. 이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십년이나 적대의식으로 훈련받은 구동독 인민군들이 사상적으로 기형아가 되지 않은 것은 놀랄만한 일임.

- 하사관들은 인계받은 사명을 완수할 자세가 갖추어졌으나 지휘하는데로 경험부족과 자격미달로 고역을 치루었음. 그 이유로서 전 동독인민군 하사관들에게 지휘능력이 교육되지 않았고 또 하사관 군단에 공통점이 부재하였기 때문임.
 - 장교들의 대부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과 시대에 맞는 지휘능력을 습득코자 노력하였음. 눈에 뜨이는 것은 최대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책임감을 "피하려는" 경향이었음. 종종 불필요한 주의와 주저하는 자세들이 전 동독인민군들이 감시국가에서 익힌 습관으로 대두되었음.
- 지휘능력이 두드러져 결핍되었음. 무엇보다도 이는 대화능력의 결핍과 사병들을 인솔해야 하는데 필요한 감수성이 결핍되어 있었음. 한 병사와 대화시에도 명령투로 언급하였음. 서독군의 군사교육 지침을 적용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더욱 많았음.

4. 장비(물자)

- o 구동독 군병력이 조만간 연방군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대량의 물자,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 총괄하여 보관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음.
- 연방군은 약 2,300대의 전화, 6,850대의 장갑차, 2,500문의 대포, 390대의 전투기와 120만정 이상의 소총을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하였음. 대량의 무기들을 총괄하여 보관하여야 했음. 상기 무기들을 감시해야 할 군인들의 부담이 막대하였음.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비숫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며, 무기판매는 엄격한 주재국 정부의 무기수출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검토중임.
- 두통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약 300,000톤 가량의 탄약 폐기문제임. 그중의 소량이 연방군에 소요되며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을 폐기시켜야 함. 연방군이나 동부연방군 내에도 이를 폐기할 시설이나 전문 기술자들이 부재하므로 이를 일반회사에 위탁하고자 함.

5. 군 소유 부동산

장비나 탄약을 일정한 곳에 집결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를 감시해야 할 문제 뿐 아니라 군부대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민간용으로 이양해야 되기 때문임. 구동독에 관청을 새로 건축하는 중이나 당장 건물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필요한 토지들을 소유권으로 인하여 지연하지 않기 위하여 상기 대책이 긴급히 요청됨. 국방부에서는 작년 11월에 600 여개의 군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였음.

연방군에서 계속 사용코자 하는 부동산은 수리가 필요함. 특히 위생 및 부엌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게 되었음. 몇년 후면 구동독지역에 배치된 병영도 구서독지역의 수준과 동일한 병영시설로 갖추어질 것임. 중기적으로 약 160억 DM의 경비가 소요됨.

6. 결 론

전 동독인민군을 인수하는 작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음. 현재 중점을 두는 것은 구동독지역에 군 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일임. 2년중으로 연방군에 편입된 전 동독인민군들의 위치는 연방군과 동일하게 됨.

각자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연방군내에 일류나 이류급의 군인이 존재하여서는 안되며,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것이 기대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많은 수의 군인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됨. 끝.

獨逸聯邦 國防省의 統獨 1周年 獨逸聯邦軍

現況報告

('92. 4)

1. 이 자료는 독일연방국방성이 통독 1 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그 간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독일연방군현황보고 자료를 전문 번역한 것임.

2. 자료 출처 :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Ein Jahr deutsche Einheit, Eine Leistungsblanz

der Bundeswehr, 1991. 10. 3.

1. 서문

독일통일 1주년 기념일인 1991년 10월 3일 독일연방군은 통일된 독일의 공동성장을 위해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현황보고를 하였다.

독일연방군 소속 군인들은 이미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기 오래 전부터, 그리고 통일된 직후에도 통합독일군의 형성 및 통일된 조국의 건설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던 역군들이었다.

통일된지 일년이 된 오늘 지난 날을 잠시 뒤돌아보며 연방군의 구축은 물론 신 연방주의 전반적인 발전에 관련된 독일 연방군의 기여를 살펴 본다. 1991년 4월 21일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대통령은 포츠담에서 개최된 사령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독일 연방군은 1년이 지난 오늘 지금까지 최대의 도전을 극복하였습니다. 자유와 정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독군과 동독군은 어느 정도로 연방군으로 통합되었습니까? 우리는 독일연방군의 통일독일의 공동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이점을 독일연방군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역동적 변천과정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귀관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신중을 요합니다. 분단 독일의 흔적은 도시와 촌락의 모습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의 양쪽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과 정서 속에도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독일연방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에 대한 지휘와 훈련은 내적 지휘 및 제복을 입은 국민으로서 모범을 통해 결정됩니다. 군인은 곧 우리 사회 질서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반영해 줍니다. 이와 더불어 군인이라면 사회질서의 가치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상 근무시에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방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그는 군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내적 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2. 새로운 시작

통독과 관련된 과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도전적인 것이었다. 시간이 초박했음에도 통일조약의 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금까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되어 있던 군을 인수한 후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연방군이 새로이 구축되어야 했으며 통합된 군인들은 궁극적으로 전독연방군의 일원이 되기 위해 과도기를 거쳐야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같은 것은 독일연방군 창설이래 최대의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이와 같은 임무는 이미 통독의 날 수주일전부터 착수되었다. 독일 연방국방성의 연락군부대가 스트라우스베르크 소재 동독국방성으로 파견되었다. 육군, 해군, 공군부대가 동독인민군부대와 근무처에서 최초의 현황파악에 돌입했다. 이와 동시에 독일연방군 소속 군인과 군속 2,000명이 신연방주의 독일연방군 구축에 참여하겠다고 자진신고했다.

통독후 제 1차 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했다. 즉 지휘능력과 안보의 확보, 민주주의의 가치와 내적 지휘를 무엇보다 구 동독인민군 소속 젊은 군인들에게 습득시킴, 서독측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구 동독군의 무기와 탄약에 대한 감시, 구 동독지역의 영공 주권의 이수 및 비행안전의 확보, 소련군 서부주둔군과의 협력을 위한 조직체계의 구축, 구 동독인민군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등이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제는 중앙군사기획기구인 독일연방군 동독사령부, 제 VII 국방지역행정청, 독일연방국방성 동베를린사무소에 의해 관장되었다. 1991년 7월 1일자 독일연방군 동부사령부의 폐기에 즈음하여 독일연방국방성장관 게어하르트 스톨텐

베엑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내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경제적, 사회복지적으로 동일한 생활조건을 시급히 실현하는 것임은 틀림없으나 비단 이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무시하던 독재체제가 남긴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신적 잔재로서는 동독 인민군이 체제의 안정과 보전을 위해 사용하던 수단이자 방편이었던 이데올로기적 무장과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초기단계가 성공하였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해 마지 않을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것 중에는 특히 구 연방주출신 군인과 민간 근무자들의 모범적인 근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개인적 부담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가서 미지의 조건하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또한 구 동독인민군 출신 대다수 군인들의 업적과 기여가 없었더라면 최초의 공동보조란 불가능하였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변혁과정과 새로운 구축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협력함에 있어 그들이 보여 준 준비태세와 솔직대담성은 새로운 출발과 공동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3. 신뢰조성

독일군 전체 병력수를 1994년 말까지 370,000명으로 감축시키기로 한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합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소련은 1994년 말까지 독일지역 주둔군 병력을 철군한다. 소련군 철군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소련이 감당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독일연방군은 “독일 주둔 소련군 독일연락사령부”와 함께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사령관은 “주둔 및 철군조약”에 합의되어 있는 대로 독일연방정부의 전권수입자로서 “소련군 철군에 필요한 대책의 확정 및 협조”라는 임무를 수행한다. 독일연락사령부는 모든 독일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며 비군사적 형태의 전문적문제에 관하여서도 상담에 응한다: 환경오염, 사고, 재난과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 군사기구, 경찰기구, 기타 기구와 소련군간의 관계를 수립하고 부동산문제와 소유권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연락사령부는 소련군 철수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소련과 독일 양측에게 신뢰를 조성하는 임무이다.

4. 병력

독일연방군은 의무병역기간이 15개월로부터 12개월로 단축됨으로써 430,000 명으로 축소되었다가 문자 그대로 하룻 밤새에 구 동독인민군 90,000 명을 인수함으로써 유사 이래 처음으로 531,000 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전독군 병력수가 370,000 명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속에 일어난 것이다.

초과인력은 다시 감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된지 4 개월만인 1991년 1월 말까지 구 동독인민군의 장기근속자 중 58%, 심지어 장교의 67%가 전역하였다. 독일연방군 등부사령부 예하의 인력은 1991년 7월까지 약 48%가 감축되었다.

숫적으로 볼 때 구 동독인민군 90,000명 중 직업군인 및 단기 지원병 수는 51,000 명, 의무병은 39,000 명이었다. 장기근속자중 30,000 명이 전역했는데, 그중 24,000 명은 자의에 따라 전역하였다.

인력감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구 동독인민 군인 출신을 포함한 전독군의 구축이었는데 그들은 독일연방군에 근무할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정정당당한 기회가 부여되었다.

통일조약에는 구 동독인민군 출신 단기 지원병과 직업군인에 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연방군에 인수되지 않은 인력은 대기상태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약 900명의 병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당했다. 1991년 7월초에 마지막 병사가 전역하였다.

나머지 병사들은 특수한 지위하에 “계속 근무 (Weiterverwender)”로 보직되어 임시로 독일연방군 계급장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대기상태에 처한 병사들과 함께 한시적 군인으로 2년간 유예근무 (SAZ 2)를 할 수 있다. 장교 12,400 명과 하사관과 일반병 13,400 명이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하였다. 장교 6,000명과 Portepée가 있는 하사관 7,800 명과 Portepée 가 없는 하사관 3,300 명이 2년간의 한시적 군인(SAZ 2)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고도의 인력수요로 인하여 Portepee가 없는 하사관과 하사관 지원병 및 일반병은 이미 6개월이 지나면 SAZ 2의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근무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연방군의 신언방주 내 인력조직 구축상태는 대체적으로 완료되었다. 스트라우스베르크 소재 독일연방국방성 사무소 내에는 장교의 인력관리를 위해 업무반이 설치되었다. 하사관과 일반병의 인력관리를 위해 포츠담, 스트라우스베르크 에 거스도르프, 로스토크에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베를린 그뤼나우에 자원신고소가 개설되었는데 벌써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4월초 부터 하사관과 일반병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원병은 2,500 명에 달했다. 그 중 1,000 명 이상이 심사되었으며 700 명 이상이 이미 단기근무병이 되었거나 앞으로 단기 근무병으로 근무하도록 계획되었다.

장교지방생들에 대한 전망은 훨씬 좋아졌다. 약 1,200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장교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그중 300 명은 이미 선발되었다.

독일연방군은 구동독인민군 출신 현역 및 퇴역군인들의 사회복지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하였다.

5. 인간에 대한 지원

수 천명에 달하는 구 동독 출신 직업군인과 단기지원병에 대한 전역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에 대처하여 독일연방군은 직업장려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직업전환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독일연방군은 직업장려서비스를 통해 각 지역 고용청과 협조하면서 직업훈련교육과 재교육가능성에 관한 안내행사를 번갈아 하면서 직업전환시 구체적으로 지원하였다.

여러가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례를 들어 본다. 1990년 10월 3일 이래 342 개 과정에 9,800 명이 참여하였는데 중점분야로는 전기기술, 차량기술, 기계공

학, 자동제어기술, 전자정보처리, 경영학과 같은 과목이었다. 독일연방군 전문대학에는 구 동독인민군 출신 군인들의 직업계속교육을 위한 680 개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59명의 사회복지 상담자 및 사회복지 봉사원이 신 연방주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생계보장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생계보장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의 운용에 익숙하여 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독일연방군의 신 연방주에 대한 광범한 사회복지적 참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6. 해체 및 창설

구 동독인민군의 해체 및 이와 동시적인 독일연방군 동부사령부 예하부대의 지휘 능력 및 기능확보의 준비기간은 단지 6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마찰없이 진행되었는데 독일연방군의 현역과 민간근무자들이 수행한 훌륭한 업적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구 동독인민부대수는 873개 (총 1,460 개의 단위 근무처)로 부터 358개로 축소되었다. 주둔계획은 계획기간에 어김없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독일연방군 동부사령부의 임무는 종결되었으며 1991년 7월 1일자로 지휘책임이 단위부대로 이관되었다.

새로운 부대와 근무처의 구축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 연방주내 독일연방군은 그 새로운 병력구조와 함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군에 대한 모범이 되고 있다. 구 서독내 자매부대의 적극적이고 비관료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그토록 신속하게 달성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서독의 지휘부대와 지원부대는 통독의 날부터 구 동독인민군 단위부대와 대부대에 대한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부대의 해체 및 재편에 전력했다. 서독의 교육훈

련팀 (현재 392 명이 근무 중임)이 지휘부대와 지원부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육군의 경우 장교 664 명, Portepée 가 있는 하사관 925 명이 신 연방주에 배속되었으며 그 중 장교 133명은 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연방주에 있는 단위부대에는 장교와 하사관이 항상 1,500 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 수치는 3,500 에 달하고 있다.

구 동독인민군이 해체된지 불과 몇 주일만에 각 부대의 교육훈련시설과 서독내 각 부대의 교육훈련시설의 각종 교육훈련과정은 독일연방군의 지휘원칙과 제복을 입은 모범적 국민이라는 내적지휘의 기본원칙이 배양됨을 가장 시급한 목표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통계치를 살펴보면 1991년 6월 까지 구 동독인민군 출신 참모장교 약 730 명이 함부르크 소재 독일연방국 참모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1991년 말까지 육군의 겨우 장교 약 1,300 명과 하사관 약 1,400 명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배출되었다.

신 연방주출신 신병의 대다수가 서독에 있는 기초훈련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부지역에 있는 단위부대들은 군인들로 하여금 점점 더 독일연방군의 기본원칙, 제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1991년 1/4 분기 중 신 연방주 출신 신병의 75%가 구 연방주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음에 비해 오늘날에는 7,400 명의 49%인 3,640 명만이 구 연방주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구 연방주에서 기초훈련교육을 마친 신병들이 신 연방주로 돌아가면 선배들보다 1/3의 위병근무만 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에 대한 위병근무는 현재 군사적 위병근무로 부터 민간인 감시근무로 변경되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 5 공정사단의 경우 600 명에 달하는 민간인 근무처가 새로 생겨났다.

7. 장비처리문제

구 동독인민군은 고도의 장비를 갖춘 군이었다. 15,000 개의 무기체제 중 전차

2,300 대, 장갑차 7,800 대, 대포 2,500 문, 전투기 400 대, 함선 70 척, 전투용 헬기 50 대, 각종 차량 100,000 대, 소총등 1,200,000 정, 탄약 300,000 톤이 인수할 것이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구 동독인민군의 급격한 감축으로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로 인하여 장비보존에 관한 전문지식의 결핍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장비는 식별된 후 파악되어야 했고 분류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1991년 말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연방군이 계속 사용하게 될 제1종 장비로서는 지금까지 1,300 가지 무기체제가 분류되었는데 그 중에는 장갑차 BMP 1형 763대, MIG-29 전투기 24 대, 수송기 및 병력수송용 항공기 14 대, 트럭 20,000 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게 될 제2종 장비로서는 5,300 개의 장비가 분류되었다.

독일연방군은 제2종 장비에 대한 처리기구를 설치하였다. 이와같은 장비는 55개의 처리용 보관장에 집중적으로 보관하여 병력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전차의 98%, 장갑차의 75%, 대포의 85%가 이와 같은 보관장에 보관되었다.

독일연방군은 300,000 톤의 탄약중 약 10%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통독이후 35,000 톤의 탄약이 독일 연방군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부대를 떠나 저장고에 보관되었으며 15,000 톤은 공업적으로 제독처리되었고 5,000 톤은 군 자체에 의해 분해된 후 부분적으로 제독처리되었다.

독일연방군의 구축이 일단 완료되면 장비, 공급재, 서비스형태로 200억 마르크가 신연방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 중 적지 않은 금액이 동독지역의 경제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용하게 될 것이다.

8. 병영시설

구 동독인민군의 막사, 위생시설, 주방, 식당, 난방시설은 거의 대부분 불량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신속한 처리가 시급했다. 군인의 막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연방부서와 합

게 1992년 말까지 건축방법을 대대적으로 단순화하였다. 1990년 하반기중 이미 착수된 건설조치 및 즉각조치의 계속 추진위해 1억 4,370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금년중 지출액은 4억 2,000 만 마르크에 달할 것이다. 인프라 스트럭처의 정비를 위해 총 160억 마르크라는 거액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에 문제점이 있었다. 구 동독인민군의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은 거의 대부분 공해를 유발하는 유황합유 갈탄으로 운용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예외없이 불량한 상태였으며 경제성이 없으므로 환경보호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연방군은 구 동독인민군 보유 난방시설 1,400 개 중 약 240 개를 인수하였다. 그 중 이미 172 개가 정비계획에 들어 갔다. 1991년 말까지 50개의 새로운 보일러 시설이 운용될 것이며 1993년 말에는 새로운 보일러 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것이다. 난방용 배관과 건물내 시설은 1999 년 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난방시설의 정비에 대한 필요한 금액만 10억 마르크가 소요된다.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몇 가지 현황과 자료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250 개의 부동산 중 이미 53,000 ha 에 달하는 대지 1,400 개가 매각할 수 있도록 되었다. 독일연방군 재산청은 현재 552 개의 부동산을 일반 부동산으로 인수한 후 기타 공공행정기구나 기업체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단체가 원하는 부동산 구입은 부분적으로는 잠정 사용계약을 통하는 등 수 많은 사례에 걸친 급부 역시 매우 다양하다.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구 동독인민군의 모든 위생시설을 우선 잠정적으로 인수한 후 계속 운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17개의 중앙위생시설 (예: 군인병원, 요양원, 종합병원)이 있다. 현재 그 중 대부분은 해체되었으며 부동산은 독일연방군 재산청으로 이관되었다. 도처에 걸쳐 지자체와 같은 민간기구에 의한 부동산인수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약 2,100 만 마르크에 달하는 위생장비가 인계되었다. 베를린과 라임치히에 있는 군인병원은 독일연방군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으며 고타, 위커룬데, 노이스타트 글레베에 있는 군인병원은 독일연방군 전문의료센터로 계속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시설의 개선을 위해 1,900 만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군인과 기타 치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 민간인을 위한 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약 1,300 만 마르크에 달하는 약품과 붕대가 공급되었다. 이와 같은 물질적 급부에 병행하여 2 개의 위생실습병 대대가 창설되었는데 61명의 간호보조병과 20 명의 의료보조직을 위한 훈련과정이 진행되었다.

10. 독일연방군 소개

구 동독인민군에게 군의 언론 홍보활동이란 전연 생소한 일이었다. 군이 시민으로부터 평가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초기단계가 어렵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것은 통독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구 동독인민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너무나 컸다.

인내와 사랑에 넘치는 전방지휘관들의 기초과업, 이에 청년장교들과 홍보활동담당 참모장교들의 협조, 시.동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단체장을 방문하고 교육훈련서비스나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시민을 위한 공개 안내일예의 초대, 기자회견 등등 - 이와 같은 것들은 독일연방군의 올바른 상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신 연방주의 37개 장소에 걸쳐 개설된 기동홍보팀은 남녀시민의 상담자로서 활동하면서 1990년 중 불과 3개월만에 20,000 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기본법과 “독일 연방군 소개”라는 책자가 최고의 인기를 차지했다.

11. 연방군행정

신 연방주에 있어서의 지역 국방행정의 구축은 5개의 신 연방주 수도에 각각 주립 국방지역행정청, 주둔지 행정처 19개, 군단위병력보충처 24개로 조직되었다. 베를린에 2개의 군단위병력보충처, 국방지역급양처 1개, 국방지역 피복처 1개 및 그 지소 3개소, 전산본부 1개, 자료처리청의 지소 1개, 연방언어청의 지소 1개, 국방지역 급식처 지소 1개도 개설되었다. 또한 앞으로 국방행정 국방기술 아카데미 분교

1개의 개설을 비롯하여 3개의 연방군 전문대학 및 연방군 행정학교 1개를 신 연방주로 이전할 것도 계획되어 있다. 구 동독인민군의 경우 불편 부당한 국방행정이란 전연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것이 최단시간에 수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런 성과이다.

각종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현장지도”의 업무 분야에 있어서 구 동독지역 동료들로 하여금 근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구 서독지역 출신 “지도원”들이 4 내지 8 주간에 걸쳐 신 연방주로 배속되어 현지의 과업을 함께 처리함을 비롯하여 법전이나 법률해설 또는 사무용품 같은 시급한 애로사항이 수월하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신 연방주의 독일연방군 행정에 대한 개척자적 과업 중에는 카톨릭 군종처의 개설, 현재 4개의 주둔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학강의, 소련주둔군의 법률관계에 대한 지원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2. 시민을 위한 연방군

독일연방군의 신 연방주민을 위한 급부제공은 매우 다양하다. 45개의 난방센터를 실례로 들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병영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지역, 학교, 유치원, 병원도 함께 난방이 제공되고 있다. 전력공급과 음료수 공급 역시 이와 비슷한데 독일연방군은 일반 시민용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 1991년중 이와 같은 비용으로는 3,900만 마르크가 설정되었다. 공군은 신 연방주의 9개 도시에 대한 구조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군과 함께 생명구조대(SAR)의 운용을 인수하였다. 전체출동의 95%는 민간분야에 걸친 것이다.

총 2,500 명의 직장인을 망라하는 유치원, 학교, 체육단체, 사회복지시설, 지자단체, 소년병원, 직업전환훈련 교육시설, 각종 기업체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독일 연방군의 비용으로 운영이 지원되고 있다. 1991년 6월 30일 까지 민간인 100,000 명이 독일연방군의 각 해당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베를린에 있는 독일연방군 종합병원에서는 이미 통독이전에 시작된 61명의 간호보

조원과 20명의 의료보조직 지도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 의료보험제도가 확보되기까지 매월 약 2,500 명의 민간인 환자들이 치과 서비스를 받고 있다.

독일연방군의 통신병들은 독일연방체신성의 유선시설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독일군은 군사통신망을 경찰, 세관, 행정, 신탁청과 같은 비군사적 사용자들로 하여금 송수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동독 국경수비대원 4,200 명은 국경봉쇄장치가 철거되면서 독일연방국방성의 임무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국방성 소관사항이 아닌 임무로서는 베를린 장벽 철거, 구 동서독국경에 있는 국경봉쇄장치의 철거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국경봉쇄장치의 40 %가 철거되었다. 아직도 약 170 Km에 달하는 구 동서독국경에 대한 지뢰탐색이 필요하다. 1991년 10월 1일까지 소요된 인건비는 5850 만 마르크이나 그 이후부터 과거 내독 국경에 대한 철거작업은 민간인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즉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 출신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이 서독에 있는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신 연방주에 있어서의 독일연방군의 구축과 민간행정의 구축에는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출발지원이 필요하다. 연방공군의 샤틀 운항을 통해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단숨에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베를린 왕복 샤틀 운항은 독일연방군이 각 연방부처와 연방군 자체가 필요로 하는 항공운수업무를 위해 실시하는 공중수송업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3. 경제요소로서의 연방군

독일연방군은 동부독일지역에 있어서도 중대한 경제요소로서 발전되고 있다.

1991년도 예산을 실례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로 25억 마르크, 특히 건

물유지와 같은 자재보전에 3억 600만 마르크, 기타 운용비용으로 10억 마르크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추가하여 투자용 지출액이 4억 2,300만 마르크로 책정되어 있다. 1992년도 군사시설 프로그램을 위해 6억 2,500만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 건설능력이 구조변경을 통하여 10억 마르크에달하는 금액이 축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1년 중 동독의 각 기업체는 독일연방정부 또는 연방국방기술 조달청과 같은 중앙관서를 통해 4,400만 마르크의 수주를 받았고 행정 또는 현지부대와 같은 지방분권관서를 통해 1억 4,350만 마르크의 수주를 받았다. 금년과 내년 중 동독경제를 위해 흘러 들어 갈 액수는 총 2억 1,800만 마르크에 달한다.

이와 같은 발주가 모두 100만 마르크대를 상회할 필요는 없다. 비록 소액의 수주라도 대부분 기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소액 발주로는 30만 마르크 상당 낙하산 포장대, 7만 마르크 상당 차량 타이어, 37,300 마르크 상당 삽자루, 28,000 마르크 상당 프린터용 연속급지, 18,000 마르크 상당 체조용 녹목 시설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4. 결론

현황파악과 재편과정의 대부분은 완료되었다. 1990년 10월 3일부로 착수된 신연방주내 독일연방군 구축은 완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결산으로부터 독일연방군이 1991년 9월 현재 독일의 내적통일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어려운 과정이 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앞으로 도 어마 어마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수 많은 과제에 이제 착수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독일연방군에 대한 사상 최대의 도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행한 바에 대하여 다소나마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독일군은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이질체보다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시민의 군대로써 독일군은 사회의 의식 속에 깊이 정착되고 인정받지 않는다

면 그 존립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이라는 사상의 발단은 독일 군사 역사의 중대한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프로이센 제국의 군사개혁가였던 샤른호스트에 의해 전개되었던 것인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제에 근거합니다. “한 국가의 모든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그 국가를 위한 방어자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사상에서 이탈했던 구동독이라는 역사의 땅에 서 있습니다. 이곳 동부독일에서 이와 같은 사상이 잠시나마 망각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 동독군은 시민세계로 부터 동떨어져 생존하고 있으면서 인민군이라고 자칭했지만 사실상 인민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민의 의식속에 있는 이와 같은 잔재를 극복해야 합니다. 신 연방주에 있는 기존 고립성을 극복하고 동서독군들이 함께 민주국가의 독일연방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업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일연방군 소속 군대들은 평화를 보장하고 동구권 이웃나라들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길을 마련함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독일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통일된 힘으로 이를 계속 추진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과업은 위대하고 해 볼만한 일입니다.”¹⁾

1 1991년 4월 29일 포츠담 지휘관 회의시 행한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대통령의 연설

부 록

수치로 본 현황 (1991년 9월 현재)

I. 인력

- 병력 :

구 동독인민군으로서 독일연방군의 책임 하에 인수된 병력

총 90,000 명, 그중

단기지원병 및 직업군인 51,000 명

의무병 39,000 명

* 동독국경수비대원 3,000 명 (특수 지위로 인수)

	한시적 군인으로 인수	1994년도 목표	1993년도
장교	6,000 명	4,000 명	3,100 명
하사관(Portepee 있는)	7,700 명	8,120 명	1,100 명
하사관(Portepee 없는)	3,100 명	7,050 명	-
일반병	600 명	5,830 명	800 명
계	17,400 명	25,000 명	5,000 명
의무병	35,500 명	25,000 명	
신병	1,100 명		
계속 근무	6,000 명		
총계	60,000 명	50,000 명	

전차	2,300 대
장갑차	7,800 대
대포	2,500 문
전투기	400 대
전투용 헬기	50 대
각종 차량	100,000 대
소화기	1,200,000 정

탄약 및 기타 부속장비 약 300,000 톤

1991년 말까지 분류가 완료됨.

- 장비처리소 55개중,
1991년 말까지 인수 : VEBEG / MDSG를 통해 15개소 인수
1992년 중순까지 인수 : MDSG 를 통해 나머지 인수
- 연료현황 잠정자료
 - * 서독체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재저장 (신 언방주로부터 FARGE 저장탱크로): 약 2,700 만톤
 - * 서독체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식별 (현지에 저장): 약 2,300 만톤
 - * 계속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하기로 된 연료의 식별: 약 2,100 만톤
- 군사용 운송수단: 병력수송용 차량 618대와 철도객실 707대를 교통 기술적으로 수리.

III. 인프라 스트럭처:

- 지금까지 구 동독인민군 소유 부동산 2,250개중 1,385개 (53,000 ha)를 민간용 매각대상으로 결정. 552개는 독일언방군 재산처리청으로 이관. (1991년 8월 26일 현재)

- 환경 잔재: 오염이 추정되는 면적 920개, 신 연방주의 기업체에 의해 검토 및 평가에 관한 144개의 계약 체결.
 - * 1991년도 발주액: 2,000만 마르크, 최초의 확보작업 및 정비작업을 위해 1991년중 추가적으로 2,000만 마르크 필요
- 20개의 병영에 대한 독일연방군의 디지털식 전화망가설에 7,500만 마르크의 비용이 필요함. 1993년 중반부터 가동
- 1993년까지 신 연방주에 대한 독일연방군의 자동화 텔렉스 송수신망 및 데이터 송수신망 설치에 2,500만 마르크
- 독일연방군이 인수한 난방시설 (1,400 개중 240 개)의 정비에 10억 마르크 (그중 1991년중에 1억 4000만 마르크)

IV. 의무시설 :

- 지역단위 위생시설의 계속운용
 - * 베를린 군인병원은 독일연방군 종합병원으로
 - * 라인치히 군인병원은 독일연방군 종합병원으로
 - * 고타 군인병원은 전문치료센터로 (고타 군종합병원을 통한 인프라 스트럭처의 한시적 일부 사용 - 계약체결 준비중)
 - * 위커윈데 군인병원은 전문치료센터로 (군종합병원의 공동사용을 위한 "해방도로"의 일부로서 연방행정아카데미에 이관됨)
 - * 노이스타트 글레베 군인병원은 전문치료센터로 (루트빅스루스트 군을 위해 후엘레 유한회사와 공동사용을 위한 병동신축의 일부로서 이관됨)
- 병역조달제도의 의료 서비스 170만 마르크
- 위생병에 대한 직업훈련교육과 승진교육,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실시된 61명의 간호보조병과 20명의 의료보조직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의 계속 추진

- 의료공급개선을 위한 투자: 약 1,900만 마르크
- 의료용 소비품의 공급: 약 1,300만 마르크

V. 지역 국방행정체제의 구축

- 인적지원 :
 - * 일간 약 80,000 명
 - * 심리 서비스의 구축 (1995년까지 조달비용 약 660만 마르크)
- 자재지원 :
 - * 급식조달 (지방분권식): 주둔지역내 제조업체는 1991년도에 6,500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발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급식조달에 대한 추가: 약 2,500명에 달하는 급식대상자 (사회복지적 이유: 학교, 유치원, 연금생활자, 종합병원)
 - * 피복 : 약 89,000명에 대한 총액 약 2억 1,400만 마르크
 지금까지 62개의 사업이 신 연방주에 있는 기업에게 총 5천 40만 마르크로 발주됨.
 - * 금양분야 : 1991년도 지불액 약 22억 4,000만 마르크

VI. 해당부서와 무관한 급부제공

- 인력
 - 신연방주에의 파견
 - * (군인) : 장교 8명
 - (군속) : 연방국방성 산하기관 군속 59명
- 장비 및 인프라스트럭처
 - * 국경봉쇄장치 철거 및 지뢰제거에 관한 지금까지의 성과

국경봉쇄장치중 40% 철거

지뢰제거는 약 170 km 에 대한 추가탐색을 제외하면 완료됨.

인건비지불: 구 동독국경수비대원 3,000 명에 대하여 5,850만 마르크 지불
1991년 10월 1일 부터 연방국방부와 민간기업간의 계약체결로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됨(발주액 1992년 말까지 1억 5,000만
마르크)

- * 민방위 해체 사령부의 해체
- * 비행장의 민간인 겸용
- * 환경오염 파악에 대한 지원
- * 민간분야에 대한 SAR 요원의 출동 95%
- * 신연방주를 통해 인수될 때 까지의 항공구조대 서비스의 보전
- * 공무원용 샤틀항공기 운용 및 서비스운항
- * 민간통신분야의 전화공급

4개의 건설부대 (38명의 군인: 1991년 4월부터 8월까지) 민간사용자
(경찰, 세관, 행정, 신탁청)를 위한 송수신시설의 사용 허가.
지금까지 사용자 10,000명, 사업완료: 1992년 말로 예상됨.

- SAR 및 항공구조대를 위한 전지역 망라 통신망의 구축

- 지출

- * 6개의 위생시설로부터 연방재산청에 대하여 총 3,0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위생자재
- * 민간운용자에 대하여 약 2,100만 마르크
- * 위생시설로부터 지자체의 기관 및 공익단체에게 총 35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무상공급:
45개의 난방센타가 제3자에게 난방열 공급, 지역 분리식 수행,
불가능할 경우 연방재무부가 해당비용을 지불 (연방임차주택)
제3자에 대한 전기에너지와 급수 공급: 아직 계량기가 없음.

- 1991년도 급부제공총액 : 3,890만 마르크 (약 1,240만 마르크)가 연방재무부의
급부능력으로 배당되어 일반 부동산이 됨). 현재 구 동독인민군이 체결한 각종

계약에 대한 정산이 진행중임.

VII. 신 연방주에 있어서의 경제요소로서의 독일연방군

- 지출 :

신 연방주에 있어서의 지출의 중점은 운용비 중 특히 인건비 지출임.

투자분야에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지출에 대한 의의가 점점 커지고 있음.

- 1991년도 분야별 지출 및 1992년도 분야별 지출안 (단위 100만 마르크)

	1991	1992
I. 운용비 지출		
* 인건비	2,498	2,230
* 자재보전	306	269
* 기타 운용	1,076	1,126
운용비 계	3,880	3,625
II. 투자용 지출		
* FEE	48	-
* 군사적 조달	255	117
* 인프라스트럭처	100	305
* 기타 투자	20	20
투자용 지출 계	423	442
구 동독지역에 대한 지출총계	4,303	4,067

- 신연방주내 독일연방군의 구축 : 총비용 약 200억 마르크.

신 연방주내 제조업은 점증일토에 있는 탄위부대 및 근무처의 지원발주에 적극 배려되고 있음. 병영과 서비스시설의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예상되는 비용: 160억 마르크

- 약 7,000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운용재가 각각 1/3씩 서독 시스템에 알맞게 적용되며, 신 연방주내에서 계속 사용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신 연방주내 기업체에 대한 군수분야의 발주: 2억 1,880만 마르크.

社 會 · 文 化 分 野

東·西獨 體育統合에 따른 諸問題

(Deutschland Archiv '91. 5)

서론

- '90. 12. 15 신설 5개주의 주립체육협회가 독일체육연맹(DSB)에 가입함으로써 45년 이래 분단되었던 독일체육계는 드디어 통일이 되었음.
 -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체육분야 최고기관인 독일체육연맹은 구동독의 신입 회원 200만과 더불어 회원수가 2,350만명이 되었으며, 총재에 Haus Hansen이 재선됨.
- '91. 3. 21 독일연방내무성 Schaenble장관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7차 연방체육 보고서를 통해 91년도 체육예산을 2억 4,800만 DM으로 책정되었는 바, 그중 1억 3,500만 DM이 신설 5개주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 통독이후 스포츠분야 역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서독의 공동성장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문제이상의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
 - 동·서독 스포츠의 기구적 통합은 일단 거의 완료되었으니 도핑을 무릅쓰고서라도 스포츠를 이데올로기의 교련장으로 보던 SED의 독재정권의 잔재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
- 스포츠 통합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해결과제와 비용의 증가는 단순한 만족감으로만 가려져 있어 문제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바, 연방의회 체육분과위원장 Ferdi Tillmann의원은 "상이한 동·서독 스포츠의 통합은 단순한 숫적인 합산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라고 강조함.

- '90. 8.30 Schaeuble 연방내무장관은 "동.서독 스포츠 통일로 신설 5개주의 신선한 역동력이 구서독 스포츠의 구각을 뚫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희망의 실현에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됨.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구동독 스포츠의 "업적"으로 지칭되는 초정상급 선수의 능력잠재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35,000개의 구동독 체육시설의 확장과 개축에 필요한 돈은 8억 DM인 것으로 나타남.

- . 현재 신설 5개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12억 DM 프로그램이 현재 마련중에 있음.

정상급 스포츠의 안정화

- o 정상급 스포츠는 연방정부의 국가지원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음.

- 스포츠의학, 트레이닝 진단법, 교육학적, 심리학적 상담 등을 포함한 완벽한 서비스를 갖춘 15개의 올림픽 지원 기지에 구동독의 6대 스포츠 클럽이 합류하여 정상급 스포츠인 육성의 중심지가 됨.
- 통합에는 인력감축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나 동.서베를린의 스포츠 통합으로 Berlin이 독일의 최대 올림픽 지원 기지화 하였으며, 포츠담 소재 구동독군 스포츠클럽은 독일연방군 체육학교의 분교가 됨.
- 구동독의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하던 24개의 구동독 청소년 스포츠학교는 통독 후에도 계속 유지 존속되고 체육장려 김나지움이나 실습학교의 귀감이 되도록함.
- Altenberg 소재 구동독 봅슬레이 코스는 막대한 거금(8,000만 내지 3억 동독 마르크)으로 Stasi부장 Erich Mielke가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 건설했다고 하나 동.서독팀이 각각 1회씩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바 있으며, 철거에 따른 연간 비용이 2,000만 DM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 존속시킴.

- DSB는 동독 스포츠 시스템의 와해로 인해 신설 5개주의 주립체육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체계를 양성하기 위하여 업무전담반을 구성하였음.
 - 정상급 스포츠의 통합과 92년도 Albertville 동계 및 Barcelona 하계 올림픽을 위한 전독 선수단의 구성이 우선 최대 과제임.
 - 연방정부가 이미 그때까지의 과도기 재원을 확보해 놓았으나 애초 계획액 1억 2,000 DM을 훨씬 초과할 것임.

- 구동독에서 주업으로 종사하던 5,000명의 트레이너의 진로문제가 심각함.
 - 그중 260명은 계속해서 주임 트레이너로 근무할 수 있으며, 300명은 명예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의 인수 및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구서독 트레이너의 능력과 비교할때 구서독 트레이너의 직장의 위협이 되고 있음.
 - 구동독 체육협회(DTSB)의 유명 트레이너들은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함.

과장된 체육연구의 신화

- 통합조약 제39조에 명기되어 통일독일이 인수하기로 된 구동독의 3대 체육기관 :
 1. 라이프치히의 인체문화 체육연구소 (FKS : Leipziger Forschungsinstitut fuer Koerperkultur und Sport)
 2. 베를린의 체육기자재 연구개발처 (Forschungs und Entwicklungsstelle fuer Sportgeraete in Berlin)
 3. Kreischa의 도핑검사 실험실 (Doppingkontrollabor in Kreischa)

- 이들 기관은 신비에 차 있고 IOC로부터 인정될 정도여서 구서독 체육지도계는 인수를 반가워했으나 학술지식을 초월하는 직관력을 강조하는 등 너무나 신화적으로 과장되어 있으며 인수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큼.
 - 구동독 스포츠의 발전과 지식수준은 이들 3대 기관으로부터 제공되었음은 틀림 없으나 체육학적 의미로본 구동독의 스포츠 심리학 등에는 문제점이 많음이 들어남. (스위스의 체육학자 Arturo Hotz가 기고한 91. 2.22자 Neue Zuericher Zeitung 제44면 "Sportpsychologie-Streng vertraulich"제하의 기사 참조)
 - 구동독 스포츠는 언제나 인간능력의 한계에 대한 연구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특히 도핑의 극복에 관한 연구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음.
- o Leipzig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증명하기 힘들었으나, 구동독이 독일식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도핑방법을 학술적으로 개발하였음이 통독후에 드러남.
- Leipzig 출신 구동독의 저명 체육학자 Sperling교수는 서독교수들의 추천으로 Bayreuth에서 체육학부장이 됨.
 - 라이프치히 인체문화. 체육연구소는 "응용 트레이닝학 연구소" (Institut fuer angewandte Trainingswissenschaft)로 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과거가 청산될런지 의문임.
- o 크라이샤의 도핑검사 실험실은 분석연구소로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 이 실험실 역시 조작 문제가 말썬이 되어 미래가 위태로왔으나 책임자가 조기에 Bonn의 관계기관에게 과거의 사실을 보고하여 구제가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사실은 독일연방 도핑전담위원이 Donike교수가 도이칠란트퐁크의 방송인터뷰에서 인정함.

- o 도핑과 관련해서는 '91.3초에 해체된 구동독 체육의학근무처(SMD : Sportmedizinischer Dienst)의 부처장이었던 Hoepfner박사가 밝힌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이 있음.
 - 회프너 박사는 국제육상연맹의 공식적인 도핑전문이었으며 함부르크의 주간지에 10여만 DM을 받고 도핑폭로에 위한 비밀문서를 전달한 장본인임.

- o Leipzig의 독일인체문화대학(DHfK : Deutsche Hochschule fuer Koerperkultur)의 장래는 아직 불확실함.
 - Sachsen주는 90.12.31부로 동 대학의 폐쇄를 결정한 바 있으나, 정상급 체육인의 간부양성소였던 동 대학에는 아직도 1,500여명의 대학생이 잠정적이거나 계속 연구하고 있음.
 - 원래 동 대학은 폐쇄후 라이프치히 대학이 개편된 후 체육학부로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현재 DHfK를 새로운 방안과 함께 자립적인 대학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임.
 - DHfK는 과거의 간부를 확보하려는 전략에 사로 잡힌채 재정결핍이 겹쳐 대학으로서의 전반적인 수준의 상실로 한때 트레이너 양성소로서의 명성을 잃었음.

해명되지 않는 책임감

- o 구동독의 체육학 연구소는 동독체육의 국제적 명성에 다대한 기여를 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구화 되어 사회주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을 과장한 과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됨.
 - 동.서독 NOC만이 유일한 통일(Vereinigung)을 달성했던 반면 기타 체육단체는 구동독단체가 구서독단체에 가입(Beitritt)한 형식을 취했는데 구동독 NOC의 총재였던 J. Weiskopf (라이프치히시 치과의사)는 통일독일 NOC의 부총재가 됨.

- IOC 회원인 Guenther Heinze는 공식적으로 독일 NOC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50년대초부터 "육상의 독재자"로 통하던 Ewald의 맹우로서 DTSB의 부총재 및 Ewald 후임으로 구동독 NOC의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데 그의 미래는 과거전력에 대한 해명과 함께 "체제의 잘못인가 개조가 불가능한 인물"인가가 결정될 것임.
 - 구동독의 막강한 체육협회(DTSB)의 청산인으로서 de Maiziere 수상시 정무차관이었던 Horst Joke는 구동독 NOC의 Ewald 총재시 대변인이었으며 구동독 FDJ의 "청소년 세계"라는 단체의 책임자였던 Volker Klige와 함께 전독 NOC의 회원이 됨.
- o 독일체육연맹(DSB)에 흡수된 구동독 출신들의 활동이 주목됨.
- 동.서독간의 균열이 가능한한 메워지도록 해야겠으나 스포츠 분야의 인사문제는 계속해서 난제로서 남아 있으며, 체육분야에서 새로운 체제구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과거라는 잔재가 청산이 안되고 있음.
 - 이들은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스포츠인이 아닌 정치인이 되어갈지도 모르고, 구서독인들의 우월감에 대한 보복심리로 신설 5개주의 체육분야 새로운 체제 건설에서 훌륭한 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음.

구동독 체육시설을 위한 수십억 DM

- o 구동독지역에서 체육은 더 이상 아무런 특수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 문화분야에서 처럼 체육도 그 임무설정과 문제해결에 있어 단순한 과거청산을 훨씬 초월하고 있음.
- 각종 체육단체의 민주적 체육구조 구축은 구서독에 의한 출발금융, 노우하우 이전 및 주단위, 시.군단위, 협회단위로 연대적 파트너쉽과 함께 실제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하나, 이와 같이 긴급하고 긍정적인 역동력이 여론에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음.

- 기초적 스포츠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한 협회가 자생력이 있어야 하나 인사 및 물질적, 재정적으로 공고한 기반은 아직도 조성되지 않아 생존문제가 매우 심각함.
 - 지금까지 Lotto-Totto (복권) 법규가 없으므로 구서독식 모델에 따른 주립 체육협회의 수입이 조성될 수 없으며, 서독지역의 Lotto 수입에 의한 지원의 가능성 조차 현재 많은 기관들이 신탁청의 관리하에 있어 연대의식적 재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o 이미 Ewald 총재 당시 소홀하게 방치된 체육시설의 정비역시 기간이 만료되어 전반적으로 재정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과중한 부담거리임.
- 구동독정권의 체육도시라는 간판이 붙었던 Leipzig의 경우 중앙구장의 현대화에만 6억 DM이 필요하며, 체육관은 91년도 보수유지비에 겨우 4,000만 DM밖에 없음.
 - 그러나 Leipzig시는 투자자에게 체육면적이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며, 추가비용의 확보가 없더라도 가능한한 체육시설이 존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 이와 같은 것은 지자체가 체육용 면적에 대해서 신탁청과의 투쟁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사례임.
- DSTB산하 다른 체육학교는 매각 대상임.

단일팀에의 모색

- o 훌륭한 체육인의 유전자에 의한 "혈액교환"으로 체육계의 강대국이 되고자 했던 과거의 정상적인 체육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위험스런 발상은 다행이 사라졌음.

- biathlon,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여자승구, 레슬링, 썰매경기, 봅슬레이 경기 등에서는 동.서독간의 체육선수는 훌륭한 통합이 이루어져서 서독인들과의 접촉공포와, 동독인들간의 "강제결혼"에 따르는 공포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적이 한팀으로 용해되었음.
- 유명선수가 프로진출로 시장화(Heike Drechsler, Karin Krabbe 등) 되었으나, 서독식 체육장려 등으로 과거처럼 서독의 돈줄을 향하는 선수유출은 감소되었음.
- '91년 초봄까지 교체될 것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이미 트레이닝과 경기에 있어 기본인식의 차이점이 사라지고, 트레이너의 숨겨진 과거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안되고 있음.
- 대부분 구동독 체육인들은 어마어마한 변화에 직면하여 과거의 전체주의라는 환경으로부터 책임감이 중만한 자유체제에 적응하고 있음.

결 론

동.서독 체육통일의 심리적 장애는 체육계 자체가 짊어져야 함. 과거 독일내 체육 단체가 언제나 국경을 무시해 버리면서, 동.서간의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듯이, 오늘날 독일체육인은 독일의 거대화에 대한 외국의 공포심을 완화시켜 주면서 어려운 과제인 통일독일의 정체성(Identity) 모색을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함.

東·西獨 赤十字社 統合問題

(’91. 12)

1. 통독이전 구동독의 적십자사 (Deutsches Rotes kreuz der DDR)

- 전후 '46에 해체되었던 구동독의 적십자사는 '52에 재조직되었으며 '54 국제 적십자연맹의 가맹국이 되었음.
- 동독의 적십자사는 서독과 달리 민방위 업무에서 중요한 위생, 구급, 구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성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내무성에 소속되어 있었음.
 - 중앙적십자사, 지구(Bezirk) 및 시.군(Kreis) 적십자사지부 주요간부는 공산당(SED)의 동의하에 선출되었으며 당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당외곽 조직이었음.
 - 가입회원수는 통독이전 14세 이상 65만명이었는데, 그중 43만명이 여성이었으며, 2만명의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3만 5천명의 "청소년 적십자 구급요원"이 포함되어 있었음.
- 동, 서독이 통일되기 전까지 주민에 대한 구조봉사활동은 주로 국립보건제도와 함께 동독 적십자사를 통해 수행되었음. 동독 적십자사는 이에 상응한 조직구조 및 인프라스트럭처를 총망라 하고 있었던 바, 환자운송소는 전적으로 동독 적십자사가, 그리고 신속 의료지원은 동독 적십자사와 보건제도가 공동으로 운용하였음.
 - 국가를 위해서 임무를 받은 활동기관인 동독 적십자사는 서독처럼 의료보험에 관한 사용자 지불 제도와는 달리 국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었음.

0 동독 적십자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국영구호소에서의 구급치료
- 정치적, 사회적 집회 및 운동경기시 구급요원으로 활동
- 노약자 가정방문 간호
- 정거장에서 각종 봉사활동
- 해변가, 호수가에서 구조 활동
- 산악지역에서 구조, 봉사활동

2. 동, 서독 적십자사 통합

0 독일적십자사 (Deutsches Rotes Kreuz : DRK)의 통합 또한 국가통일 방식인 동독 각주의 서독연방 가입방식에 따라, '90.11. 9일 개최된 DRK 연방전체회의에서 신설 5개주의 각 주지부가 '91. 1. 1을 기해 연방 DRK에 가입을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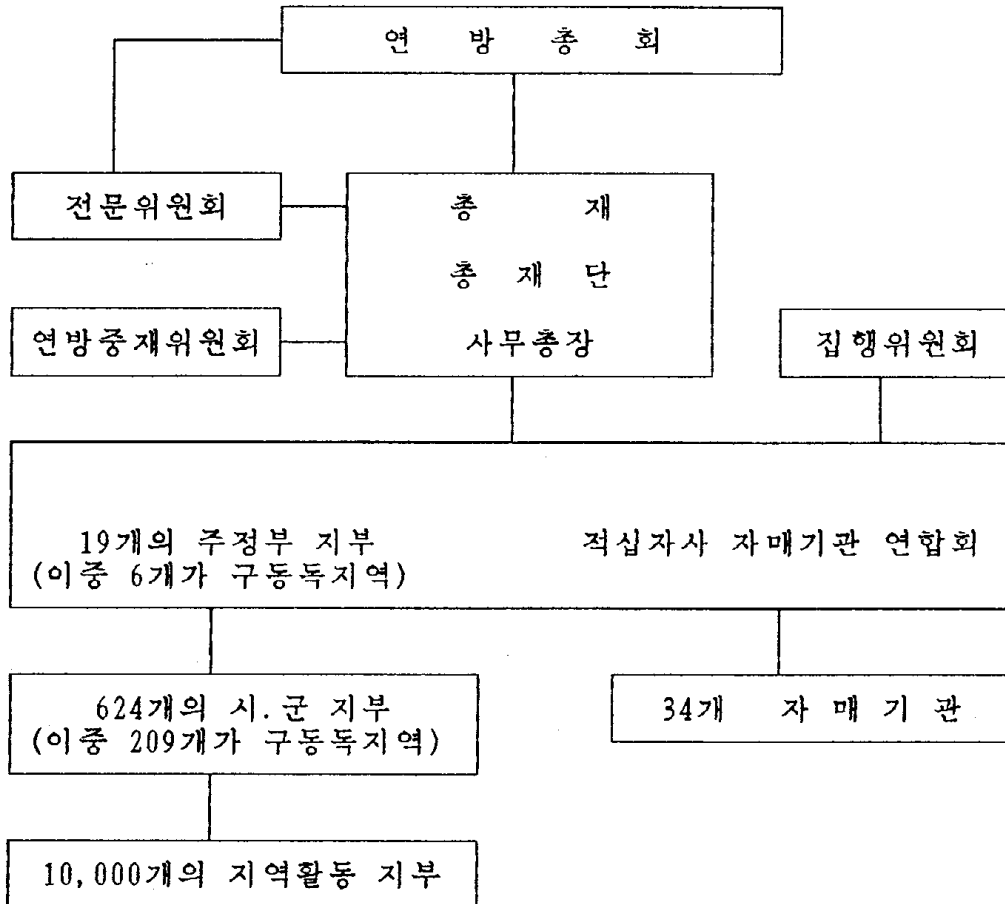
- 이로써 DRK는 5백만의 회원을 갖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 구급 기관이 됨.
- 이종에는 60만의 명예봉사요원과 5만의 적십자사 정식요원이 있음.

0 연방전체회의에서 Botho Prinz Sayn-Wittgenstein이 제4대 총재이자, 첫 통독 적십자사 총재로 피선되었으며, Baden 지방 적십자사 지부 총재인 Dr. Josef Grossmann이 통독 첫 집행위원회 위원장(Praesidialratvorsitzender)에 피선됨.

-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e Komitee vom Roten Kreuz)는 '91. 5. 1 새로운 독일적십자사가 제출한 독일적십자사 정관과 연방정부의 확인서를 검토한후 새로운 통일된 DRK를 통독의 독일적십자로 받아들임.
- 이것은 '56 국제적십자 위원회가 민족적 구호기관으로서 DRK를 인정한 것이 독일 통일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여, DRK의 활동이 신설 5개주에도 확대 적용됨을 의미함.

- 연방수상 Kohl은 DRK 총재에게 서신을 보내 동독지역까지 포함한 연방군의 위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통독이후 독일 적십자사 기구



- 연방 DRK에 가입한 신설주 (구동독지역)의 주단위 적십자사의 명칭과 그 소재지는 다음과 같음.

- . Mecklenburg-Vorpommern주 적십자사 (Schwerin 소재)
- . Brandenburg주 " (Potsdam ")
- . Sachsen-Anhalt주 " (Halle ")
- . Sachsen주 " (Dresden ")
- . Thueringen주 " (Erfurt ")

3. 통독이후 적십자사 주요활동

- o 현재 신설 5개주 지부와 동베를린 지역의 적십자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재정적, 인력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구동독지역에서 행하던 구제기능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독에서 별도로 시행되던 새로운 임무를 서독의 각 자매주의 도움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주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음.
 - 다수의 군단위 지부는 사회복지 구호소와 급식소 시설을 구축함.
 - . 사회복지 구호소 22개소, 급식소 41개를 연방보건성과 독일은행재단의 지원을 받아 신설함.
 - 약 80개의 장애인 운송서비스의 설치
 - . 모든 주단위 적십자 지역내에 장애인 보조재 상담실 및 대여실이 설치
 - . 현재 계획중인 10개의 장애인 근로분야에 대한 입원시설중 이미 4개는 DRK가 그 운영주체로서 근무가 개시됨.
 - . 현재 DRK가 운영하는 2개의 소년원 및 약 90개의 양노원이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비되었거나 새로운 양노방안 및 서비스 방안을 통해 상담에 응하고 있음.
 - 지금까지 신설 5개주에 60개소 이상의 외국인과 정주민 상담소를 설치하고 망명신청자와 정주민 수용소에 기숙하고있는 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급양을 책임지고 있음.
 - . 이와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 100명 이상의 인력(본업)은 주로 직장조성 대책 재원으로 DRK의 서비스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현재 64개에 달하는 DRK의 역구내 구호소 (구동독지역내 구동독 국철(DR)역)는 응급치료 시설로서 확보되었으며 여행객들을 위해 광범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통과여행객에 대한 숙박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동구권 출신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음.

- DRK는 현재 주민의 상이한 고충해소를 위해 광범한 상담망을 구축하고 있음.
 - . 임신부 상담소
 - . 가정상담소
 - . 고액부채자 상담소
 - . 마약중독자 상담소
- 군단위 적십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상담을 초월하여 Aids 상담 및 정주민, 피난민, 외국인, 이민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음.
- 가정교육 및 보건촉진의 지원은 신설된 주단위 적십자지사의 협력하에 다수 군단위 적십자지에서 강화되고 있는 바 DRK의 각종 교육과정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즉각적으로 설치되고 재원이 마련됨.
 - . 신생아돌보기, 부모와 자녀의 놀이그룹,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그룹, 베이비 시팅, 가정내 환자서비스, 노인 김내스틱, 수중김내스틱, 댄스교습, 긴장해소, 요가, 정신위생 등임.
- o 90년초부터 구서독의 각주 및 지방자치단체 적십자는 동독 행정체계 구축시 서독측의 행정지원 방식인 자매결연을 통해 대상주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 각주로 부터 총 360명의 직원이 신설 5개주에 파견되어 공동으로 활동에 참여하고있음.
 -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구서독의 각주는 신설 5개주 적십자 주지부의 요원들을 초청하여 "사회사업 활동의 입문"에 대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병원응급처치적 사회봉사활동 체계 구축 지원함.
 - 또한 새로이 설립된 신설주 적십자 지부에서는 자체내에서 개최하는 전문가 학술회의와 재교육을 통해 각 요원들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있는 바, DRK 사무처요원들과 적십자 자매주의 지부요원들이 파견되어 강의를 받고 있음.

- 연방내무부는 신설 5개주에 80량의 위생열차를 운용할 계획인 바, 그중 DRK가 45량을 운용할 것을 수주받음.
 - . DRK가 운용할 45량의 위생열차는 이미 맺어진 구서독지역 DRK의 군단위 적십자사와의 자매결연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서독 자매 지방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구서독지역내 독일 적십자 주단위 자매적십자사 및 사무국을 통한 부단한 계속교육 및 승진교육과 함께 신설 군단위 적십자와 주단위 적십자의 근무원들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이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써 새로운 임무가 새로운 전제조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됨.

東·西獨 메스컴 統合事例

(’91.10)

1. 統獨直前西獨의 統獨을 위한 新聞·放送·弘報施策은 어떤 것이었는지?

- 이 問項에 대한 答辯을 위해서는 다음 事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첫째, 獨逸統一은 東獨이 西獨聯邦에 加入하는 形態, 즉 西獨이 東獨을 平和的인 方法으로 合併한 形態로 이루어졌다는 점.
 - 둘째, 西獨은 聯邦制 國家이므로 各 州政府가 放送에 대한 管轄權과 新聞·雜誌 登錄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고 있으나 新聞은 完全한 自由市場 經濟原則에 따라 私企業에 의해 設立 運營되고 放送은 公營放送과 商業放送이 共存하는 形態였다는 점.
 - 셋째, 東獨은 國家가 新聞과 放送에 대한 管轄權을 갖고 있었으며 新聞과 放送이 黨과 國家에 의해 직접 設立·運營되는 形態를 가졌었다는 점.
- 統獨直前 西獨政府의 新聞에 대한 政策은 特異한 것이 없었음. 즉 統一以後 東獨의 新聞은 西獨에서와 마찬가지로 自由市場 經濟體制下에 맞게 再編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임.

단 放送의 경우에 既存 東獨의 國營放送社를 解體 (統一條約 第36條)시키고 各州 또는 一部州들이 共同으로 公營放送社를 設立하는 基礎作業을 했음.

- TV放送의 경우 西獨은 PAL方式이고 東獨은 SECAM - OST方式이었으나, 東獨住民의 90%이상이 PAL方式과 SECAM-OST方式을 受信할 수 있는 TV受像機를 保有 (東獨은 同時 受信 可能한 검용 TV 生産·輸出)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施策은 필요없었음.
- 西獨의 統一直前 對東獨 弘報施策은 西獨公報處가 聯邦特別豫算을 支援받아 東獨의 TV·라디오放送, 新聞에 有料廣告 推進, 각종 弘報資料 配布事業 등을 통해 各種 制度와 法律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體制에 適應하는데 필요한 情報提供과 統一에 따른 不安感을 해소시키는데 盡力했음.

2. 統合後 舊東獨의 國營新聞, 放送은 民營化 되었는지 또는 國營으로 存續하며 發刊되는지?

- 舊東獨에는 39個의 日刊紙가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黨機關紙 또는 大衆組織의 新聞이었음. 이들중 14個 新聞은 信託廳 (舊東獨의 黨과 大衆組織의 財産을 私有化시키기 위해 統一後 設立된 機構)의 管理 下에 있으며 信託廳은 이들 新聞들을 賣却중임.

나머지 25個 新聞은 舊東獨의 黨과 大衆組織을 承繼한 새로운 黨과 大衆組織이 그 所有權을 主張하고 있음. 이들 39個의 日刊紙들은 發行部數는 減小되었지만 發刊은 계속 進行中임.

- 舊東獨의 通信社는 國營으로 運營되던 ADN通信 하나만 存在했었음. 同 通信社는 현재 信託廳 管理下에 있으며 株式會社 形態로의 賣却을 위한 準備作業이 進行中임.
- 舊東獨에는 1個의 國營TV(DFP)와 1個의 國營 라디오 放送社만이 存在했었음. 放送은 新聞·通信과는 달리 放送社 解體 專權委員이 任命되어 放送社를 解體하는 作業이 進行中임. 過去 14,000명의 放送社 從事員중 半以上이 사실상 共產主義者들이라는 理由로 해직되었고 '91.12.31일 放送社 解體作業이 完了되는 時期까지는 技術職員 중심으로 4,000여명만을 救濟하여 適應訓練을 시킨 다음 새로이 設立되는 放送公社에서 勤務하게 될 것이라 함.
- 西獨의 方式에 따라 舊東獨의 5個의 州政府가 새로이 放送局(Landesstudio)을 設立하였으며, 放送局들은 獨自적으로 또는 다른 放送局과 共同으로 放送公社(Rundfunkanstalt)를 設立中임. 이미 “ 中部獨逸放送 ” 이라는 放送公社가 設立되었으며 '91.12.31까지는 하나 또는 2個의 放送公社가 追加로 設立될 豫定임.
- 舊東獨 TV放送은 현재 초저녁프로(2시간)만을 製作 放送하고 있으며, 기타 저녁시간대 채널은 西獨 제1 TV인 ARD-TV가 引受, 放映하고 있음.

3. 舊東獨의 國營新聞·通信·放送의 社長을 비롯한 幹部들을 西獨出身 人士로 交替하여 國營으로 계속 運營하는지?

- 舊東獨의 國營新聞·通信의 社長, 幹部, 職員들은 交替되지 않고 그대로 勤務하고 있음. 그러나 新聞·通信社가 今年말이나 내년초 信託廳에 의해 賣却되어 西獨의 新聞社가 引受할 경우 대규모 人事交替가 이루어질 展望임.
- 舊東獨 放送(TV·라디오)의 경우 放送社의 解體가 進行中이므로 放送社의 社長과 幹部陣이 解職되었으며, 그대신 放送社 解體를 위한 專權代理人, 기타 幹部들을 西獨出身 人士로 任命 解體作業에 임하고 있음.

4. 舊東獨의 國營新聞·放送·通信社 職員에 대해서는 統獨後 어떻게 處理하고 있는지?

- 舊東獨의 新聞·通信의 경우 一般職員들이 交替되거나 解職되지 않고 있음. 既言及했듯이 新聞·放送의 私企業化(信託廳에 의해 賣却)가 進行中이므로, 西獨의 新聞社가 舊東獨의 新聞·通信社를 買入할 경우 대규모 人員減縮 및 交替가 豫想됨.

- 解體作業이 進行中인 舊東獨 放送의 職員은 총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반수인 7,000명이 이미 解職되었고, 解體作業이 完成되는 '91.12.31일까지는 3,000여명이 더 解職되어 주로 技術職要員 4,000여명만이 남게될 것이라 함.

5. 舊東獨 言論機關 從事者들에 대하여 統獨直後 自由民主體制,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한 教育을 시켜 活用하는지?

- 舊東獨 言論人에 대한 教育은 實施되지 않고 있으나 解體作業이 完成된 후 새로운 放送體制와 自由言論에 適應하기 위한 訓練을 實施할 것이라 함.

6. 西獨新聞의 東獨支社 設置 許容 與否

- 西獨의 4대 全國紙(“Die Welt”, “Sueddeutsche Zeitung”,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rankfurter Rundschau”) 및 主要週刊誌(Spiegel)가 70年代末 이래 東베를린에 소규모 支社를 設置 運營해왔으며, 統一後에는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만 에르푸르트(Erfurt)에 支社를 設置했음.

7. 統獨後 放送制度의 改善·改編은 없었는지?
西獨의 放送이 東獨에서 視廳할 수 있도록
東獨에 送信塔을 新設하였는지, 東獨의 既存
送信施設을 連結·活用하여 西獨放送을 東獨
에서 視廳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인 改善이
있었는지?

- 獨逸 聯邦遞信部 산하 電氣通信公社(Telecom)와
독일 제2TV인 ZDF-TV는 統獨直後 舊東獨地域에
15個의 中繼所(Grundentsender)設置를 計劃하였는
바, 이중 6個는 完成되었고 9個는 工事中이라 함.
- 獨逸 第1TV인 ARD는 舊東獨의 國營放送인 DFF의 第
1채널을 引受받아 同 채널로 프로그램을 放映하고
있음.
- 특히 獨逸 電氣通信公社(Telecom)는 91年初부터
舊東獨地域에 케이블을 架設하고 있는 바, 92年부
터 東獨 一部地域에서는 케이블이나 衛星안테나를
통해서 商業放送을 視廳할 수 있게 될 것임.

8. 相互異質的인 放送制度를 어떻게 調和시키는 放送施策과 制度를 펴나가고 있는지?

- 舊東獨의 放送은 '91.12.31일까지 解體될 豫定이므로 放送制度를 調和시키는 施策은 없었음.
- 舊東獨地域에는 2-3個의 公營放送公社(TV,라디오)와 數個의 商業放送社가 92年以後에 設立·運營될 豫定임. '91.9월 現在 “MDR(中部獨逸放送公社)”의 設立協定에 舊東獨地域의 3個 州政府가 署名한 狀態이며, 이 放送局은 '92.1.1일 放送을 目標로 作業中임.

9. 西獨放送局의 東獨地域 放送分局 設置與否

- '91.9월 現在 獨逸 第2TV인 ZDF-TV(獨逸 第2TV放送)가 舊東獨의 7個 都市에 取材記者를 常駐시키는 支社를 設置하고 있으며, 第1TV인 ARD는 支社가 없음. ZDF-TV 支社는 韓國의 放送分局과는 性格이 다름.

10. 統獨後 弘報施策 活動은 ?

가. 對東獨國民 弘報活動

- 獨逸政府는 體制變化에 따른 舊東獨 國民들의 動搖와 負擔感, 두려움을 安定시키기 위한 目的으로 別途의 弘報對策을 세워 大規模 弘報事業을 展開하고 있는 歟.
- 다만, '91.9月末부터 대형버스를 改造하여 統獨이 후 變化된 各種 法令과 制度 등 주로 國民生活과 直結된 內容을 담은 案内冊子와 案内員을 시고 東獨 各 地域에서 移動弘報를 實施할 豫定이며, 특별히 考案된 問答式 弘報資料 등 各種 弘報物을 大量製作, 舊東獨地域의 地方自治團體나 대규모 行事を 契機로 集中 配布하고 있음.

나. 新聞·放送·通信을 통한 機動弘報活動 技法

- 獨逸에서 新聞과 通信은 완전히 私企業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으므로 政府에서 公式적으로 어떤 技法과 施策으로 機動弘報活動을 할 수 있는 立場에 있지 못함.
- 放送의 경우도 自律적으로 運營하는 公營放送體制를 갖추고 있으며, 거의 모든 放送社가 州政府 管轄下에 있으므로 聯邦政府의 影響을 받지 않고 獨自적으로 放送하고 있음.

다만, 獨逸 第2TV인 ZDF-TV의 경우 66인으로 구성되는 TV放送協議會에 聯邦政府代表 3인이 포함되고, 9인으로 構成되는 運營委員會는 1인이 聯邦政府에 의해서 任命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編成에 間接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음.

東·西獨間 放送協力에 관한 合意書

第 1 條

1. 契約當事者 쌍방은 相互 상대방의 TV프로그램을 買入한다. 相互買入의 對象이 되는 프로그램은 原則적으로 모든 分野의 TV프로그램을 포괄하나, 특히 TV 드라마, TV영화, 연극, 음악프로, 오락프로, 기록물, 스포츠프로, 청소년프로, 문화교양프로 등이 그 對象이 된다.
2. 當事者 쌍방은 자신들의 TV프로그램에 관한 販賣提議書, 카타로그 및 기타 적당한 資料를 定期的으로 交換한다. 契約當事者 일방은 상대방의 代表들을 위해 1년에 1회 또는 2회 프로그램 試寫會를 開催한다. 契約當事者 일방의 希望에 따라 특별 試寫會도 開催된다. 프로그램 買入條件은 매번 相互 合意에 의해서 確定된다.
3. 契約상대방 쌍방에 의해서 場所·內容·時間적으로 制限을 받지 않는다는 條件으로 買入되지 않는 한 著作權은 保護되어야 한다. 資料販賣時 프로그램을 交付하는 契約當事者는 프로그램을 受領하는 契約當事者에게 現存하는 著作權上의 의무들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그밖에는 성립된 프로그램 購買契約의 範圍內에서 필요한 著作權上의 約定이 適用된다.

4. 契約當事者 쌍방은 締結된 프로그램 契約의 範圍內에서 아울러 該當 著作權法上의 約定을 考慮하여 買入한 프로그램을 自身の 裁量에 따라 使用할 權限을 가진다.
즉, 契約當事者 쌍방은 作品의 內容과 意味가 歪曲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短縮시킬 수 있다. 契約當事者 쌍방은 상대방의 同意없이는 受領한 프로그램의 全部나 一部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5. 契約當事者 쌍방은 放映日字에 관한 事項을 包含하여 프로그램의 使用에 대해서 相互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 2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兩國間의 法律規定과 이에 相應하는 可能性과 權限을 참작하여 常駐特派員, 一時訪問 特派員, 펜記者 카메라팀을 支援한다.

第 3 條

유로비전 (Eurovision)과 인터비전 (Intervision)간에 既存의 慣行과 合意에 의해서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費用負擔없이 提供되는 서비스가 아닌 한, 契約當事者 쌍방은 政治·文化·스포츠事件의 取材에 있어서 合意된 謝禮를 支拂하고 相互 서비스 (直接 衛星中繼 包含)를 提供받는다.

第 4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共同製作을 圖謀할 것이다. 合意에 의한 共同製作을 위해서 特別 共同製作 契約을 締結한다.

第 5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상대방의 時事프로나 기타의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編輯하여 使用할 수 있다. 이에는 現存의 慣行이 適用된다.

第 6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法的으로 可能한 範圍內에서 相互 希望에 따라 獨逸語로 된 第3國의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細部的인 事項은 合意에 의해서 確定된다. 原作者에 대한 著作權料 支拂과 原著作者로부터의 放映權 買入은 이에 의해 影響을 받지 않는다.

第 7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情報나 프로그램에 관한 刊行物을 提供한다.

第 8 條

1. 契約當事者 쌍방은 相互 情報旅行, 博覽會, 展示會, 그 밖의 行事に 代表者들을 派遣할 수 있다. 細部 事項은 개개의 경우 별도로 合意한다.
2. 製作技術上의 經驗 交換은 별도의 約定에 의한다.

第 9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TV競演大會나 TV祝祭行事に 관한 사항을 告知한다. 契約當事者 쌍방은 作品 出品 및 公式 代表團 派遣 등 行事參加 可能與否에 대해서 好意的으로 檢討한다.

第 10 條

契約當事者 쌍방의 代表들은 더이상의 協力에 관한 基本的인 協議와 調整을 위해서 時間的으로 서로 合意하여 수시로 만난다. 이러한 會合은 契約當事者 쌍방의 地域에서 交代로 開催된다.

第 11 條

兩側은 本 合意를 實現시키는데 있어 發生되는 모든 紛爭을 法的인 判決에 依存하지 않고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努力한다.

第 1 2 條

1. 本 協約은 3年間 有效하며 署名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한다.
2. 本 協約은 契約當事者 一方이 적어도 有效期間 滿了 3個月前에 文書로 解止하지 않는 한 3年間씩 延長된다.
3. 本 協約의 變更이나 補完은 契約當事者 쌍방의 合意가 있어야 하며, 文書形式을 필요로 한다.

1987년 5월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原本 두통을 作成한다.

獨逸放送協會 (ARD)所屬 州放送公社들을 위하여
 밀리발트 힐프 (Willibald Hilf)

東獨國務院 TV委員會를 위하여
 하인츠 아다멕 (Heinz Adameck)

統獨前 兩獨間 交流・協力分野

兩獨間 國境委員會 設置 및 活動

('92. 1)

1 . 國境委員會 設置根據

兩獨國家는 1973년 1월 31일 基本條約 第3條에 대한 (1972년 12월 21일 署名, 1973년 6월 21일 발효) 附屬議定書에 따라 兩獨間 國境委員會 (Grenzkommision)를 구성함 .

- 基本條約 3條 : “ 國際聯合의 憲章에 따라 東·西獨은 兩國間의 紛爭을 平和的인 方法으로 處理하고, 武力에 의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抑制한다. 兩國은 現在와 未來에 있어 兩國間에 現存하는 國境線의 不可侵을 再確認하며, 兩國의 領土保全을 尊重할 義務를 진다”
- 基本條約 3條에 대한 追加議定書 (Zusatzprotokoll) : “ 兩國은 兩國 政府가 任命한 者로 構成된 委員會를 設置하기로 合意한다. 同 委員會는 兩國間에 現存하는 國境線의 確定을 再檢討하고 必要에 따라 國境標識를 改定 또는 補完하며, 同時에 國境線 通過에 관한 必要한 文書를 作成한다. 同 委員會는 國境線 通過와 관련하여 發生하는 問題, 예컨대 水資源, 에너지 供給, 災害防止와 같은 問題處理에 寄與한다. 委員會는 條約의 署名과 同時 活動을 開始한다”

2. 國境委員會 構成 및 會議開催

西獨側에서는 內務省 職員을 團長으로, 內獨關係省, 財務省, 東獨과 國境을 접한 4個州(바이에른, 니더작센, 헤센, 쉬레스비히-홀스타인)의 代表로 構成되어 있었음.

○ 東獨側에서는 外務省 職員을 團長으로, 國防省(國境守備隊), 環境 및 水資源保護省, 內務省 職員으로 구성됨.

○ 國境委員會의 會議는 國境附近의 都市에서 東·西獨을 번갈아가며 開催되었는데, 1978년 11월 政府間 議定書에 의해 1년에 定期的으로 4회 開催 合意時까지, 보통 이틀간 계속되는 會議가 45回 開催되었음.

3. 國境委員會의 任務

國境委員會의 任務는 基本條約 3條에 대한 追加議定書에서 규정된대로임.

○ 現存하는 國境線을 再檢討하고 필요하다면 國境標識를 改定 또는 補完하며, 國境線 通過에 관한 文書를 作成함.
- 기존 國境線 標識의 法的인 根據는 4大 戰勝國이 合意한 1944년 9월 12일자 獨逸과 메를런 占領에 관한 런던議定書임.

○ 國境線 通過와 관련하여 發生되는 兩國間의 問題 특히 水資源, 에너지供給과 災害防止 問題의 處理였음.

4. 國境問題에 關連한 共同 最終文書 內容

6年間の 兩獨國境委員會의 共同作業 끝에 兩獨政府는 1978년 11월 29일 “ 政府間 議定書 ” (Regierungsprotokoll) 形式으로 國境問題와 關連한 共同 最終文書 作成에 合意함 .

- 同 議定書 第1條에서는 그간 兩獨間의 1,297Km에 달하는 國境標識의 確認作業 結果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음 .
 - 다만 엘베江流域의 一部區間에 대해서는 , 런던議定書 自體가 不明確하여 , 國境線이 엘베江 동쪽 河岸線인지 , 서쪽 河岸線인지에 대해 合意를 보지 못했다고 規定함 .
 - 엘베江 國境確定問題는 계속하여 兩獨間에 爭點으로 남게됨 .
- 同 議定書 第2條에서는 國境線 通過와 標識 및 國境地圖 作成에 關한 文書(Grenzdokumentation)에 關해 규정함 .
- 第3條에서는 이제까지 國境通過와 關聯하여 發生된 問題點 解決을 爲해 國境委員會가 合意한 10個의 政府間 合意와 議定書 註釋의 效力發生에 대해서 規定함 .
 - 1973년 9월 20일 兩獨間 國境에서 災害防止에 대한 政府間 合意

- 1975년 12월 11일 洪水에 관한 情報交換에 대한 政府間 合意
- 1978년 3월 9일 상대편 國境을 넘어서는 에너지源 採取禁止에 대한 政府間 合意
- 1973년 9월 20일 國境水資源 保存과 水資源 管理施設 設置에 관한 政府間 合意
- 1978년 9월 14일 水資源 管理施設 運營에 관한 議定書 註釋
- 1973년 12월 6일 地籍/土地臺帳 및 계량기 關聯書類 交換에 관한 議定書 註釋
- 1976년 2월 3일 國境附近의 山林資源 管理業務에 관한 議定書 註釋
- 1977년 10월 27일 東獨의 國境附近 水資源 採取 및 灌溉路에 관한 議定書 註釋
- 1978년 5월 18일 國境水路인 베라(Werra)와 살레(Salle)간의 스포츠용 보트와 다른 海上運送手段의 越境에 관한 議定書 註釋

○ 第4條에서는 國境委員會의 業務處理方法에 關係 規定함 .

- 國境委員會 會議은 通常 1년에 4회를 開催하며, 兩側의 要求로 追加會議을 開催할 수 있음 .
- 國境委員會는 한시적으로 一定한 地域調査를 爲해 實務委員會나 專門家들을 委囑할 수 있음 .
- 國境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들은 別도의 規定이 없는 한 署名과 동시에 效力을 發함 .

5. 國境條約 締結의 裏面

兩獨政府는 이 國境委員會 最終文書 形態와 關係하여 立場을 크게 달리 하였음 .

- 東獨側은 완전히 國際法的으로 유효한 國家條約 (Staatsvertrag) 形態로 이를 締結하고, 國際聯合憲章 第102條에 따라 國際聯合事務處에 登錄하여 명실공히 外國과의 條約締結로 西獨側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시도하였음 .

- o 반면 西獨側은 條約形態를 처음부터 拒絶하고 政府間 議定書 (Regierungsprotokoll) 形態를 主張했으며, 만약 東獨이 유엔에 이 最終文書를 提出하면 一方的인 東獨만의 行動이 될 것이라고 警告하였음.

兩獨間 通行問題 關聯 委員會 設置 및 活動

(’92. 2)

1. 兩獨間 通行問題 關聯 委員會 設置와 活動

- 兩獨間에는 基本條約締結以後 設置된 『國境委員會』 이외에도 基本條約 締結以前부터 通行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通過旅行委員會』(Transitkommission)와 『通行委員會』(Verkehrskommission)등 2개의 委員會를 設置하여 運營하였음.

가. 『通過旅行委員會』

- 『通過旅行委員會』는 1971년 12월 17일자 『東獨地域을 경유하여 西獨-西베를린間을 往來하는 民間人들의 通行과 民間物資 通過에 관한 兩獨間 協定』(일명 Transitabkommen) 第19條에 依據하여 1972년 7월 兩獨間에 設置되었음.

○ 同 協定 第19條에 의하면

- 1項 : “ 協定當事者인 兩側은 本 協定の 解釋 또는 施行過程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見解差를 解決하기 위하여 委員會를 設置함”

- 2項 : “ 이 委員會에 參加할 兩側 代表團의 代表는 西獨交通省 長官으로부터 全權을 委任받은 者와 東獨交通省의 全權을 委任받은 者가 각각 말음.”
 - 3項 : “ 委員會의 召集은 協定當事者 雙方中 一方의 要請에 의해 이루어짐”
 - 4項 : “ 會議節次에 관한 具體的인 事項은 委員會 會議에서 確定함”
 - 5項 : “ 만약 委員會가 그들에게 委任된 問題에 대한 見解差를 調整하지 못할 때는 雙方은 이 問題를 각자의 政府로 委任함”
- 이 『通過旅行委員會』 會議는 본(Bonn)과 東베를린을 번갈아가며 開催되었음.
- 1986년 3월에도 약 90회가 開催되었음.
 - 兩側의 會議參加者는 交通省 職員을 代表로 關聯部處가 參與하였으며, 西獨側은 內獨關係省 職員을 參席시킴.
 - 西獨側은 주로 西獨地域으로부터 西베를린 地域을 往來하는 住民들로부터 東獨地域 通過旅行時의 不便한 事項을 聽取하여 東獨側에 전달하였고, 특히 東獨機關의 反復되는 檢問·檢索과 通過節次의 복잡성 등에 抗議하였음.

- 반면, 東獨側은 東獨地域 脫出을 기도하는 東獨住民들이 이 通過道路를 惡用하고 있다고 主張하며 이를 防止하여 줄 것을 要請함.
- 그러나 이러한 東獨側의 抗議에 대해 西獨側은 모든 獨逸人の 旅行自由權 保障은 基本權에 속하는 問題로 看做하여 이를 反駁함.

나. 『通行委員會』

- o 『通行委員會』(Verkehrskommission)는 1972年 5月 12日字 『兩獨間 通行問題에 관한 條約』(Verkehrsvertrag) 第32條에 따라 1972年 11月 設置됨.
- o 同 條約 32條에 의하면
 - 1項: “本 條約의 적용이나 解釋上 雙方間에 異見이 대두되는 경우 兩 條約當事國이 參與하는 委員會에서 解決함”
 - 2項: “이 委員會에 參加할 兩側代表團의 代表는 西獨交通省으로부터 全權을 委任받은 者와 東獨交通省으로부터 全權을 委任받은 者가 각각 맡음”

- 3項: “ 委員會의 召集은 當事者 雙方中 一方의 要請에 의해 이루어짐 ”
 - 4項: “ 會議節次에 관한 具體的인 事項은 委員會 會議에서 確定함 ”
 - 5項: “ 만약 委員會가 그들에게 委任된 問題에 대한 見解差를 調整하지 못할 경우 雙方은 이 問題를 各自의 政府에 委任함 ”
- o 아울러 本條約 32條에 대한 議定書 註釋에 의하면,
 “ 第32條에 의하여 構成되는 委員會는 旅客이나 貨物 運送의 簡素化 및 合理的인 運營의 問題에 대해 諮問 하도록 ” 되어 있음 .
- o 이 通行委員會 會議도 본(Bonn)과 東베를린을 번갈아가며 開催되었으며, 1972년부터 1986년까지 45회가 開催되었음 .
- 이 委員會에서는 兩獨間 國境에서 人的 또는 物的인 相互 交通往來 및 第3國으로의 通過交通과 關聯하여 提起된 問題들을 다룸 .

過去 東·西獨間 旅行·訪問問題

1. 西獨地域 ⇒ 東獨地域

('92. 3)

가. 通行條約 發效以前

○ 西獨地域(西方 占領地域)으로부터 東獨地域(蘇聯 占領地域)에로의 旅行·訪問은 비록 東獨側이 끊임없이 制限措置를 가하여 어렵기는 했으나 分斷以後 항상 可能했음.

○ 東獨側은 人的交流가 가져올 波及效果를 憂慮하여 처음에는 1년에 한번 4週間의 滯留期間을 정하여 東獨에 親戚이 있는 경우에만 許容했음.

여기서 親戚의 範圍는 祖父母, 父母, 子息, 兄弟·姊妹, 異腹兄弟·姊妹

○ 1968年 6月부터는 東獨 旅券法을 改正하여 東獨 入國을 希望하는 西獨人들도 旅券을 所持하고 入國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아울러 비자手數料를 徵收함.

○ 1964年 11月부터는 訪問客들이 旅行日數에 따라 義務的으로 西獨 마르크를 東獨 마르크로 換錢해야 했는데, 1964년에는 1日當 5DM, 1968년에는 10DM, 1973년에는 20DM, 1984년에는 25DM까지 引上되었음.

○ 동독측은 旅行制限 措置의 하나로 所持하는 물건에 대해서 一定品目은 아예 通關을 禁止시켰으며, 나머지 品目은 一定量까지만 通關을 許容하고, 초과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高額의 通關料를 매기는 方法을 사용하기도 했음.

- 1961年 1月 1日부터 東獨을 旅行하는 西獨人들은 購物의 경우 1,000 東獨 마르크까지만 (5일이내 旅行일 경우 하루당 200 東獨 마르크까지) 東獨으로의 搬入이 許容되고, 200 東獨 마르크까지만 許可없이 搬出할 수 있었음.
- 이때 價格基準은 東獨의 商品價格을 基準으로 하였는바, 生必需品, 電子製品, 奢侈品, 기호식품 등의 價格이 西獨에 비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거의 물건을 搬出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通關料 또한 초과되는 액수의 10-15%에 이르러 상당한 負擔이 되었음.
- 西獨에서 東獨으로의 搬入禁止 品目 : 銃器·彈藥類, 放送 送受信機, 軍事的인 색채를 띠는 어린이 장난감, “文化遺産으로 볼 수 없거나 또는 現在의 文化的 價値를 담고 있지 않은” 카세트 테이프 및 音盤, “社會主義國家와 國民의 利害에 상반되는 內容을 담고 있는” 印刷物과 映畫필름, 東獨에서의 配布가 許容되지 않는 新聞·時事雜誌, 地圖, 郵票(및 郵票目錄), 銅錢, 衣類와 신발류를 除外한 中古物品
- 東獨에서의 搬出禁止 品目 : 放送 送受信機, “東獨의 이익을 해치는” 映畫필름, 寫眞, 書籍, 原稿, 銅錢, 郵票, 文化財, 카세트테이프(音盤은 許容), 陶瓷器類, 特定 유리製品, 光學機械, 고기

나. 通行條約 發效以後

1972年 10月 17日 通行條約(Verkehrsvertrag)이 發效된以後, 同 條約文 附屬文書인 書信交換을 통해 東獨政府는 旅行·訪問에 있어서 대폭 緩和措置를 約束했으며, 그以後 旅行·訪問이 劃期的으로 수월해졌음.

- 이전까지는 東獨地域에 親戚이 있는 경우에만 旅行·訪問을 許容했으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1년에 30일의 범위내에서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訪問을 허용함.
- 1984年度에는 總旅行日數가 30日에서 45日로 늘어남.
- 親戚·親知 訪問 이외에도 一般人들은 商業·文化·體育·宗教的인 理由로 東獨의 機關이 招請하는 경우 東獨을 訪問할 수 있게 됨.
- 兩側 旅行社間의 合意로 團體觀光旅行이 許容되었으며, 滯留許可는 旅行프로그램에 明示된 場所에 限定함.
- 基本條約 發效以後 國境附近의 56개 都市와 마을의 西獨 住民들은 東獨의 54개 國境都市와 마을을 하루 滯留를 條件으로 訪問할 수 있었음.
- 이러한 하루滯留 訪問은 親戚·親知 訪問, 觀光 등을 막론하고 모두 許容되었음.

- 每年 平均 45만 정도(國境附近에 사는 西獨人 450만중 10% 정도)가 이 하루滯留 訪問을 利用했는데, 1945년 이후 이곳에서 자란 世代는 親戚이나 이웃이 國境너머에 별로 없었고, 특히 比자手數料 5DM, 道路使用料 10DM, 義務換錢額 등이 經濟的인 負擔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음.
- 西베를린 住民들도 4大國 協定과 더불어 1972年 6月 3일 맺어진 旅行·訪問의 容易化와 條件改善에 관한 西베를린 政府와 東獨政府間의 合意, 그 以後 後續協定 등에 依據하여 東獨과 東베를린을 1年 45日 範圍內에서 여러번 訪問할 수 있었음.
- 이러한 旅行은 人道的인 家事事由 또는 宗教·文化·觀光의 目的으로 許可되었으며, 45日을 다 써버린 경우에도 緊急한 慶弔事의 경우는 許容되었음.

2. 東獨地域 ⇒ 西獨地域

- 1946年 가을以後 모든 旅行客들이 西獨地域(다른 占領地域)을 訪問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蘇聯의 占領政權이, 後日에는 東獨이 發行한 旅券을 所持해야만 했음.
- 1953年 6月 17日 東獨에서 民衆蜂起가 일어나기 전까지 극히 極少數만이 西獨地域의 親舊와 親戚을 訪問할 수 있었으며, 西베를린으로의 訪問은 자유스러웠음.
- 1957年 旅券法 改正과 行政的인 措置를 통해 學生, 東獨 靑少年 團體(FDJ) 團員들의 西獨 旅行이 禁止되었으며, 베를린 封鎖가 시작되던 1958년까지 訪問客의 數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단지 東베를린 市民만이 西베를린 地域을 訪問할 수 있었음.
- 1961年 8月 베를린障壁 設置以後 단지 公共目的의 旅行만이, 1964년에야 비로소 年金生活者만이 西獨의 親戚을 訪問할 수 있게 됨.
 - 그 以後 年金生活者들은 每年 平均 1백만정도가 西獨 地域을 訪問함.
- 1972年 通行條約의 發效以後 대폭 緩和措置가 취해졌음.
 - 年金生活者들은 1년에 여러번 全體 30日의 範圍안에서 西獨과 西베를린을 訪問할 수 있게 됨.

- 특히 年金生活者가 아닌 東獨의 住民들도 緊急한 家事事由의 경우, 許可를 얻어 西獨地域을 訪問할 수 있게 됨.
- 여기서 緊急한 家事事由란 : 出生, 洗禮, 堅振聖事, 聖餐式, 乳兒洗禮, 結婚, 結婚紀念日, 60세, 65세, 70세 및 그 以後의 生日, 生命이 危篤한 疾病의 病問安 또는 臨終
- 旅行許可 申請資格이 있는 親戚의 範圍 : 조부모, 부모, 자식, 형제·자매간, 이복 형제·자매간
- 1984年 8月부터는 親戚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까지 範圍가 擴大되었으며, 60日의 範圍內에서 訪問할 수 있게 됨.

過去 東·西獨間 國境을 통한 脫出·移住問題

(’92. 3)

1. 西獨側 國境線 狀態

- 1,393Km에 달하는 兩獨間 國境을 舊 西獨側에서는 전적으로 열어놓은 狀態나 마찬가지였음.
- 西獨側 住民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東獨側 境界線까지 갈 수 있었고, 東獨側에서 더이상 갈 수 없도록 設置해 놓은 각종 國境統制施設까지 가서 각종 現況을 상세하게 把握할 수 있었음.
- 西獨側 國境地域에는 아무런 制限區域이나 統制施設이 없으며, 단지 “ 停止, 여기서부터가 國境임” (Halt, Hier Grenze)라고 쓰인 注意標識板만이 國境附近에 세워져 있었음.
- 그 標識板 바로 뒤에 東·西獨間 境界를 표시하는 境界石(Grenzstein)이 一定間隔으로 박혀 있었음.

2. 東獨의 國境封鎖政策

- 그러나 舊 東獨側의 國境地域은 廣範圍하게 制限區域이 設定되어 엄중한 警備를 뒀으며, 脫出者에게는 『共和國 逃走者』로 規定하여 銃器使用命令까지 내려져 있었음.

- 國境 3-5Km 內에 『統制區域』(Sperrzone)이 設置되어 이 地域의 出入에는 마을사람들도 特別한 許可證이 필요했음 .
- 이 統制區域 中에서 東·西獨 國境까지 100-2,000m內의 區域은 『防禦區域』(Schutzstreifen)으로 指定되어 各種 脫出防止裝置가 設置되어 있었음 .

3 . 東獨의 國境閉鎖 過程

- 兩獨間의 國境이 완전히 遮斷된 理由는 東·西獨間에 戰爭을 겪지는 않았지만 東獨側이 西獨에 대해 늘 正統性의 不在를 느끼고 있었고, 많은 東獨住民들이 西獨으로의 移住를 希望하였으므로 東獨指導部가 社會主義 土대의 喪失을 우려하여 國境統制를 점차 強化해 나간데 있음 .
- 1945年 以後 蘇聯占領地域으로부터 專門人力이 계속 빠져나가자 蘇聯占領 當局의 要請으로 聯合國側은 1946年 兩 占領地域間의 軍事分界線을 暫定的으로 차단하기로 決定하였음 .
- 冷戰이 격화되던 1952年 5월 東獨側은 西獨과 西方側間의 獨逸條約이 署名되던 날, 閣僚會議 決定으로 國境에 관한 施行令을 制定하여 兩獨間 軍事分界線사이의 通行을 완전히 制限시킴 .

- 1952年 5月 國境警察에 내려진 命令에서는 國境脱出者에 대한 銃器使用이 許容되어 있었음.
- o 1961年 8月 12日 閣僚會議는 베를린障壁 設置(8.13)를 決定하고 그때까지 比較的 자유로웠던 베를린 住民들간의 往來마저 遮斷함. 그 以後 兩獨間의 國境에는 각종 遮斷施設이 設置되기 시작함.
- o 1972年 兩獨關係가 正常化되고 交流·協力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體制의 不安을 느낀 東獨指導部는 國境에 더 많은 遮斷措置를 講究함.
- 1971년에 이미 遮斷地域內에 電子感應自動發射器가 設置되기 시작했고, 1975년에는 더 많은 地雷가 埋設되었음.
- o 1982年 3月 25日 國境法(Grenzgesetz)의 制定으로 脱出者에 대한 銃器使用 命令이 法制化 되었음.
- o 이러한 東獨指導部의 制限措置에도 不拘하고 東獨住民들은 꾸준히 死線을 뚫고 脱出을 敢行해 왔으며, 또한 經濟·社會的인 不利益 甘受에도 不拘하고 西獨으로의 合法的인 移住申請을 냈는데, 이것은 東獨의 社會主義 體制가 内部的으로 崩壞하고 있다는 證據이기도 했음.

4. 脱出者 現況

- 1949년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東獨으로부터 西獨으로의 總流入人口(合法 移住, 脱出·避難 포함)는 520만 명이었으며, 西獨에서 東獨으로 流出된 人口는 47만 정도로 이를 除하면 東獨은 國家가 존립하는 동안 西獨에 대해 470-480만 정도의 移住民 損失이 있었는데, 이는 핀란드인구와 맞먹는 숫자임. (년도별 移住民 現況 참조)
- 이중 東獨 官廳이 許可한 合法移住者는 주로 高齡의 年金生活者나 老弱者, 또는 西獨政府의 특별한 努力으로 移住가 許容된 『離散家族 合流者』들이었음.
- 脱出·避難民으로 記錄된 者들은 死線을 뚫고 兩獨間 國境을 넘어온 사람, 第3國을 거쳐 脱出した 사람 (89년 여름의 헝가리, 체코를 거쳐 脱出した 사람 포함) 家族의 慶弔事에 參席하기 위해 合法的으로 西獨에 여행왔다가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 脱出을 기도하거나 反體制運動을 하다 刑事處罰을 받고 있던 중 西獨側의 秘密協商에 의해 釋放되어 西獨側에 인도된 사람을 포함함.
- 이중 베를린 障壁이 構築된 1961년 8월부터 1988年末까지 23만 5천명 (이 期間동안 총 移住民의 38%)이 許可를 받지 않고 東獨을 脱出했음.
 - 이 脱出者중 4만명 (이 期間동안 移住民 총수의 6.5%) 이 重武裝된 國境의 死線을 뚫고 西獨으로 脱出했음.

- 또한 西獨側의 政治犯 釋放去來를 통해 33,700명 (이 期間동안 移住民 총수의 5% 정도)이 西獨으로 移住함.
- o 1949년부터 1990年 6月 30日까지 國境(東·西 베를린 包舍)을 脫出하다가 東獨側의 銃擊으로 죽은 사람은 총 197명(國境에서 119명, 베를린 주변에서 78명)으로 공식 集計되어 있음.
- o 國境에서 脫出을 기도하다가 東獨 國境으로부터 총격이나 地雷 또는 自動發射裝置에 의해 脫出이 挫折된 예는 Salzgitter所在 舊東獨 暴力事例 記錄保存所 (Erfassungsstelle)가 記錄한 바에 의하면 1961년부터 1990年 6월 30일까지 총 4,444건에 이르고 있음.

5. 西獨의 國境開放政策

- o 西獨政府는 이 國境地帶를 分斷現場 見學 및 政治教育의 場所로 活用하기 위해 國境마을 46개소에 國境地域 案内센터(Grenzinformationsstelle)를 設置하여, 國境地域 現場見學을 장려하였으며, 國境地域에서 統一政策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였음.

- 이 案内센터는 소재지 市·郡, 聯邦國境守備警察, 聯邦關稅廳의 建物 및 人力提供으로 運營되었으며, 聯邦內獨關係省이 이를 財政支援하였음.
- 이 案内센터에는 講義室, 映寫室, 東獨地域 國境施設에 관한 展示場이 마련되어 있었고, 각종 案内資料를 具備하고 訪問客에게 國境地域과 分斷의 實상에 대한 客觀的 情報를 提供함.
- 現場見學旅行은 이 案内센터를 포함하여 國境地域 名所를 訪問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學生·靑少年·外國人들에 대해 分斷에 대한 認識을 환기시키는데 目的이 있었으며 旅行期間은 1-3日 정도였음.
- 全獨問題研究所와 內獨關係省이 外國人과 成人들의 訪問을 周旋했으며
- 각 州政府에서 學生, 靑少年, 大學生들에 대한 旅行을 周旋함.
- 國境地域에서의 統一政策에 관한 세미나는 國家機關에서 直接 周旋하지 않고 각 政黨의 學術財團, 靑少年團體, 市民大學 및 각 研究機關이 開催하고 聯邦內獨關係省은 이러한 세미나實施 團體에 財政補助만 함.
- 對象은 學生, 職業靑少年, 大學生, 教師, 言論人, 學者, 각 政黨의 黨員, 利益團體 會員들이었음.

- 1-6日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었으며, 國境附近의 有名地域 文化觀光을 포함하여 日程이 짜여짐
- 세미나 主題는 民族의 統一, 東獨과의 關係, 內獨關係의 問題點, 西獨의 統一政策, 兩獨體制 比較 등이었음.

◀ 圖 表 ▶

1990年 6月까지 東獨으로부터 西獨으로 온 移住民

연 도	이 주 민				총 계
	부 허 가		허 가		
	탈출 피난민	%	합법 이주민	%	
1949	129,245	100	-	-	129,245
1950	197,788	100	-	-	197,788
1951	165,648	100	-	-	165,648
1952	182,393	100	-	-	182,393
1953	331,390	100	-	-	331,390
1954	184,198	100	-	-	184,198
1955	252,870	100	-	-	252,870
1956	279,189	100	-	-	279,189
1957	261,622	100	-	-	261,622
1958	204,092	100	-	-	204,092
1959	143,917	100	-	-	143,917
1960	199,188	100	-	-	199,188
1961.8.12까지	155,402	100	-	-	155,402
1961.8.13부터	51,624	100	-	-	51,624
1962	16,741	78.4	4,624	21.6	21,365
1963	12,957	30.4	29,655	69.6	42,632
1964	11,864	28.3	30,012	71.7	41,676
1965	11,855	40.2	17,656	59.8	29,552
1966	8,455	35.0	15,675	65.0	24,131
1967	6,385	32.6	13,188	67.4	19,573
1968	4,902	30.6	11,134	69.4	16,035
1969	5,273	31.1	11,702	68.9	16,975
1970	5,047	28.8	12,472	71.2	17,519
1971	5,843	33.6	11,565	66.4	17,408
1972	5,537	32.3	11,627	67.7	17,164
1973	6,522	42.9	8,667	57.1	15,189
1974	5,324	40.2	7,928	59.8	13,252
1975	6,011	36.9	10,274	63.1	16,285
1976	5,110	33.7	10,058	66.3	15,168
1977	4,037	33.4	8,041	66.6	12,078
1978	3,846	31.7	8,271	68.3	12,117
1979	3,512	28.1	9,003	71.9	12,515
1980	3,988	31.2	8,775	68.8	12,763
1981	4,340	28.1	11,093	71.9	15,433
1982	4,095	31.0	9,113	69.0	13,208
1983	3,614	31.9	7,729	68.1	11,343

연 도	이 주 민				총 계
	무 허 가		허 가		
	탈출 피난민	%	합법 이주민	%	
1984	5,992	14.6	34,982	85.4	40,974
1985	6,160	24.7	18,752	75.3	24,912
1986	6,196	23.7	19,982	76.3	26,178
1987	7,499	39.6	11,459	60.4	18,958
1988	11,893	29.9	27,939	70.1	39,832
1989	241,907	70.4	101,947	29.6	343,854
1990. 6. 30까지	-	-	-	-	238,364

過去 國境附近에서의 東·西獨間 協力事業

(’92. 4)

1. 協力事業 概要

- 國境이 東獨側에 의해 점차 鞏固化되어 가게 되자, 西獨政府는 國境을 通過하는 旅行·訪問의 容易化 이외에도, 國境地域에 살고 있는 住民들의 分斷에 따른 苦痛緩和를 目的으로 國境地域에서 東·西獨間 協力事業을 摸索함.
 - 國境地域에서 상대방 地域에까지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問題가 發生하여 具體적으로 住民들에게 被害를 준 경우, 東·西獨은 서로 協議를 통해 解決함.
 - 基本條約에 따라 設置된 國境委員會(Grenzkommision)에서 自然災害 防止, 水資源 管理, 環境汚染, 國土의 利用, 道路網의 連結問題가 廣範圍하게 討議되었고, 協定이 맺어졌으며, 特定分野의 경우는 兩 政府의 代表團이나 經濟團體의 代表끼리 合意를 한 경우도 있음.

2. 協力事業의 事例

- 國境에서의 東·西獨 協力事例의 具體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國境으로 인해 住宅, 工場 또는 道路를 完全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協商을 통해 상대편의 讓步를 얻어 한편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가. 共同災難防止協定

-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1973. 9. 20 國境委員會에서 兩側이 合意한 國境地域에서의 共同災難防止에 관한 協定을 들 수 있음.
- 同 協定에 의하면 國境地域에서 火災가 發生하거나, 洪水·산사태가 發生하거나, 人間이나 家畜에게 해를 주는 傳染病이 發生하거나, 山林이나 農耕地에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水資源이 汚染되거나, 人間이나 家畜, 農作物에 被害를 誘發하는 煤煙이 放出되거나, 폭발물 사고 등이 있거나, 國境地域에서 交通事故나 放射線 누출사고가 있어 상대편 地域에 影響을 미치게 될 경우, 이를 상대편에게 신속히 알리고 共同對處키로 함.
- 위와 같은 災難이 發生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편 常駐代表部(常駐代表部 設置以前에는 國境委員會)에 사전 連絡키로 함.
- 災難이 이미 發生하였거나 狀況이 急迫하여 즉각 應急措置를 통해서만 상대편 地域에서의 災難을 防止할 수 있다고 判斷될 경우는 즉각 서로 口頭나 電話로 關聯事項을 通報키로 함.
- 이러한 國境에서 災難防止 電話通話를 可能케 하기 위해 兩側은 14개소에 國境情報交換所(Grenzinformationsstelle)를 設置함.

나. 水資源 管理 · 利用 合意

- 國境으로 인해 水資源 管理 · 利用에 支障을 초래할 경우, 住民들의 食水 利用이나 工業用水 利用에 支障이 없도록 兩側이 合意한 경우도 있었음.
 - 1973. 9. 20 國境委員會에서 兩側은 國境地域에서 水資源과 管理施設 設置 및 保存에 관한 協定을 맺음으로써 基本事項에 合意한 바 있음.
 - 특히 國境地域에서 住民들의 食水 供給을 위한 水源池와 上水道管이 分斷以前에는 共同으로 使用되다가 國境으로 인해 斷絶된 경우가 많아 이를 國境委員會에서 協議함.
 - 西獨政府는 舊 東獨地域 水資源 管理施設 設置 및 補修維持에 經濟的인 支援을 하고, 그 水資源의 共同利用權을 確保하는 方式을 취함.
- 天然資源이 國境地域을 넘어 상대편 地域까지 매장되어 있어 상대편 地域의 天然資源까지 採掘해야만 技術的으로 이쪽 天然資源이 開發되는 경우, 상호 地下越境의 許容과 情報交換에 合意함.
 - 갈탄의 경우 1976년, 천연가스의 경우 1978년, 칼리의 경우 1984년에 각각 會社代表間에 合意됨.

다. 環境汚染 對處 協議

- 國境에 關係없이 상대편 地域에 被害를 주는 環境汚染에 대해 兩側이 共同으로 對處하기 위한 協議도 있음.
 - 舊 東獨地域의 工場이나 屠殺場, 牧場에서 廢水가 西獨地域으로 흘러들어 河川이나 水源池를 汚染시키는 경우, 東獨側이 費用問題로 淨化施設을 마련하지 않자, 西獨聯邦政府와 州政府가 費用을 共同 負擔하여 淨化施設을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었음.
 - 舊 東獨地域에서 原因이 發生된 大氣汚染의 경우, 특히 겨울철 氣壓이 낮을 때 障壁이나 철조망에 關係없이 西獨地域에까지 커다란 影響을 미쳐 西獨政府는 環境保護協定을 締結하여 共同으로 對處하도록 努力함.

라. 國境 通過路에 관한 協議

- 國境通過路가 직접 連結되지 못하여 많은 國境地域에 居住하는 사람들이 時間을 浪費하여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西獨政府는 이러한 通過路 連結에 많은 努力을 기울임.

- 分斷以前에 40개의 鐵道路線, 30개의 高速道路와 國道, 140개의 地方道路, 수천개의 各 地域間 通過 道路가 있었으나, 東獨側의 遮斷措置에 의해 極少數만 許容됨.
- 統獨以前 兩獨間에는 10개의 國境通過 國道(이중 4개는 고속도로), 8개의 國境通過 鐵道, 2개의 內陸 運河, 3개의 航空路만이 허용되었음.
- 東·西 베를린간에는 8개의 通過路가 開設되어 있었음.

東·西獨 60歲以上 離散家族 再會問題

('90. 2)

(1) 背景 및 制度 沿革

(가) 背景

- 2 차대전 후 國土分斷以來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東·西獨間의 人的交流는 東·西陣營間의 정치기상, 특히 美·蘇大國間 데 팅트 혹은 緊張趨勢와 두 當事局內의 政治雰圍氣에 따라 交流의 熱氣가 기복을 나타내면서도 人的交流가 꾸준히 계속되었음.
- 分斷國인 東·西獨間의 人的交流는 자연스럽게 離散家族들의 相互訪問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西獨人들의 경우는 東獨 當局으로부터 비자를 교부받아 離散家族이나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었고 특히 東獨으로부터 西獨을 訪問하는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연금자 방문』으로 불리워짐.
- 즉, 1960년대말까지 東獨의 交流抑止政策은 基本的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西獨의 노력에 의해 西獨人은 年1회에 4주간 東獨親戚訪問, 동배를린 1일 滯留, 東獨博覽會 參觀 등 제한된 범위에서 年間 약 9만명이 東獨으로 旅行할 수 있었고, 東獨人은 東獨의 體制維持에 부담이 되지 않는 年金受惠者에 한하여 西獨을 訪問할 수 있었음.
- 東獨은 『年金生活者 東獨訪問 許容』을 法令으로 公布(1964. 9. 9)하고 노동력이 없는 노인(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등의 西獨訪問을 許容하였음.
- 1970년대에 이르러 交通條約(1972. 5)과 基本條約(1972. 12)이 체결됨으로써 兩國 60세 이상의 離散家族들의 旅行이 制度的으로 確立되고 條件도 크게 완화되었음.

(나) 人的往來 制度 沿革

〈東・西獨〉

- 1946. 10. 29 聯合國 管理委員會令 第 56 號에 의해 通行證制度 實施, 地域間의 制限된 通行 許可
- 1963. 12. 17 서베를린當局・東獨內閣, 第 1 次 通過證明에 관한 協定 締結
 - '63.12.19 ~ '64.1.5 기간 서베를린 市民의 동베를린 親戚 訪問 許容
- 1964. 9. 9 東獨內閣, 年金受惠 東獨國民의 西獨訪問 許容
- 1964. 9. 24 서베를린시 당국・東獨內閣, 親戚訪問을 위한 通行證 發給 協定締結
- 1971. 12. 30 東西獨間 通行協定締結, 人的交流 節次 緩和
- 1972. 5. 26 東西獨間 交通協定締結, 非年金受惠 東獨人의 西獨 家族訪問 許容
- 1972. 9. 3 美・英・中・蘇 4 大國 베를린 協定締結에 의해 西獨 側의 동베를린 通行權利 保障
- 1979. 10. 31 東西獨間 自由通行協定 締結
- 1989. 11. 9 東獨, 國境開放措置 斷行
- 1989. 12. 24 東西獨間 무비자 通過 合意

※ 參考：中 國

- 1987. 10. 15 臺灣 行政院, 臺灣住民의 大陸家族訪問 許容(年約 40 萬 訪問)
- 1988. 12 臺灣 行政院, 臺灣地區 住民과 大陸地區 住民關係 臨時條例 마련
- 1990. 1. 16 臺灣 行政院, 公務員 포함 大陸親戚訪問 擴大 措置

(2) 人的交流에 대한 兩獨의 立場

人的交流를 진작시키는데 있어서의 東·西獨의 기존의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음.

(가) 西獨의 立場

- 西獨은 東獨에 대하여 經濟支援을 하면서 交流를 원활히 한다는 원칙하에 人的交流를 적극 推進하였음.
- 西獨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없는 統一에 집착하기보다는 國民間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分斷이 가져다준 불편을 제거하고 통일 이후에나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추진되는 對東獨 接近政策의 결실이 人的交流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임.
- 또한 西獨은 人的交流 增進을 통해 東獨에게 經濟的 惠澤을 줌으로써 독일민족의식을 양양시키려 하였음. 따라서 西獨은 總 24億 달러의 借款을 東獨에 提供하면서 주로 人的交流 규정의 緩和措置를 취하도록 條件을 提示하였으며 이는 交流 振作에 크게 작용했음.

(나) 東獨의 立場

- 한편, 東獨은 對外이미지를 改善하고 實利를 獲得하는 것을 目的으로 西獨의 人的交流 노력에 호응하였음.
- 실제로 東獨은 人道主義的 事項에 融通性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對外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또한 人的交流 條件緩和와 關聯하여 西獨으로부터 獲得되는 經濟利得은 國家開發計劃의 資源이 되었으며 對外信用度を 높여주었는데, 실제로 1985년 2월 美國銀行 콘소시움으로부터 5억달러 外貨獲得時 西獨의 潛在保證力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실도 있음.
- 東獨은 人的交流에 融通性을 보임으로써 종종 다른 問題에 대한 對西獨 協商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고 國民들의 念願을 충족시

켜 줌으로써 이탈을 방지하고 政治的 安定과 자신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만층을 西獨에 移住시킴으로써 體制抵抗勢力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데 착안하였음.

- 위와 같이 東·西獨間의 人的交流는 두나라가 동기는 다르지만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規模가 계속 확대되었으며, 다만 東獨은 지나친 자유사상의 유입이 政治體制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西獨訪問者를 주로 60歲이상의 年金受惠者로 制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며 西獨도 이를 인식하여 과열을 피하고 조용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였음.

(3) 60歲 以上 離散家族의 兩國 往來

(가) 東獨으로부터의 西獨 旅行

東獨의 對西獨 人的交流政策

- 東獨은 1953년부터 年金受惠者에 대한 旅行을 허용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緊急家事問題로 인한 旅行도 許容하였고, 1981년 『移住에 관한 協定』을 締結함에 따라 매년 2만 5천명 정도의 東獨住民이 西獨으로 移住하였음.
- 東獨住民이 西獨을 訪問할 때에는 미리 東獨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하나, 訪問期間도 1년에 30일로 제한하던 것을 최근 60일로 연장했고, 緊急한 家事問題가 발생했을 경우, 예경사에는 制限없이 訪問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가족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행편의규정』을 만들어 訪問機會를 대폭 확대시켰음.
- 東獨은 西獨居住 家族의 생일, 영세, 결혼, 사망 및 금·은혼식 참석과 年金受惠者들의 旅行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西獨訪問만을 許容하여 연간 1백 60만명(1985년)이 惠淨을 받았는 바, 이는 人

道主義的인 事項을 外面함으로써 제기될 國民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東獨政府의 최소한의 조치였음.

西獨訪問 旅行

○ 年金受惠者의 旅行

— 1961년 8월 13일 東獨이 封鎖措置를 취한 이래 처음에는 모든 東獨國民의 西獨訪問이 금지되었음. 그후 1964년 11월 2일부터 年金受惠者들은 연중 1회 4주동안 西獨과 서『베를린』거주 친척을 訪問할 수 있었음.

※ 65세 이상의 남자와 60세 이상의 여자가 年金受惠者에 해당되고 불구자와 사고에 따른 早期退職者도 年金受惠者에 포함됨. 가족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위독한 경우에 年金受惠者는 추가로 旅行許可를 받을 수 있었음.

— 交通條約이 발효한 이후 년간 1회 혹은 수회에 걸친 여행이 許可되었음. 東獨 年金受惠者의 西獨과 서『베를린』訪問回數는 1974년 이래 매년 약 1백 30 만건에 달함.

○ 緊急한 家庭事情에 따른 旅行

— 東獨이 채택한 1972년 10월 17일자(문서 I/46) 및 1973년 6월 14일자(문서 I/66) 『東獨市民의 旅行交流 規程』에 의하면 東獨에 居住하는 조부모, 부모, 자식, 형제 및 이복형제(동일모)는 西獨의 親戚이 出生, 결혼, 은혼식, 금혼식, 결혼 60주년, 65주년, 70주년 紀念日, 생명이 위독한 中환자 사망 등을 당한 경우에 그들을 訪問할 수 있었음. 특히 급한 용무일 경우에는 승용차로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위와 같이 東獨이 離散家族들의 再會를 年金受惠者나 緊急한 가정사정의 발생시에 한하여 西獨訪問을 제한없이 허가해 주었던

것은

- 非勞動力이 西獨에 머물러 經濟的인 면에서 年金支給을 하지 않게 되기를 은근히 기대한 점과
 - 특히 우월한 체제인 西獨訪問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體制崩壞 危險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으며
 - 부모사망, 위독, 자녀결혼 등 人道主義的인 면에서의 旅行希望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
- 또 한가지 離散家族 再會面에서 특이한 사실은 東獨이 合法的으로 西獨移住를 허용한 것임. 東獨人家族이 西獨에 이주토록 허용 받는 일은 동독의 政策方向과 東·西獨間 政治關係에 따라 그 規模가 좌우되었는데, 1984년 한해 동안 최고 3만5천명을 기록한 바도 있음.

西獨側의 訪問者 優待政策

- 西獨은 西獨訪問 東獨人에 대하여 飛行場·驛·接境都市 港口 등에서 赤十字社·宗教團體·一般有關機關 등이 영접과 안내를 맡아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政府機關에서는 당시 1인당 50마르크의 補助金을支給하는 등(현재는 100마르크) 社會體制가 다른 곳으로의 여행에서 느낄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東獨人은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本人이 원하면 西獨國民證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바, 서독이 동독 거주자에게 西獨國籍取得 權限을 부여하는 것은 基本法(16條 및 116條)의 단일 獨逸國籍原則 때문이었음.
- 西獨旅行중 疾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無療診療를 받을 수 있고 年金受惠者(남 65세 이상, 여 60세 이상)들에게는 다음번의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航空料 提供(년간 2회), 訪問對象인 西獨親戚이

극빈자 혹은 戰爭犠牲救護金 受惠者일 경우에는 동독으로의 귀가차
표가 제공되었음.

- 東獨은 1963년부터 東獨內 불평불만이 많은 不純勢力, 反體制 人
士를 西獨側에 인도하는 한편, 그 대가로 1인당 最低 3천달러부
터 5만달러를 『教育費 返還』名目으로 西獨側의 經濟支援을 받았
음.

西獨은 東獨에게 移住者의 『教育費 返還』 및 『Swing 借款』을
해마다 제공해 왔음.

※ 『教育費 返還』: 東獨에서 西獨으로 移住해 온 者의 學歷에 따
라 東獨에서 支給한 教育費를 西獨의 教育費로 환산하여 東獨에
게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함.

※ 『Swing 借款』: 일정기간 元金과 利子를 연기해 주는 借款으로
서 『無利子 無償還 借款』을 말함.

西獨은 7年을 1기로 삼고 10억DM의 Swing 借款을 提供해
왔음.

※ 統計資料

〈東獨 年金受惠者(남: 65세, 여: 60세이상)의 西獨訪問〉

(單位: 名)

年 度	總 數
1953	1,516,000
1955	2,270,000
1957	2,720,000
1958	600,000
1959	676,000
1960	607,000

年 度	總 數
1961	675,000
1962	27,000
1963	50,000
1964	664,000
1965	1,218,000
1967	1,072,000
1969	1,042,000
1971	1,045,000
1973	1,257,000
1975	1,330,000
1977	1,323,000
1979	1,369,000
1980	1,554,000
1981	1,563,000
1982	1,553,000
1983	1,462,000
1984	1,546,000
1985	1,609,000
1986	1,757,700
1987	2,204,200

(나) 西獨으로부터의 東獨訪問

西獨人の 東獨旅行

- 西獨은 完全開放을 위해 모든 分野의 人的交流를 推進하여 東獨의 親戚, 親知訪問은 물론 觀光, 境界線 附近 住民의 隨時訪問, 동베를린 1일 滯留 등 많은 西獨人이 東獨을 旅行하였음.
- ※ 西獨은 특별히 60세이상 이산가족들의 再會推進보다는 모든 分野의 人的交流를 적극 추진하였음.
- 『交通條約』이 効力を 발생하기 전까지 西獨 領土에 살고 있는 東獨人들은 私的인 이유로는 다만 규정상 『1촌과 2촌의 친척』 즉, 부모·형제자매만 1년에 한번 4주일간까지 東獨으로 旅行할 수 있었음.
- 西獨 領土의 住民들은 하루동안 동베를린에 체류하는 것이 可能하였고 商用旅行이나 라이프치히 博覽會 또는 東獨 公共機關으로부터의 초청에 의한 旅行은 이와 관계없이 許諾되었음. 이러한 旅行條件의 緩和는 東獨과 西獨사이에 이루어진 交通條約의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음.
- 東獨은 交通條約 締結以後 西獨領土에 居住하는 住民들의 東獨旅行을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가까운 친지들에게도 許諾하였고, 1년에 한번만이 아니라 여러번, 총 30일간 旅行할 수 있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였으며, 그밖에도 商業·文化·스포츠·觀光,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東獨 該當官廳으로부터의 초청장이 있으면 旅行許可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음.
- 이와 같이 西獨住民의 東獨訪問은 미리 東獨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했는데 東獨政府의 許可만 받으면 訪問目的, 訪問地域에 따라 東獨訪問을 할 수 있고 家族과 親戚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었음.

- 다만, 비자 (VISA) 발급시 5 마르크 (DM) 의 수수료와 訪問地 거리에 따라 일정한 통행료를 내야 하고, 東獨에서의 滞在日數에 따라 1 일에 25 마르크씩 서독화폐로 바꾸는 이른바 『强制換錢』을 반드시 해야 하며, 남은 동독화폐는 환전을 해주지 않았음.

※ 『强制換錢』: 東西獨의 화폐가 같지 않으므로 (1 : 4 의 換率) 서독화폐를 동독화폐로 강제적으로 환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換率에 관계없이 1 : 1 로 환전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강제환금 조치가 면제되었음.

- 16 세이하의 미성년자
- 연금수혜여행자 (여 60 세, 남 65 세 이상)
- 불구자 및 사고연금수혜자, 즉 70 % 이상의 就業能力減少 判定을 받은 就業不能者와 事故로 인한 早期年金受惠者 및 業務處理不能으로 免職된 公務員
- 또한 東獨은 西獨人에게 他外國人과 동일한 규정들을 적용, 일반 西方國家國籍 所有者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訪問目的審査・訪問地域制限・面談抑制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았음.

특殊한 경우의 支援

- 독일의 分斷으로 많은 가족이 이산되어 있고 수많은 東獨住民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미 수년전부터 동독국적을 해제하고 서독과 서『베를린』에 居住하는 가족들과 합류하려고 노력하였음.
- 西獨政府는 지난 수년동안 이러한 경우에 대한 解決策을 찾기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산 가족의 합류를 위해 1970 년이후 약 26,500 명이 東獨當局으로부터 出國許可를 받아 家族과 合流하였음.
- 聯邦政府는 離散家族再會努力을 경주함에 있어 특히 兩獨이 關係正

常化의 일환으로 실제적이고 人道的인 問題를 조정한다는데 合意한 基本條約 第7條에 근거를 둠. 細部事項은 同 條約發効와 더불어 적용되는 家族合流에 관한 交換公輸속에 포함되어 있음.

- 西獨政府는 東獨의 政治犯 支援努力을 포함한 인도적 問題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와 方策에 관한 公開討論에서 과거 정부의 經驗에 비추어 人道的인 個別問題를 公開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사람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그들의 觀點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西獨政府는 지난 수년동안 수천명이 구조된 것과 비밀리에 非公開的 方法으로 個別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方法을 계속 준수하고 있음.

※ 統計資料

〈西獨人의 東獨訪問〉

(單位:名)

1 日 및 1 日 以上 滯 在		
年 度	總 數	東西獨 境界線 地域訪問者 數
1967	1,423,000	-
1968	1,261,000	-
1969	1,107,000	-
1970	1,254,000	-
1971	1,267,000	-
1972	1,540,000	-
1973	1,278,000	192,000
1974	1,919,000	331,000
1975	3,123,000	463,000
1976	3,120,000	445,000

1 日 및 1 日 以 上 滯 在		
年 度	總 數	東西獨 境界線 地域訪問者 數
1977	2,987,000	443,000
1978	3,177,000	479,000
1979	2,923,000	415,000
1980	2,746,000	392,000
1981	2,086,000	280,000
1982	2,218,000	299,000
1983	2,219,000	310,000
1984	2,499,000	343,000
1985	2,600,000	318,000
1986	3,790,000	325,000
1987	5,500,000	325,000

〈서베를린 居住者의 동베를린 및 東獨訪問〉

(單位：名)

年 度	總 數
1972	2,078,000
1973	3,818,000
1974	2,555,000
1975	3,194,000
1976	3,380,000
1977	3,372,000
1978	3,201,000
1979	3,036,000
1980	2,546,000
1981	1,728,000
1982	1,718,000
1983	1,502,000
1984	1,800,000
1985	1,900,000
1986	1,884,212
1987	1,942,358

東·西獨間 人的交流 措置 經緯

('90. 7)

(1) 개 관

- 東·西獨間에는 분단이후에도 인적 교류가 지속되었으나 東獨住民의 서독여행시 증명서 소지 (53.2), 베를린 장벽 구축 (61.8.13) 등으로 인해 60년대말까지 박람회 참관, 친척방문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年間 약 9만명의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한 반면, 東獨人은 年金 수혜자에 한해 西獨을 訪問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일반통행협정 (72.5)과 基本條約 (72.12)締結로 人的交流가 제도화됨으로써 年間 약 1,000萬名이 相互訪問하게 되었음.

(2) 東·西獨 人的交流 조치 경위

- 1948. 7.18 ~ 1949. 5.12 東·西獨 交通 단절
(베를린 봉쇄期間)
 - 1,393 km의 東·西獨 境界선 연결 鐵道 32개, 3個의 高速道路, 31個의 國道, 其他 共公道路들이 완전 차단
 - 1949. 5.12 봉쇄해제 결정
(뉴욕협정, 5.4)
- 1951년부터 東獨은 『道路使用料』 徵收 및 여행자 검색
- 1955. 9.20 『蘇聯·東獨關係 條約』에 의거, 蘇聯의 『베를린통행 관리권』이 東獨에 위임됨.
 - 西獨·西베를린간의 통행규제가 東獨側의 자의적 運營으로 轉換
- 1968년 초. 東獨側, 經濟·文化部分을 除外한 西獨의 各部 장관 등 고위관리 및 서베를린시장 등의 베를린 往來 禁止 措置

- 一般人들의 세비 들린 여행에 여권·비자 및 통행세 要求 (비자수수료 包含)
- 1970년 東·西獨間 交通장애 심각
 - 東獨은 交通장애 措置를 對西獨 各種 協商에서 의 카드로 活用
- 1972. 5.26 東·西獨 『交通條約』 締結

(70여회의 兩獨 國務次官會談)

 - 1972년 10월 17일 効力 發生
 - 兩獨間 최초의 國家 條約
 - ※ 주요내용 : 鐵道, 하천, 자동차 交通, 해운 등의 交通수단을 규정
 - ※ 유럽국제열차 및 鐵道問題 때문에 東·西獨은 鐵道問題에 관한 實務會談이 중단없이 계속되어 옴.
- 1972.10 『基本條約』 締結
- 1973. 6.21 『基本條約』 効力發生, 4개의 새 도로 월경구역 追加설치 合意
 - ※ 西獨에서 東獨으로 合法的으로 들어갈 수 있는 道路地點은 18個
 - ※ 東獨의 월경지역, 管理事務所에서 비자발급, 검문소에서 비자 제시, 승용차는 차량번호 기재, 기차는 여권 및 비자 제시
 - ※ 비자대금, 도로사용료, 施設 유지비 등 費用은 西獨 政府가 매년 2억 DM 이상 總額 지불 ('71.12.17, 通행협정)

〈東獨 → 西獨〉

- 『交通條約』 効力 發生 ('72.10.17) 이전
 - 西獨 住民들은 『1촌과 2촌』, 즉, 부모, 형제자매 만 1년에 한번 4주일간 이내의 동독여행 許容
 - 하루동안의 동베를린 체류 可能
 - 상용여행, 東獨內 共公行事 參席 或은 동독 공공기관의 초청에 의한 여행도 許容
- 『交通條約』後,
 - 친척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 訪問도 許容, 期間도 1년에 여러 차례 60일간으로 延長
 - 商業, 文化, 스포츠, 觀光, 종교적 이유로 동독관청의 招請狀이 있으면 여행 허락
 - 특수한 경우(급한 용무, 유아동반 등)는 승용차여행 허가서 發給
 - ※ 西獨人의 東獨觀光은 동독관청으로부터 입국사증 사무를 위탁받은 西獨內 『여행사』를 통해 여행허가 신청
 - ※ 1972.11 ~ 1973.12 까지 동독여행 西獨人數는 250 만명 (전년대비 60%증가)
- 1973.11.5 東獨政府, 동독체류 의무환전액 (10 DM/일)을 20DM/일로 증액
동베를린 체류 의무환전 (5 DM/일)을 10 DM/일로 증액 (14세 이하는 제외)

〈旅行者數 (西獨→東獨)〉

- '69년 110 만, '70년 125 만, '73년 227 만,
'84년 250 만, 110 만 (서베를린→동베를린 1일 여행,

〈東獨 … 西獨〉

- 1961. 8.13 東獨의 경계선 봉쇄 조치 이후 모든 東獨人의 西獨旅行 금지
- 1964.11. 2 연금수혜자들의 西獨 및 西베를린 訪問 許容
(1년 4주)
 - 친척의 증빙, 사망시 추가여행 許容
 - ※ 연금수혜대상 : 남 65세, 여자 60세, 상이군인 등
- 1972.10.27 『交通條約』 効力 發生以後
 - 연금수혜자이외에 모든 東獨人에게 『긴급가족용건』 경우 서독친척 방문 허용(1월 30일)
 - ※ 1972년 년평균 100만명 연금수혜자들이 『交通條約』 發表('72.10.17) 以後 '73年 末까지 비연금수혜 東獨人들의 西獨 旅行者는 5만 3천명
 - ※ 『긴급용무』란 出生, 결혼, 위독, 금혼식, 은혼식 등
 - ※ 西獨側은 東獨側의 여행자들이 원할 경우, 즉석에서 서독여권 발급, 西獨內 정착 주선, 정착금 제공(1981년 『이주협정』, 1983년 이후 12만명 서독이주)

〈西베를린 시민들의 東獨 및 東베를린 旅行〉

- 1952년 이래 東獨 여행 불가능
 - 1961년 이후로는 東베를린도 봉쇄
 - ※ 예외적 경우 : 1963년~1964년, 크리스마스 및 신년방문 허용 (63년 12월 18일~64년 1월 5일)
 - 1965년, 1966년 부활절 및 성령강림제때에 東베를린 친척 방문 허용
 - 1966년, 『긴급가족용무』 동베를린 방문 허가
 - 1969~1971년동안 『긴급가족용무』 연평균 9만명 서베를린 시민의 동베를린 방문
 - 1971년 9월 3일 『4대국 베를린협정』에 따라 인도적·가족적·종교적·사업·관광·문화적 이유로 1년에 60일간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 허용
 - 1972년 부활절(3월 29일~4월 5일) 및 성령강림제(5월 17일~5월 24일)에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 허가(115만명)
 - ※ 西베를린 시민들의 東獨·東베를린 旅行者 數

1972年	330萬
1980年	260萬
1985年	190萬
1987年	194萬
- 1982년 9월 20일, 西獨 『연방청소년연맹』 東獨의 『자유독일청소년회의』간에 청소년 交流計劃 合意
 - 東獨→西獨 : 1,220명, 西獨→東獨 : 22,000名(1982年)

分斷期間中 西獨의 東獨에 대한 經濟支援 內譯

(1) 概 觀

('90. 10)

- 東·西獨間에는 基本條約의 締結(92.12) 이전에도 소규모의 經濟交流를 지속해 왔으며, 基本條約締結 이후에는 『單一經濟單位原則』하에 外國貿易이 아닌 國內交易으로 규정하고, 『關係稅原則』을 바탕으로 한 經濟交流가 본격화 되었음.
- 西獨은 유류, 섬유제품, 농산물, 갈탄 등을 비롯한 에너지원과 원자재를 東獨에서 수입하고, 東獨은 철강, 화학제품, 공업생산제, 유리·세라믹, 내수용 소비재, 기계 및 시설 投資財 등을 西獨에서 수입해 왔음.
- 특히 西獨은 東獨에게 Swing 차관을 비롯하여 借款에 대한 政府保證 등 많은 特惠를 제공하는 한편, 道路通行料 支給 등 직·간접적 지원도 계속해 왔음.

(2) 東·西獨間 交易實積

- 東·西獨間 年間 交易量은 매년 200 億마르크(120 억 \$)에 달해 東獨의 總對外去來規模에 있어서 西獨이 차지하는 비중은 8~11 %로서 蘇聯 다음의 주요 交易相對國이었음.
- 반면 西獨의 總對外去來規模에 있어서 東獨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 정도로서 14 위의 交易相對國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규모에 상관없이 西獨은 일찍부터 兩獨交易의 政治的 重要性을 認識, 쿼터대 상품목의 축소, 비관세, 부가가치세의 경감 또는 면제, 精算計定을 통한 代金決濟, Swing 합의, 金融支援 등 여러가지 交易擴大措置를 시행해 왔음.
- Swing은 兩獨間의 交易促進을 위한 制度的 裝置인데 Frankfurt 協定(1949.10)과 Berlin 協定(1951.7)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상품구입이 상품공급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상한선까지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구입초과된 부분은 상품대금은 추가물품의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無利子로 信用을 供與하는 것임. (사실상 외상구매) 최초 Swing 限度額은 1949년도에 1천 6백만 VE였으나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Swing 限度額은 8억 5천만 VE (= DM)에 달하였음.

〈 東 · 西 獨 交 易 實 績 〉

(單位 : 百 萬 VE , %)

年 度 別	東 獨 供 給	西 獨 供 給	去 來 規 模	
			額 數	增 減 率 (前 年 對 比)
1948	124.1	155.0	279.1	
1949	205.8	221.7	427.5	53.2
1950	414.6	330.0	744.5	74.2
1955	587.9	562.6	1,150.5	27.2
1960	1,122.5	959.5	2,082.0	5.7
1965	1,260.4	1,206.1	2,466.5	13.2
1970	1,996.0	2,415.5	4,411.5	12.3
1975	3,342.3	3,921.6	7,263.9	4.9
1980	5,579.6	5,293.2	10,872.8	16.8
1985	7,635.8	7,901.0	15,536.8	9.8
1986	7,454.2	6,830.7	14,284.9	-8.1
1987	7,406.2	6,650.0	14,056.2	-1.7
1988	7,300	6,800	14,100	0.3

〈東獨의 Swing 限度額 소진實積〉

(單位：백만 VE, %)

年 度 別	Swing 限度額	소진 實積	소진 율 (%)
1955	100	52	52
1958	150	110	73
1960	200	104	52
1964	200	42	21
1970	380 - 440	387	88
1975	790	711	90
1980	850	745	88
1985	600	127	29
1988	850	265	31

(3) 各種 經濟支援 施策

(가) 一般關稅 및 相計關稅의 免除

- 東·西獨交易은 베를린協定の 원칙에 따라 國內交易으로 간주되어 非關稅原則을 고수하고 있으며, 농산품을 공급할 경우에도 EC 시장 내에서 적용되는 相計關稅義務가 면제되는 등 東獨은 사실상 EC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임.

이러한 특혜조치에 힘입어 東獨商品은 西獨市場內에서 비 EC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商品에 비해 相對적으로 우월한 價格競爭力을 가지고 있었음.

(나) 附加價値稅 輕減

- 西獨政府는 1967년 附加價値稅制를 도입할 때부터 東·西獨交易의 촉진을 위해서 東獨商品에 대해서는 品目別로 일정하게 2.5%~

11%까지 附加價値稅를 면제·경감해주고 있음.

(4) 西獨의 東獨에 대한 直·間接的 財政支援

○ 兩獨間에는 經濟的 交流외에도 相互 交流를 촉진하기 위한 非商業的 交流도 활발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西獨이 주로 부담하였고, 이 비용은 東獨의 對西獨 負債償還 등에 필요한 財源이 되었음.

— 예컨대 西獨住民이 東獨을 訪問할 경우, 비자발급시 5마르크의 수수료와 방문지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내야 할뿐만 아니라, 東獨 滞在日數에 따라 1인당 25마르크씩 計算(실제 환율 1:4이지만 1:1로)하여 東獨貨幣로 强制 換金해야 하였음.

— 또한 東獨住民이 西獨을 방문할 때에는 西獨政府는 東獨住民 1人當 100마르크씩 支援金을 주었으며, 西獨으로의 移住를 희망하는(대부분 정치범 등)자에게는 『教育費 返還』명목으로 수년 수억 마르크씩 東獨에 支拂해 왔음.

< 西獨에서 東獨으로 直·間接的으로 支拂된 費用內譯(1982年)>

(單位: 백만마르크)

支 給 內 譯	金 額	備 考
○ 베를린행방 통과총액 (서독 및 서베를린간 往來를 위한 통과료)	525.0	1980~89년기간중 해마다 지불되는 액수
○ 도로사용료(승용차 사용) 총액	50.0	"
○ 베를린-함부르크 고속도로 건설비용	270.0	
○ Wartha - Herles Hausen간 고속 도로 공사 및 Werratal의 다리 건설	60.3	

支 給 內 譯	金 額	備 考
○ 베를린행 통과수로 건설	60.6	
○ 철도건설	20.0	
○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 입국 허가료	12.0	
○ 60세이상 서독주민의 비자수수료 보조금	5.1	개인의 신청에 의 해 직접 지불됨
○ 우편총액 및 체신·전신요금	99.5	1983 ~ 1990 년기간 동안 해마다 2억 마르크씩 지불기로 합의
○ 소포료	750.0	추 정
○ 현금 송금액	500.0	추 정
○ 서독인의 동독여행시 체류비용·지 참금	500.0	추 정
※ 죄인 석방대금	수억마르크	동독정치범의 서독 으로의 방명시 지 급

○ 이처럼 西獨政府는 對東獨 經濟支援을 위해 매년 약 40億 마르크를
제공해 왔음.

— 西獨과 東베를린간 道路建設 및 補修에 投資
('75 ~ '89, 20억 DM)

— 政治犯 釋放代價 및 東獨住民의 西獨移住 支援
(20 ~ 30억 DM)

- 一 西獨政府는 對東獨 借款保證에도 政府의 一括支給을 담보로 하고, 地雷除去 등 조건을 달아 비교적 慎重히 推進(83년 10억 DM, 84년 9.5억 DM 등)

〈西獨의 東獨에 대한 支援內譯('75 ~ '88)〉

(單位 : 10 億 DM/VE)

項 目	清算單位의 去 來	國際通貨로 의 去來	總 額
I. 經常收支	+ 2.7	- 25.1	+ 22.4
1. 商品과 用役去來	+ 2.8	- 10.2	- 7.4
• 商品去來	- 4.4	+ 4.6	+ 0.2
• 用役去來	+ 7.2	+ 14.8	- 7.6
2. 移轉支出	- 0.1	+ 14.9	- 15.0
a. 人間部門	- 0.1	- 2.9	- 2.9
b. 公共部門			
• 移轉支出收支	-	- 12.0	- 12.0
• 通行料 一括支拂金	-	6.6	6.6
• 東獨 訪問客에 대한 支拂金	-	2.0	2.0
II. 資本計定收支	- 2.2	+ 0.2	- 2.0
III. 經常 및 資本計定收支	+ 0.5	- 24.9	- 24.4
IV. 其他 聯邦銀行의 未把握分			- 35.5
V. 東獨에 로의 總流入資金 規模 (III + IV)			- 59.9

資料 : Monthly Report of the Deutsche Bundesbank, Jan. 1990

獨逸統一 實態 資料集 (I)

印 刷 : 1992. 8. 5

發 行 : 1992. 8. 10

發行處 : 統一院 統一政策室

第2政策官室

Tel : 720-2148

725-0762

<비매품>